

“캐나다 민법 연구

- 퀘벡주 민법전(Code civil Québec)의 번역과 해제-

제출자 : 김성수(경찰대 법학과)

제출일시 : 2012. 10. 31.

목 차

【해제】 캐나다 퀘벡주 민법전

1. 퀘벡민법전 일반론	7
2. 퀘벡민법전의 연혁	8
가. 퀘벡민법전의 제정과정	8
나. 현행 민법전 제정 후의 중요한 개정사항	12
3. 퀘벡민법전의 편별체계와 주요내용	16
1. 하(下)캐나다 민법전의 편별구성(1866년)	16
가. 전체 편의 구성	16
나. 제1편의 장·절 구성	17
다. 제2편의 장·절 구성	18
라. 제3편의 장·절 구성	19
마. 제4편의 장·절 구성	24
2. 현행 퀘벡민법전(1994년)의 편별구성	25
가. 전체 편의 구성	25
나. 제1편(인)의 장·절 구성	27
다. 제2편(가족)의 장·절 구성	29
라. 제3편(상속)의 장·절 구성	30
마. 제4편(재산)의 장·절 구성	33
바. 제5편(채무)의 장·절 구성	36
사. 제6편(우선타권과 저당권)의 장·절 구성	37
아. 제7편(증거)의 장·절 구성	39
자. 제8편(시효)의 장·절 구성	40
차. 제9편(권리의 공시)의 장·절 구성	41
카. 제10편(국제사법)의 장·절 구성	43
4. 번역저본	44
5. 기타 번역 관련사항	44

[조문목차]

서장	46
----	----

제1편 인	46
-------	----

제1장 민사권리의 향유와 행사	46
------------------	----

제2장 몇 가지 인격권	47
--------------	----

제1절 사람의 완전성	47
-------------	----

제2절	자의 권리의 존중	52
제3절	명예와 사생활의 존중	54
제4절	사망 후의 신체의 존중	55
제3장	사람의 신분에 관한 몇 가지 특수한 것	57
제1절	성명	57
제2절	주소와 거소	61
제3절	부재와 사망	62
제4절	민사신분등록부와 신분증서	65
제4장	사람의 능력	73
제1절	성년과 미성년	73
제2절	미성년자의 후견	76
제3절	성년자의 보호감독	85
제5장	법인	91
제1절	법인격	91
제2절	몇몇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95
제2편	가족	99
제1장	혼인	99
제1절	혼인과 그 혼인식의 거행	99
제2절	혼인의 증명	102
제3절	혼인의 무효	102
제4절	혼인의 효과	104
제5절	부부재산제	111
제6절	별거	121
제7절	혼인의 해소	124
제1장의 2	민사결합	124
제1절	민사결합의 성립	125
제2절	민사결합의 효력	125
제3절	민사결합의 무효	126
제4절	민사결합의 해소	126
제2장	친자관계	128
제1절	친생자관계	128
제2절	입양	132
제3장	부양의무	138
제4장	친권	140
제3편	상속	141
제1장	상속의 개시와 상속적격	141
제1절	상속의 개시	141

제2절 상속적격	142
제2장 상속재산의 이전	143
제1절 상속재산의 점유	143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과 그로 인한 상속재산의 이전에 미치는 효력	143
제3절 선택권	143
제3장 법률이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귀속	146
제1절 상속적격	146
제2절 혈족	146
제3절 대습	147
제4절 상속재산의 귀속의 순위	147
제5절 부양의무의 존속	149
제6절 국가의 권리	151
제4장 유언	152
제1절 유언의 성질	152
제2절 유언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	152
제3절 유언의 방식	152
제4절 유언에 의한 처분과 수유자	155
제5절 유언과 유증의 철회	158
제6절 유언의 증거와 검인	159
제5장 상속재산의 청산	160
제1절 청산의 목적물과 재산의 분리	160
제2절 상속재산의 청산인	161
제3절 채무의 변제와 특정유증	163
제4절 청산의 종료	165
제6장 상속재산의 분할	167
제1절 분할권	167
제2절 분할의 종류태양	169
제3절 반환	171
제4절 분할의 효력	173
제5절 분할의 취소	174
제4편 재산	174
제1장 재산의 종류와 그 취득	174
제1절 재산의 종류	174
제2절 재산과 그로부터 산출된 물건의 관계	175
제3절 재산과 그 위에 권리를 가진 자의 관계	175
제4절 재산에 관한 몇 가지	177
제2장 소유권	180
제1절 소유권의 성질과 범위	180
제2절 첨부	181

제3절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칙	183
제3장 소유권의 여러 종류	187
제1절 총칙	187
제2절 불가분공유	188
제4장 부동산의 구분소유	191
제1절 구분소유권의 성립	191
제2절 구분소유부분	191
제3절 공유의 표시	192
제4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94
제5절 관리조합의 권리와 의무	195
제6절 관리조합의 이사회	197
제7절 구분소유자 총회	197
제8절 관리조합에 대한 발기인의 통제의 상실	199
제9절 구분소유의 종료	200
제4절 지상권	200
제1절 지상권의 설정	200
제2절 지상권의 소멸	200
제4장 용역제한물권-총칙	201
제1절 이용권	201
제2절 사용권	208
제5편 채무	225
제1장 채무 일반	225
제1절 총칙	225
제2절 계약	226
제3절 민사책임	235
제4절 기타의 몇 가지 채무의 발생원인	238
제5절 채무의 종류	240
제6절 채무의 이행	246
제7절 채무의 이전과 변경	257
제8절 채무의 소멸	261
제9절 급부의 반환	264
제2장 전형계약	266
제1절 매매	266
제2절 증여	275
제3절 신용제공임대차	279
제4절 임대차	279
제5절 용선	280
제6절 운송	281
제7절 고용계약	282

제8절	도급계약 내지 노무역무계약	282
제9절	위임계약	282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	283
제11절	임치	284
제12절	대차	285
제13절	보증	285
제14절	정기금	289
제15절	보험	292
제16절	경기와 도박	293
제17절	화해	294
제18절	중재약정	294

제6편	우선평권과 저당권	294
-----	-----------	-----

제7편	증거	295
-----	----	-----

제8편	시효	296
-----	----	-----

제1장	시효에 관한 규정	296
제1절	총칙	296
제2절	시효의 포기	297
제3절	시효의 중단	297
제4절	시효의 정지	298
제2장	취득시효	299
제1절	취득시효의 행사요건	299
제2절	취득시효기간	300
제3장	소멸시효	300

제9편	권리의 공시	301
-----	--------	-----

제10편	국제사법	303
------	------	-----

【해제】 캐나다 퀘벡주 민법전

김성수(경찰대 교수)

1. 퀘벡민법전 일반론

퀘벡민법전(The Civil Code of Quebec, 프랑스어 : Code civil du Québec)¹⁾은 캐나다의 퀘벡주²⁾(province of Quebec)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이다. 1980년대에 의회가 제정한 가족법편(book on Family Law)의 부분을 제외하고 이 민법전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1865년에 캐나다 의회(Legislative Assembly of the Province of Canada)가 제정하여(enacted) 186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하캐나다민법전(Civil Code of Lower Canada, 프랑스어: Code civil du Bas-Canada)³⁾을 대체한 것이다.

이 민법전의 규율범위는 서장(preliminary provision, Disposition préliminaire)의 첫부분⁴⁾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퀘벡민법전은 인권과 자유의 헌장⁵⁾, 법의 일반원칙과 발맞추면서 사람, 그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 및 재산에 대하여 규율한다⁶⁾”.

- 1) 퀘벡민법전에 대하여는 우선 Franklin, Martin. Introduction to Quebec Law. 3rd edition, Toronto : Copp Clark Pitman, 1984; Castel Jean-Gabriel. The Civil Law System of the Province of Quebec: Notes, Cases, and Materials, Toronto: Butterworths, 1962; Raymond A. Landry, Ernest Caparros, ed., Essays on the civil codes of Québec and St. Lucia,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84; Surveyer, Edouard Fabre. "The Civil Law in Quebec and Louisiana", in Louisiana Law Review Vol. 1, Pages 649-664. May, 1939; Walton, Frederick Parker (1907). The Scope and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of Lower Canada, Wilson & Lafleur, 1907; McCord, Thomas. Synopsis of the Changes in the Law Effected by the Civil Code of Lower Canada, Ottawa : G.E. Desbarats, 39 p., 1866 (online) 등 참조.
- 2) 캐나다는 그 행정구역이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다. 10개의 주는 다음과 같다: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and Saskatchewan. 3개의 준주(territories)는 다음과 같다 :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and Yukon. 퀘벡은 주의 하나이다.
- 3) 하캐나다(Lower Canada)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퀘벡민법전의 연혁 참조.
- 4) 서장은 조문의 표시 없이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퀘벡민법전의 조문내용 참조.
- 5) 이는 퀘벡주에서 제정한 인권자유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Charte des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으로 1975년 6월 27일에 퀘벡의회를 통과한 인권에 관한 주의 제정법으로 1976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http://en.wikipedia.org/wiki/Quebec_Charter_of_Human_Rights_and_Freedoms> 참조; 그 조문내용은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c-12/latest/rsq-c-c-12.html>> 참조; 캐나다는 캐나다의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1982년)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소개는 우선 <http://en.wikipedia.org/wiki/Canadian_Charter_of_Rights_and_Freedoms> 참조; 그 조문내용은 <<http://laws-lois.justice.gc.ca/eng/charter/>> 참조.
-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영어) The Civil Code of Québec, in harmony with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governs persons, relations between persons, and property. (프랑스어) Le Code civil du Québec régit, en harmonie avec la Charte des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et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les personnes, les rapports entre les personnes, ainsi que les biens.

퀘벡법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민법전은 현대사회의 필요에 따르기 위하여 제정 후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퀘벡민법전은 서장, 10편 3,000여개⁷⁾ 이상의 조문(section, article)으로 되어 있고 그 편별체계는 편(books), 장(titles), 절(chapters)과 관(subsections)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다음과 같다.

	Civil Code of Quebec	Code civil du québec	
목차	Table of Contents	Table des matières	
서장	Preliminary Provision	Disposition préliminaire	
제1편 인	Book One Persons	Livre premier Des personnes	제1조-제364조
제2편 가족	Book Two The Family	Livre deuxième De la famille	제365조-제612조
제3편 상속	Book Three Successions	Livre troisième Des successions	제613조-제898조
제4편 재산	Book Four Property	Livre quatrième Des biens	제899조-제1370조
제5편 채무	Book Five Obligations	Livre cinquième Des obligations	제1371조-제1377조
제6편 우선특권과 저당권	Book Six Prior Claims and Hypothecs	Livre sixième De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제2644조-제2802조
제7편 증거	Book Seven Evidence	Livre septième De la preuve	제2803조-제2874조
제8편 시효	Book Eight Prescription	Livre huitième De la prescription	제2875조-제2933조
제9편 권리의 공 시	Book Nine Publication of Rights	Livre neuvième De la publicité des droits	제2934조-제3075조
제10편 국제사법	Book Ten Private International Law	Livre dixième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제3076조-제3168조

2. 퀘벡민법전의 연혁⁸⁾

가. 퀘벡민법전의 제정과정

7) 원래의 조문은 3168개조이었으나 그 후 민법전의 일부개정으로 조문수의 변경이 있다.

8) 이는 주로 다음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Civil Code of Quebec<http://en.wikipedia.org/wiki/Civil_Code_of_Quebec>; MJQ."A Short History of the Civil Code Reform", in Ministère de la Justice du Québec <<http://www.justice.gouv.qc.ca/english/ministere/dossiers/code/code-a.htm>>(Web site), (January 19, 2006); Young, Brian J., The Politics of Codification: The Lower Canadian Civil Code of 1866, Montreal: McGill-Queen's Press, 1994 등. 기타 Louise Bélanger-Hardy et Aline Grenon, Élément de common law et aperçu comparatif du droit civil québécois, Carswell, 1997, 59쪽 이하도 참조.

퀘벡민법전이 제정되기 전에 퀘벡지방은 프랑스의 식민지 시기와 대영제국 통치시기를 거쳐 下캐나다 민법전의 제정과 현행 퀘벡민법전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간단하게 살펴본다.

우선 프랑스 식민지 시기의 민사법과 관련하여 1608년부터 1664년까지 현재의 퀘벡지역을 포함하는 신프랑스(New France)의 최초의 식민지 사람들은 프랑스에 그 기원을 둔 그들의 주에 대한 효력으로 관습법(customary law, coutume)을 따랐다. 1664년 프랑스의 국왕은 파리의 관습법(Coutume de Paris)이 신프랑스 전역에 걸쳐 주된 법원으로서 작용될 것이라는 서인도회사(West India Company)를 설치한다는 33조의 포고⁹⁾를 내렸다. 이후에 당국은 계속하여 중심영역에 프랑스법(le droit français de la métropole)을 계속하여 추가하였다. 이러한 것에는 국왕의 명령(royal decrees and ordinances, 프랑스어 : ordonnances royales), 혼인에 관한 교회법, 가령 계약과 불법행위와 같은 채무에 관한 로마법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왕의 식민지행정관(Royal Intendants, des intendants)이 제정한 명령(ordinances, ordonnances)과 최고위원회(Conseil souverain)가 내린 결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의 식민지행정관은 식민지에서의 사법을 관할할 책임이 있었고 변호사들이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대부분의 분쟁은 과거의 로마에서 하였던 방식과 같이 중재를 통하여 지방의 서기(local notaries)나 지방의 교회성직자(local parish priests)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중세의 프랑스법에 의존하는 것이 퀘벡지방의 신프랑스가 장원의 영지(fiefs, seigneurie)로 나누어졌지만 영주(feudal lords, seigneurs)에게 프랑스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사법적 결정에 대하여는 신프랑스에서는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모든 형사 관할은 국왕의 식민지행정관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파리의 관습법(Custom of Paris)이 신프랑스의 법이라고 하였지만 식민지 사람에게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초는 거의 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대영제국 통치시기와 관련하여 과드루프(Guadeloupe)을 위한 1763년의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서의 프랑스의 캐나다 지역에 대한 권한의 포기에 따라 캐나다는 영국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토지소유의 봉건영주 체계는 퀘벡주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계속하여 적용되었다. 1774년 영국의회는 종전의 프랑스법을 사법으로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보통법을 형사소추를 포함한 공법으로 하는 퀘벡법(Quebec Act)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퀘벡은 이제 2개의 법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이중법체계 지역(bijuridical jurisdictions)¹⁰⁾의 하나가 되었다.

이 퀘벡법은 영국의 국민은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영국의 소수파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791년의 헌법(Constitutional Act of 1791)은 캐나다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영국의 보통법의 지배를 받고 오타와의 서부에 해당하는 上캐나다(Upper Canada)와 대륙법이 체계가 유지되는 세인트 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유역의 下캐나다(Lower Canada)로 나뉘게 되었다. 퀘벡은 후자에 속하였다.

1866년 제정된 下캐나다민법전(Civil Code of Lower Canada)의 내용은 주로 下캐나다에

9) 원래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Édit d'établissement de la compagnie des Indes occidentales이다.

10)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는 Dept. of Justice Canada (1999). *The Harmonization of Federal Legislation with Quebec Civil Law and Canadian Bijuralism: Collection of Studies*, Ottawa: Dept. of Justice Canada 참조.

서 그 당시에 시행중이었던 법의 사법해석으로부터 유래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Commission on codification)의 작업은 1804년의 나폴레옹법전에서 보인 근대화(modernizations)의 몇 가지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았다. 캐나다 연방(Canadian Confederation)의 시기에 하캐나다 민법전은 파리의 관습법(Custom of Paris)으로부터 유래된 법의 대부분을 대체하였고 영국의 신탁법과 같은 하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었던 몇몇 영국법을 규정(incorporated)하기도 하였다. 종전의 민법전은 루이지애나 민법전, 뉴욕에서의 필드의 법전제정운동(Field Code movement)과 스위스의 보주(Canton de Vaud)의 법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았다.

그 각 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편별구성	영어	조문수
서장	Preliminary title	제1조-제17조
제1편 인	Book first: Of persons	제1조-제373조
제2편 재산, 소유권 및 여러 변경	Book second: Of property, of ownership and of its different modifications	제374조-제582조
제3편 재산권의 취득과 행사	Book third: Of the acquisition and exercise of rights of property	제583조-제2277조
제4편 상법	Book fourth: Commercial law	제2278조-제2615조 ¹¹⁾

1955년 퀘벡주 정부는 민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Act respect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Loi concernant la révision du Code civil)을 통과시켜 종래의 민법전의 개정을 개시하였다. 민법전개정청(Civil Code Revision Office)이 설치되어 검토의견서(consultations)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여 1978년 퀘벡주의회에 민법전초안(Draft Civil Code)과 그 주석을 제출하였다.

1980년대에는 더 많은 검토의견서가 나온 후에 가족법에 관한 편(Book on the Law of the Family)의 부분이 채택되었다. 검토의견서의 절차는 1990년 초까지 계속되었고 퀘벡민법전은 1991년 12월 18일 전체가 법으로 통과되어 1994년에 시행되게 되었고 이것이 현행 퀘벡민법전이다.

연방법이 퀘벡민법의 용어, 개념과 제도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사법(私法)에 관하여 정하는 모든 연방법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31일 연방법-민사법통일법 제1호(Federal Law—Civil Law Harmonization Act, No. 1)¹²⁾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캐나다 의회를 통과하여 2001년 3월 10일 국왕의 허락

11) 이에는 부칙규정(Final provisions)(제2613조-제2615조)가 포함되어 있다.

12) 이 법(Federal Law—Civil Law Harmonization Act, No. 1 [S.C. 2001, c. 4])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범명의 약칭(제1조), 제1편 연방법과 퀘벡주의 민사법(PART 1 FEDERAL LAW AND CIVIL LAW OF THE PROVINCE OF QUEBEC)(제2조 범명, 제3조 하캐나다민법전, 제4조 혼인), 제3편 해석법의 개정(PART 2 AMENDMENTS TO THE INTERPRETATION ACT)(제8조), 제3편 연방 물권법의 개정(PART 3 AMENDMENTS TO THE FEDERAL REAL PROPERTY ACT)(제9조-제24조), 제4편(파산과 무자력법의 개정)(PART 4 AMENDMENTS TO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제25조-제33조), 제5편 국왕의 책임과 소추에 관한 법의 개정(PART 5 AMENDMENTS TO THE 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제34조-제52조), 제6편 기타의 여러 개정(PART 6 MISCELLANEOUS AMENDMENTS TO OTHER ACTS)(제53조-제128조), 제7편 부속법개정(PART 7 CONSEQUENTIAL

(Royal Assent)을 얻었다. 계속하여 연방법-민사법통일법 제2호(Federal Law—Civil Law Harmonization Act, No. 2)¹³⁾도 의회를 통과하여 2004년 12월 15일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

하케나다 민법전이 퀘벡민법전으로 대체한 개정과정은 대륙법계 법지역(civil law jurisdiction)의 가장 큰 재법전화 입법작업(legislative recodification undertakings)의 하나이었다.

퀘벡민법전은 그 제정 당시로서의 퀘벡에서의 민사법의 완전한 재편(restatement)이었다. 이에는 광범위한 사생활과 인격권(personality rights)의 보호와 신탁재산(patrimony of affectation)¹⁴⁾에 관한 조항의 채택을 포함하는 법률조항의 법적 해석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AMENDMENTS)(제129조-제173조), 제8편 관련법개정(PART 8 COORDINATING AMENDMENTS)(제174조-제176조); 제9편 경과규정과 시행(PART 9 TRANSITIONAL PROVISION AND COMING INTO FORCE)(제177조 경과규정, 제178조 시행); 자세한 조문내용은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F-7.5/index.html>> 참조.

13) 이 법(Federal Law—Civil Law Harmonization Act, No. 2 [S.C. 2004, c. 25])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법명의 약칭(제1조), 제1편 몇몇 법의 개정(PART 1 AMENDMENTS TO CERTAIN ACTS)(제2조-제4조 Animal Pedigree Act, 제5조 Bank of Canada Act, 제7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제104조-제105조 Canada Council for the Arts Act, 제106조-제110조 Canada Grain Act, 제111조-제113조 Canada Pension Plan, 제114조-제119조 Canada Wildlife Act, 제120조-제122조 Customs Act, 제123조 Defence Production Act, 제131조-제132조 Department of Industry Act, 제133조-제134조 Employment Insurance Act, 제135조-제137조 Energy Supplies Emergency Act, 제138조 Excise Act, 제139조 Explosives Act, 제140조-제142조 Farm Products Agencies Act, 제143조 Law Commission of Canada Act, 제144조-제145조 An Act to incorporate the Jules and Paul-Émile Léger Foundation, 제146조 National Arts Centre Act, 제147조-제164조 National Energy Board Act, 제165조 National Research Council Act, 제166조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Act, 제167조-제169조 Pesticide Residue Compensation Act, 제170조-제171조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ct, 제172조-제173조 State Immunity Act, 제174조 Telecommunications Act, 제180조 Visiting Forces Act); 제2편 부속법의 개정(PART 2 CONSEQUENTIAL AMENDMENTS)(제182조-제204조)(Advance Payments for Crops Act[제182조],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제183조], 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Act[제184조], Bank Act[제185조-제186조],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제185조-제187조], Canada Cooperatives Act[제188조], Canada Corporations Act[제189조-제190조], 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ct[제191조], Canadian Payments Act[제192조],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제193조-제195조], Customs Act[제196조], Employment Insurance Act[제197조], Excise Act, 2001[제198조], Excise Tax Act[제199조-제200조], Income Tax Act[제201조-제202조], Insurance Companies Act[제203조], Prairie Grain Advance Payments Act[제204조]); 제3편 관련법의 개정(제205조-제208조)(PART 3 COORDINATING AMENDMENTS) (Federal Law—Civil Law Harmonization Act, No. 2[제205조], Bank Act[제206조], Canada Grain Act[제207조], Explosives Act[제208조]). 자세한 조문내용은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F-7.51/index.html>> 참조.

14) 대륙법계의 전통에서 출연재산(patrimony of affectation)은 그 출연을 한 자의 일반재산과 구별되는 것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분리된 재산(patrimony)이나 법적 주체(legal entitlement)를 말한다. 이는 소유권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인에 의하여 보유되는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 영미법의 신탁개념과 유사하다. 그 소유권은 출연자의 재산 외의 것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출연자가 파산되거나 책임이 있어도 그 재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 의도한 수익자에게 계속 이익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atrimony of affectation은 ‘신탁재산’으로 하였다. 퀘벡민법전은 제1260조-제1298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퀘벡의 신탁재산에 관한 논의는 Roderick A. Macdonald, Reconceiving the Symbols of Property: Universalities, Interests and Other Heresies, (1994) 39 McGill L.J.[McGill Law Journal(Revue de droit de McGill)] 761 <<http://lawjournal.mcgill.ca/documents/39.4.Macdonald.pdf>>; Hiroyuki Watanabe, “Trusts without Equity” and Prospects for the Introduction of Trusts into European Civil Law Systems <<http://www.globalcoe-waseda-law-commerce.org/activity/pdf/23/20.pdf>> 등 참조.

나. 현행 민법전 제정 후의 중요한 개정사항¹⁵⁾¹⁶⁾

- 민법전의 개정의 적용에 관한 법률¹⁷⁾(퀘벡법률 1992년 제57호 제716조)
Loi sur l'application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L.Q. 1992, c. 57, a.716
An Act resp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of the Civil Code, S.Q. 1992, C. 57, s.716.
- 담보와 권리의 공시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의 적용과 기타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1999년 제47호 제1조-제15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n matière de nom et de registre de l'état civil, L.Q. 1999, c.47, a. 1-15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names and the register of civil status, S.Q. 1999, c.47, s.1-15
- 주택임대차법원법¹⁸⁾(Loi sur la Régie du logement, Act respecting the Régie du logement)과 민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1995년 제61호, 제2조)
Loi modifiant la Loi sur Régie du logement et le Code civil du Québec, L.Q. 1995, c.61, a.2
An Act to amend the Act respecting the Régie du logement and the Civil Code of Québec, S.Q. 1995, c.61, s.2
- 국적이민담당부(國籍移民部)(Ministère des relations avec les citoyens et de l'Immigration¹⁹⁾)에 관한 법과 기타 입법규정을 개정하는 법(퀘벡법률 1996년 제21호 제27조-제29조)
-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1996년 제28호 제1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n matière d'obligation alimentaire, L.Q. 1996, c.28, a.1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the obligation of support, S.Q. 1996, c.28, s.1
- 자의 부양연금(pensions alimentaire pour enfants, child support payments)의 결정에 관한 퀘벡민법전과 민사소송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1996년 제75호 제28조-제33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du Québec et le Code de procédure civile relativement à la fixation des pensions alimentaires pour enfants, L.Q.1996, c.68, a.1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of Québec an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s regards the determination of child support payments, S.Q. 1996, c.68, s.1
- 정신상태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자의 보호에 관한 법(퀘벡법률 1997년 제75호, 제28-33조)

15) 이하의 개정사항은 앞의 II 민법전의 연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사정상 여기에 소개한다. 이하의 것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LVII쪽 이하에 의한 것이다; 고딕체는 모두 민법전의 조문을 직접 개정한 것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16) 이하의 사용된 원어의 역어는 다음과 같다 : [약어] L.Q. : 퀘벡법률(프랑스어, Lois du Québec); S.Q.: 퀘벡법률(영어, Statutes of Québec); c. : Chapter(제O호), a.: 조(條)(article), s. : 조(section)

17) 이하의 개정법률은 Loi, Act로서 엄격하게는 '법률'을 말하지만 법이름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OO법'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18) 주택임대차법원(Régie du logement)은 주택임대차(bail résidentiel)에 관하여 관할을 가진 특별법원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www.rdl.gouv.qc.ca/fr/accueil/mission.asp>> 참조.

19) 현재는 이민문화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et des Communautés culturelles)로 변경되었다. 이 부에 관한 법으로는 가령 이민과 문화부법(Loi sur le ministère de l'Immigration et des Communautés culturelles)(L.R.Q., c. M-16.1) 참조.

- 인권과 동산물권의 공시와 점유이전 없는 동산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전과 기타의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제1998년 제5호, 제1조-제18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t d'autr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ment à la publicité des droits personnels et réels mobiliers et à la constitution d'hypothèques mobilières sans dépossession, L.Q. 1998, c.5, a. 1-18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as regards the publication of personal and movable re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 of movable hypothecs without delivery, S.Q. 1998, c.5, s.1-18

- 민법전의 제21조와 기타 입법규정의 개정법, 퀘벡법률 1998년 제32호, 제1조-제2조

Loi modifiant l'article 21 du Code civil et d'autr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L.Q. 1998, c.32, a. 1-2

An Act to amend article 21 of the Civil Code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S.Q. 1998, c.32, s.1-2

- 후견관리인(curateur public, public curator)에 관한 법률과 후견관리인의 임시관리를 받는 재산에 관한 기타 입법규정의 개정법

Loi modifiant la Loi sur le curateur public et d'autr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ment aux biens soumis à l'administration provisoire du curateur public, L.Q. 1997, c.80, a. 46-48

An Act to amend the Public Curator Act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relating to property under the provisional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Curator, S.Q. 1997, c.80, s.46-48

- 공증에 관한 민사소송법과 기타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1998년 제51호 제22조-제26조)
- 후견관리관(curateur public, Public Curator)에 관한 몇몇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1999년, 제30호, 제21조-제22조)

Loi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concernant le curateur public, L.Q. 1999, c.30, a.21-22

An Act to amend certain legislative provisions respecting the Public Curator, S.Q. 1999, c.30, s.21-22

- 성명과 민사신분등록부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1999년 제47호, 제1조-제15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n matière de nom et de registre de l'état civil, L.Q. 1999, c.47, a. 1-15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names and the register of civil status, S.Q. 1999, c.47, s.1-15

- 통지에 의한 몇몇 권리의 공시에 관한 민법전 개정법(퀘벡법률 1999년 제49호, 제1조-제2조)

Loi modifiant le Code civil relativement à la publication de certains droits qu moyen d'avis, L.Q.1999, c.49, a.1-2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publication of certain rights by means of notice, S.Q. 1999, c.49, s.1-12

- 모하웁 공동체(communautés mohawks, mohawk communities)와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법(퀘벡법률 1999년 제53호 제19조-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여러 법률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1999년 제90호 제41조-제44조)

- 부동산등기에 관한 민법전과 기타의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2000년 제42호 제1조-제43조 (일부), 제44조-제46조, 제68조-제86조)

-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t d'autres dispositions législative relativement à la publicité foncière, L.Q. 2000, c.42, a. 1-43(partie), 44-46, 68-86
-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relating to land registration, S.Q. 2000, c.42, s.1-43(part), 44-46, 68-86
- 퀘벡농업재정(Financière agricole du Québec)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0년 제53호, 제67조)
 - 정보기술의 법체계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1년 제41호 제1조)
 - 민사신분문서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2001년 제41호 제1조)
-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n matière de document d'état civil, L.Q.2001, c.41, a.1
-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civil status documents, S.Q. 2001, c.41, s.1
- 민사신분문서의 청구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2001년 제70호 제1조)
-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n matière de demande de documents d'état civil, L.Q.2001, c.70, a.1
-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requests for civil status documents, S.Q. 2001, c.70, s.1
- 민법전과 기타의 입법규정의 개정법(퀘벡법률 2002년 제19호, 제1조-제15조)
- Loi modifiant le Code civil et d'autres dispositions législative, L.Q. 2002, c.19, a. 1-15
-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S.Q. 2002, c.19, s.1-15
- 동거관계(union civile, civil unions)의 설정과 새로운 친자관계(filiation)의 규율의 인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2년 제6호, 제1조-제73조, 제235조)
- Loi instituant l'union civile et établissant de nouvelles règles de filiation, L.Q.2002, c.70, a.156
- An Act instituting civil unions and establishing new rules of filiation, S.Q.2002, c.70, s.156
- 보험법(Loi sur les assurances, Act respecting insurance)과 기타 법률규정에 관한 개정법(퀘벡법률 2002년 제70호, 제156조)
 - 국립 재정부서확정청(Agence nationale d'encadrement du secteur financier)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2년 제45호 제157조-제161조)
 - 증권법(Loi sur les valeurs mobilières, Securities Act)²⁰⁾과 기타의 법률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퀘벡법률 2004년 제37호 제90조)
 - 혼인에 관한 민법전의 개정법(퀘벡법률 2004년 제23호 제1조-제7조)
- Loi modifiant le Code civil relativement au mariage, L.Q. 2004, c.23, a. 1-7
- An Act to amend the Civil Code as regards marriage, S.Q. 2004, c.23, s.1-7

20) 증권법(Loi sur les valeurs mobilières)은 1982년[chapitre V-1.1(1982, c. 48, a. 336)로] 것으로 1983년 4월 6일 등의 여러 개정을 거친 것으로 현행법(Loi sur les Valeurs mobilières, LRQ, c V-1.1, Securities Act, RSQ, c V-1.1)은 2002년 10월 27일과 2003년 2월 27일 개정된 것을 2011년 최종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11편(제1조-제354조)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다음과 같다 : Titre I Dispositions Générales(제1조-제10조의 7); Titre II Appel Public à l'épargne(제11조-제67조), Titre III Information sur valeurs en circulation(제68조-제109조의 6), Titre IV Offre publique d'achat ou de rachat(제110조-제147조의 23), Titre V Inscription(제148조-제168조의 1의 5), Titre VI Organismes d'autoréglementation, activités de bourse et de compensation de valeurs et agences de notation(제169조-제186조), Titre VII Interdictions et dispositions pénales(제187조-제213조), Titre VIII Sanctions civiles(제213조의 1-제236조의 1), Titre IX Mesures d'application de la loi(제237조-제275조), Titre X Administration de la loi(제276조-제330조의 10), Titre XI Règlements, dispositions transitoires et finales(제331조-제354조). 각각의 제정경과와 법조문은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v-1.1/latest/rsq-c-v-1.1.html>>(영어본), <<http://www.canlii.org/fr/qc/legis/lois/lrq-c-v-1.1/derniere/lrq-c-v-1.1.html>>(프랑스어본) 참조.

- 자의 보호와 국제입양의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et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adoption international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ntry Adoption)의 시행과 입양에 관한 여러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4년 제3호 제12조-제19조)
- 제1974조의 1의 민법전예의 신설에 관한 법²¹⁾(퀘벡법률 2005년 제49호 제1조)
Loi insérant l'article 1974.1 au Code civil, L.Q. 2005, c.49, a.1
An Act to insert article 1974.1 in the Civil Code, S.Q. 2005, c.49, s.1
- 몇몇 공공기관의 폐지와 행정책임의 이전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5년 제44호 제47조)
- 공공기관의 문서에의 접근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과 기타의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6년 제22호 제177조)
- 청소년(jeunesse, Youth) 보호법과 기타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6년 제34호 제61조)
- 증권법(Loi sur les valeurs mobilières, Securities Act)과 기타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6년 제50호 제112조)
- 보험법(Loi sur les assurances, the Act respecting insurance), 신탁회사와 저축회사법(Loi sur les sociétés de fiducie et les sociétés d'épargne; Act respecting trust companies and savings companies) 및 기타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7년 제16호 제4조)
- 퀘벡 공공서비스청²²⁾에 관한 법(Loi sur Services Québec, Act respecting Services Québec)과 기타 법률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07년 제32호 제8조-제11조)
- 증권의 이전과 증권권리(titres intermédiés, Security Entitlements)의 취득에 관한 법률 (퀘벡법률 2008년 제20호 제131조-제139조²³⁾)
- 퀘벡 세입청(稅入廳²⁴⁾)(Agence de revenu du Québec)에 관한 법(퀘벡법률 2010년 제31호 제81조)

21) 본 조의 입법이유에 대하여는 Projet de loi no 133(2005, chapitre 49), Loi insérant l'article 1974.1 au Code civil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5&file=2005C49F.PDF>>(영어본은 <<http://www.assnat.qc.ca/en/travaux-parlementaires/projets-loi/projet-loi-133-37-1.html>>) 참조. 이 조문은 입차인의 배우자 또는 과거의 배우자 또는 성적 폭행(agression à caractère sexuel)을 이유로 그 안전이나 그와 거주하는 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그 입차인에게 그 임대차의 해지를 허용하는 조문이다(특히 제1항 참조).

22) 퀘벡 공공서비스청(Services Québec)은 퀘벡정부가 2004년 12월 개인과 사업의 양자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관청(agency)이다. 이는 국무자문위원회(présidente du Conseil du trésor)와 행정관리부(ministre responsable de l'Administration gouvernementale)의 장의 밑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www.gouv.qc.ca/portail/quebec/services-quebec/>> 참조.

23) 원문은 각각 titres intermédiés(프랑스어), Security Entitlements(영어)로서 각각 '중개기관에 의한 권리', '증권권리'의 의미이다. 양자에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 양자의 공통된 의미로 하였다. 동 법 제13조도 참조 : 제13조 (중개기관에 의한 증권권리) 증권이나 기타의 금융자산은, 증권의 중개기관이 보유한 계좌에 편입되거나 그러한 권리계좌에 편입되어야 할 경우에, 중개기관에 의한 증권권리의 대상이 된다(13. [Titre intermédié] Des valeurs mobilières ou autres actifs financiers font l'objet d'un titre dit intermédié lorsqu'ils sont portés dans un compte de titres tenu par un intermédiaire en valeurs mobilières ou doivent être portés dans un tel compte de titres); 제13조 (증권권리) 증권권리는 증권이나 기타의 금융자산(이에 대하여는 본 법 제12조 참조)이 증권중개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증권계좌에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경우에 설정된다(13. [Security entitlement] A security entitlement is established when a security or other financial asset is, or is to be, credited to a securities account maintained by a securities intermediary).

24) 종래의 세입부(ministère du Revenu)에서 청(agence)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한 관한 것은 우선

- 기업의 법적 공시(publicité légale, legal publicity)에 관한 법(퀘벡법률 2010년 제7호 제164조-제175조)
- 지적법(Loi sur le cadastre, the Cadastre Act²⁵⁾)과 민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퀘벡법률 2010년 제4호, 제2조-제4조)
Loi modifiant la Loi sur le cadastre et le Code civil, L.Q. 2010, c.4, a. 2-4
An Act to amend the Cadastre Act and the Code, S.Q. 2010, c.4, s.2-4
- 무주재산²⁶⁾에 관한 법²⁷⁾(Loi sur les biens non réclamés, Unclaimed Property Act)에 관한 법률(퀘벡법률 2011년 제10호 제63조)²⁸⁾

3. 퀘벡민법전의 편별체계와 주요내용

이하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구민법전인 하(下)캐나다 민법전(Code civil du Bas-Canada, Code civil du Bas-Canada)(1866년 7월 1일-1993년 12월 32일)과 현행법인 퀘벡민법전(Code civil du Québec, Civil Code of Quebec : CCQ)(1994년)의 편별체계를 차례로 살펴본다²⁹⁾.

1. 하(下)캐나다 민법전의 편별구성(1866년)

가. 전체 편의 구성

<<http://www.revenuquebec.ca/fr/centre-information/communiqués/autres/2010/2010-08-20.aspx>> 참조.

- 25) 지적법의 조문은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C_1/C1.html> 참조; 퀘벡에는 지적법 이외에도 ‘퀘벡의 지적의 개혁의 촉진법’(L.R.Q., chapitre R-3.1)(Loi favorisant la réforme du cadastre québécois, Loi favorisant la réforme du cadastre québécois(2001년)도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의 조문내용은 우선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R_3_1/R3_1.HTM> 참조.
- 26) 원문은 ‘(반환)청구 없는 재산’의 의미도 있지만 ‘무주재산’(biens sans maître, property without an owner)(제1조의 용어 참조)으로 하였다. 기타 캐나다의 각 주나 미국에서도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가령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Loi sur les biens non réclamés de la Colombie-britannique 등 참조; 미국의 경우는 가령 콜로라도 주의 Unclaimed Property Act(Article 13)<www.colorado.gov/treasury/gcp/images/upa.pdf>; 기타 미국의 ‘통일무주재산법’(1995)(The Uniform Unclaimed Property Act)(1995)도 참조.
- 27) 이 법(L.R.Q., chapitre B-5.1)은 모두 11장 105조로 되어 있다. 본 법은 [반환의] 청구가 없는 재산의 그 권리자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고 무주재산이나 그 권리자가 불명이거나 조사불가한 재산의 국가로의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 법은 이 재산의 임시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동 법 제1조). 이러한 무주재산을 위하여 국세청(ministre du Revenu)의 관할로 무주재산등기부(Registre des biens non réclamés, register of unclaimed property)가 마련되어 있다. 무주재산의 처리에 관한 것은 <<http://www.revenuquebec.ca/fr/bnr/registre/renseignements3.aspx>>도 참조.
- 28) 이외에도 시행되지 아니한 규정(dispositions non en vigueur)으로는 제2444조의 1, 제2442조, 제701조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comparé, 앞의 책, LIX 참조.
- 29) 원래의 편과 장의 구성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절, 관, 항까지 모두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편과 장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캐나다 국민법전(1866-1993년)은 그 전체편이 서장과 4편 2615조³⁰⁾로 되어 있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서장 - 법의 공포, 배포, 효력, 적용, 해석과 집행 일반	Titre préliminaire — De la promulgation, de la distribution, de l'effet, de l'application, de l'interprétation et de l'exécution des lois en général	Preliminary Title — Of the promulgation, distribution, effect, application,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the laws in general	제1조-제17조
제1편 인	Livre premier. Des personnes	Book first. Of persons	제18조-제373조
제2편 재산, 소유권과 그 여러 변경	Livre deuxième. Des biens, de la propriété et de s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Book second. Of property, of ownership and of its different modifications	제374조-제582조
제3편 재산권의 취득과 행사	Livre troisième. De l'acquisition et de l'exercice des droits de Propriété	Book third. Of the acquisition and exercise of rights of property	제583조-제2277조
제4편 상법	Livre quatrième. Lois commerciales	Book fourth. Commercial law.	제2278조 - 제2615조

나. 제1편의 장·절 구성

제1편 인(人)은 11장 356조(제18조-제373조³¹⁾)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제1편 인	Livre premier - Des personnes	Book first. Of persons.	제18조 - 제373조
제1장 사권의 향유와 박탈 ³²⁾	Titre premier - De la jouissance des droits civils	Title first. — Of the enjoyment and loss of civil rights.	제18조 - 제38조
제2장 민사신분증서 제1절	Titre deuxième - Des actes de l'état civil	Title second.— Of acts of civil status.	제39조 - 제78조
제3장 주소	Titre troisième - Du domicile	Title third.— Of domicile.	제79조 - 제85조
제4장 실종자	Titre quatrième - Des absents	Title fourth.— Of absentees.	제86조 - 제114조
제5장 혼인	Titre cinquième - Du mariage	Title fifth.— Of marriage	제115조 - 제185조

30) 이는 1866년부터 1994년까지 신설, 삭제 및 개정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 원래의 조문을 말한다.

31) 원래의 조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제정 후부터 1994년의 신민법전 제정 전까지 개정된 조문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령 제1장의 A(Titre premier A - Dispositions relatives aux enfants) 참조. 이하 같다.

제6장 별거	Titre sixième.— De la séparation de corps.	Title sixth. — Of separation from bed and board	제186조-제217조
제7장 친자관계	Titre septième.— De la filiation.	Title seventh.— Of filiation.	제218조-제241조
제8장 친권	Titre huitième. — De la puissance paternelle.	Title eighth.— Of paternal authority.	제242조-제245조
제9장 미성년, 후견과 성년해방	Titre neuvième - De la minorité, de la tutelle et de l'émancipation	Title ninth. — Of minority, tutorship and emancipation.	제246조-제323조
제10장 성년, 금지, 후견과 사법보호	Titre dixième - De la majorité et des régimes de protection	Title tenth. — Of majority, interdiction, curatorship and of judicial advisers.	제324조-제351조
제11장 단체 ³³⁾	Titre onzième - Des corporations	Title eleventh.— Of corporations.	제352조-제373조

다. 제2편의 장·절 구성

제2편 재산, 소유권과 그 여러 변형은 5장 209조(제374조-제582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제2편 재산, 소유권과 여러 변형	Livre deuxième. Des biens, de la propriété et de s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Book second Of property, of ownership and of its different	제374조-제582조

32) 후에 ‘제1장의 A 자에 관한 규정’(Titre premier A - Dispositions relatives aux enfants)이 신설되었다.

33) 원문은 corporations(프랑스어, 영어 같음)으로 현행법은 이를 법인(personnes morales, legal persons)하고 있다(제1편 인 제5장 법인)(제298조-제364조 참조). 구민법의 ‘단체’(corporations)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영어표현이어 프랑스법과 조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더 일반적인 ‘법인’(personne morale, legal persons)으로 입법자가 변경한 것이다. 기타 신법은 단체법(droit corporatif)의 몇몇 이론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선 [Patrice Vachon](http://www.avocat.qc.ca/public/iicqcvachon1.htm), Le Code civil du Québec - Livre 1 - Droit des personnes <<http://www.avocat.qc.ca/public/iicqcvachon1.htm>> 참조; 구민법의 조문(제352조 이하)을 고려하여 일단 ‘단체’로 하였다 : 제352조 :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단체는 의제된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고 이는 그 존재와 그 상속성이 영구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고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Toute corporation légalement constituée forme une personne fictive ou morale don't l'existence et la successibilité sont perpétuelles, ou quelquefois pour un temps défini seulement, et qui est capable de certains droits et sujette à certaines obligations); 프랑스민법전은 이러한 단체나 법인에 관하여는 조합(société)(1978년 1월 4일 법률 제78-9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서는 사단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가령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709쪽 이하. 다만 제1871조의 익명조합(société en participation)의 용어를 고려하여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1832조의 개념 정의(제1832조 ① 조합은 2인 이상의 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산이나 노무를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고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한 약정으로서 성립된다; 원래의 조문은 2인 또는 수인의 자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어느 물건을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에서도 조합의 의미에 가깝다.

		modifications	
제1장 물건의 분류	Titre premier. De la distinction des biens.	Title first. — Of the distinction of things	제374조-제405조
제2장 소유권	Titre deuxième. — De la propriété.	Title second.— Of ownership	제406조-제442조
제3장 용익, 사용과 거주권	Titre troisième.— De l'usufruit, de l'usage et de l'habitation.	Title third. — Of usufruct, use and habitation.	제443조-제498조
제4장 지역권	Titre quatrième.— Des servitudes réelles.	Title fourth.— Of real servitudes	제499조-제566조
제5장 영구임대차 ³⁴⁾	Titre cinquième.— De l'emphytéose.	Title fifth.— Of emphyteusis	567 - 제582조

라. 제3편의 장·절 구성

제3편 소유권의 취득과 행사는 20장³⁵⁾ 1695조(제583조-제2277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제3편 소유권의 취득과 행사	Livre troisième — De l'acquisition et de l'exercice des droits de propriété	Book third. Of the acquisition and exercise of rights of property	제583조-제2277조
일반규정	Dispositions générales	General provisions	583조 - 제595조
제1장 상속	Titre premier — Des successions	Title first. — Of successions	제596조-제753조
제2장 생전증여와 유증	Titre deuxième — Des donations entre vifs et testamentaires	Title second — Of gifts inter vivos and by will.	제754조-제981조
제3장 채무	Titre troisième — Des obligations	Title third.— Of obligations.	제982조-제1256조
제4장 부부재산약정과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혼인의 효력	Titre quatrième —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 et de l'effet du mariage sur les biens des époux	Title fourth. — Of marriage covenants and of the effect of marriage upon the property of the	제1257조-제1471조

34) 일본에서는 영소작권으로 옮기기도 한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영구임대차’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의 영구임대차계약(bail emphytéotique)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으로 통상 농업계약에 기초한 것(농업법전 제L. 451-1조 이하)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이 장기(18-99년)에 달하고 낮은 임료(canon emphytéotique라고도 함)와 임차권 자체를 양도와 저당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山口俊夫, フランス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2002, 196쪽(emphytéose 항목) 참조.

35) 후에 제13장의 A 중재약정(Titre treizième A - De la convention d'arbitrage)이 신설되었다.

		consorts.	
제5장 매매	Titre cinquième - De la vente	Title fifth.— Of sale	제1472조 - 제1595조
제6장 교환	Titre sixième - De l'échange	Title sixth — Of exchange.	제1596조 - 제1599조
제7장 임대차	Titre septième - Du louage	Title seventh — Of lease and hire.	제1600조 - 제1700조
제8장 위임	Titre huitième - Du mandat	Title eighth— Of mandate.	제1701조 - 제1761조
제9장 대차	Titre Neuvième - Du prêt	Title ninth.— Of loan.	제1762조 - 제1793조
제10장 임치	Titre Dixième - Du dépôt	Title tenth.— Of deposit	제1794조 - 제1829조
제11장 조합	Titre Onzième - De la société	Title eleventh.— Of partnership.	제1830조 - 제1900조
제12장 종신통기금	Titre douzième - Des rentes viagères	Title twelfth.— Of life-rents.	제1901조 - 제1917조
제13장 화해	Titre treizième - Des transactions	Title thirteenth.— Of transaction	제1918조 - 제1926조
제14장 내기와 도박	Titre quatorzième - Du jeu et du pari	Title fourteenth.— Of gaming contracts and debets	제1927조 - 제1928조
제15장 보증	Titre quinzième - Du cautionnement	Title fifteenth.— Of suretyship.	제1929조 - 제1965조
제16장 질권	Titre seizième - Du contrat de nantissement	Title sixteenth.— Of pledge	제1966조 - 제1979조
제17장 우선특권과 저당권	Titre dix-septième - Des privilèges et hypothèques	Title seventeenth.— Of privileges and hypothecs.	제1980조 - 제2081조
제18장 물권의 등기	Titre dix-huitième - De l'enregistrement des droits réels	Title eighteenth.— Of registration of real rights.	제2082조 - 제2182조
제19장 시효	Titre dix-neuvième - De la prescription	Title nineteenth.— Of prescription.	제2183조 - 제2270조
제20장 민사사건으로 인한 구금 ³⁶⁾	Titre vingtième. — De l'emprisonnement en Matières civiles.	Title twentieth.— Of imprisonment in civil cases	제2271조 - 제2277조

36) 구민법 제2271조 민사에 내린 판결에 의한 신체구류는 다음 각 조문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자에게만 발생된다(Article 2271. La contrainte par corps en vertu d'un jugement rendu en matière civile n'a lieu qu'à l'égard des personnes et dans les cas spécifiés dans les articles qui suivent); 이는 프랑스법의 contrainte par corps(민사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신체적 구속을 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조치이다. 이 민사구금조치는 프랑스에서는 1867년에 폐지되었지만 캐나다 구민법전은 이 폐지 이전에 제정되어 이 제도가 구민법전에 존속되고 있다. 형사에서는 1957년 형사소송법전에 의하여 범죄9다만 정치범

이 중 채권법 총칙에 해당하는 제3장 채무의 편장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3장 채무	Titre troisième. — Des obligations.	Title third. — Of obligations.	제982조-제1256조
일반규정	Dispositions générales	General provisions	제982조-제983조
제1절 계약	Chapter I. — Des contrats.	Chapter I. — Of contracts.	제984조 - 제1040조
제1관 계약의 유효요건	Section. I. — De ce qui est nécessaire pour la validité des contrats	Section I. — Of the requisites to the validity of contracts	제984조
제1항 계약체결능력	§ 1. De la capacité légale pour contracter.	Para. 1. Of the legal capacity to contract	제985조 - 제987조
제2항 합의	§ 2. Du consentement	Para. 2. Of consent	제988조
제3항 계약의 원인이나 고려사항	§ 3. De la cause ou considération des contrats	Para. 3. Of the cause or consideration of contracts	제989조 - 제990조
제4항 계약의 목적	§ 4. De l'objet des contrats	Para. 4. Of the object of contracts	조문없음 ³⁷⁾
제2관 계약의 무효사유	Section. II. — Des causes de nullité des contrats	Section. II. — Of causes of nullity in contracts	제991조
제1항 착오	§ 1. De l'erreur	Para. 1. Of error	제992조
제2항 사기	§ 2. De la fraude	Para. 2. Of fraud	제993조
제3항 폭행과 강박	§ 3. De la violence et de la crainte	Para. 3. Of violence and fear	제994조 - 제1000조
제4항 과다손해	§ 4. De la lésion	Para. 4. Of lesion	제1001조 - 제1012조
제3관 계약의 해석	Section. III. — De l'interprétation des contrats	Section. III. — Of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제1013조 - 제1021조
제4관 계약의 효력	Section. IV.— De reflet des contrats	Section. IV— Of the effect of contracts	제1022조 - 제1027조
제5관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Section. V. — De reflet des contrats à l'égard des tiers	Section. V. — Of the effect of contracts with regard to third persons	제1028조 - 제1031조

죄는 제외)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기타의 국고의 이익을 위한 지급(다만 민사배상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함)가 언도된 경우에 그 언도가 집행되지 아니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형사소송법 제749조). 이러한 점은 山口俊夫, 앞의 책, 123쪽 참조.

제6관 계약의 무효화와 채권자의 기망에 의한 변제	Section. VI. — De l'annulation des contrats et paiements faits en fraude des créanciers.	Section. VI. — Of the avoidance of contracts and payments made in fraud of creditors	제1032조-제1040조
제2절 준계약	Chapter II. — Des quasi-contrats	Chapter. II. — Of quasi-contracts 1041	제1041조-제1052조
제1관 사무관리 준계약	Section. I. — Du quasi-contrat <i>negotiorum gestio</i>	Section. I. — Of the quasi-contract negotiorum gestio	제1043조-제1046조
제2관 비채수령으로 인한 준계약	Section. II. — Du quasi-contrat résultant de la réception d'une chose non due	Section. II. — Of the quasi-contract resulting from the reception of a thing not due	제1047조-제1052조
제3절 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	Chapter III. — Des délits et quasi-délits	Chapter. III. — Of offences and quasi-offences 1053	제1053조-제1056조
제4절 법률에 의한 채무	Chapter IV. — Des obligations qui résultent de l'opération de la loi seule	Chapter. IV. — Of obligations which result from the operation of law solely	제1057조-제1062조
제5절 채무의 목적	Chapter V. — De l'objet des obligations	Chapter V. — Of the object of obligations	제1058조-제1062조
제6절 채무의 효력	Chapter VI. — De l'effet des obligations.	Chapter VI. — Of the effect of obligations	제1063조-제1078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Section. I. — General provisions	제1063조-제1066조
제2관 최고지체	Section. II. — De la demeure	Section. II.— Of defaults	제1067조-제1069조
제3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Section. III. — Des dommages-intérêts résultant de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Section. III. — Of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inexecution of obligations	제1070조-제1078조
제7절 채무의 여러 양태	Chpitre VII. — Des diverses espèces d'obligations.	Chapter VII. — Of different kinds of obligations.	제1079조-제1137조
제1관 조건있는 채무	Section. I. — Des obligations conditionnelles	Section. I. — Of conditional obligations	제1079조-제1088조
제2관 기한있는 채	Section. II. — Des	Section. II — Of	제1089조-제

무	obligations à terme	obligations with a term	1092조
제3관 선택채무	Section. III. — Des obligations alternatives	Section. III. — Of alternative obligations	제 1093조 - 제 1099조
제4관 연대채무	Section. IV. — Des obligations solidaires.	Section. IV. —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제 1100조 - 제 1130조
제1항 채권자 사이의 연대	§ 1. De la solidarité entre les créanciers.	Para. 1. Of joint and several interest among creditors	제 1100조 - 제 1102조
제2항 채무자의 연대	§ 2. De la solidarité de la part des débiteurs	Para. 2. Of debtors jointly and severally obliged	제 1103조 - 제 1120조
제5관 가분채무와 불가분채무	Section. V. — Des obligations divisibles et indivisibles	Section. V. — Of divisible and indivisible obligations	제 1121조 - 제 1130조
제6관 위약금조항이 있는 채무	Section. VI. — Des obligations avec clause pénale	Section. VI. — Of obligations with a penal clause	제 1131조 - 제 1137조
제8절 채무의 소멸	Chapitre VIII. — De l'extinction des obligations.	Chapter VIII — Of the extinction of obligations.	제 1138조 - 제 1202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Section. I. — General provisions	제 1138
제2관 변제	Section. II. — Du paiement.	Section. II. — Of payment	제 1139조 - 제 1168조
제1항 총칙	§ 1. Dispositions générales	Para. 1. General provisions	제 1139조 - 제 1153조
제2항 대위변제	§ 2. Du paiement avec subrogation	Para. 2. Of payment with subrogation	제 1154조 - 제 1157조
제3항 변제의 충당	§ 3. De l'imputation des paiements	Para. 3. Of the imputation of payments	제 1158조 - 제 1161조
제4항 변제제공과 공탁	§ 4. Des offres et de la consignation	Para. 4. Of tender and deposit	제 1162조 - 제 1168조
제3관 갱개	Section. III. — De la novation	Section. III. — Of novation	제 1169조 - 제 1180조
제4관 면제	Section. IV. — De la remise	Section. IV. — Of release	제 1181조 - 제 1168조
제5관 상계	Section. V. — De la compensation	Section. V. — Of compensation.	제 1168조 - 제 1197조

제6관 혼동	Section. VI. — De la confusion	Section. VI.— Of confusion	제1198조-제1199조
제7관 채무의 이행불능	Section. VII. — D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obligation	Section. VII. — Of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becoming impossible	제1200조-제1202조
제9절 증거	Chpitre IX. — De la preuve.	Chapter IX. — Of proof.	제1203조-제1256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Section. I. — general provisions	제1203조-제1206조
제2관 서증	Section. II. — De la preuve littérale.	Section. II — Of proof by writings	제1207조-제1229조
제1항 공정증서	§ 1. Des écrits authentiques	Para. 1. Of authentic writings	제1207조-제1214조
제2항 증서의 등본	§ 2. Des copies des titres	Para. 2. Of copies of authentic writings	제1215조-제1219조
제3항 하캐나다 외에서 한 몇몇 서면	§ 3. De certains écrits faits hors du bas-Canada	Para. 3. Of certain writings executed out of lower canada	제1220조-제1229조
제4항 사서증서	§ 4. Des écritures privées	Para. 4. Of private writings 1221	제1230조-제1237조
제3관 인증	Section. III. — De la preuve testimoniale	Section. III — Of testimony 1230	제1238조-제1242조
제4관 추정	Section. IV. — Des présomptions	Section. IV. — Of presumptions 1238	제1243조-제1242조
제5관 자백	Section. V. — De l'aveu	Section. V. — Of admissions 1243	제1243조-제1245조
제5관 당사자선서	Section. VI. — Du serment des parties	Section. VI. — Of the oaths of parties 1246	제1246조-제1256조
제1항 소송확정선서	§ 1. Du serment décisoire	Para. 1. Of the decisory oath 1247	제1247조-제1253조
제2항 직권선서	§ 2. Du serment déferé d'office	Para. 2. Of the oath put officially 1254	제1254-제1256조

마. 제4편의 장·절 구성

제3편 상법은 6장 341조(제2278조-제2618조³⁸⁾)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7) 제4항은 조문을 두지 아니하고 제5절(Chap. V. De l'objet des obligations)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8) 종결규정(Dispositions finales, Final provisions)(제2613-제2615조)은 우리의 부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우리 법과 같이 독립적인 편장절로 하지 아니하고 제4편의 말미에 규정하고 있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제4편 상법	Livre quatrième. Lois commerciales.	Book fourth. Commercial law.	제2278조 - 제2615조
일반규정	Disposition générale	General provision	제2278조
제1장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 ³⁹⁾	Titre premier,— Des lettres de change, billets et chèques ou mandats a ordre.	Title first. — Of bills of exchange, notes and cheques.	제2279조 - 제2354조
제2장 상사선박	Titre deuxième.— Des batiments marchands.	Title second.— Of merchant shipping	2355조 - 제2406조
제3장 용선계약	Titre troisième.— De l'affrètement.	Title third— Of affreightment.	제2407조 - 제2460조
제4장 상사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Titre quatrième.— Du transport des passagers par bâtiment marchand	Title fourth. —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in merchant vessels.	제2461조 - 제2467조
제5장 보험	Titre cinquième.— De l'assurance.	Title fifth.— Of insurance.	제2468조 - 제2593조
제6장 위험부담 선박임대차계약 ⁴⁰⁾	Titre sixième.— Du prêt à la grosse	Title sixth.— Of bottomry and respondentia	제2594조 - 제2612조
종결규정	Dispositions finales	Final provisions	제2613조 - 제2615조

2. 현행 퀘벡민법전(1994년)의 편별구성

가. 전체 편의 구성

캐나다 퀘벡주의 현행민법전(1994년)은 그 전체 구성이 서칙(序則)과 종결규정과 10편 3168조⁴¹⁾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인(제1편), 가족(제2편), 상속(제3편), 재산(제4편), 채무(제5편), 우선특권과 저당권(제6편), 증거(제7편), 시효(제8편), 권리의 공시(제9편)와 국제사법(제10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9) 프랑스판은 chèques ou mandats a ordre로 되어 있으나 영어판은 cheques으로만 되어 있다.

40) 이는 prêt à la grosse aventure라고도 하며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주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면하게 하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이자가 붙은 대출을 말한다. 해상위험을 포함하는 배 등을 저당으로 하는 '위험부담 선박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험대(冒險貸)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山口俊夫, 앞의 책, 453쪽; 이에 대한 것은 <[http://fr.wikipedia.org/wiki/Prêt à la grosse aventure](http://fr.wikipedia.org/wiki/Prêt_à_la_grosse_aventure)>도 참조.

41) 원래의 조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제정 후부터 1994년의 신민법전 제정 전까지 개정된 조문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령 제1장의 A(Titre premier A - Dispositions relatives aux enfants) 참조. 이하 같다. 후에 제정된 것은 별도로 명시하였다. 이하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서칙(序則)	Disposition préliminaire	Preliminary Provision	
제1편 인	Livre premier Des personnes	Book One Persons	제1조-제364조
제2편 가족	Livre deuxième De la famille	Book Two The Family	제365조-제612조
제3편 상속	Livre troisième Des successions	Book Three Successions	제613조-제898조
제4편 재산	Livre quatrième Des biens	Book Four Property	제899조-제1370조
제5편 채무	Livre cinquième Des obligations	Book Five Obligations	제1371조-제2643조
제6편 우선특권 ⁴²⁾ 과 저당권	Livre sixième De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Book Six Prior Claims and Hypothecs	제2644조-제2802조
제7편 증거	Livre septième De la preuve	Book Seven Evidence	제2803조-제2874조
제8편 시효	Livre huitième De la prescription	Book Eight Prescription	제2875조-제2933조
제9편 권리의 공시	Livre neuvième De la publicité des droits	Book Nine Publication of Rights	제2934조-제3075조
제10편 국제사법	Livre dixième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Book Ten Private International Law	제3076조-제3168조
종결규정	Dispositions finales	Final provisions	

퀘벡의 구민법전(1866년)이 서장⁴³⁾, 인(제1편), 재산, 소유권과 그 여러 변경(제3편) 및 상법(제4편)으로 하여 2615조를 둔 것과 비교하면 편의 수와 조문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2) 퀘벡구민법에서는 우선특권(privilèges, 일본의 先取特權)을 제1994조 이하와 제2009조에서 규정하였다. 1977년의 민법전 개정청(Office de révision du Code civil : O.R.C.C.)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우선특권 전부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261조에서 공익과 형평을 이유로 한 5가지 우선특권(priorités)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전의 몇몇 우선특권은 법정저당권(hypothèques légales)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령 제2724조가 그러하다. 개정된 현행 민법의 법정저당권에 대하여는 Denise Pratte, <<La création de l'hypothèque légale immobilière>>, (1992) 23 R.G.D. 385 참조. 우선특권을 포함한 법정담보권의 수의 감소라는 변경 이외에도 우선특권의 용어도 privilèges에서 priorités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 뿐만 아니라 그 담보로서의 성질과 구상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는 Denise Pratte, <<Des Privilèges aux priorités : Plus qu'un changement de vocabulaire>>, Chronique : Nouveau Code civil du Québec, (1992) 23 R.D.U.S., pp. 176-187 <http://www.usherbrooke.ca/droit/fileadmin/sites/droit/documents/RDUS/volume_23/23-1-pratte.pdf> 참조. 이하에서는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특권'으로 하였다.

43) 구민법에서는 제1조 내지 제17조를 서장의 별도의 장(章)으로 하여 조문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종결규정(제2613조 내지 제2615조)은 별도의 장절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4편의 말미에 두고 양자를 모두 조문으로 편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편별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현행법은 서칙(!)과 종결규정은 모두 별도의 장절의 표제를 붙이지 아니하고 있고 조문으로 편입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양자의 편별구성에 통일을 기하고 있다.

우선 人編(제1편)은 구민법의 제1편(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외에도 구민법의 인편(제1편)에 있던 혼인(제5장), 친자관계(제6장), 친권(제8장)을 가족편(제2편)으로 하여 별개의 편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상속편(제3편)은 구민법에서는 제3편의 1장(제1장 상속)과 제2장(생전증여와 유증)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립된 편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친족편(가족편)(제4편)과 상속법(제5편)에 해당하는 것을 민법전의 전3편으로 한 것이다⁴⁴⁾.

다음으로 재산편(제4편)은 구민법의 제2편(재산, 소유권과 그 여러 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법은 몇몇 출연재산(제6장)과 타인의 재산관리(제7장)를 신설하고 있다. 채무편(제5편)은 구민법 제3편의 채무에 관한 장(제3장)과 전형계약(제5장-제15장)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구민법이 전통적인 민사전형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는데 대하여 현행법은 상사계약과 상법 규정도⁴⁵⁾ 여기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민법 제3편의 우선특권과 저당권(제17장)은 현행법의 제6편으로 독립시키고 있다.

이어서 증거편(제7편)은 구민법 제3편(소유권의 취득과 행사)의 채무의 장(제9장) 제9절(증거)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립된 편으로 한 것이다. 시효편(제8편)은 구민법 제3편 제19장(시효)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립한 편으로 한 것이다. 권리의 공시편(제9편)은 제3편 제18장(물권의 등기)을 독립한 편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편(제10편)은 구민법의 서장(제1조-제17조)의 일부 조문에서⁴⁶⁾ 규정하던 것을 독립한 편으로 한 것이다.

나. 제1편(인)의 장·절 구성

제1편 인(人)은 5장 364조로 되어 있다. 구민법이 11장 356조로 하여 인(자연인, 단체),

44) 우리 법은 가족법과 상속법을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이루어진 재산법 다음에 두는데 퀘벡법은 오히려 이를 먼저 두고 이어서 재산법(재산편과 채권편)을 그 다음에 둔다. 총칙편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45) 퀘벡의 상법은 1673년의 상사조례(Ordonnance de commerce)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추밀원(Conseil privé de Londres, Privy Council)이 퀘벡을 정복한 후에 이 조례가 퀘벡에서 오랫동안 준수되었음에도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수년 동안 정하였다. 퀘벡의회(Parlement de Québec)가 이를 민사절차에 관한 조례(Ordonnance sur la procédure civile)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이 이를 법률화(enregistrée)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상사조례는 법전화되었고 나중에 상법전(Code de commerce)이 되었다. 퀘벡은 유사한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역사적 면을 고려하면 퀘벡에서는 초기에는 파리관습법(Coutume de Paris)과 조례에 의하여 규율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캐나다 민법전과 민사소송법전 및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Bernard Clermont, Benoît Yaccarini, Initiation au droit des affaires du Québec, 4e éd., Press de l'Université de Laval, 1986, 33쪽 참조; 따라서 구민법전이 프랑스민법전의 체계를 따랐으면서도 상법에 관한 것은 별개의 법전(상법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민법전의 한 편(제4편)으로 하였던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상법전은 이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또한 구민법전과 같이 독립된 편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법전의 규정에 이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채무편(제5편)의 전형계약에는 보험계약, 운송계약 등의 여러 상사계약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46) 가령 구민법의 제6조는 현행법 제3078조, 제3081조, 제3083조-제3085조, 제3088조-제3091조, 제3093조, 제3094조, 제3097조, 제3098조, 제3102조, 제3126조, 제3132조에 해당한다. 구민법이 제7조는 현행법 제3109조에 해당한다. 구민법 제7조 제1항은 현행법 제3088조에 해당한다. 구민법 제8조는 현행법 제3111조와 제3112조에 해당하고 구민법 제8조 제1항은 현행법 제3129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구민법 제13조는 현행법 제3081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행법과 구민법의 조문대조는 J.-M. Brisson, N. Kasirer, Code civil du Québec, Edition critique, Civil code of Québec, A critical Edition, 2011-2012, 19e éd., Editions Yvon Blais, p. 1137 참조; 이와 같이 국제사법을 별도의 법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민법전의 일부, 특히 서장(Titre préliminaire)에서 규정하는 것은 프랑스민법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 법전 제3조 ① 경찰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다(obligent). ② 부동산은 외국인에 의한 소유하는 것이 라도 프랑스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한다. ③ 사람의 신분과 능력에 관한 법률은 모든 프랑스인을 규율하고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현재에도 프랑스에서는 국제사법전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미성년과 성년해방, 성년과 성년보호 및 혼인, 별거, 친자관계, 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던 것을 현행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것만을 규정한다⁴⁷⁾. 이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는 권리능력(향유와 행사)(제1장), 인격권(제2장)과 인의 지위에 관한 특수한 것으로 성명, 주소와 거소, 부재와 사망(제3장)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이어서 법인(제5장)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1편 인	Livre premier - Des personnes	Book one - Persons	제 1조-제 364조
제1장 민사권리의 향유와 행사	Titre premier - De la jouissance et de l'exercice des droits civils	Title one - Enjoyment and exercise of civil rights	제 1조-제 9조
제2장 몇 가지 인격권	Titre deuxième - De certains droits de la personnalité	Title two - Certain personality rights	제 10조 - 제 49조
제1절 사람의 완전성	Chapitre premier - De l'intégrité de la personne	Chapter I - Integrity of the person	제 10조 - 제 31조
제2절 자의 권리의 존중	Chapitre deuxième - Du respect des droits de l'enfant	Chapter II - Respect of children's rights	제 32조 - 제 34조
제3절 명예와 사생활의 존중	Chapitre troisième - Du respect de la réputation et de la vie privée	Chapter III - Respect of reputation and privacy	제 35조 - 제 41조
제4절 사후 신체의 존중	Chapitre quatrième - Du respect du corps après le décès	Chapter IV - Respect of the body after death	제 42조 - 제 49조
제3장 인격권의 몇 가지 요소	Titre troisième - De certains éléments relatifs à l'état des personnes	Title three - Certain particulars relating to the status of persons	제 50조 - 제 152조
제1절 성명	Chapitre premier - Du nom	Chapter I - Name	제 50조 - 제 74조
제2절 주소와 거소	Chapitre deuxième - Du domicile et de la résidence	Chapter II - Domicile and residence	제 75조 - 제 83조
제3절 실종과 사망	Chapitre troisième - De l'absence et du décès	Chapter III - Absence and death	제 84조 - 제 102조
제4절 민사신분등기부와 증서	Chapitre quatrième - Du registre et des actes de l'état civil	Chapter IV - Register and acts of civil status	제 103조 - 제 152조

47) 조문내용에 관하여는 줄고, 캐나다의 퀘벡민법전의 인(제1편)에 관한 연구(1)-(3), 민법전 일반과 제1편의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2011.9, 11쪽 이하, 2011.10, 13쪽 이하, 2011.11, 23쪽 이하 등 참조(미완); 제1편의 장, 절, 관의 표제에 대한 완전한 것은 2011.11, 31쪽 이하 부록2 참조.

제4장 사람의 능력	Titre quatrième - De la capacité des personnes	Title four - Capacity of persons	제153조-제297조
제1절 성년과 미성년	Chapitre premier - De la majorité et de la minorité	Chapter I - Majority and minority	제153조-제176조
제2절 미성년후견	Chapitre deuxième - De la tutelle au mineur	Chapter II - Tutorship to minors	제177조-제255조
제3절 성년자의 보호 감독	Chapitre troisième - Des régimes de protection du majeur	Chapter III - Protective supervision of persons of full age	제256조-제297조
제5장 법인	Titre cinquième - Des personnes morales	Title five - Legal persons	제298조-제364조
제1절 법인격	Chapitre premier - De la personnalité juridique	Chapter I - Juridical personality	제298조-제333조
제2절 몇 가지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Chapitre deuxième - Des dispositions applicables à certaines personnes morales	Chapter II - Provisions applicable to certain legal persons	제334조-제364조

다. 제2편(가족)의 장·절 구성

제2편 가족은 4장 248조(제365조-제612조⁴⁸⁾)로 되어 있다. 이에는 혼인, 민사결합, 친자관계, 부양의무, 친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민법이 제1편 인에서 규정하던 것을 인과 가족으로 나누어 전자를 제1편으로 하고 후자를 본 편으로 한 것이다⁴⁹⁾.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2편 가족	Livre deuxième - De la famille	Book two - The family	제365조-제612조
제1장 혼인	Titre premier - Du mariage	Title one - Marriage	제365조-제521조
제1절 혼인과 혼인식의 거행	Chapitre premier - Du mariage et de sa célébration	Chapter I - Marriage and solemnization of marriage	제365조-제377조
제2절 혼인의 증명	Chapitre deuxième - De la preuve du mariage	Chapter II - Proof of marriage	제378조-제379조
제3절 혼인의 무효	Chapitre troisième - Des	Chapter III - Nullity of	제380조-

48) 민법전 제정 후에 2002년 제1장의 1 민사결합(제521조의 1 내지 제521조의 19)(19개조)이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2장 친자관계에서도 제1절의 1의 일부조문(제538조의 1-제538조의 3, 제539조의 1)을 2002년 신설하여 의학의 도움을 받아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49) 혼인은 구민법 제1편 제5장에 해당하고 친자관계는 제7장, 친권은 제8장에 해당한다. 부양의무는 제3편 제1장 상속, 제1절 상속의 개시와 유언없는 상속인의 상속(Chapitre premier - De l'ouverture des successions et de la saisine des héritiers), 제3관 부양의무의 존속(Section III - De la survie de l'obligation alimentaire)(제607조의 1 내지 제607조의 11)에서 규정하였다. 부양의무의 조문내용은 우선 <http://fr.wikisource.org/wiki/Code_civil_du_Bas-Canada/Livre_troisi%C3%A8me/Titre_premier> 참조; 민사결합은 현행 민법 제정 후에 신설(2002년)된 것이다.

	nullités de mariage	marriage	제390조
제4절 혼인의 효력	Chapitre quatrième - Des effets du mariage	Chapter IV - Effects of marriage	제391조-제430조
제5절 부부재산제	Chapitre cinquième - Des régimes matrimoniaux	Chapter V - Matrimonial regimes	제431조-제492조
제6절 별거	Chapitre sixième - De la séparation de corps	Chapter VI - Separation from bed and board	제493조-제515조
제7절 혼인의 해소	Chapitre septième - De la dissolution du mariage	Chapter VII - Dissolution of marriage	제516조-제521조
제1장의 1 민사결합	Titre premier.1 - De l'union civile	Title one.1 - Civil union	제521조의 1-제 521조의19
제1절 민사결합의 성립	Chapitre premier - De la formation de l'union civile	Chapter I - Formation of civil union	제521조의 1 - 521.5
제2절 민사결합의 효력	Chapitre deuxième - Des effets civils de l'union civile	Chapter II - Civil effects of civil union	제521조의 6-제 521조의9
제3절 민사결합의 무효	Chapitre troisième - De la nullité de l'union civile	Chapter III - Nullity of civil union	제521조의 10 - 제 521조의11
제4절 민사결합의 해소	Chapitre quatrième - De la dissolution de l'union civile	Chapter IV - Dissolution of civil union	제521조의 12- 제 521조의19
제2장 친자관계	Titre deuxième - De la filiation	Title two - Filiation	제522조-제584조
제1절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Chapitre premier - De la filiation par le sang	Chapter I - Filiation by blood	제523조-제537조
제2절 보조생식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⁵⁰⁾	Chapitre premier.1 - De la filiation des enfants nés d'une procréation assistée	Chapter I.1 - Filiation of children born of assisted procreation	제538조-제542조
제3절 입양	Chapitre deuxième - De l'adoption	Chapter II - Adoption	제543조-제584조
제3장 부양의무	Titre troisième - De l'obligation alimentaire	Title three - Obligation of support	제585조-제596조
제4장 친권	Titre quatrième - De l'autorité parentale	Title four - Parental authority	제597조-제612조

라. 제3편(상속)의 장·절 구성

제3편 상속은 6장 284개조(제613조-제896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상속의 개시와 상속적

50) 본 절 중 제538조의 1 내지 제538조의 3, 제539조의 1의 4개조가 2002년 신설되었다.

격(제1장), 상속의 양도(제2장), 법정상속(제3장), 유언(제4장), 상속의 청산(제5장)과 상속분할(제6장)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구민법에서는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던 것⁵¹⁾을 독립된 편으로 하고 재산법(제4편의 재산과 제5편의 채무)의 앞에 둔 것이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3편 상속	Livre troisième - Des successions	Book three - Successions	제613조-제896조
제1장 상속의 개시와 상속자격	Titre premier - De l'ouverture des successions et des qualités requises pour succéder	Title one - Opening of successions and qualities for succession	제613조-제624조
제1절 상속의 개시	Chapitre premier - De l'ouverture des successions	Chapter I - Opening of successions	제613조-제616조
제2절 상속자격	Chapitre deuxième - Des qualités requises pour succéder	Chapter II - Qualities for succession	제617조-제624조
제2장 상속[재산]의 이전	Titre deuxième - De la transmission de la succession	Title two - of Transmission of successions	제625조-제652조
제1절 유언없는 상속	Chapitre premier - De la saisine	Chapter I - Seisin	제625조
제2절 상속의 소와 그 상속재산의 이전에 관한 효력	Chapitre deuxième - De la pétition d'hérédité et de ses effets sur la transmission de la succession	Chapter II - Petition of inheritance and its effects on the transmission of the succession	제626조-제629조
제3절 선택권	Chapitre troisième - Du droit d'option	Chapter III - The right of option	제630조-제652조
제3장 상속재산의 법정귀속	Titre troisième - De la dévolution légale des successions	Title three - Legal of devolution of successions	제653조-제702조
제1절 상속권	Chapitre premier - De la vocation successorale	Chapter I - Heirship	제653조-제654조
제2절 혈족관계	Chapitre deuxième - De la	Chapter II -	제655조-

51) 구민법도 총칙(Dispositions générales)(제596조-제599조의 a), 제1관 상속의 개시와 유언없는 상속인의 상속(Chapitre premier - De l'ouverture des successions et de la saisine des héritiers)(제600조-제607조의 11), 제2관 상속자격(Chapitre deuxième - Des qualités requises pour succéder)(제608조-제613조), 제3관 여러 상속순위(제614조-제625조), 제4관 상속의 승낙과 포기(Chapitre quatrième - De l'acceptation et de la répudiation des successions) 및 제5관 분할과 반환(Chapitre cinquième - Du partage et des rapports)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parenté	Relationship	제659조
제3절 대습상속	Chapitre troisième - De la représentation	Chapter III - Representation	제660조- 제665조
제4절 상속재산의 귀속순위	Chapitre quatrième - De l'ordre de dévolution de la succession	Chapter IV - Order of devolution of successions	제666조- 제683조
제5절 부양의무의 존속	Chapitre cinquième - De la survie de l'obligation alimentaire	Chapter V - The survival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support	제684조- 제695조
제6절 국가의 권리	Chapitre sixième - Des droits de l'état	Chapter VI - Rights of the state	제696조- 제702조
제4장 유언	Titre quatrième - Des testaments	Title four - Wills	제703조- 제775조
제1절 유언의 성질	Chapitre premier - De la nature du testament	Chapter I - The nature of wills	제703조- 제706조
제2절 유언적격	Chapitre deuxième - De la capacité requise pour tester	Chapter II - The capacity required to make a will	제707조- 제711조
제3절 유언의 방식	Chapitre troisième - Des formes du testament	Chapter III - Forms of wills	제712조- 제730조
제4절 유언처분과 유증인	Chapitre quatrième - Des dispositions testamentaires et des légataires	Chapter IV - Testamentary dispositions and legatees	제731조- 제762조
제5절 유언과 유증의 취소	Chapitre cinquième - De la révocation du testament ou d'un legs	Chapter V - Revocation of wills and legacies	제763조- 제771조
제6절 유언의 증명과 검인	Chapitre sixième - De la preuve et de la vérification des testaments	Chapter VI - Proof and probate of wills	제772조- 제775조
제5장 상속재산의 청산	Titre cinquième - De la liquidation de la succession	Title five - Liquidation of successions	제776조- 제835조
제1절 청산과 재산의 분리의 대상	Chapitre premier - De l'objet de la liquidation et de la séparation des patrimoines	Chapter I - Object of liquidation and separation of patrimonies	제776조- 제782조
제2절 상속청산인	Chapitre deuxième - Du liquidateur de la succession	Chapter II - Liquidator of the succession	제783조- 제807조
제3절 채무와 특정유증의 변제	Chapitre troisième - Du paiement des dettes et des	Chapter III - Payment of debts and of legacies	제808조- 제818조

	legs particuliers	by particular title	
제4절 청산의 종료	Chapitre quatrième - De la fin de la liquidation	Chapter IV - End of liquidation	제819조-제835조
제6장 상속의 분할	Titre sixième - Du partage de la succession	Title six - Partition of successions	제836조-제898조
제1절 분할권	Chapitre premier - Du droit au partage	Chapter I - Right to partition	제836조-제848조
제2절 분할의 방법	Chapitre deuxième - Des modalités du partage	Chapter II - Modes of partition	제849조-제866조
제3절 반환	Chapitre troisième - Des rapports	Chapter III - Return	제867조-제883조
제4절 분할의 효력	Chapitre quatrième - Des effets du partage	Chapter IV - Effects of partition	제884조-제894조
제5절 분할의 무효	Chapitre cinquième - De la nullité du partage	Chapter V - Nullity of partition	제895조-제898조

마. 제4편(재산)의 장·절 구성

제4편 재산은 4장 472조(제899조-제1370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재산과 분류와 그 취득(제1장), 소유권(제2장), 소유권의 태양(제3장)으로서의 불가분의 공동소유와 가분의 공동소유 및 지상권, 제한물권(제4장), 몇몇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의 제한(제5장), 몇몇 출연재산(제6장), 타인의 재산관리(제7장)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구민법 제2편(재산, 소유권과 여러 변경)에서 물건(재산)의 분류, 소유권, 용익, 사용과 거주권, 지역권과 영구임대차를 규정하던 것을 통폐합하고 특히 제6장과 제7장을 신설한 것이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4편 재산	Livre quatrième - Des biens	Book four - Property	제899조-제1370조
제1장 재산의 분류와 그 취득	Titre premier - De la distinction des biens et de leur appropriation	Title one - Kinds of property and its appropriation	제899조-제946조
제1절 재산의 분류	Chapitre premier - De la distinction des biens	Chapter I - Kinds of property	제899조-제907조
제2절 재산과 그 산출물의 관계	Chapitre deuxième - Des biens dans leurs rapports avec ce qu'ils produisent	Chapter II - Property in relation to its proceeds	제908조-제910조
제3절 재산과 그 권리자와 그 점유자의 관계	Chapitre troisième - Des biens dans leurs rapports avec ceux qui y ont des	Chapter III - Property in relation to persons having rights in it or	제911조-제920조

	droits ou qui les possèdent	possession of it	
제4절 재산에 관한 몇 가지 사실상의 관 계	Chapitre quatrième - De certains rapports de fait concernant les biens	Chapter IV - Certain de facto relationships concerning property	제921조- 제946조
제2장 소유권	Titre deuxième - De la propriété	Title two - Ownership	제947조- 제1008조
제1절 소유권의 성질 과 범위	Chapitre premier - De la nature et de l'étendue du droit de propriété	Chapter I -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 of ownership	제947조- 제953조
제2절 첨부	Chapitre deuxième - De l'accession	Chapter II - Accession	제954조- 제975조
제3절 부동산소유권 의 특별규정	Chapitre troisième - Des règles particulières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Chapter III - Special rules on the ownership of immovables	제976조- 제1008조
제3장 소유권의 양태	Titre troisième - Des modalités de la propriété	Title three - Special modes of ownership	제1009조 - 제1118 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1009조 - 제1011 조
제2절 불가분의 공동 소유	Chapitre deuxième - De la copropriété par indivision	Chapter II - Undivided co-ownership	제1012조 - 제1037 조
제3절 부동산의 가분 의 공동소유	Chapitre troisième - De la copropriété divisée d'un immeuble	Chapter III - Divided co-ownership of immovables	제1038조 - 제1109 조
제4절 지상권	Chapitre quatrième - De la propriété superficière	Chapter IV - Superficies	제1110조 - 제1118 조
제4장 제한물권	Titre quatrième - Des démembrements du droit de propriété	Title four - Dismemberments of the right of ownership	제1119조 - 제1211 조
제1절 용익[권]	Chapitre premier - De l'usufruit	Chapter I - Usufruct	제1120조 - 제1171 조
제2절 사용[권]	Chapitre deuxième - De l'usage	Chapter II - Use	제1172조 - 제1176 조
제3절 역권	Chapitre troisième - Des servitudes	Chapter III - Servitudes	제1177조 - 제1194 조
제4절 영구임대차	Chapitre quatrième - De l'emphytéose	Chapter IV - Emphyteusis	제1195조 - 제1211 조

제5장 몇 가지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	Titre cinquième - Des restrictions à la libre disposition de certains biens	Title five - Restrictions on the free disposition of certain property	제1212조 - 제1255조
제1절 양도불가약정	Chapitre premier - Des stipulations d'inaliénabilité	Chapter I - Stipulations of inalienability	제1212조 - 제1217조
제2절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⁵²⁾	Chapitre deuxième - De la substitution	Chapter II - Substitution	제1218조 - 제1255조
제6장 몇 가지 출연재산	Titre sixième - De certains patrimoines d'affectation	Title six - Certain patrimonies by appropriation	제1256조 - 제1298조
제1절 재단	Chapitre premier - De la fondation	Chapter I - The foundation	제1256조 - 제1259조
제2절 신탁	Chapitre deuxième - De la fiducie	Chapter II - The trust	제1260조 - 제1298조
제7장 타인의 재산관리	Titre septième - De l'administration du bien d'autrui	Title seven - Administration of the property of others	제1299조 - 제1370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1299조 - 제1300조
제2절 관리의 종류	Chapitre deuxième - Des formes de l'administration	Chapter II - Kinds of administration	제1301조 - 제1307조
제3절 관리의 원칙	Chapitre troisième - Des règles de l'administration	Chapter III - Rules of administration	제1308조 - 제1354조
제4절 관리의 종료	Chapitre quatrième - De la fin de l'administration	Chapter IV - Termination of administration	제1355조 - 제1370조

52) 이는 상속법상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에서 무상양도자가 무상양도의 수익자(grevé라고 하는 계전처분의 의무자)에 대하여 무상양도재산을 보전하고 그 수익자가 사망할 때에 미리 무상양도인이 지정한 다른 수익자(계전처분 지정자로 appelé 또는 substitué라고 한다)에게 무상양도물을 줄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무상양도처분을 말한다. 프랑스민법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상양도자의 자 또는 그 형제자매가 계전처분 의무자가 되고 이 의무자의 현존 또는 장래 출생할 자(즉 무상양도자의 손자 또는 甥姪[조카]가 계전처분의 지정자가 되는 경우에 허용한다)(동 법 제896조, 제1048조 이하). 이를 계전처분(신탁적 계전처분) 또는 보충지정이라고 한다. fidéicommissaire 또는 Substitution fideicommissaire라고도 한다. 이러한 점은 山口俊夫編, フランス法辭典, 동경대학출판부, 2002, 575쪽 참조; 이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문헌으로는 우선 大島俊之, 信託の繼任処分(後繼遺贈)(1)-(2, 完), 大阪府立大學經濟研究 36卷1号, 1990.12, 69-134쪽, 36卷2号 1991.3, 1-127쪽 참조; 국내의 번역에서는 ‘대체’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명순구 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447쪽(제896조 제1항) 참조.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일단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으로 한다.

바. 제5편(채무)의 장·절 구성

제5편 채무는 2장 1273조(제1371조-제2643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채무일반(제1장)과 전형계약(제2장)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구민법에서는 채무 일반에 대하여는 제3편(소유권의 취득과 행사)의 채무(제3장)의 장에서 규정하였고 전형계약은 같은 편의 매매(제5장), 교환, 임대차, 위임, 대차, 임치, 조합, 종신통기금, 화해, 내기와 도박, 보증(제15장)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모두 모아 전형계약의 장에 포섭하고 또한 상법상의 계약도 제4편(상법)에서 규정하던 것(가령 용선계약[제3장], 상사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제4장], 보험[제5장])을 같이 규정하였고 특히 이외에도 최근에 문제되는 새로운 계약유형을 다수 신설하여 편입하였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5편 채무	Livre cinquième - Des obligations	Book five - Obligations	제1371조 - 제2643조
제1장 채무일반	Titre premier - Des obligations en général	Title one - Obligations in general	제1371조 - 제1707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1371조 - 제1376조
제2절 계약	Chapitre deuxième - Du contrat	Chapter II - Contracts	제1377조 - 제1456조
제3절 민사책임	Chapitre troisième -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Chapter III - Civil liability	제1457조 - 제1481조
제4절 채무의 몇 가지 기타의 발생원인	Chapitre quatrième - De certaines autres sources de l'obligation	Chapter IV - Certain other sources of obligations	제1482조 - 제1496조
제5절 채무의 양태	Chapitre cinquième -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Chapter V - Modalities of obligations	제1497조 - 제1552조
제6절 채무의 이행	Chapitre sixième - De l'exécution de l'obligation	Chapter VI - Performance of obligations	제1553조 - 제1636조
제7절 채무의 양도와 변경	Chapitre septième - De la transmission et des mutations de l'obligation	Chapter VII - Transfer and alteration of obligations	제1637조 - 제1670조
제8절 채무의 소멸	Chapitre huitième - De l'extinction de l'obligation	Chapter VIII - Extinction of obligations	제1671조 - 제1698조
제9절 급부의 반환	Chapitre neuvième - De la restitution des prestations	Chapter IX - Restitution of prestations	제1699조 - 제1707조
제2장 전형계약	Titre deuxième - Des contrats nommés	Title two - Nominated contracts	제1708조 - 제2643조
제1절 매매			제1708조 - 제1708조

제2절 증여	Chapitre premier - De la vente		
제3절 신용제공임대차	Chapitre deuxième - De la donation		
제4장 임대차	Chapitre troisième - Du crédit-bail	Chapter I - Sale	
제5절 용선계약	Chapitre quatrième - Du louage	Chapter II - Gifts	1805
제6절 운송계약	Chapitre cinquième - De l'affrètement	Chapter III - Leasing	제1806 -
제7절 고용계약	Chapitre sixième - Du transport	Chapter IV - Lease	제1841조 -
제8절 기업과 노무계약	Chapitre septième - Du contrat de travail	Chapter V - Affreightment	조1842 -
제9절 위임	Chapitre huitième - Du contrat d'entreprise ou de service	Chapter VI - Carriage	1 8 5 0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	Chapitre neuvième - Du mandat	Chapter VII - Contract of employment	1851 -
제11절 임치	Chapitre dixième - Du contrat de société et d'association	Chapter VIII - Contract of enterprise or for services	2 0 0 0
제12절 대차	Chapitre onzième - Du dépôt	Chapter IX - Mandate	2001 -
제13절 보증	Chapitre douzième - Du prêt	Chapter X - Contracts of partnership and of association	2 0 2 9
제14절 정기금	Chapitre treizième - Du cautionnement	Chapter XI - Deposit	2030 -
제15절 보험	Chapitre quatorzième - De la rente	Chapter XII - Loan	20842085
제16절 내기와 도박	Chapitre quinzième - Des assurances	Chapter XIII - Suretyship	- 2097
제17절 화해	Chapitre seizième - Du jeu et du pari	Chapter XIV - Annuities	2098 -
제18절 중재약정	Chapitre dix-septième - De la transaction	Chapter XV - Insurance	21292130
	Chapitre dix-huitième - De la convention d'arbitrage	Chapter XVI - Gaming and wagering	- 2185
		Chapter XVII - Transaction	2186 -
		Chapter XVIII - Arbitration agreements	2 2 7 9
			2280 -
			23112312
			- 2332
			2333 -
			23662367
			-
			23882389
			- 2628
			2629 -
			26302631
			- 2637
			2638 -
			2643

사. 제6편(우선평권과 저당권)의 장·절 구성

제6편 우선평권과 저당권은 3장 159조(제2644조-제2802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채권의

일반담보로서의 총칙규정(제1장)에 이어 우선특권(제2장)과 저당권(제3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제3편의 우선특권과 저당권(제17장)과 질권(제16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통합하여 우선특권과 저당권으로 한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질권의 개념을 모두 저당권의 개념에 편입하고⁵³⁾ 우선특권⁵⁴⁾도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6편 우선특권과 저당권	Livre sixième - De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Book six - Prior claims and hypothecs	제2644조 - 제2802조
제1장 채권의 일반담보	Titre premier - Du gage commun des créanciers	Title one - Common pledge of creditors	제2644조 - 제2649조
제2장 우선특권	Titre deuxième - Des priorités	Title two - Prior claims	제2650조 - 제2659조
제3장 저당권	Titre troisième - Des hypothèques	Title three - Hypothecs	제2660조 - 제2802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Chapter I - General	제2660조 - 제2680조

53) 이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을 제3편 제16장에서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던 것이 ‘저당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질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현행법 제6편 제3장 참조. 민법전 개정으로 전통적 담보법의 체계에 중대한 변형(bouleversement)을 가져왔고 이는 민법전의 가장 중대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통적 담보법은 완전히 재구성되어 실제 존재하던 대다수의 담보제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운 ‘저당권’(hypothèque)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 저당권의 개념은 새로운 개념인 ‘우선특권’(priorités)과 결합하여 새로운 담보법의 총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 1일의 신민법의 시행이 있으면서 모든 우선특권(privilèges), 재고상품의 양도(cession de biens en stock), 상사질권(nantissement commercial), 농업질권(nantissement agricole)과 확정 또는 유동적 부담이 있는 신탁행위(acte de fiducie conférant des charges fixes ou flottantes)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현행법은 동산저당(hypothèque mobilière)이라는 새로운 저당개념도 신설하였다. 이는 부동산저당권과 동일한 원칙에 근거하면서 종래의 동산담보의 거의 대다수를 대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동산저당의 절(chapitre)로의 근본적인 개념변경이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점유이전 없는 동산저당(hypothèque mobilière «sans» dépossession), 집합재산에 대한 저당(hypothèque sur une universalité de biens), 작업도구, 재고품이나 동물에 대한 저당(hypothèque sur l'outillage, le stock ou les animaux),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동산에 관한 저당권(hypothèque sur un meuble représenté par un connaissance) 및 기업재산에 관한 저당권(hypothèque ouverte sur les biens de l'entreprise)이 그러하다. 이 점은 우선 [Patrice Vachon](http://www.avocat.qc.ca/public/iiccvachon.htm), Fasken Martineau, Une vue d'ensemble du nouveau Code civil du Québec, Le Code civil du Québec, Livre 6 - Droit de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http://www.avocat.qc.ca/public/iiccvachon.htm>> 참조.

54) 퀘베크구민법에서는 우선특권(privilèges, 일본의 先取特權)을 제1994조 이하와 제2009조에서 규정하였다. 1977년의 민법전 개정청(Office de révision du Code civil : O.R.C.C.)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우선특권 전부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261조에서 공익과 형평을 이유로 한 5가지 우선특권(priorités)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전의 몇몇 우선특권은 법정저당권(hypothèques légales)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령 제2724조가 그러하다. 개정된 현행 민법의 법정저당권에 대하여는 Denise Pratte, <<La création de l'hypothèque légale immobilière>>, (1992) 23 R.G.D. 385 참조. 우선특권을 포함한 법정담보권의 수의 감소라는 변경 이외에도 우선특권의 용어도 privilèges에서 priorités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 뿐만 아니라 그 담보로서의 성질과 구상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는 Denise Pratte, <<Des Privilèges aux priorités : Plus qu'un changement de vocabulaire>>, Chronique : Nouveau Code civil du Québec, (1992) 23 R.D.U.S., pp. 176-187 <http://www.usherbrooke.ca/droit/fileadmin/sites/droit/documents/RDUS/volume_23/23-1-pratte.pdf> 참조. 이하에서는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특권’으로 하였다.

제2절 약정저당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itre deuxième - De l'hypothèque conventionnelle	provisions Chapter II - Conventional hypothecs	조 제2681조 - 제2723조
제3절 법정저당	Chapitre troisième - De l'hypothèque légale	Chapter III - Legal hypothecs	조 제2724조 - 제2732조
제4절 저당의 몇 가지 효력	Chapitre quatrième - De certains effets de l'hypothèque	Chapter IV - Certain effects of hypothecs	조 제2733조 - 제2747조
제5절 저당권의 행사	Chapitre cinquième - De l'exercice des droits hypothécaires	Chapter V - Exercise of hypothecary rights	조 제2748조 - 제2794조
제6절 저당권의 소멸	Chapitre sixième - De l'extinction des hypothèques	Chapter VI - Extinction of hypothecs	조 제2795조 - 제2802조

아. 제7편(증거)의 장·절 구성

제7편 증거는 2장 72조(제2803조-제2874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증거의 일반원칙(제1장), 증거방법(제2장) 및 증거의 허용성과 입증(제3장)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구민법에서는 제3편(소유권의 취득과 행사) 중 채무(제3장)의 장에서 증거의 절(제9절)에서 규정하던 것을 채무편을 독립시킨 것에 맞추어 증거편도 독립된 편으로 구성한 것이다. 구민법의 프랑스민법전의 증거에 관한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던 것에 그 편별체계와 내용에서 새로운 증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7편 증거	Livre septième - De la preuve	Book seven - Evidence	제2803조 - 제2874조
제1장 증거의 일반원칙	Titre premier - Du régime général de la preuve	Title one - General rules of evidence	제2803조 - 제2810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803조 - 제1805조
제2절 직권통지	Chapitre deuxième - De la connaissance d'office	Chapter II - Judicial notice	제2806조 - 제2810조
제2장 증거방법	Titre deuxième - Des moyens de preuve	Title two - Proof	제2811조 - 제2856조
제1절 서증	Chapitre premier - De l'écrit	Chapter I - Writings	제2812조 - 제2842조
제2절 증언	Chapitre deuxième - Du témoignage	Chapter II - Testimony	제2843조 - 제2845조
제3절 추정	Chapitre troisième - De la présomption	Chapter III - Presumptions	제2846조 - 제2849조
			제2850조 - 제2853조
			제2854조 - 제2856조

제4절 자백	Chapitre quatrième - De l'aveu	Chapter IV - Admissions	
제5절 사실적 요소의 제출	Chapitre cinquième - De la présentation d'un élément matériel	Chapter V - Production of material things	
제3장 증거의 허용성과 입증	Titre troisième - De la recevabilité des éléments et des moyens de preuve	Title three -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oof	제 2857조 - 제 2874조
제1절 증거요소	Chapitre premier - Des éléments de preuve	Chapter I - Evidence	제 2857조 - 제 2858조
제2절 증거방법	Chapitre deuxième - Des moyens de preuve	Chapter II - Proof	제 2859조 - 제 2868조
제3절 몇 가지 진술	Chapitre troisième - De certaines déclarations	Chapter III - Certain statements	제 2869조 - 제 2874조

자. 제8편(시효)의 장·절 구성

제8편 시효는 3장 59조(제2875조-제2933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시효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시효의 내용(제1장)을 두고 이어서 시효로는 취득시효(제2장)와 소멸시효(제3장)를 각각 두고 있다. 구민법은 제3편(소유권의 취득과 행사)의 시효의 장(제19장)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효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8편 시효	Livre huitième - De la prescription	Book eight - Prescription	제 2875조 - 제 2933조
제1장 시효의 내용	Titre premier - Du régime de la prescription	Title one - Rules governing prescription	
제1장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 2895조 - 제 2909조
제2장 시효의 포기	Chapitre deuxième - De la renonciation à la prescription	Chapter II - Renunciation of prescription	제 2875조 - 제 2882조
제3장 시효의 중단	Chapitre troisième - De l'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Chapter III -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제 2883조 - 제 2888조
제4장 시효의 정지	Chapitre quatrième - De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Chapter IV - Suspension of prescription	제 2889조 - 제 2903조
제2장 취득시효	Titre deuxième -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Title two - Acquisitive prescription	제 2904조 - 제 2909조
			제 2910조 - 제 2920조
			제 2910조 - 제 2910조

제1절 취득시효의 행 사요건	Chapitre premier - Des conditions d'exercice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Chapter I - Condit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제2916조 제2917조- 제2920조
제2절 취득시효기간	Chapitre deuxième - Des délais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Chapter II - Period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제3장 소멸시효	Titre troisième -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Title three - Extinctive prescription	제2921조- 제2933조

차. 제9편(권리의 공시)의 장·절 구성

제9편 권리의 공시는 3장 142조(제2934조-제3075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공시의 성질과 범위(제1장), 공시의 효력(제2장), 공시의 방법(제3장), 부동산의 등록(제4장)과 삭제(제5장)을 각각 두고 있다. 구민법이 제3편에서 물권의 등기(제18장)를 두고 있던 것을 별개의 장의 독립시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로 토지등기부(Land register, registre foncier)와 채권과 동산물권등기부(Register of personal and movable real rights, Registre des droits personnels et réels mobiliers)를 별도로 두고 이를 규율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선의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9편 권리의 공시	Livre neuvième - De la publicité des droits	Book nine - Publication of rights	제2934조- 제3075조
제1장 공시의 범위	Titre premier - Du domaine de la publicité	Title one - Nature and scope of publication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934조- 제2940조 제2934조- 제2937조
제2절 공시가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권리	Chapitre deuxième - Des droits soumis ou admis à la publicité	Chapter II - Rights requiring or admissible for publication	제2938조- 제2940조
제2장 공시의 효력	Titre deuxième - Des effets de la publicité	Title two - Effects of publication	
제1절 대항력	Chapitre premier - De l'opposabilité	Chapter I - Setting up of rights	제2941조- 제2968조 제2941조- 제2944조
제2절 권리의 순위	Chapitre deuxième - Du rang des droits	Chapter II - Ranking of rights	제2945조- 제2956조 제2957조- 제2961조의1
제3절 기타의 효력	Chapitre troisième - De certains autres effets	Chapter III - Other effects	제2962조- 제2965조
제4절 선의의 제3자 보호	Chapitre quatrième - De la protection des tiers de	Chapter IV - Protection of third persons in good	제2966조- 제2968조

제5절 사전등록	bonne foi Chapitre cinquième - De la préinscription	faith Chapter V - Advance registration	
제3장 공시의 형식	Titre troisième - Des modalités de la publicité	Title three - Formalities of publication	
제1절 권리등기부	Chapitre premier - Des registres où sont inscrits les droits	Chapter I - Registers of rights	제 2969조 - 제 3025조
제2절 등기의 적용	Chapitre deuxième - Des réquisitions d'inscription	Chapter II -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제 2969조 - 제 2980조
제3절 등기의 의무와 직무	Chapitre troisième - Des devoirs et fonctions de l'officier de la publicité des droits	Chapter III - Duties and functions of the registrar	제 2981조 - 제 3006조의 1 - 제 3021조
제4절 주소의 등록	Chapitre quatrième - De l'inscription des adresses	Chapter IV - Registration of addresses	제 3022조 - 제 3023조의 1
제5절 적용규정	Chapitre cinquième - Des règlements d'application	Chapter V - Regulations	제 3024조 - 제 3025조
제4장 부동산등기	Titre quatrième - De l'immatriculation des immeubles	Title four - Immatriculation of immovables	
제1절 지적대장	Chapitre premier - Du plan cadastral	Chapter I - Cadastral plan	제 3026조 - 제 3056조
제2절 지적의 수정	Chapitre deuxième - Des modifications du cadastre	Chapter II - Amendments to the cadastre	제 3026조 - 제 3042조
제3절 (삭제)	Chapitre troisième - abrogé, 2000, c. 42, a. 73.	Chapter III - repealed, 2000, c. 42, s. 73.	제 3043조 - 제 3045조
제4절 구분소유의 당사자	Chapitre quatrième - Des parties de lot	Chapter IV - Parts of lots	제 3046조 - 제 3053조
제5장 삭제	Titre cinquième - De la radiation	Title five - Cancellation	제 3054조 - 제 3056조
제1절 삭제사유	Chapitre premier - Des causes de radiation	Chapter I - Causes of cancellation	제 3057조 - 제 3075조의 1
제2절 몇 가지 삭제	Chapitre deuxième - De certaines radiations	Chapter II - Certain cases of cancellation	제 3057조 - 제 3066조
제3절 삭제의 형식과 효력	Chapitre troisième - Des formalités et des effets de la radiation	Chapter III - Formalities and effects of cancellation	제 3066조의 1 - 제 3071조
			제 3072조 - 제 3075조의 1

카. 제10편(국제사법)의 장·절 구성

제10편 국제사법은 4장 93조(제3076조-제3168조)로 되어 있다. 이에는 총칙(제1장), 법의 저촉(제2장), 국제관할(제3장) 및 제4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및 외국관청의 관할(제4장)이 차례로 규정되어 있다. 구민법에서는 이러한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것을 현행법에서는 민법전에 편입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10편 국제사법	Livre dixième -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Book ten - Private international law	제 3076조-제 3168조
제1장 총칙	T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Title one - General provisions	제 3076조-제 3082조
제2장 법률의 저촉	Titre deuxième - Des conflits de lois	Title two - Conflict of laws	제 3083조-제 3133조
제1절 인적 신분	Chapitre premier - Du statut personnel	Chapter I - Personal status	제 3083조-제 3096조
제2절 물적 지위	Chapitre deuxième - Du statut réel	Chapter II - Status of property	제 3097조-제 3108조의 8
제3절 채무의 지위	Chapitre troisième - Du statut des obligations	Chapter III - Status of obligations	제 3109조-제 3131조
제4절 절차의 지위	Chapitre quatrième - Du statut de la procédure	Chapter IV - Status of procedure	제 3132조-제 3133조
제3장 퀘벡관청의 국제관할	Titre troisième - De la compétence internationale des autorités du québec	Title three -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québec authorities	제 3134조-제 3135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 3134조-제 3140조
제2절 특칙	Chapitre deuxième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hapter II - Special provisions	제 3141조 -제 3154조
제4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및 외국관청의 관할	Titre quatrième - De la reconnaissance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étrangères et de la compétence des autorités étrangères	Title four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decisions and jurisdiction of foreign authorities	제 3155조-제 3168조
제1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Chapitre premier - De la reconnaissance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étrangères	Chapter I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decisions	제 3155조-제 3163조
			제 3164조-제 3168조

제2절 외국관청의 관할	Chapitre deuxième - De la compétence des autorités étrangères	Chapter II - Jurisdiction of foreign authorities	
--------------	---	--	--

4. 번역저본

현행 퀘벡민법전의 번역에 주로 참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Code civil du Québec, édition critique / Civil Code of Québec, A Critical Edition 2011-2012, 19e édition, Editions Yvon Blais, 2011.8.

② Jean-Louis Baudouin, Yvon Renaud, Code civil du Québec 2011-2012, Wilson & Lafleur, 2011.8.

인터넷자료

영어본 <<http://ccq.lexum.org/ccq/book.do?lang=en&book=1>>;

프랑스어본 <<http://ccq.lexum.org/ccq/book.do?lang=fr&book=1>>;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프랑스어);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CCQ/CCQ_A.html>(영어)

<<http://www.justice.gouv.qc.ca/english/sujets/glossaire/co-de-civil-a.htm>>

5. 기타 번역 관련사항

① 역어는 가능한 한 우리 민법의 것을 취하였고 띄어쓰기 등은 현행 맞춤법에 따랐다.

②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필요한 때 또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원문의 한자를 괄호 안에 부기하였다.

③ 민법전의 편별체계는 우리 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리 말	프랑스어	영어	종전번역 ⁵⁵⁾
제O편	Livre O	Book O	제O권
제O장	Title O	Title O	제O편
제O절	Chapitre O	Chapter O	제O장
제O항	Section O	Section O	제O절 ⁵⁶⁾
제O관	§O.	§O.	
제O목	I.	I.	
1.	1.	1.	

55) 국내에 퀘벡민법전의 번역은 없고 프랑스민법전의 것을 따른 것이다. 가령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참조.

56) 프랑스민법전에는 Section, paragraph가 각각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Chapitre와 Section 사이에 partie를 두는 경우도 있다.

④ 조문번호는 제0조로 하되 항은 ①②③의 원문자(퀘백민법전은 별도의 항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문장을 바꾸어 쓰는 것으로 함), 호는 1.2.3.으로 하였다. 또한 본문 중의 []은 역자가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부분이다.

[조문번역]57)

서장58)

- 퀘벡민법전은 인권과 자유의 헌장, 법의 일반원칙과 발맞추면서 사람, 그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 및 재산에 대하여 규율한다.
- 이 법전은 그 규정의 문언, 취지 또는 목적이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일반법을 규정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법전은 모든 다른 법의 기초가 되고 다만 다른 법이 이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편 인

제1장 민사권리의 향유59)와 행사

제1조 모든 자연인은 법인격이 있다. 자연인은 완전한 민사권리를 향유한다.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재산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분할 또는 출연될 수 있다60).

제3조 ① 모든 자는 생명권, 그의 인신의 불가침과 완전성에 관한 권리, 그의 성명, 명예와 사생활이 존중받을 권리와 같은 인격권의 주체이다.

② 이러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① 모든 사람은 민사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이 대리나 보조를 정한다.

제5조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고 출생증서에 기재된 성명으로 자기의 민사권리를 행사한다.

57) 원래의 계획은 퀘벡민법전의 전편의 중요부분을 우리 말로 옮기는 것이었으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일부 제외), 제5편(일부 제외), 제8편을 중심으로 하였다. 제6편 내지 제7편, 제9편 내지 제10편은 추후 기회가 되면 이를 차례로 번역하고자 한다. 우리 말로 옮기지 못한 부분의 내용구성은 각주에 각각 이를 제시하였다.

58) 서장(preliminary provision, Disposition préliminaire)은 제1편은 아니지만 제1편의 앞에 있으므로 편의상 같이 소개한다; 서장은 조문의 표시 없이 2개의 문단(항)으로 되어 있다. 해당 조문의 원문은 앞의 주8 참조.

59) 원문은 각각 Enjoyment and exercise of civil rights, De la jouissance et de l'exercice des droits civils이다. 우선 Enjoyment와 jouissance의 역어로 종래에는 프랑스민법전의 조문번역과 관련하여 '향유'라고 하고 있다. 보유나 소유로 할 수도 있다; civil rights와 droits civils는 일본의 역어로서 사권이라고 하여 왔지만 '민사권리'로 하였다.

60) 제1항은 영어본에 따르면 '모든 자는 재산의 주체이다'이고 프랑스어본은 '모든 자는 재산을 가진다'이다. 이를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2항과 관련하여 '재산'으로 하였다. 특히 partimoine과 그 출연(affectation)은 프랑스법계에서는 프랑스법학자인 오브리와 로(Aubry et Rau) 이래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점은 우선 주15의 문헌 참조.

제6조 모든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 어떠한 권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청에 반하여 타인을 해할 의사나 남용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8조 공공질서로부터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람은 민사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9조 민사권리의 행사에서 본 법전의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은 위반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⁶¹⁾.

제2장 몇 가지 인격권

제1절 사람의 완전성⁶²⁾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불가침이고 그 인신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②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누구도 그 인신을 침해할 수 없다⁶³⁾.

제1판 치료

제11조 ① 사람은 그의 동의가 없으면 검사, 표본채취, 조직의 제거나 치료나 기타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치료도 받지 아니한다.

② 해당자가 치료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허락한 자 또는 무능력을 예견하여 위임된 자가 대리한다.

제12조 ① 타인에 대한 치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자는 그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그 타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

② 동의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유익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경우에 따른 중대성과 영구성에도 불구하고 유익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고 초래된 위험이 그가 예상한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거나 또는 그 완전성이 위태롭고 그의 동의가 상당한 기간 내에 얻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치료에 대한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61) 이른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62) 이는 인격권 중 인신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로 신체권에 해당한다. 다만 표제에는 ‘권리’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이를 직역하였다.

63) 제1항과 제2항의 인신의 단어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어에는 ‘그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그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제1항의 주어를 personne라고 한다(이는 모든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인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어본은 권리라는 문구가 없고 entitled라고 하고 있으나 프랑스어에는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신이라는 역어 대신에 신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후술하는 본 장의 조문에 신체라는 단어(body, corps)가 별도로 사용되므로(가령 제25조) 이와 구별하였다.

② 하지만 치료가 통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또는 무용하게 된 경우 또는 그 결과가 그 자에 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① 미성년자의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한 동의는 친권을 가진 자나 그 후견인이 한다.
② 하지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그러한 치료에 대하여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 자의 상태가 그가 12시간 이상 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머무를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15조⁶⁴⁾ ① 성년자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치료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수임인, 후견인, 보좌인⁶⁵⁾이 동의한다. [이들이] 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동거관계 또는 사실혼⁶⁶⁾의 배우자가 동의하고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⁶⁷⁾에는 근친 또는 그 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⁶⁸⁾를 증명한 자가 동의한다.

제16조 ① 미성년자 또는 그 동의를 할 수 없는 성년자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치료에 동의할 자가 동의할 수 없거나⁶⁹⁾ 또는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⁷⁰⁾. 또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가 명시적으로⁷¹⁾ 그 치료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위생치료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치료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도 또한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⁷²⁾ 그 생명이 위험하거나 또는 그 신체의 완전성이 위협받는 경우에

64) 이 조문은 2002년(제6호 제1조)의 동거혼(이른바 민사결합)의 신설로 인한 개정이다.

65) 원어는 각각 mandataire, mandatary, tuteur, tutor, curateur, curator이다. tuteur, tutor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tutelle, Totorship)을 담당하는 자로 후견인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퀘벡민법전 제177조 이하 참조. 성년자에 대하여는 tuteur, tutor 이외에 curateur, curator가 선임될 수 있다. 가령 제258조 참조. 후자는 보좌인으로 하였다.

66) 원문은 par le conjoint, qu'il soit, marié, en union civile ou en union de fait; by his or her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spouse이다. 이중 union civile, civil union은 민법전 제2편 제1의 1장(titre, title)(제521조의 1-제521조의 19)에 규정되어 있다(2002년의 개정으로 신설). 본 장의 규정은 동성커플(배우자)에 대하여 혼인과 유사한 제도로서 2002년 법률 제6호 제27조로 도입된 것이다. 다만 동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성(異性)의 커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거관계를 규정한 조문은 제521조의 1 참조: 제521조의 1 ① 동거관계는 18세 이상의 2인의 자가 공동생활(vie commune, live together)을 하고 그러한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의무를 존중한다는 그들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약정을 말한다. ② [어떠한]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전의 동거관계에 의하여 구속에서 벗어나고 또한 당사자 쌍방의 관계가 준비속이거나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에만 동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union de fait, de facto union은 민법전에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없고 개별규정으로만 인정된다. 가령 제15조, 제555조, 제1938조 등 참조. 이하에서는 각각 '법률상의 혼인', '동거관계'와 '사실혼'으로 하였다. 문자적인 의미는 각각 혼인, 민사결합, 사실상의 결합이고 특히 '민사결합'이라는 역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조문의 의미를 살려 '동거관계'로 하였다. 퀘벡민사법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관계가 당사자에 모두 '배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배우자로서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의무, 결합요건, 해제의 요건에서는 차이가 있다.

67) 원문은 en cas d'empêchement de celui-ci, her spouse is prevent from giving consent로서 각각 '그런 자(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방해(장해)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동의하는데 방해가 있는 경우'이다.

68) 원문은 각각 un intérêt particulier, a special interest로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해관계'(제469조 제2항)와 '이익'(제481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69) 원문의 의미는 제15조 참조.

70) 원문은 각각 nécessaire, nécessaire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이지만 우리 용어례에 따랐다.

71) 원문은 각각 catégoriquement, categorically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의 의미이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한다.

제17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그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한 치료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치료가 미성년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중대하고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그 동의를 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한 치료에 대하여는 친권자, 수임인,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동의한다. 또한 그 치료가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되거나 또는 중대하고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제19조 ①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⁷³⁾ 성년자는 생존자 사이에서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할 위험이 그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미성년자 또는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⁷⁴⁾ 성년자는 그 신체의 일부가 재생될 수 있고 그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자, 수임인, 후견인이나 보좌인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 동의를 할 수 있는 성년자는 실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생할 위험이 그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 ① 미성년자 또는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는 그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거나 또는 그 실험의 성질과 결과를 그가 이해한 경우에 그가 반대하는 실험은 받을 수 없다.

② 또한 미성년자 또는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⁷⁵⁾가 유일한 실험대상이고 그의 건강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것을 예견⁷⁶⁾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집단이 실험대상인 경우에 연령, 질병 또는 장애에서 동일한 특징이 있는⁷⁷⁾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익을 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들은 실험을 받을 수 있다. 그 치료는 윤리위원회⁷⁸⁾에 의하여 승인되고 감독을 받는 연구계획의 일부분이어야 한다⁷⁹⁾. 담당⁸⁰⁾ 윤리위원회는 보건사회복

72) 원문 중 프랑스어는 'urgence et que sa vie'로 되어 있어 '긴급한 경우와 그 생명이...'이다. 영어본은 'in cases of emergency if his life ...'(긴급한 경우로 그의 생명이 ...)이다.

73) 앞의 조문들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capable of giving his consent', 'apte à consentir'라고 하여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이라고 하고 있다.

74) 영어본(incapable of giving his consent)을 따른 것이다. 프랑스어본은 'inapte'(능력이 없는)이라고만 한다.

75) 프랑스어본은 제1항에 이어 'II'(그는)이라고만 하고 있다.

76) 영어본은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고'(it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benefit)이다.

77) 영어본은 '동일한 연령층(age category) 또는 동일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다른 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잠재력 있는 경우에만'이다.

78) 이 위원회는 바로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의 중앙윤리위원회'(Comité central d'éthique de la recherche du ministre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ethique.msss.gouv.qc.ca/site/ccer.phtml>> 참조.

지장관⁸¹⁾이나 그 장관에 의하여 기존 연구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된 자로 구성한다.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장관이 정하고 퀘벡관보(Gazette officielle du Québec)⁸²⁾에 고시한다.

③ 실험에 대하여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고 동의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는 수임인,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동의한다. 성년자가 갑자기 동의에 대하여 무능력이 되고 실험을 할 조건⁸³⁾이 생긴 후에 긴급하게 실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 내⁸⁴⁾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자가 실험에 대하여 도 동의한다. 실험이 이 요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하여는 연구계획을 검토할 때에 해당 윤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윤리위원회가 실험을 받는 자의 건강상태에 혁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 치료는 실험이 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치료의 내용⁸⁵⁾으로 장기(臟器), 조직이나 기타의 물질과 같은⁸⁶⁾ 신체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에 본인⁸⁷⁾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그를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자⁸⁸⁾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① 치료에 관한 허락 또는 신체의 일부의 양도에 관한 허가가 청구된 법원은 전문가, 친권자, 수임인, 후견인 또는 보좌인과 후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법원은 또한 청구에 의하여 본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②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프랑스어본은 ‘연구계획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이다.

80) 원문은 ‘관할이 있는’(compétent, competent)이다.

81) 원어는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Ministr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이다. 이에 대한 소개는 우선 <<http://www.msss.gouv.qc.ca/>> 참조.

82) 퀘벡의 관보는 퀘벡정부가 내린 결정을 공적으로 만드는 신문으로 퀘벡정보공개센터법(Loi sur le Centre de services partagés du Québec)(L.R.Q., c. C-8.1.1)과 퀘벡관보령(Règlement sur la Gazette officielle du Québec)(c. C-8.1.1, r.1)에 근거하여 발행된다. 전체적으로 법률의견(Avis juridiques)(제1부)과 법령(Lois et règlements, Laws and Regulations)의 2부분으로 되어 있다. 퀘벡의 관보에 대하여는 <<http://www3.publicationsduquebec.gouv.qc.ca/gazetteofficielle.fr.html>> 참조.

83) 프랑스어는 état로서 ‘사정’이나 ‘상태’의 의미이다.

84) 프랑스어는 en temps utile이고 영어는 ‘시간의 부족으로’(for lack of time)이다.

85) 원문은 dans le cadre de soins, as part of the care로 ‘치료의 범주, 일부로’라는 의미이다.

86) 원문은 ‘신체의 일부로, 장기, 조직 또는 기타 물질이든’(A part of the body, whether ..., Une partie du corps, qu'il s'agisse d'organes ...)의 의미이다.

87) 원문은 personne concernée, him으로 ‘해당자’ 또는 ‘어느 자(그)’의 의미이다.

88) 원문은 celle habilitée à consentir pour elle, the person qualified to give consent for him이다. qualified는 프랑스어본의 habilitée와 의미가 같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21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personne authorized를 해당 용어(영어본)로 사용한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8쪽 제22조 주(Note) 참조.

제24조 ① 건강상태에 필요하지 아니한 치료, 신체의 일부의 양도 또는 실험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25조 ①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에서 산출된 물건의 양도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건강에 위험한 경우에는 이를 반복할 수 없다.

② 실험에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험으로 인한 손해와 불편⁸⁹⁾의 배상으로서 하는 배상금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 시설의 수용 및 정신감정⁹⁰⁾

제26조 ① 누구도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법률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정신감정을 위하여 또는 수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붙은 정신감정의 결과로 보건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

② 동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친권자가 할 수 있고 성년자로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임인,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할 수 있다. 이 동의는 본인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제27조 ① 그 정신상태로 인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의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 동의 없이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하여 보건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일시적으로 수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모든 다른 의학검사를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실이 주장되지 아니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험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정신상태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위험한 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⁹¹⁾에 정한 것과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예방적 수용을 할 수 있다.

제28조 ① 법원이 정신감정을 위한 수용을 명한 경우에 그 감정은 수용시설 내에 그를 수용한 때로부터 또는 이미 예방적 수용이 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감정한 의사가 시설에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수용한 때로부터 96시간 내⁹²⁾에 또는 이미 예방적 수용이 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89) 원문은 pertes et des contraintes subies, loss and inconvenience suffered이다.

90) 원문은 각각 Section II. De la garde en établissement et de l'évaluation psychiatrique, Section II. Confinement in an institution and psychiatric assesment이다.

91) 이는 Loi sur la protection des personnes dont l'état mental présente un danger pour elles-mêmes ou pour autrui(L.R.Q., chapitre P-38.001),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se mental state presents a danger to themselves or to others(R.S.Q., chapter P-38.001)을 말한다. 모두 5장 61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원문은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P_38_001/P38_001.html>,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P_38_001/P38_001_A.html> 참조.

92) 영어본의 within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어본은 au plus tard(늦어도)라고 하여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다른 의사에 의한 제2의 정신감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의사가 수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⁹³⁾에는 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2명의 의사가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48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수용을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 ① 모든 감정보고서에는 어느 자의 정신상태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면 그의 시설에의 수용의 필요성, 감정을 받는 자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가 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및 필요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성년후견의 개시⁹⁴⁾의 타당성에 대하여 특히 언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7일 내에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보고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⁹⁵⁾될 수 없다.

제30조 ① 정신감정의 결과로 인한 시설의 수용은 2개의 정신감정서가 이러한 수용한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법원에 의하여 허가될 수 있다.

②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자신이 그 자가 위험하고 그 자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⁹⁶⁾ 수용을 명할 수 있고 이는 특히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가 무엇이든지 또한 반대의 의학적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제30조의 1 ① 수용을 명한 판결에는 그 기간도 정한다.

② 하지만 수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수용된 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판결로 정한 기간을 넘어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31조 ① 보건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은 그에 대하여 하는 치료계획과 그 계획이나 그의 생활조건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동의할 능력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를 위하여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자⁹⁷⁾에게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제2절 자의 권리의 존중

10쪽 참조.

93) 영어본은 If이고 프랑스어본은 Dès lors que로서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0쪽 참조.

94) 영어는 advisability of institution protective supervision of the person of full age(성년자의 보호후견을 개시할 타당성), opportunité d'ouvrir à son égard un régime de protection du majeur(성년자의 보호제도를 그에게 개시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95) 원문은 divulgué, disclosed로서 '개시'(開示)라는 의미이다.

96) 영어본은 unless(중대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이고 프랑스어본은 que s'il a(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이다.

97) 영어본은 authorized to give consent to care(치료에 대한 동의한 권한이 있는)이고 프랑스어본은 peut consentir(동의할 수 있는)이다. 이 문언에 대하여는 제22조와 제21조 제3항도 참조.

제32조⁹⁸⁾ 모든 자(子)는 보호, 안전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부모나 그들을 대신하는 자⁹⁹⁾가 줄 수 있다.

제33조¹⁰⁰⁾ ① 자에 관한 결정은 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의 권리를 존중하여 내려져야 한다.

② 게다가 자의 정신적, 지적, 감정적 및 물질적인¹⁰¹⁾ 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연령, 건강, 성격, 가정환경 및 기타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¹⁰²⁾ 법원은 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항상 그의 연령과 능력이 허용하면 그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8) 이는 1975년 제정되어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퀘벡 인권자유헌장(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Charte des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제39조의 내용을 그대로 민법전에 편입한 것이다. 다만 동 헌장은 조문표제(영어 : 보호; 프랑스어 : 자의 보호)가 있지만 민법전에는 없고 영어본의 말미의 동사에 차이가 있다. 제39조는 다음과 같다 : Article. 39 [Protection] Every child has a right to the protection, security and attention that his parents or the persons acting in their stead are capable of providing(민법전의 것 : able to give to him) Article. 39 [Protection de l'enfant] Tout enfant a droit à la protection, à la sécurité et à l'attention que ses parents ou les personnes qui en tiennent lieu peuvent lui donner; 본 헌장의 원문은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c-12/latest/rsq-c-c-12.html>>(영어), <<http://www.canlii.org/fr/qc/legis/lois/lrq-c-c-12/derniere/lrq-c-c-12.html>> (프랑스어) 참조; 본 인권장전은 6편(part) 139조로 되어 있다. 제1편은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의 개념을 규정한다. 이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기본적 자유와 권리, 평등권, 정치권, 사법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해석규정을 규정한다. 제2편은 인권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Human Rights and Youth Rights Commission)를 설치한다. 제3편은 적극적인 행동계획(affirmative action programs)을 규정한다. 제4편은 사생활권(rights to privacy)을 보장하고 있다. 제5편은 정부에 규율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6편은 인권법원을 설치하고 그 구성원은 사법부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퀘벡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연방과 주법의 차원에서 여러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서명한 후에 캐나다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을 캐나다의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는 현재 4개의 중심축이 마련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헌법의 일부인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La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 연방차원의 인권법인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1977년)과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및 주(州)의 인권법령(human rights laws and legislation)이 그것이다. 퀘벡주의 인권자유헌장도 이러한 주의 인권법령의 하나이다. 주의 인권법령은 1947년의 사스캐처원 인권법(Saskatchewan Bill of Rights)(1947)를 시작으로 온타리오[Ontario](1962),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1963), 알베르타[Alberta](1966), 뉴 브런스윅[New Brunswick](1967),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1968), 뉴라운드랜드[Newfoundland](1969),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1969), 마니토바[Manitoba](1970)이 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퀘벡(Quebec)이 1975년에 제정되었다. 이어서 1977년에는 연방정부가 캐나다 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http://en.wikipedia.org/wiki/Human_rights_in_Canada>과 관련 링크 참조.

99) 원문은 les personnes qui en tiennent lieu(그들을 대신하는 자), persons acting in their stead(그들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자의 후견인을 말한다.

100) 본 조는 퀘벡민사소송법 제816조의 1에 있던 조문을 편입한 것으로 현재 민사소송법의 동 조문은 삭제되었다.

101) 원문은 besoins moraux, intellectuels, affectifs et physiques; the moral, intellectual, emotiaonal and physical needs이다. '도덕적, 정신적, 감정적 및 물질적 필요'라고 할 수도 있다.

102) 본 조는 퀘벡민사소송법 제816조, 제816조의 1에 있던 조문을 편입한 것으로 현재 민사소송법의 동 조문은 삭제되었다.

제3절 명예와 사생활¹⁰³⁾의 존중

제35조¹⁰⁴⁾ ① 모든 사람은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사생활은 침해될 수 없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어느 것을 취하는 것¹⁰⁵⁾
2. 타인의¹⁰⁶⁾ 사적인 통신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것
3. 타인이 사적인 장소에 있을 때 그 초상이나 그 음성을 부당하게 취득¹⁰⁷⁾하거나 이용하는 것
4. 어떠한 수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
5. 공공에게 적법하게 제공된 정보와 다른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초상, 형상¹⁰⁸⁾이나 음성을 이용하는 것
6. 타인의 서신, 수고(手稿) 또는 기타의 사적 문서를 이용하는 것

제37조 ① 타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모두 이에 대한 중대한 정당한 사유¹⁰⁹⁾가 있어야 한다. 그는 문서에 명시된 목적에 합치되는 정보만 수집할 수 있고 본인¹¹⁰⁾의 동의 또

103) 사생활은 원어의 vie privée, privacy을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통상 ‘프라이버시(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법의 용어를 참조하여 ‘사생활’로 하였다. 이에 대한 조문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참조; 이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은 미국에서 S.D. Warren, L.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December 15, 1890(4 Harv. L. Rev. 193)의 논문에서 처음 이론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선 徐柱實,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호, 1995. 7 참조.

104) 이 조문은 2002년 개정된 것이다. 1991년 제정 당시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5조 ① [헌행법과 같음] ② 본인 또는 상속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사생활은 침해될 수 없다; 또한 퀘벡주 인권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 Charte des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1975년) 제4조, 제5조도 참조 : 제4조 [존엄성이 보호] 모든 자는 그의 존엄, 영예와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개인의 생명의 존중] 모든 자는 그 개인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Article. 4. [Safeguard of dignity] Every person has a right to the safeguard of his dignity, honour and reputation. Art. 5 [Respect for private life] Every person has a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life; Art. 4. [Sauvegarde de la dignité] Toute personne a droit à la sauvegarde de sa dignité, de son honneur et de sa réputation. Art. 5. [Respect de la vie privée] Toute personne a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ée). 이에 대하여는 <<http://www.cdpdj.qc.ca/en/commun/docs/charter.pdf>>(영어), <<http://www.cdpdj.qc.ca/fr/commun/docs/charte.pdf>>(프랑스어) 참조.

105) 프랑스어 조문은 Pénétrer chez elle ou y prendre quoi que ce soit(어느 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거기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고 영어조문은 entering or taking anything in his dwelling(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취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2쪽 참조.

106) 영어본은 his private communication으로 ‘타인의 사적인 통신’이지만 프랑스어본은 ‘une communication privée’([어느] 사적인 통신)이다.

107) 원문은 각각 capter, appropriating으로 사취, 불법취득(부당전용)의 의미이다.

108) 원문은 sa ressemblance, likeness로서 앞의 image(초상)과 대비하여 ‘형상’으로 하였다.

109) 원문은 프랑스어는 intérêt(이익)이고 영어본은 reason(사유)이다.

110) 원문은 각각 the person concerned, the intéressé으로 ‘해당자’, ‘이해관계인’ 또는 ‘본인’의 의미이다.

는 법률에 의한 허가가 없이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파일의 작성목적과 양립될 수 없는 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¹¹¹⁾ 문서의 작성과 이용에서 본인의 사생활이나 그 명예를 침해할 수도 없다.

제38조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타인이 그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는 파일을 무상으로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¹¹²⁾ 그 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파일 안에 포함된 정보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으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

제39조 ① 타인에 관한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거기에 포함된 정보를 본인이 접근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에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정보가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① 사람은 모두 자기에 관하여 파일에 포함된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정보 또는 그 파일의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정보의 삭제나 또는 파일에 그가 서면으로 작성한¹¹³⁾ 주(註)의 첨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정정은 지체없이 그 이전 6월 내에 그 정보를 수령한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제공된 자¹¹⁴⁾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정정청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정정청구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41조 ① 파일의 열람 또는 정정할 권리의 행사의 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동일하게 이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장애를 해결한다.

제4절 사망 후의 신체¹¹⁵⁾의 존중

111) 영어본은 in addition이 있으나 프랑스본은 없다.

112) 프랑스어본은 moyennant des frais raisonnables(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이고 영어본은 at reasonable cost(상당한 비용으로)으로 의미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3쪽 참조.

113) 프랑스어본은 ‘서면으로 주를 작성하고 문서에 이를 첨부할 것’(formuler par écrit des commentaires et les verser au dossier)이고 영어본은 ‘파일에 그가 서면으로 한 주를 첨부할 것’(deposit his written comments in the file)이다.

114) 프랑스어본은 ‘à la personne de qui elle les tient’(그로부터 그 정보를 취한 자)이고 영어본은 ‘to the person who provided that information’이다.

115) 원문은 각각 corps, body로서 신체를 의미한다. 사망 후의 신체를 나타내는 말로는 사체, 신체, 유체(遺體), 시신, 주검 등의 여러 용어가 있다. 현행법의 용어로는 ‘시체’라고 쓰는 용례(가령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와 사체라고 쓰인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형법전 제159조, 제161조 제1항과 제163조가 있다 :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서는 유체(遺體)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대판전 2008.11.20, 2007다27670(…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하거나 …) 참조; 여기서는 원문에 따라 ‘사망

제42조 성년자는 그 장례¹¹⁶⁾와 그 신체의 처분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사자(死者)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승계인¹¹⁷⁾의 의사에 따른다. 어느 경우에도 상속인과¹¹⁸⁾ 승계인은 행위할 의무가 있다. 그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한다.

제43조 ① 성년자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시신을 기증하거나 또는 그 시신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의 적출을 허용할 수 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와같이 할 수 있다.

② 이 의사는 2인의 증인의 면전에서 구두로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표시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될 수 있다. 충분한 사유¹¹⁹⁾가 없는 한 이 명시적 의사는 준수되어야 한다.

제44조 ① 사자의 의사를 알 수 없거나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신체의 일부의¹²⁰⁾ 적출은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② 그 동의를 상당한 시간 내에 얻을 수 없다는 것, 수술이 긴급하다는 것과 생명을 구하거나 또는 그 질을 현저하게 개선할 중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2인의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5조 그 적출에도 이식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2인의 의사에 의하여 기증자의 사망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신체의 어느 일부¹²¹⁾도 적출될 수 없다.

제46조 ① 해부는 법률이 정한 경우 또는 사자가 이에 관하여 이미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치료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도 있다. 해부를 청구한 자 또는 그에 대하여 동의한 자는 그 보고서의 사본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제47조 ① 법원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의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자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부보고서의 일부분만의 공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시관(coroner)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사자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후의 신체'로 직역하였다.

116) 프랑스어본은 funérailles이고 영어본은 'the nature of his funeral'(장례의 성질)이다.

117) 원문은 héritiers ou successeurs, heirs or successors이다. 퀘벡민법전에서 승계인(Successor, Successible)은 민법전에 의하여 상속받을 권리(droit à un héritage, entitled to inherit)가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Heir, Héritier)은 그에게 귀속(entitled) 또는 권리가 있는 상속재산(inheritance, héritage)을 수령한 승계인(successor, Successible)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우선 <<http://www.justice.gouv.qc.ca/francais/publications/generale/success.htm#definitions>>, <<http://www.justice.gouv.qc.ca/francais/publications/generale/success.htm>> 참조; 다만 양자는 혼용되고 있다.

118) 프랑스어본은 'ou'를 사용하여 '상속인이나 승계인'이지만 영어본은 'and'로 '상속인과 승계인'이다.

119) 원문은 compelling reason, motif impérieux이다. 제62조 제1항도 참조.

120) 프랑스어본은 '그 적출'(le prélèvement)이라고만 하지만 영어본은 '그 신체의 일부의 적출'(a part of the body may be removed)라고 한다.

121) 제44조 제1항과 같이 프랑스어본은 '그 적출'이다.

제48조 사망확인서가 작성되고 그 확인 후 6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누구도 시신에 방부처리, 매장 또는 화장(火葬)할 수 없다.

제49조 ① 매장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매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수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경우에 시신을 발굴할 수 있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시관도 시신의 발굴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사람의 신분에 관한 몇 가지 특수한 것¹²²⁾

제1절 성명

제1관 성명의 귀속

제50조 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출생한 때에 귀속되고 출생증서에 기재된 성명을 가진다.

② 성명은 성과 이름¹²³⁾을 포함한다.

제51조 자는 부와 모의 선택에 따라 1개 또는 수개의 이름과 그 부모의 성을 조합한 2개 이하의 부분으로 된 성¹²⁴⁾을 가진다.

제52조 ① 성의 선택에서 합의가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¹²⁵⁾은 부모의 각자¹²⁶⁾의 선택에 따라 부의 성으로부터 취한 부분과 모의 성에서 취한 성의 2부분으로 조합한 성을 자에게 귀속하게 한다.

② 이름의 선택에 대하여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그 부와 모의 각자의 선택¹²⁷⁾에 따라 자에게 2개의 이름을 귀속하게 한다.

122) 프랑스어본은 'de certains éléments'(몇몇 요소)이고 영어본은 'certain particulars'(몇몇 특수한 것)이다.

123) 원문은 성은 nom de famille, surname이고 이름은 prénom, given names이다.

124) 프랑스어본은 'un nom de famille formé d'au plus deux parties provenant de celles qui forment les noms de famille de ses parents'(그 부모의 성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나온 최대 2개의 것으로 구성된 성)이고 영어본은 'a surname composed of not more than two of the surnames composing his parents' surnames'(그 부모의 성을 구성하는 2개 이하의 성으로 구성된 성)으로 하여 양자의 의미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7쪽 참조. 부의 성과 모의 성의 2부분(parties, parts)라는 용어를 사용한 제52조의 영어본과 프랑스본을 고려한다면 프랑스본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125) 원문은 각각 directeur de l'état civil, registrar of civil status로서 민사신분의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창설된 것으로 퀘벡 민법전에 의하여 명해진 공무원(public officer)이다. 퀘벡에서 민사신분등록관(Directeur de l'état civil)은 출생, 혼인, 민사결합(civil union), 사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유에 관한 공식문서를 발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유일한 민사신분담당부서(civil status officer)이다. 이러한 점은 우선 Directeur de l'état civil <<http://www.etatcivil.gouv.qc.ca/fr/a-propos.html>> 참조.

126) 프랑스어본은 leur choix respectif(그들 각자의 선택)이지만 영어본은 their choice, respectively로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각각 취한...'의 의미이다.

127) '각자'의 의미는 제1항의 각주 참조; 또한 프랑스어본은 '그 부와 모'(des père et mère)이지만 영어본은 '그 부와 그 모가 각자'(his father and his mother, respectively)의 의미이다.

제53조 ①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만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자는 그의 부 또는 그의 모¹²⁸⁾의 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그의 부 또는 그의 모가 선택한 1개 또는 수개의 이름을 가진다.
 ②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민사신분등록관이 그에게 귀속하게 한 성명을 가진다.

제54조 ① 부와 모가 선택한 성명에 이상한¹²⁹⁾ 조합된¹³⁰⁾ 성이나 이름으로 명백하게 조롱을 받거나 불명예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신분등록관은 그 부모에게 그 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하지만 부모가 이러한 변경을 거절한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하고 퀘벡주 검찰청장(Attorney General of Québec)에게 통고한다. 검찰장관은 증서의 작성한 때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부모가 선택한 성이나 이름에 대신하여 부모의 일방의 성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개의 이름으로 대신할 것¹³¹⁾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소할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이 기판력을 가질 때까지 민사신분등록관은 그 출생증서에 기하여 발행된 모든 사본, 증서와 확인서에 검찰청장에게 통고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2관 성명의 사용

제55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성명이 존중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사람은 그 출생증서에 기재된 1개 또는 수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① 자기의 것이 아닌 성명을 사용한 자는 그로 인한 혼동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성명의 소지자와 그 혼인 또는 민사결합¹³²⁾의 배우자 또는 그 근친자는 그 성명의 사용

128) 영어본은 his father or mother로서 '그 부 또는 모'이다.

129) 원문은 각각 inusités, odd로서 '이상한', '이례적인', '잘 사용되지 아니한'(廢한) 등의 의미이다.

130) 프랑스어본은 제52조 등과 일치한 composée(조합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본은 compound(복합적)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31) 프랑스어본은 '경우에 따라(selon le cas) 부모가 선택한 성이나 이름을 그들 중 1인의 성이나 상용되는(usuels) 2개의 이름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한다.

132) 이는 union civile, civil union를 번역한 것이다. 퀘벡에서는 2002년 퀘벡의회에서 민사결합의 신설과 친자관계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Loi instituant l'union civile et établissant de nouvelles règles de filiation)을 제정하여 새로운 제도로 창설된 것이다. 이는 동성이나 이성(異性)의 자들이 형성하는 배우자(couples)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동생활(vie commune)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정(s'engager)하게 하고자 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 형식과 그 법적 내용에 관하여는 민사결합은 혼인에 상당(équivalent)한 것이다. 실제 민사결합에서 나온 권리와 의무는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와 동일하다. 양자의 차이는 성립요건으로서의 연령과 그 해소(dissolution)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http://www.justice.gouv.qc.ca/francais/publications/generale/union-civ.htm>> 참조; 이러한 민사결합은 동성혼과 관련되어 '민사결합'(union civile)이나 민사연대약정(Pacte civil de solidarité)(특히 프랑스)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인정되고 있다. 각국의 동향에 대하여는 우선 <http://fr.wikipedia.org/wiki/Union_civile> 참조. 다만 이 제도는 동거(Concubinage)이라는 용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민사결합'으로 하였다. '사실혼'이라는 용어도 고려될 수 있으나 '혼인'으로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차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민사결합의 개념이 퀘벡민법전에서 동거, 사실상의 배우자 등의 개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성명의 변경

제1목 총칙

제57조 본 관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신분등록관이나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그 성명은 변경될 수 없고 이는 성이든 이름이든 불문하고 그러하다.

제2목 행정절차에 의한 성명의 변경

제58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중대한 사유로 인한 성명의 변경을 허가할 권한이 있다. 특히¹³³⁾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명이 출생증서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명이 외국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원문의 형태로 쓰거나 발음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성명이 조롱을 받거나 불명예가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② 그 부 또는 모의 출생증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에서 나온 일부분¹³⁴⁾을 어느 자가 그 성에 부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민사신분등록관은 권한이 있다.

제59조 ① 캐나다 시민으로 적어도 1년 이상 퀘벡 주에 주소를 둔 성년자는 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성에 관한 경우에는 그 청구는 동일한 성이나 그 성의 일부분을 가진 미성년의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미성년인 자의 성명의 변경이나 또는 자가 그 자신의 성으로부터 취한 일부분을 그 성에 부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60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그 피후견인이 캐나다 시민이고 퀘벡에 최소한 1년 동안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① 성명의 변경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사유¹³⁵⁾를 제시하고 그 부모의 성명, 그 혼인 또는 민사결합의 상대방과 그 자의 성명 및 필요한 경우에 그 자의 다른 부 또는 모의 성명을 표시한다.

② 청구자는 제시한 사유와 표시한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선서로 확인하고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제62조 ① 미성년인 자의 성명의 변경은 후견인이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¹³⁶⁾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133) 영어본은 2개의 문장이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프랑스어본은 ';'으로 분리되어 있다.

134) 이러한 문구에서의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의 차이에 대하여는 제51조, 제52조, 제54조 등 참조.

135) 프랑스어본은 '그 이유'(ses motifs)라고만 한다.

136) 이는 제43조 제2항도 참조.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에 부 또는 모의 성에서 취한 일부분을 부가하는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이에 반대할 수 있다.

제63조¹³⁷⁾ ① 성명의 변경을 허가하기 전에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여 법무부장관이 공시를 특별히 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신분등록관은 신청의 통지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민사신분등록관은 그 신청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요청한 제3자에게 이를 주어야 한다.

② 신분등록관은 신청자에게 필요가 있는 보충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64조 성명의 변경절차, 신청과 결정의 공시와 신청자가 부담할 의무¹³⁸⁾에 관한 기타의 규정은 모두¹³⁹⁾ 정부의 행정명령¹⁴⁰⁾으로 정한다.

제3목 사법절차에 의한 성명의 변경

제65조 친자관계의 변경, 그 부 또는 모에 의한 유기 또는 친권의 상실¹⁴¹⁾의 경우에 법원이 자의 성명의 변경에 대한 전속적 관할을 가진다.

제66조 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¹⁴²⁾ 성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신청한 것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신청에 반대할 수도 있다.

제4목 성명변경의 효력

제67조¹⁴³⁾ ① 성명의 변경은 이를 인용한 판결이 기판력을 가진 때 또는 민사신분등록관의 결정이 더 이상 재심될 수 없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②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시가 특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의 통지는 퀘벡이 관보로 공시된다.

137) 이 조문은 2007년에 개정된 것이다. 1991년 제63조에는 법무부장관이던 것이 1996년 법(제21호) 제27조에서는 '민사신분을 관할하는 장관'으로 되었고 2007년(제32호) 제8조에서는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138) 원어는 duties payable, droit exigibles이다.

139) 영어본에는 'all other rules'이고 프랑스어본은 'les autres règles'이다.

140) 원문은 règlements, regulation으로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을 말한다.

141) 퀘벡민법전에서는 친권의 상실(déchéance de l'autorité parentale,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에 대하여 제2편 가족 제4장 친권(Title 4. parental authority, autorité parentale) (제597조-제6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친권의 상실에 대하여는 제606조-제610조에서 규정한다.

142) 영어는 acting alone(단독으로 행위하여), 프랑스어는 lui-même(그 자신)이다.

143) 이 조문은 2007년에 개정된 것이다. 1991년 제67조에는 법무부장관이던 것이 1996년 법(제21호) 제27조에서는 '민사신분을 관할하는 장관'으로 되었고 2007년(제32호) 제9조에서는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제68조 성명의 변경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69조 ① 종래의 성명으로 작성한 서면은 모두 새로운 성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그의 비용으로 성명변경이 증거를 제공하면서 그 서류를 새로운 성명의 기재로 정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성명을 변경한 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소송의 재개시 없이도 새로운 성명으로 계속된다.

제4관 성별표기의 변경

제71조¹⁴⁴⁾ ① 성기의 구조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2차 성징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치료와 외과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자는 모두 그의 출생증서의 성별표기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성년자이고 퀘벡에 적어도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캐나다 시민인 자만이 전 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2조 성별표기의 변경신청은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한다. 신청에는 기타의 관련 문서 외에 치료한 의사의 증명서와 퀘벡에서 개업하고 있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성공이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 성별표기의 변경신청은 성명의 변경신청과 동일한 절차¹⁴⁵⁾, 동일한 공시의 필요와 동일한 의무에 의한다. 성명변경의 효력에 관한 원칙이 성별표기의 변경에 준용된다.

제5관 결정의 재심

제74조 성명의 귀속이나 성명이나 성별표기의 변경에 관한 민사신분등록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재심할 수 있다.

제2절 주소와居所

제75조 민사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생활의 주된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76조 ① 주소는 생활의 주된 근거로 하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실에 의하여 변경된다.

144) 이 조문은 2002년 개정된 것이다. 1991년 제정 당시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1조 ① [현행법과 같음]
② 성년자이고 혼인하지 아니하고 퀘벡에 적어도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캐나다 시민인 자만이 전 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밑줄 삭제).

145) 프랑스어본은 절차와 공시, 의무가 별개의 문장이고 후자는 효력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본은 절차, 공시, 의무가 같은 문장이고 효력이 별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의사는 그의 표시와 (여러) 사정¹⁴⁶⁾에 의하여 증명한다.

제77조 사람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그의 거소로 한다. 수개의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거소¹⁴⁷⁾를 그 주소로 본다.

제78조 ① 주소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자는 그 거소가 있는 곳에 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주소로 보고 거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를 주소로 본다.

제79조 일시적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공무(公務)에 선임된 자는 그 주소를 유보한다. 다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0조 ① 해방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그 후견인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

②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만 공통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를 그 주소로 추정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곳에 자의 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후견을 받는 성년자의 주소는 그 후견인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 보좌를 받는 자는 그 보좌인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

제82조 혼인이나 민사결합한 배우자¹⁴⁸⁾는 각각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동거¹⁴⁹⁾에 관한 규정을 위반¹⁵⁰⁾할 수 없다.

제83조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로 인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소의 선정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3절 부재와 사망

제1관 부재

제84조 부재자는 퀘벡주에 주소를 가졌지만 소식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가 아직 생존하는지도 알 수 없는 자를 말한다.

146) 영어는 circumstance of the case(그 해당 경우의 제반사정)이다.

147) 프랑스어는 ‘주된 성질을 가진’(celle qui a le caractère principal) 거소라고 한다.

148) 프랑스어는 époux et conjoints unis civilement이라고 하고 영어는 married or civil union spouses이라고 한다. 프랑스어는 혼인과 민사결합의 배우자를 각각 달리하지만 영어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149) 프랑스어는 vie commune이고 영어는 living together로 ‘공동생활’의 의미도 있지만 동거로 하였다.

150) 원문은 without prejudice, sans qu'il soit pour autant porté atteinte로 ‘침해하지 아니하고’라는 의미이다.

제85조 부재자는 그 생사불명된 때로부터 7년 동안 생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사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인이 불명이거나 행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행위하는 것이 방해된 경우에는 행사할 권리를 가지거나 관리할 재산이 있는 부재자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 ① 공익보좌관¹⁵¹⁾, 부재자의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부재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후견회¹⁵²⁾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고 부재자의 후견에는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법원은 후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범위에 따라 혼인 또는 민사결합의 비용, 가족의 양육비 또는 부재자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출연할 상당한 액을 정할 수 있다.

제89조 ① 부재자의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배우자 또는 후견인은 생사불명으로부터 1년이 된 후에 법원에 배우자의 재산권의 청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혼인 후 취득한 공유재산¹⁵³⁾의 분할청구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부재자의 다른 권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0조 부재자의 후견은 부재자가 귀환하거나 부재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부재자의 사망의 확인판결 또는 그 사망의 증명으로 종료된다.

제91조 불가항력의 경우에 그 주소에 나타날 수 없고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경우와 같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관 사망의 확인판결

제92조 ① 법원은 생사불명으로부터 7년이 되면 공익보좌관, 임시재산관리인으로서 직무를 하고 있는¹⁵⁴⁾ 국세장관¹⁵⁵⁾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의 확인판결

151) Public Curator <<http://www.curateur.gouv.qc.ca/cura/en/>>; 현재의 공익보좌인과 그 조직에 대하여는 <<http://www.curateur.gouv.qc.ca/cura/pdf/organigramme.pdf>> 참조.

152) 원문은 conseil de tutelle, Tutor council로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제220조 이하). 이에 대하여는 <<http://www.curateur.gouv.qc.ca/cura/fr/majeur/client/conseil/index.html>> 참조;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회의 업무(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이다. 이에 따라 이를 후견위원회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후견회’로 하였다.

153) 원문은 acquêts, acquests이다.

154) 영어는 ‘임시재산관리인으로서’이고 프랑스어는 ‘재산의 임시관리인의 직무에서’(dans ses fonctions d'administrateur provisoire de biens)이다.

이 선고될 수 있다.

②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퀘벡에 주소가 있는 자의 사망이나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전에도 선고할 수 있다.

제93조 ① 사망의 확인판결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자의 성명과 성별을 표시하고 알고 있으면 그 출생장소와 일자 및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장소와 일자, 배우자의 성명, 부모의 성명과 그의 최후의 주소와 사망한 장소, 시간과 일자를 명시한다.

② 결정을 내린 법원의 서기는 판결문의 등본을 지체없이 검시국장¹⁵⁶⁾에게 송부한다.

제94조 ① 사망일은 생사불명으로부터 7년이 만료한 날로 하거나 또는 사정에 의하여 그 날에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보다 이전의 날로 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장소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를 최후로 본 장소로 한다.

제95조 사망의 확인판결은 사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제96조 ① 사망일이 사망의 확인판결에서 정한 것보다 이전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부부재산제 또는 민사결합의 재산제는 실제 사망한 날로 소급하여 해소되고 상속도 그 날로부터 개시된다.

② 사망일이 사망의 확인판결로 정한 날보다 이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부부재산제 또는 민사결합의 재산제는 판결로 정한 날에 소급하여 해소되지만 상속은 실제 사망한 날에만 개시한다.

③ 표견상속인과 진정상속인 사이의 관계¹⁵⁷⁾에 관하여는 채무편의 급부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관 귀환

제97조 ① 사망의 확인판결로 사망이 선고된 자의 귀환으로 그 판결의 효력은 상실한다. 다만 혼인 또는 민사결합은 해소한 것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② 하지만 자의 후견이나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 또는 민사결합의 해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8조 ① 귀환한 자는 법원에 사망의 확인판결의 무효와 민사신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귀환한 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망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된 기재와 등기의 삭제 또는 정정하고 이것이 귀환에 의하여 권리 없이 된 것으로 무효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② 귀환한 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귀환한 자의 비

155) 2005년부터 퀘벡의 국세부장관(Ministère du Revenu du Québec)은 퀘벡국세(Revenu Québe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은 국무장관에 관한 법(Loi sur les ministères)(L.R.Q., c. M-34) 참조. 국세부(Revenu Québec)에 대하여는 <<http://www.revenuquebec.ca/fr/default.aspx>> 참조.

156) 이에 대하여는 <<http://www.coroner.gouv.qc.ca/index.php?id=64>> 참조.

157) 프랑스어는 rapports이고 영어는 relations이다.

용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 귀환한 자는 채무편의 급부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회복한다. 선의로 그 재산을 점유하고 그의 재산 이외의 것으로 귀환한 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귀환한 자는 이를 상환한다.

제100조 사망의 확인판결 후에 사망선고의 기재나 등기가 삭제 또는 정정되기 전에 귀환한 자의 상속인이나 특정수유자에게 한 변제는 모두 유효하다.

제101조 사망으로 선고된 자가 생존한 것을 알고 있는 표견상속인은 귀환한 자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재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과실과 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제4관 사망의 증명

제102조 사망은 사망증서에 의하여 증명된다. 다만 법률이 다른 증명방법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민사신분등록부와 신분증서

제1관 민사신분등록관¹⁵⁸⁾

제103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이 유일한 민사신분을 관할하는 공무원이다.
② 민사신분등록관은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변경하고 민사신분등록부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에 대한 열람¹⁵⁹⁾을 하게 할 책임이 있다.

제2관 민사신분등록부

제104조 민사신분등록부는 민사신분증서 전체와 이를 변경하는 법률문서로 성립한다.

제105조 ① 민사신분등록부는 이중의 형태로¹⁶⁰⁾ 유지한다. 하나는 모두 지면에 의한 문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른 하나는 검색시스템으로 된 전자정보로 유지한다.
② 이중의 형태로 된 등록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으로 된 것이 우선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하나의 등록부는 다른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106조 민사신분등록부는 또한 다른 형태의 등록부를 보존하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보관한다.

158) 이에 대하여는 앞의 주 참조.

159) 프랑스어는 assurer la publicité(공시를 확보)이고 영어는 'providing access to it'(그에 대한 접근/검색을 제공하다)이다.

160) 원문은 en double exemplaire, in duplicate이다.

제3관 민사신분증서

제1목 총칙

제107조 ① 민사신분증서는 출생증서, 혼인증서, 민사결합증서와 사망증서만으로 한다.

② 그 신분증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만을 포함하고¹⁶¹⁾ 그 원본으로 한다¹⁶²⁾.

제108조 ① 민사신분증서는 민사신분등록관이 접수한 퀵백주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퀵백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발생한 출생, 혼인, 민사결합과 사망에 관하여 증명서, 신고서와 법률문서로부터 지체없이 작성한다.

② 성명에 프랑스어나 영어의 표기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문자, 발음기호 또는 문자와 발음기호의 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선택에 의하여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음역¹⁶³⁾되어 기재되어야 한다. 음역은 지면 형태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전자형태의 등록부와 증서, 증명서와 확인서의 등본에는 원래의 성명의 표기로 대신한다. 원래의 성명의 표기는 유지된다. 다만 음역에 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다.

제109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그가 접수한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그가 접수한 판결문이나 다른 증서에 따라 자신이 작성한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한다.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등록관은 간이조사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일자를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붙여 민사신분등록부에 삽입한다. 이에 의하여 그 신청서는 민사신분등록부가 된다.

제110조 증명서와 신청서에는 작성한 날 및 작성한 자의 성명, 신분과 주소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한다.

제2목 출생증서

제111조 ①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를 작성한다.

② 출생증명서에는 출생한 곳, 일자와 시간, 자의 성별, 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제112조 조산사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게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교부한다. 조산사는 지체없이 자의 출생신고와 함께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즉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1) 영어는 and로 연결되는데 프랑스어는 ‘;’로 한다.

162) 원어는 authentic, authentiques이다.

163) 원어는 transcription으로 언어학에서 언어학에서 언어의 음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문자 표기하는 전사(轉寫)를 말한다. 이는 음성에서 문자로 바뀌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문자에서 문자로 바뀌는 과정인 전자(transliteration)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음성학적 전사는 특별히 정의된 문자의 조합으로 하고 특히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http://en.wikipedia.org/wiki/Transcription_\(linguistics\)](http://en.wikipedia.org/wiki/Transcription_(linguistics))> 참조. 다만 ‘전사’라는 용어는 transliteration의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transcription을 명시하는 역어로는 ‘음역’, ‘음성기호’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113조 자의 출생신고는 30일 내에 부모 또는 그 일방이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하고 이는 그에 서명한 증인 1인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4조 ① 부나 모만이 그들과 자의 친자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가 혼인 또는 민사결합 중에 포태하거나 출생한 경우에 배우자 중 일방은 자와 다른 일방과 자의 친자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기타의 자는 부모의 일방에 대한 친자관계를 신고할 수 없다. 다만 그 일방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① 출생신고서에는 자에게 부여한 성명, 성별, 출생한 곳, 일자와 시간, 부와 모 및 증인의 성명과 주소, 신고자와 자의 혈연관계¹⁶⁴⁾를 기재한다. 부모가 동성인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복수의 부 또는 모로 기재한다.

② 신고자는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16조 ①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그들이 행위할 수 없는 신생아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누구나 30일 내에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자의 성별을 기재하고 알 수 있으면 출생한 곳, 일자와 시간을 기재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와 사정을 설명하고 그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성명을 기재한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7조 출생한 곳, 일자와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신분등록관은 의료기록과 사정에 의한 추정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제3목 혼인증서

제118조 혼인의 신고는 지체없이 혼인식을 거행한 자가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한다.

제119조 ① 혼인신고서에는 배우자 각자의 성명, 주소, 그들이 출생한 곳과 일자, 그 혼인한 일자¹⁶⁵⁾, 각자의 부모와 증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신고서에는 또한 주례의 성명, 주소, 신분을 기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례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명칭을 적시한다.

제120조 혼인신고서에는 경우에 따라서 혼인의 공고를 면제한 사실, 배우자가 이미 민사결합에 있는 사실과 배우자의 일방이 미성년인 경우에 취득한 허가나 동의를 기재한다.

제121조 신고서에는 주례, 배우자 및 증인이 서명한다.

제3목의 1 민사결합증서

164) 영어는 family relationship(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프랑스어로는 lien de parenté이다.

165) 영어는 ‘그 혼인한 일자’이고 프랑스어는 ‘그 혼인한 일자와 장소’이다.

제121조의 1 민사결합의 신고는 지체없이 민사결합의 예식을 거행한 자가 민사신분등록관에 대하여 한다.

제121조의 2 ① 민사결합 신고서에는 배우자 각자의 성명, 주소, 출생한 곳과 일자, 민사결합의 예식을 한 일자과 장소, 각자의 부모와 증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면제를 한 것을 기재한다.

② 신고서에는 주례의 성명, 주소, 신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주례가 소속된 종교단체¹⁶⁶⁾의 명칭을 적시한다.

제121조의 3 신고서에는 주례, 배우자와 증인이 서명한다.

제4목 사망증서

제122조 ① 사망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의사는 사망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의사는 사망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교부한다. 의사 또는 사자의 유체를 처리한 장례지도사는 사망신고서와 함께 지체없이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즉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사망이 명백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사에 의하여 사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는 2인의 경찰관¹⁶⁷⁾이 작성할 수 있고 이들은 이 경우에 의사와 동일한 의무가 있다.

제124조 사망확인서에는 사자의 성명과 성별, 사망한 장소, 일자과 시간을 기재한다.

제125조 사망신고는 지체없이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사자의 배우자, 근친¹⁶⁸⁾ 또는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인한 친척이 하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한다. 장례지도사가 유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가 그 사체의 처리한 시간, 장소와 방법을 신고한다. 신고서는 이에 서명한 증인 앞에서 한다.

제126조 ① 사망신고서에는 사자의 성명과 성별, 출생한 곳과 일자,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또는 민사결합을 한 곳과 일자, 배우자의 성명, 부모의 성명, 사자의 최후의 주소, 사망한 장소, 일자과 시간, 유체를 처리한 일자, 장소와 그 방법을 기재한다.

② 신고를 하는 자는 사망증명서의 등본을 이에 첨부한다.

제127조 ① 사망한 일자과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신분등록관은 이를 검시관의 기록과 사정에 의한 추정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② 사망한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는 유체가 발견된 곳으로 추정한다.

166) 영어에서는 religious affiliation으로 하여 제366조, 제521조의 2의 religious society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어는 어느 경우나 société religieuse로 일치한다.

167) 원문은 agents de la paix, peace officer이다.

168) 프랑스어는 근친 중 혈족과 인척(proche parent ou allié)이고 영어는 close relative(근친)이다.

제128조 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확인서에는 유체의 현황과 발견한 주위사정을 포함한다.

제4관 신분등록부의 변경

제1목 총칙

제129조 ① 사람의 성명을 변경하는 판결,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분이나 민사신분증서 중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판결을 한 법원의 서기는 그 판결이 기판력을 취득하면 바로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이 판결을 통지한다.

②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공동신고를 접수한¹⁶⁹⁾ 공증인은 지체없이 이를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한다.

③ 민사신분등록관은 이에 따라 등록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전자등록부의 등본에 필요한 등록을 한다.

제2목 증서의 작성과 기재

제130조 ① 퀘백에서 발생한 출생, 혼인, 민사결합이나 사망이 증명이나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증명이나 신고된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간단한 조사를 하여 그가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하고 민사신분등록부에 그 증서를 삽입한다.

② 다른 신고에 부가하여 늦게 신고하였지만 그 신고와 모순이 없는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먼저 신고한 자의 동의를 얻어 민사신분증서에 필요한 변경을 한다. 하지만 친자관계의 신고인 경우에는 민사신분증서의 변경은 이외에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고 증서, 계속적인 신분점유나 법정추정에 의하여 확인된 다른 자와의 친자관계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원칙에 맞게 공시된 통지가 있는 후 20일 동안 제3자의 이의가 없을 것도 그 조건으로 한다.

제131조 신고서와 증명서에 모순되지만 사람의 신분을 확정하는데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사신분등록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132조 ① 사람의 성명이나 친자관계와 같은 민사신분증서 중의 본질적인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판결이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된 경우 또는 성명이나 성별의 표기의 변경을 허가하는 종국적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한다.

② 증서를 보정하기 위하여 등록관은 원래의 신고서이면 서명할 자에 의하여 그가 작성한 새로운 신고서에 서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69) 원어는 ‘수령, 수취, 접수’(reçoit)와 ‘기초, 작성’(execute)이다.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는 앞의 책, 37쪽 참조.

③ 새로운 증서는 원래의 증서를 대체한다.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내용과 기재사항도 모두 다시 기재한다. 또한 원래의 증서에는 대체한 것을 기재한다.

제132조의 1 ① 퀘벡에 주소를 가진 자가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퀘벡에서 내린 판결, 퀘벡에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결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퀘벡에서 입양의 효력을 가지고 신분등록관에게 송부된 기타의 증서에 기초하여 민사신분등록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의 서기는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증서를 첨부하여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게 되면 바로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판결을 송부한다.

③ 법원의 서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소를 가진 자의 입양에 관한 법’¹⁷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증명서를 민사신분등록관에게도 송부한다.

④ 보건복지사회부장관은 ‘자의 보호와 국제입양의 협력에 관한 조약의 시행을 위한 법’에 의하여 자기에 교부된 외국의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와 자를 위하여 선택한 성명을 포함한 신고서를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이 법의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에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에 의하여 작성한 입양의 변경을 확인하는 증명서도 송부한다.

제133조 사망을 확인하는 판결이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된 경우에 그 신분등록관은 사망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판결에 일치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134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출생증서에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증서를 부기할 수 있다. 신분등록관은 출생증서, 혼인증서 또는 민사결합증서에 사망증서를 부기할 수도 있다.

② 이 부기는 전산화된 등록부의 등본에[도] 한다.

제135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이혼을 신고하는 판결의 통지에 의하여 당사자 각자의 출생증서와 혼인증서의 전산화된 등록부에 판결의 부기를 하여야 한다.

②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공증된 공동신고 또는 판결의 통지에 의하여 신분등록관은 출생증서와 민사결합증서의 전산화된 등록부에 그 신고나 판결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들이 이미 민사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혼인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신분등록관은 당사자 각자의 민사결합증서의 전산화된 등록부에 신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무효로 신고하거나 사망의 확인판결을 무효화하는 판결의 통지에 의하여 신분등록관은 혼인증서, 민사결합증서 또는 사망증서를 무효화¹⁷¹⁾하고 전산화된 등록부에는 등록부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를 한다.

제136조 ① 판결에 의하여 민사신분등록관이 증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에 신분등록관은 그 증서에 판시사항과 판결일자, 판결을 내린 법원과 판결번호를 기재한다.

② 기타 경우에는 증서에 대하여 변경된 증서로 회복을 하는 것에 필요한 기재를 한다.

170) 원래의 명칭은 Act respecting adoptins of children domicil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S.Q., c. A-7.01)이다.

171) 원문은 cancel, annuler로서 ‘증서를 취소(무효화)’하는 것이다. 기재사항의 말소라고 할 수도 있다.

제137조 ① 퀘백 외에서 작성되었지만 퀘백에 주소를 가진 자에 관하여 작성한 신분증서의 수리에 의하여 민사신분등록관은 퀘백에서 작성한 증서와 같이 등록부에 그 증서를 삽입한다.

② 신분등록장관은 자기가 보관하는 증서를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증서가 퀘백 외에서 작성된 법률문서도 삽입한다. 그 후에 전산화된 등록부에는 등록부의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를 한다.

③ 등록부에 삽입하더라도 민사신분증서를 포함하여 퀘백 외에서 작성된 법률서류는 공문서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다만 퀘백의 법원에 의하여 그 효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분등록관은 이러한 증서에 관한 등본,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 퀘백 외에서 작성한 민사신분증서 또는 법률서류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등록의) 행위를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퀘백법원에 의하여 그 문서의 효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퀘백 외에서 작성된 민사신분증서가 분실되거나 멸실되거나 또는 그 등본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신분등록관은 민사신분증서를 작성하거나 그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증서에 기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퀘백 외에서 작성된 민사신분증서와 법률문서가 프랑스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퀘백에서 인증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목 증서와 등록의 정정과 재작성

제141조 ① 본 절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만 민사신분증서의 정정이나 등록부에 추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민사신분증서에 관한 민사신분등록관의 결정을 어느 것이나 재심할 수 있다.

제142조 민사신분등록관은 모든 증서에서의 기재상의 오기¹⁷²⁾를 정정할 수 있다. 정정은 전산화된 등록부에 기재한다.

제143조 취득한 정보에 의하여¹⁷³⁾ 민사신분등록관은 민사소송법전에 의하여 분실되었거나 멸실된 증서를 재작성한다.

제5관 신분등록의 공시

제144조 ① 민사신분등록부는 민사신분등록관의 확인필과 교부일이 있는 증서,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등본의 교부에 의하여 공시된다.

172) 프랑스어는 ‘단순한 기재상의 오기’(erreur purement matérielles)이다.

173) 프랑스어는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foi)에 의하여’이다.

② 본 조에 의하여 교부된 민사신분증서, 증명서와 확인서의 등본은 정본으로 한다. 다만 제137조가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 민사신분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모든 내용을 그 전체로 복제하는 것이고 이에 그 증서에 한 변경과 같은 부기를 포함하지만 사람의 신분의 확인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① 민사신분증서의 증명서에는 그 사람의 성명, 성별, 출생한 곳과 일자를 기재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한 곳과 일자를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이나 민사결합을 한 장소와 일자, 배우자의 성명도 기재한다.

② 민사신분등록관은 하나의 증명된 사실에 관한 기재사항만을 포함하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민사결합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도 교부할 수 있다.

제147조 확인서는 등록부에 증서 또는 법률이 증서에 할 것을 요구한 기재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제148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증서에 기재된 자나 이해관계가 증명된 자에 대하여만 증서의 등본이나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분등록관은 증서의 등본이나 증명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신분이나 이익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분등록관은 그로 증명할 기재사항이나 사실이 증명서에 기재된 것이면 청구를 한 모든 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를 그 이해관계가 증명된 자에게만 교부한다.

제149조 ① 새로운 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서에 기재된 자만 원래의 증서의 등본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입양의 경우에는 원래의 증서의 등본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다른 요건이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서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를 증명한 자만이 무효가 된 증서의 등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0조 ① 민사신분등록부는 민사신분등록관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다.

② 신분등록관이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6관 민사신분등록부의 내용과 공시에 관한 보충규정¹⁷⁴⁾

제151조 ① 민사신분등록관은 부재이거나 행사에 방해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를 대신하기 위하여 직원 중 1인 이상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분등록관은 그 직무의 일부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4) 원문은 regulatory powers, pouvoirs réglementaire(조정의 권한)이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명과 위임은 서면에 의한다. 이는 신분등록관의 서명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지명과 위임의 증서는 ‘퀘백관보’에 공시한다.

③ 증명서나 신고서에 표시될 수 있는 된 보충적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 증서성서 또는 화긴서의 교부에 비용 및 증서의 작성과 변경이나 등록부의 열람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52조 ① 크리족, 이누잇족 또는 나스카비족의 사회에서 ‘크리족, 이누잇족과 나스카비족 원주민에 관한 법’¹⁷⁵⁾에 의하여 지명된 지방등록관이나 기타 공무원은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민사신분등록의 일정한 직무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정부와 모호족 사회의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의 범위에서 민사등록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거행한 혼인식에 관한 정보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출생, 혼인이나 사망에 관한 신고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전통적인 성명의 등록부에 대항 등록을 위한 특별한 절차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지명한 자와 협력한다.

제4장 사람의 능력

제1관 성년과 미성년

제1관 성년

제153조 ① 성년이 되는 연령¹⁷⁶⁾은 18세로 한다.

② 사람은 성년에 달하면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되고 모든 민사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제154조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보호감독의 개시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자의 능력에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제2관 미성년

제155조 미성년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민사권리를 행사한다.

제156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고용이나 예술 또는 직업에 관한 모든 행위에서 성년으로 본다.

제157조 ① 미성년자는 연령과 판단능력¹⁷⁷⁾을 고려하여¹⁷⁸⁾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필요를

175) 원명은 Act respecting Cree, Inuit and Naskapi, Lois relatives aux autochtones cris, inuit et naskapis이다.

176) 영어는 full age or the age of majority이다.

177) 우리 법에서는 ‘변식력’이라고 하기도 한다.

178) 영어는 ‘연령과 판단능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within the limits imposed by his age and power of discernment)이다.

충족하기 위하여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8조 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사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한다.

② 법률이나 행위의 성질에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는 행위는 그 대리인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 ① 후견인이 재판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소송은 후견인의 이름으로 제기한다.

② 하지만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신분, 친권의 행사 또는 자가 단독으로 할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로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다.

제160조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와 미성년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을 항변으로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61조 법률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162조 행위의 성질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은 것을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제163조 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 또는 행위의 성질상 후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후견인이 이것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그 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4조 ① 예견하지 아니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는 무효 또는 채무의 감액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는 자기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계약 외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제165조 미성년자는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 그의 무효 또는 채무의 감액의 소를 감액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성년이 된 미성년자¹⁷⁹⁾는 대리하여야 할 미성년일 때에 그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후견의 계산의 종료 후에 그 후견인이 모든 요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다.

제3관 친권해방

179) 영어는 '성년에 도달한 때에'(on attaining full age)이다.

제1목 일반해방

제167조 ① 후견인은 후견회의 동의를 얻어 공익보좌인에게 친권해방을 청구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이러한 목적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에 의하여 그를 친권해방할 수 있다.

② 친권해방은 신고서의 접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168조 ① 법원도 후견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회의 의견도 들은 후에 미성년자를 친권해방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친권해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9조 후견인은 친권해방된 미성년자에게 관리에 대하여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무상으로 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0조 친권해방으로 미성년이 종료하지 아니하고 성년으로 인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자기의 민사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대리할 의무를 면한다.

제171조 친권해방된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정할 수 있고 부모의 친권에 있지도 아니한다.

제172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친권해방된 미성년자는 단순한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재산을 현저하게 해하지 아니하면 그 권한¹⁸⁰⁾에 따라 그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제173조 ① 친권해방된 미성년자는 단순한 관리행위를 넘어 모든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부담이 있는 증여를 승낙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② 협력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면 무효로 하거나 그 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4조 친권해방된 미성년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과다한 금액의 대출이나 차입을 하고 부동산이나 영업의 양도행위는 후견인의 의견을 받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로 하거나 그로 인한 채무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목 완전해방

제175조 ① 완전해방은 혼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법원은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완전해방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친권자, 후견인과 모든 미성년자의 후견¹⁸¹⁾을 하는 자와 필요한 경우에 후

180) 영어는 means, facultés이다.

견회도 소환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6조 미성년자는 완전해방에 의하여 성년자와 동일하게 그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미성년자의 후견

제1관 후견

제177조 후견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인신의 보호, 재산의 관리 및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민사권리의 행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78조 ① 미성년자의 후견에는 법정후견과 선임후견이 있다.

② 법정후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선임후견은 부모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것이다.

제179조 후견은 인적 직무¹⁸²⁾로 민사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 직무에 적당한 모든 자연인이 할 수 있다.

제180조 누구도 선임후견의 승락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자가 없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국장이나 재산의 후견에 대하여 공익보좌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 후견인의 상속인은 후견업무를 상속하지 아니한다. 그 상속인은 후견인의 관리의 무만 부담한다. 성년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후견인이 지명될 때까지 후견인의 관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제182조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공익보좌관이 하는 후견은 직무에 부가된다.

제183조 ① 부모,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그가 추천한 자는 무상으로 후견을 한다.

② 다만 그 자의 재산관리가 부모의 주된 직업인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84조 지명된 선임후견인은 후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법원 또는 그를 선임한 부모 또는 그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의 청산인에 의하여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후견의 비용과 관리할 재산의 수익을 고려한다.

제185조 후견은 미성년자의 인신이나 재산에 한다. 다만 분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미성년자의 인신에 대한 후견을 부모 이외의 자가 후견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친권

181) 원문은 garde, custody이다.

182) personal office, charge personnelle이다.

자로서 행위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7조 인신에 대하여 후견인은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지만 재산에 관하여는 수인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8조 ① 재산에 관한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인신에 관한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다.

② 재산에 대하여 수인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각자는 자기에게 위탁된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89조 법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재산에 대한 후견인으로 행위할 수 있다.

제190조 미성년자가 그 후견인과 소송에서 다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후견인이 선임된다.

제191조 ① 후견할 장소는 미성년자의 주소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공익보좌관이 후견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할 장소는 그 직무를 하는 장소로 한다.

제2관 법정후견

제192조 ① 부모는 친권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 외에 성년이거나 친권해방된 경우에 민사권리의 행사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그를 대리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당연히¹⁸³⁾ 후견인이 된다.

② 부모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포태한 자에 대하여도 후견인이 되고 재산적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자를 위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다.

제193조 부모는 공동으로 후견한다. 다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 ①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후견의 행사에 관한 행위에서 자기를 대리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위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95조 자의 관리가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후견은 부모가 계속하여 행사한다. 다만 법원이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 ① 부모 사이에서 후견의 행사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부모 각자는 법원에 해결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회의의 의견을 얻

183) 영어는 of right이지만 프랑스어는 de plein droit이다.

은 후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다.

제197조 친권의 상실로 후견도 상실한다. 다만 친권의 일부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가 상실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후견을 상실한다.

제198조 친권의 상실이나 친권의 일부 권한의 상실로 후견을 상실한 부 또는 모가 다시 완전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선임후견이 개시된 후에도 후견인으로 재인정될 수 있다.

제199조 ① 법원이 다른 후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한 경우에 자가 거주하는 곳의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 직권으로 자의 법정후견인이 된다. 다만 자에게 이미 부모 이외의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은 교체의 명령¹⁸⁴⁾이 있을 때까지는 자의 법정후견인으로 입양적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입양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다른 후견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선임후견

제200조 부 또는 모는 유언 또는 그 위임인의 무능력을 예견하고 한 위임 또는 이러한 취지로 공익보좌관에게 한 신고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1조 ① 후견인을 선임할 권리는 최후에 잔존한 부 또는 모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사망한 날에 그 부 또는 모가 법정후견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견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부 또는 모에게 귀속한다.

②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정 중에 후견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하고 각자가 다른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그들 쌍방이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법원이 누가 이를 행사할지를 결정한다.

제202조 ① 선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부 또는 모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은 그 승락한 때로부터 직무에 들어간다.

② 후견인에 선임된 자는 그 선임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무를 거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을 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3조 부 또는 모가 선임한 후견인이 직무를 승낙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청산인 과 공익보좌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4조 ① 부모 일방이 선임한 자가 후견을 거절한 경우에 그 체임자(替任者)¹⁸⁵⁾에게 거절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체임자가 취임을 승낙하기 전이나 후견의 개시가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한번 거절한 자는 거절을 철회할 수 있다.

184) ordonnance de placement, order of placement이다.

185) 원어는 son remplaçant, his replacement이다.

제205조 ① 법원이 후견을 선임또는 개입하거나 또는 특별후견인이나 재산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의 선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후견이 부여¹⁸⁶⁾된다.

② 후견회의의 의견을 들어 후견을 부여한다. 다만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 미성년자,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근친¹⁸⁷⁾과 공익보좌관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인¹⁸⁸⁾은 법원에 후견을 승낙하고자 하는 적당한 자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다.

제207조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그가 후견인으로 추천한 자는 후견인이 없는 고아인 미성년자 또는 부와 모가 사실상 보호, 양육 또는 교육하는 것을 포기한 자 또는 부모에게 반환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관 후견의 감독

제208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단순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제2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관리를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고 후견회나 법원의 의견이나 허가를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 ① 제3자가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은 모두 후견인의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증서에 재산의 특별한 관리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자는 재산에 관한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11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 단독으로 증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후견회의의 허가가 없으면 수령할 수 없다.

제212조 후견인은 후견회의의 허가가 없으면 화해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3조 ①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중요한 차재, 재산의 담보설정, 가족재산, 부동산이나 기업의 중요한 부분의 양도 또는 미성년자의 공유부동산¹⁸⁹⁾의 종국적 분할의 신청 전에 후견인은 후견회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재산이나 담보의 가치가 25,000 달러를 초과하

186) 원어는 conferred,déférée이다.

187) 프랑스어는 ‘미성년자의 근친인 혈족과 인척’이다.

188) 영어는 ‘미성년자에 혼인과 민사결합에 의하여 연결된 자’이다.

는 경우에는 후견회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후견회 또는 법원은 차재를 허용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교육과 양육의 필요, 채무의 변제 또는 재산을 양호하게 유지하거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허가에는 차재한액, 기한과 조건, 양도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재산과 그 조건을 표시한다.

제214조 ① 후견인은 전문가의 평가 없이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건전한 것으로 추정된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주식거래에 의하여 정한 것을 거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서의 등본은 연차관리보고에 첨부한다.

② 그 성질, 목적과 기간에 의하여 관련된 법률행위는 1개의 동일한 행위로 한다.

제215조 ① 후견인은 단독으로 계속하여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합의의 기간을 묻지 아니하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1년 내에 그 합의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② 후견회와 법원이 허가된 합의는 성년이 된 미성년자에게 구속력이 있다¹⁹⁰⁾.

제216조 법원의 서기는 미성년자의 재산의 이익에 관한 판결과 후견인이 그 신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에서 한 화해는 어느 것이나 지체 없이 후견회와 공익보좌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17조 미성년자가 상속 또는 수유한 상속재산의 청산인, 미성년자가 수유한 재산의 증여자 또는 미성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재산의 가액이 25,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재산의 가액을 후견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8조 후견인은 후견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금액을 그의 관리를 받는 재산에서 공제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그러하다. 미성년자의 양육과 교육을 하기 위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대하여 보충¹⁹¹⁾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9조 ① 인신에 대한 후견인은 후견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매년 필요한 액에 대하여 재산에 관한 후견인과 합의한다.

② 후견인이 액과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회가 정하고 후견회가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

제220조 ① 미성년자는 자기의 노동의 결과와 일상적인 통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급된 용돈¹⁹²⁾에 대하여 관리한다.

189) 원문은 ‘불분할의 공동소유’(undivided co-ownership)이다.

190) 원문은 영어는 is binding, 프랑스어는 lie이다.

191) 이에 대하여는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59쪽 참조.

192) 원어는 allocation, allowance로 ‘수당’의 의미이지만 ‘용돈’으로 하였다.

② 미성년자의 수입이 상당한 경우나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후견인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미성년자가 관리할 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그 양육과 교육의 일반적 조건 및 그와 그 부모의 부양 의무를 고려한다.

제221조 ① 후견을 할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이를 위하여 추천된 자는 법률이 후견인이 행하기 위하여 후견회의 의견이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하지만 재산의 가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또는 법원이 이를 명하는 모든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후견이 공익보좌관에게 위탁하고 이 공익보좌관은 그때로부터 선정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후견회

제1목 후견회의 임무와 구성

제222조 후견회는 후견을 감독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후견회는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결합된 자와 친구에 의한 회의에서 지정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원은 후견회를 1인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3조 ① 후견회는 선정후견이나 법정후견의 어느 경우에도 둔다. 다만 법정후견의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목록의 작성, 담보의 제공이나 또는 연례관리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청소년보호국의 국장, 그가 후견인으로 추천한 자 또는 공익보좌관이 후견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회를 두지 아니한다.

제224조 ① 이해관계인은 모두 미성년자가 주소나 거소를 둔 곳의 공증인이나 법원에 대하여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결합된 자 또는 친구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청구하여 후견회의 설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후견인이나 후견회의 선임이나 개임의 청구를 심사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225조 ①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로부터 선임된 후견인 또는 부모는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회의 설치를 발의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그 선택에 의하여 친척,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와 친구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지명한 1인으로 구성된 후견회의 설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제226조 ① 미성년자의 부모 및 퀘벡에 알려진 거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존속과 성년의 형제자매는 후견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와 친구에 의한 회의에 소집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의 다른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와 친구는 그들이 성년이면 회의에 소집될 수 있다.

③ 회의에는 5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모계와 부계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227조 소집되어야 하는 자는 언제든지 제1차 회의¹⁹³⁾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제228조 ① 회의는 3인의 후견회의 위원을 2인의 보조자를 선임하고 이에 가능한 한 부계와 모계의 대표를 고려한다.

② 회의는 후견회의 위원인가를 불문하고 심의의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을 위하여 1인의 서기를 선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기의 보수를 정한다.

제229조 결원은 후견회에 의하여 결원이 생긴 친계에 속한 이미 선임된 보조자를 선정하여 보충한다. 보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친계에 속한 친족이나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 중 1인을 선정하고 그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 또는 친구 중 1인을 선정한다.

제230조 후견회는 모든 회의에 후견인의 의견을 등기 위하여 그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도 출석을 할 수 있다.

제231조 ① 가족 구성원의 원격지의 거주나 무관심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출석의 불가능이나 미성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족의 사정으로 인하여 3인으로 된 후견회를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1인으로 후견회의 설치를 정할 수 있다.

②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입증한 자를 선임하고 그러한 자가 없고 이미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나 공익보좌관을 선임한다.

③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결합된 자와 친구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노력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를 한 자에게 사전에 회의 소집을 청구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2조 ① 청소년보호국의 국장과 공익보좌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후견회의 위원이 되는 것의 승낙을 강제할 수 없다. 위원이 되는 것을 승낙한 후에도 부적절한 시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후견회의 위원은 개인적인 직무로 하고 무상으로 한다.

제2목 후견회의 권리와 의무

제233조 ① 후견회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193) 프랑스어는 ‘설치를 위한 회의’(assemblée de constitution)이다.

② 또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가 행위에 동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담하여야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후견회는 수익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¹⁹⁴⁾행위한다.

제234조 ① 3인으로 된 후견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 모두가 서로 다른 자에게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심의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 각자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35조 미성년자와 후견인과 재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견회는 그에게 특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36조 ① 후견회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견회는 후견인으로부터 연례관리보고서를 수령하고 그 보고서에 첨부한 모든 문서와 서류를 검사하고 그 등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237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후견회의 결정을 10일 내에 그 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하거나 새로운 후견회의 설치를 발의할 것을 허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8조 후견인은 후견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단독으로 행위할 것의 허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9조 모든 서류는 후견회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후견이 종료하면 미성년자나 그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제6관 후견감독의 방법

제1목 재산목록

제240조 ① 후견개시한 후 60일 내에 후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견개시 후에 미성년자에게 귀속한 재산도 같다.

② 재산목록의 등본은 공익보좌관과 후견회에 교부한다.

제241조 후견인이 결산서의 작성 후에 다른 후견인의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에 재산목록의 작성은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2목 담보

194) 프랑스어는 au nom du(이름으로)이고 영어는 'on behalf of'이다.

제242조 ① 관리할 재산의 가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담보의 종류, 목적과 담보를 제공할 기간은 후견회가 정한다.

② 담보의 비용은 후견비용으로 한다.

제243조 ① 후견인은 후견회와 공익보좌관에게 지체없이 담보의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은 그 직무를 하는 동안에 그 담보를 유지하거나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매년 그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4조 재산에 대하여 관리하는 법인은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제245조 담보의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 후견회 또는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이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의 비용으로 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의 통지는 공익보좌관에게 한다.

제3목 보고와 계산

제246조 ① 후견인은 연례관리보고서를 14세 이상인 미성년자, 후견회와 공익보좌관에게 제출한다.

② 재산에 관한 후견인은 연례관리보고서를 인신에 관한 후견인에게 제출한다.

제247조 후견이 종료할 때에 후견인은 성년이 된 미성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자기를 대신하는 후견인과 14세 이상인 미성년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의 청산인에게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그 최종보고서의 등본을 후견회와 공익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8조 후견인과 성년이 된 미성년자의 사이의 관리 또는 계산에 관한 합의는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상세한 계산서가 작성되고 관련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9조 ① 공익보좌관은 후견인의 관리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검사한다. 담보의 유지도 확인한다.

② 공익보좌관은 계산에 관한 모든 문서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관 후견인의 개임과 후견의 종료

제250조 선정후견인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사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적당한 시간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후견회에 통지되었어야 한다.

제251조 ① 후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후견회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 중의 1인이 그 후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신에 관

한 후견인은 재산에 관한 후견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행위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좌관을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나 제1항에서 사유에 의하여 후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252조 청소년보호국의 국장, 그가 추천한 자 또는 공익보좌관이 후견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아닌 사유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3조 재판의 계속 중에 후견인은 그 직무를 계속 행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것을 정하고 미성년자의 재산의 단순한 관리를 위해 임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4조 후견인의 의무를 종료하는 판결은 개임의 사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55조 ① 후견은 미성년자의 성년의 도달, 완전한 친권해방의 취득이나 또는 사망한 때에 종료한다.

② 후견인의 직무는 후견이 종료한 때, 후견인이 개임한 때 또는 그 사망으로 종료한다.

제3절 성년자의 보호감독¹⁹⁵⁾

제1관 총칙

제256조 ① 성년자의 보호감독은 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다. 성년자의 보호감독은 인신의 보호, 그 재산의 관리와 일반적으로 민사권리의 행사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호감독에 의한 무능력은 해당 보호를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인정된다.

제257조 ① 보호감독의 개시나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관한 결정은 모두 성년자의 이익, 그 권리의 존중과 그 자율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년자에게 가능한 한 지체없이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8조 ① 자기를 보호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성년자를 대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나 보좌인을 두고 그 성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인을 둔다. 특히 그 의사를 표시할 정신능력이나 신체능력이 침해하는 질병, 미약이나 연령으로 인한 노약으로 인한 경우가 그러하다.

②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의 복리를 위험하게 낭비자에 대하여도 후견인이나 보조인을 둘 수 있다.

195) 프랑스어는 ‘성년의 보호제도’이고 영어는 ‘성년자의 보호감독’(protective supervision of persons of full age)이다.

제259조 보호감독의 방법의 선택에는 그 자가 자기를 보호하거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무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60조 ①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인이나 보좌인은 그 관리나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 보호를 받는 자의 조건, 그의 필요와 능력 및 그가 처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물질적 복리를 확보할 책임도 있다.

② 후견인 또는 보좌인은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대한 관리와 양육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와 위임을 받은 자는 가능한 한 그 보호를 받는 자와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1조 공익보좌관은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보좌나 후견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년자에게 더 이상 보좌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공익보좌관은 직권에 의하여 행위할 수도 있다.

제262조 공익보좌관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63조 ① 공익보좌관은 후견인 또는 보좌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대하여 관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누구도 관리할 자가 없어 법원이 공익보좌관에게 관리를 위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보좌관은 어느 경우나 그 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② 그러나 관리가 위탁된 자는 성년자의 건강상태를 보아 필요한 치료에 대한 동의를 할 후견인이나 보좌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보좌관이 제공할 것을 선택한 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①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후견인이나 보좌인으로 행위하는 공익보좌관은 성년자가 보건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종업원이어서는 안되고 그로 인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후견 또는 보좌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그가 지정한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설의 종업원이 그 성년자의 배우자이거나 근친인 경우 또는 위임된 직무가 공익보좌관의 지시에 의하여 그 매월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면 공익보좌관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

② 공익보좌관은 성년자의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한 치료에 동의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익보좌관이 제공할 것을 선택한 치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5조 위임을 받는 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익보좌관에게 관리의 행사에 관한 보고한다. 공익보좌관은 위임을 받은 자와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사이에서 이익이 상반되거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제266조 ① 성년자의 인신에 관한 후견과 보좌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에 따라 제226조에 의하여 친족,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 및 친구에 의한 회의에 소집되어야 할 자에 성년자의 배우자와 1촌의 비속을 추가한다.

제267조 공익보좌관이 보호감독의 개시나 재심을 청구하고 친척,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 또는 친구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법원은 그 회의의 개최되지 아니하여도 진행할 수 있다.

제2관 보호감독의 개시¹⁹⁶⁾

제268조 ① 보호감독의 개시는 법원이 이를 선고한다.

② 법원은 그 청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청구에서 요청한 방법과 다른 보호감독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9조 성년자 자신, 그 배우자, 근친과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결합된 자, 그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한 자 또는 기타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성년자 또는 공익보좌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수임인을 포함하여 보호감독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0조 ① 보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료나 서비스를 받은 성년자가 그 격리, 예견 가능한 기간의 무능력, 그의 사무의 성질이나 상태 또는 그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수임인이 그에게 상당한 보조나 대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민사권리의 행사에 보조나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보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익보좌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등본을 그 성년자에게 교부하고 그 근친 중 1인에게 통지한다.

② 통지에는 특히 성년자를 검사한 자가 작성한 의료평가와 심리사회학적 평가를 첨부한다. 통지에는 그 성년자의 무능력의 성질과 정도, 그 필요한 정도와 기타의 요건의 사정 및 그에 대한 보호감독의 개시의 타당성을 기재한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성명도 기재한다.

제271조 ① 성년자의 보호감독의 개시는 그가 성년에 달하기 1년 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판결은 그 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72조 ① 법원은 소송의 계속 중에 성년자가 자기를 위하여 보호를 할 수 없어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후견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그 후견을 정할 수 있고 이는 직권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호감독의 개시의 청구가 긴급한 것이고 그 성년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개시 전이라도 그 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그 민사권리의 행사를 대리하기 위하여 공익보좌관이나 기타의 자를 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3조 ① 성년자가 재판개시 전에 타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행위는 소송의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위탁을

196) 보호감독의 성립, 보호제도의 개시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년자 또는 제444조에 의한 법원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공익보좌관과 보호감독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타의 자는 누구나 긴급한 경우에 소송 전이라도 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하면 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4조 위임이나 사무관리가 없는 경우에 보호감독의 개시의 청구가 긴급한 것이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은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단순한 관리의 범위 내에서 그 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보좌관 또는 기타의 자를 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5조 ① 보호감독의 방법이 후견인 경우에 소송 중이거나 그 후에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주거와 그 내부에 있는 동산¹⁹⁷⁾은 그가 처분할 수 있다.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일시적 이용에 관한 약정만을 허용하고 보호를 받는 성년자가 회복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정지한다.

② 그 동산이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후견회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념물과 기타 개인물품¹⁹⁸⁾은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이는 가능한 한 보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의하여 그 성년자가 처분하는 것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276조 ① 법원이 보호감독의 개시의 청구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후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집된 자의 의견을 듣는 외에 의학적 증거와 심리사회학적 증거, 성년자가 그의 무능력을 예상하기는 하였지만 공증되지는 아니한 위임에 의하여 표시한 의사 및 보호제도가 신청된 성년자의 자아결정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원은 성년자 본인으로부터¹⁹⁹⁾ 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를 통하여 청구의 근거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감독의 방법과 그를 대리하거나 보조할 자에 대하여 그 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7조 보호감독에 관한 판결은 언제든지 이를 재심할 수 있다.

제278조 ① 보호감독은 후견의 경우에는 매3년마다 하고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후견의 경우에는 매5년마다 재평가한다. 다만 법원이 이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은 적당한 시기에 그 성년자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사회심리학적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를 하는 자가 성년자의 사정이 보호후견을 종료하거나 변경을 인정할 할 정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성년자와 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고하고 법원의 서기에 그 보고서의 등본을 접수한다.

197) 프랑스어는 meubles이고 영어는 furniture(가구)이다.

198) 프랑스어는 objet à caractère personnel이고, 영어는 personal effects이다.

199) 원문은 personnellement, personally(개인적으로)이다.

제279조 성년자에게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감독을 인정한 무능력이 중단된 경우에 법원의 서기에게 접수하는 보고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²⁰⁰⁾ 의학적 평가와 사회심리학적 평가를 포함한다.

제280조 보호감독의 재심에 관한 보고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 서기는 보호감독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한다.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보호감독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²⁰¹⁾ 변경되거나 종료한다. 서기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성년자 본인과 공익보좌관에게 교부한다.

제3관 성년자의 후견

제281조 ① 성년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부존재하여 민사권리의 행사의 대리를 요하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법원은 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을 개시한다.

② 이 경우에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한다.

제282조 후견인은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완전하게 관리한다. 다만 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의 단순한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확실하다고 추정되는 투자만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관리에는 타인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283조 후견을 받는 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무효이거나 그로 인한 채무를 감액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84조 후견 전에 한 행위는 행위를 할 때에 무능력이 현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하거나 그로 인한 채무를 감액할 수 있다.

제4관 성년자의 보좌

제285조 ① 성년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부존재하여 민사권리의 행사의 대리를 요하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성년자에 대하여 보좌를 개시한다.

② 이 경우에 법원은 인신과 재산에 대한 보좌인 또는 인신에 대한 보좌인이나 재산에 대한 보좌인을 각각 선임한다.

제286조 보좌인은 그 재산의 관리에 무능력인 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단순한 관리만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 보좌인은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다만 법원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 프랑스어에는 ‘특히’(entre autres)가 있다.

201) 프랑스어는 ‘당연히’(de plein droit)이고 영어는 ‘without other formality’이다.

제287조 미성년자의 민사권리의 행사에 관한 규정이 후견을 받는 성년자에게 준용된다.

제288조 ① 법원은 보좌를 개시한 때 또는 그 이후에 보좌를 받는 성년자의 능력의 정도를 정할 수 있고 이에는 의학적 평가와 정신심리학적 평가와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회나 후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집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② 법원은 이 경우에 보좌를 받는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보좌인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대리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89조 보좌를 받는 성년자는 그 노동의 결과의 관리에 대한 것을 보유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정함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 보좌 전에 한 행위는 행위를 할 때에 무능력이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거나 이로 인한 채무를 감액할 수 있다.

제5관 성년자의 보조

제291조 성년자가 일반적이고 영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또는 일시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보조되거나 의견을 받을 것을 요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한다.

제292조 보조인은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에게 보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행위에 개입할 수 있다.

제293조 ① 법원은 보조의 개시 또는 그 이후에 보조에 의한 보조가 필요한 행위와 보조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지정한다.

② 법원이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성년자는 단순한 성년해방이 된 미성년자의 능력을 넘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보조인이 보조하여야 한다.

제294조 보조인의 보조를 요함에도 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그 성년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하거나 이로 인한 채무를 감액할 수 있다.

제6관 보호감독²⁰²⁾의 종료

제295조 ① 후견보호는 해제판결이나 보호를 받는 성년자의 사망에 의함 종료된다.

② 보호후견은 무능력의 정지를 확인하는 보고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도 종료한다.

제296조 보호를 받고 있는 성년자는 보호감독의 해제 후 및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이나 보좌인에 의한 계산의 제출 후에 언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행위를 추진할 수 있

202) 보호제도

다.

제279조 ① 후견인, 보좌인이나 보조인의 부존재로 인하여 보호감독은 종료하지 아니한다.
② 부존재의 경우에는 후견회는 새로운 후견인이나 보좌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인도 누구나 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보조인의 선임도 같다.

제5장 법인

제1절 법인격

제1관 법인의 설립과 종류

제298조 ①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다.
② 법인에는 공법상의 법인²⁰³⁾과 사법상의 법인이 있다.

제299조 ① 법인은 법률이 정하는 법적 형식에 의하여 설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설립되기도 한다.
② 법인은 공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법의 효력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이나 법률이 정한 때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때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300조 ① 공법인은 주로 법인이 설립된 특별법과 그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법인은 주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② 공법인과 사법인은 모두 그 법률의 규정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본 법전에 의하여 규율된다. 특히 법인으로서의 지위, 법인의 재산이나 다른 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그러하다.

제2관 법인격의 효력

제301조 법인은 완전한 민사권리를 향유한다.

제302조 법인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이나 출연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가진다²⁰⁴⁾. 법인은 그 성질로 인한 비재산적 권리와 의무도 가진다.

제303조 ① 법인은 모든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능력이 있고 자연인에 의한 민사권리의 행사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법인은 그 성질이나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능력의 제한²⁰⁵⁾을 받지 아

203) 영어는 '공익을 위하여'(in the public interest)과 '사익을 위하여'(for a private interest) 성립된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랑스어는 공법상(de droit public)과 사법상(de droit priv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2항의 용어의 문언에는 중요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80쪽 참조; 이러한 용어는 제299조 제2항, 제300조 제1항에서도 그러하다.

204) 프랑스어는 '재산의 권리자'(주체)(titulaires d'patrimoine)이다.

니한다.

제304조 ① 법인은 인신에 관한 후견이나 보좌를 할 수 없다.

② 하지만 법인은 법률이 그러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에 대한 후견인이나 보좌인의 직무를 담당하거나 상속재산의 청산인, 계쟁물의 수치인, 다른 법인의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305조 ① 법인은 설립한 때에 그에 부여된 성명을 가지고²⁰⁵⁾ 그 성명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법인의 성명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가진 법적 형식을 명시하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6조 법인은 자기의 것이 아닌 성명으로 행위하거나 자신을 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법적 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이러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의하여 법인등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의 공동소유자의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그러한 통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07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위치와 주소로 한다.

제308조 법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9조 법인은 그 사원²⁰⁷⁾과 별개의 것으로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률이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자신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제310조 ① 법인의 직무, 법인의 재산관리와 활동은 법률, 설정행위와 정관에 의하여 규율한다.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법인의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규율할 수도 있다.

② 설정행위와 정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행위가 우선한다.

제311조 법인은 이사회와 사원의 총회와 같은 기관에 의하여 행위한다.

제312조 법인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대표하고 그 대표이사는 법률, 설정행위 또는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제313조 법인의 정관은 법인과 그 사원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한다.

제314조 법인은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법률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5) 원어는 incapacités, incapacities(둘다 무능력)이다.

206) 프랑스어는 ‘;’로 하여 2문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는 and로 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207) 원문은 membre, member로서 ‘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법의 용례에 따라 ‘사원’(제35조 제2항, 제40조 제6호, 제42조, 제56조, 제73조, 제275조 등)으로 하였다.

제315조 법인의 사원은 법인에 대하여 그들이 약정한 출자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 법인에 관하여 사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에서 발기인, 이사, 대표이사 또는 문제된 행위에 참가하였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법인의 사원에 대하여 법인이 입은 손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7조 법인은 그 법인격을 사기, 권리의 남용이나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18조 법원은 선의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나 단체가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것으로 행위한 법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할 수 있다.

제319조 ① 법인은 설립 전에 그를 위하여 한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추인은 갹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위한 자는 그 후에 법인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320조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그를 위하여 행위한 자는 그 약정에 의한 채무에 구속된다. 다만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고 법인이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효력의 정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이사의 의무와 결격

제321조 이사는 법인의 수임인으로 본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률, 설정행위 또는 정관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에 따라야 하고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여야 한다.

제322조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²⁰⁸⁾로 행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충실하게 행위하여야 한다.

제323조 이사는 법인의 재산과 그 자기의 재산을 혼동할 수 없고 법인의 재산이나 그 직무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를 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법인의 사원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4조 ① 이사는 그의 개인적 이익과 이사로서의 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를 이익충돌의 상황에 자신을 둘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가 가진

208) 원문은 각각 avec prudence et diligence, with prudence and diligence이다.

이익과 그가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성질과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익충돌의 통지는 이사회 회의에 의한 의사록이나 그에 상당한 것에 기재한다.

제325조 ① 이사는 모두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전 항에서 정한 취득이나 계약을 법인에 통고하여야 하고 이에 그는 그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과 가액을 기재하고 이사회 회의의 의사록이나 그에 상당한 것에 그 사실을 기록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그 문제에 관하여 그 이사는 토론하거나 표결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 규정은 이사의 보수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 ① 법인의 이사가 취득이나 계약에 대하여 정확하고 지체없이 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법인 또는 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조치 중에서 그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이사에게 계산을 하여 취득한 이익이나 수익을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취득이나 계약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²⁰⁹⁾.

제327조 ① 미성년자, 후견이나 보좌를 받는 성년자, 파산자와 법원에 의하여 이러한 직무를 금지한 자는 이사로서 그 직무에 대하여 결격자가 된다.

② 하지만 미성년자와 보좌를 받는 성년자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그들에 관한 것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제328조 이사 또는 임원의 행위는 그들이 결격이고 그 선임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제329조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에 관한 문제에서 사기나 불성실을 포함한 범죄행위의 유죄로 확정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법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330조 ① 금지는 가장 최후의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금지에 관계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붙여 해제할 수 있다.

제4관 법원에 의한 법인격의 부여²¹⁰⁾

제331조 ① 설립 전에 공연하고 계속적이며 명시적으로 법인의 모든 외관을 가지고 사원이거나 제3자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그러한 것으로 행위한 법인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법원에

209) 프랑스어는 ‘1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doit être intentée dans l'année)이다.

210) 원어는 judiciaire, judicial로서 ‘사법에 의한’, ‘사법적인’의 의미이다.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될 수 있다.

② 그 설립에 관하여 원래 통제를 하는 주무관청이 사전에 청구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제332조 이해관계인은 모두 소송에 참가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해하면서 법인격을 부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3조 ① 판결은 그 기재된 날로부터 법인격을 부여한다. 판결은 그 날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② 법원의 서기는 판결의 등본을 지체없이 법인의 설정행위를 수령하거나 발행하는 주무관청에게 송부한다. 그 판결의 통지는 퀘백의 관보에 관청에 의하여 공시한다.

제2절 몇몇²¹¹⁾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제334조 본 법전의 다른 장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적 형식을 취하는 법인에 본 절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이 설립되거나 그에 적용되는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거나 그 법률이 운용, 해산이나 청산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다른 모든 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제1관 법인의 기관

제1목 관리

제335조 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관리직과 기타의 기관을 두고 그 권한의 행사를 그 직에 있는 자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총회에서 사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36조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 정한다.

제337조 ①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사와 함께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회의 회의의 의사록이나 유사한 것에서 그 반대가 기재될 것을 요청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이사회에 결석한 이사는 그 회의에서 정한 결정을 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38조 ① 법인의 이사는 사원에 의하여 선임된다.

② 명시적인 승낙이 없으면 누구도 이사로 선임되지 아니한다.

제339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그 임기는 사임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211) 원어는 certain, certaines로서 ‘몇몇’, ‘몇 가지’의 의미이다.

제340조 이사는 이사회 결원의 보충할 수 있다. 이사회 결원이 이사의 행위를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이사의 수가 정족수 이하이어도 나머지 이사는 사원을 유효하게 소집할 수 있다.

제341조 ① 일부의 이사의 무능력이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여 이사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정족수에 의하여 행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이사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이러한 사정이 계속되어 그에 의하여 관리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기하여 이사를 특별한 정족수로 행위하는 것을 면제하고 그 직무를 분할하여 그중 1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사정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42조 ① 이사회는 사원명부와 장부와 법인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부를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서류는 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사원은 이에 접근할 수 있다.

제343조 ① 이사회는 법인의 장부와 등기부를 보관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자는 자기에게 수치된 서류의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등본은 그 내용을 증명하며 이는 이에 한 서명이나 그 작성자의 권한을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44조 모든 이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참가자가 모두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도움을 받아 이사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목 사원총회

제345조 ① 사원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매년 소집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6월 내에 소집한다.

② 최초의 사원총회는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소집한다.

제346조 ①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는 사원총회의 일자, 시간과 장소 및 의제를 기재한다. 이 통지에는 참석할 모든 사원에게 총회의 45일 이하 10일 이상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매년의 총회의 의제에서 통상적인 사항은 통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347조 매년의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에는 대차대조표, 전년의 회계연도의 수입의 보고와 채권채무의 현황을 첨부한다.

제348조 사원총회는 의제로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결의할 수 없다. 다만 소집된 사원이 모두 출석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연례총회에서 사원 각자는 법인

또는 사원의 이해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이나 제출할 수 있다.

제349조 사원총회는 투표할 수 있는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이나 대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350조 사원은 그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하는 것에 의하여 사원총회에 대리될 수 있다.

제351조 ① 총회의 결의는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한다.

② 사원의 투표는 거수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한다.

제352조 ① 사원이 투표의 10%를 대리하면 이사회 이사회²¹²⁾에 회의에서 처리할 의제를 서면의 청구로 기재하여 정기총회나 특별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이사회가 청구를 수취한 후 21일 이내에 행위하지 아니하면 청구에 서명한 사원은 누구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총회의 거행을 하는데 사원이 지출한 비용을 그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목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통칙

제353조 ① 이사 또는 사원은 이사회, 사원총회 또는 기타의 기관의 소집통지를 포기²¹³⁾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사원은 출석하는 것만으로 소집통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집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4조 ① 회의에서 결의²¹⁴⁾할 수 있는 자가 모두 서면으로 서명한 결의는 이사회, 사원총회 또는 기타의 기관의 회의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결의의 동본은 회의의 의사록이나 그에 준하는 것과 함께 보관한다.

제2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제355조 ① 법인은 설정행위 또는 설정행위나 법률로 정한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법인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불인 조건의 성취,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나 그 목적의 달성의 불가능이나 기타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법원이 확인한 경우에도 해산한다.

제356조 ① 법인은 명시적으로 해산을 위하여 소집된 사원총회에서 결의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도 있다.

212) 원문은 secrétaire, secretaire이다.

213) 원문은 renoncer, waive로서 '출석을 포기하고 소집의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14) 원문은 vote, voter로서 '투표'라는 의미이나 우리 용례에 따라 '결의'(권)으로 하였다.

② 그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는 총회의 30일부터 45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고 부적당한 시간 이어서는 안된다.

제357조 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²¹⁵⁾을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제358조 ① 이사는 법인등기관²¹⁶⁾에 대하여 ‘기업의 법적등기에 관한 법’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의 신고를 함으로 해산을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이 공동소유자 조합이면 토지등기부에 그 통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즉시 청산을 할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법원에 대하여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9조 청산인의 선임의 통지는 해임과 같이 해산의 통지를 한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선임과 해임은 기업의 법적 공시에 관한 법²¹⁷⁾의 제2장에 정한 법인등기부에 통지를 등기한 때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60조 ①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전면적 관리가 위탁된 타인의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②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와 사원에게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서류와 설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1조 ① 청산인은 우선 그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상환한다.

② 이어서 청산인은 제3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원의 권리에 비례하거나 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균등하게 사원 사이에서 적극재산을 분배하고²¹⁸⁾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③ 적극재산이 제3자의 출자로 인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청산된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나 신탁에 그 재산을 이전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원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362조 ① 청산인은 청산의 종료로부터 5년 동안 법인의 장부와 등기부를 보관한다. 장부와 등기부가 소송의 증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장기간 보관한다.

② 그 후에는 청산인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363조 ① 청산인이 법원에 의하여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국세장관이 해산통지가 접수된 때로부터 5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한 청산을 담당하여 계속한다.

② 이러한 경우에 국세장관은 청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215) 프랑스어는 ‘aux fins’(종료로)이다.

216) 원문은 entreprise registrar, registraire des entreprises이다.

217) Loi sur la publicité des entreprises (chapitre P-44. 1), Act respecting the legal publicity of entreprise(chapter P-44.1)이다.

218) 프랑스어는 2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영어본은 1개의 문장이다.

제364조 법인의 청산은 청산의 종료의 통지를 해산의 통지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하는 것에 의하여 종료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통지를 등기하여 법인에 관한 다른 등기를 말소한다.

제2편 가족

제1장 혼인(219)220)

제1절 혼인과 그 혼인식의 거행(221)

제365조 혼인은 자격이 있는 주례(222) 앞에서 2인의 증인이 입회하여 공연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제366조 ① 고등법원(223)의 서기와 부서기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공정증서의 작성(224)이 법률로 인정되는 공증인 및 기타 임명장에 지정된 지역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225), 지방의회 또는 구(226)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다.

② 성직자가 퀘벡에 거주하고 퀘벡에서 그의 목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 그의(227) 신

219) 캐나다의 1867년 헌법(Constitution of Canada) 제91조 제26호(section 91(26))에서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입법의 연방관할로 되어서 혼인에 관한 퀘벡의 주법의 규정은 비교적 간단한 것이다. 다만 캐나다의 해당 헌법 제92조 제13호에서 혼인식의 거행에 관한 입법권은 주의 관할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식의 거행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20) 캐나다에서는 혼인에 대하여 연방법에서 규정한다(이혼법[Divorce Act, Loi sur le divorce])(1985년)도 그러하다). 해당 법은 연방 혼인법(금지혼수)(Marriage (Prohibited Degrees) Act)(Loi sur le mariage(degrés prohibés)(L.C. 1990, ch. 46)(S.C. 1990, c. 46, 1990년 12월 17일)으로 정식 명칭은 ‘친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에 관한 법률’(An Act respecting the laws prohibiting marriage between related persons)(Loi concernant le droit interdisant le mariage entre personnes apparentées)이다. 원문은 <<http://www.canlii.org/fr/ca/legis/lois/lc-1990-c-46/derniere/lc-1990-c-46.html>> 참조.

221) 원어는 각각 ‘혼인과 그 혼인식의 거행’(du mariage et de sa célébration), ‘혼인과 혼인식의 거행’(marriage and solemnization of marriage)이다.

222) 원어는 célébrant, officiant로서 종교의식의 집전자(執典者)로서 사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혼인식은 주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하 ‘주례’로 하였다.

223) 원어는 Superior Court, Cour supérieure로서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퀘벡에서는 1심법원(지방법원)으로 Cour du Québec(Court of Québec), 2심법원(고등법원)으로 Cour supérieure du Québec(Québec Superior Court), 3심인 대법원(최고법원)으로 Cour d'appel du Québec(Québec Court of Appeal)을 두고 있다. 퀘벡의 고등법원에 대하여는 <<http://www.justice.gouv.qc.ca/english/tribunaux/super-a.htm>> 참조. 또한 퀘벡의 법원제도에 대한 것은 <<http://www.justice.gouv.qc.ca/english/publications/generale/systeme-a.htm>> 참조. 이하에서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224) 원어는 recevoir(접수), execute(작성 또는 집행)이다.

225) 원어는 maire, mayor로서 시장을 의미하지만 이하의 municipal(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였다. 우리의 시장, 읍장, 면장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아니지만) 이에 해당될 것이다.

226) 원어는 borough, arrondissement으로 municipal(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구’(區)로 하였다.

227) 원어에서 프랑스어는 ‘그들의’(leur)이고 영어는 ‘그의’(his)이다.

조²²⁸⁾의 존재, 의식과 예식이 영구적인 성질이 있고 그 의식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 장소에서 혼인식을 거행하고 그 성직자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성직자가 자기가 속한 종교단체에서도 혼인식을 주례할 자격이 인정되면 그에게도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다.

③ 퀘벡에 거주하지 아니하지만 일시적으로 퀘벡에 체류하고 있는 종교의 성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한²²⁹⁾ 기간 동안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이 인정된다.

④ 정부와 모후족 공동체²³⁰⁾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모후족족이 지정한 자가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다.

제367조 성직자에게는 그의 종교와 그가 속한 종교단체의 규율에 의하면 장애²³¹⁾가 되는 혼인식의 거행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68조 ① 혼인식이 거행될 장소에 혼인식의 거행 전 20일 동안 게시하여 혼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장래의 배우자가 이미 민사결합²³²⁾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공고할 때 또는 공고의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 배우자에게 혼인 전의 의학검사의 장점²³³⁾이 고지되어야 한다.

제369조 혼인의 공고에는 장래의 배우자 각자의 성명과 주소 및 각자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재한다. 성년자인 증인 1명이 이러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228) 원어는 confession으로 해당 종교의 신앙고백, 신조 등의 의미이다.

229) 프랑스어는 ‘그 (기간의) 확정이 법무부장관에 속한 기간’이다.

230) 원어는 communauté mohawk, Mohawk community이다. 모우혹족(모호크족)은 북아메리카의 동부 해안과 오대호 부근(뉴욕주 부근)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을 말한다. 모우혹족에 대하여는 <<http://srmt-nsn.gov/>> 참조. 오늘날 모호크족은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국의 뉴욕주에는 일부만이 잔류하였고 대부분은 미국 독립혁명 이후 1700년대에 캐나다(온타리오 또는 퀘벡)로 이주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20세기 동안 기독교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동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캐나다의 모우혹족은 별도의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http://www.autochtones.gouv.qc.ca/relations_autochtones/profils_nations/mohawks.htm> 참조; 모우혹족의 혼인식은 창조주 앞에서 최대의 의식을 할 권한이 주어진 추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혼인에서는 창조주 앞에서 그들의 헌신의 선서를 하고 이로서 종신의 혼인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점은 <http://en.wikipedia.org/wiki/Mohawk_people>(Marriage의 부분) 참조. 또한 Anne Marie Shimony, Conservatism among the Iroquois at Six Nations Reserve, 1961도 참조.

231) 원문에는 empêchement, impediment)로서 장애, 방해, 금지 등의 의미이다.

232) 원문은 civil union, union civil(unis civilement)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역어인 ‘민사결합’으로 하였다. 이는 ‘동거’(Concubinage)와의 구별이 필요하고 양자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의 학계의 역어인 ‘민사결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퀘벡에서는 2002년 제정된 ‘민사결합의 신설과 친자관계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Loi instituant l’union civile et établissant de nouvelles règles de filiation)로 민사법에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제2편 제1장의 1(titre titre premier 1; titre 1.1)(제521조의 1제521조의 19)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편 가족 혼인(제1장), 민사결합(제1장의 1), 입양(제2장), 부양의무(제3장), 친권(제4장)이라는 규정의 위치상 민사결합은 가족의 일부로 보되 혼인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다만 그 효과로서의 입양, 부양의무, 친권은 혼인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식과 규율내용 특히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성립요건 중 연령과 그 해소(이혼이 아님)에서 차이가 있다.

233) 원문은 opportunité, asvisability이다.

제370조 주례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1조 혼인의 공고 후 20번째 날로부터 3월 내에 혼인식이 거행되지 아니하면 공고를 새로 하여야 한다.

제372조 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자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혼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단독으로 혼인의 피고²³⁴⁾가 될 수 있다.

제373조 혼인식의 거행 전에 주례는 장래의 배우자의 신분, 법률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요건의 충족과 방식의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주례자는, 장래의 배우자 사이의 민사결합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장래의 배우자가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한 종래의 구속의 유무 및 미성년자의 경우에 친권자 또는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 혼인에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374조 ① 주례는 장래의 배우자에 대하여 증인 앞에서 제392조 내지 제396조까지의 규정을 낭독한다.

② 주례는 장래의 배우자의 각자로부터 서로 부부로서²³⁵⁾ 취한다는 의사의 표시를 요청하고 수령한다. 그 후에 혼인으로 그들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375조 주례는 혼인의 선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민사신분등록관²³⁶⁾에게 통지한다.

제376조 ① 서기, 부서기, 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혼인식을 거행한다.

② 서기와 부서기는 장래의 배우자로부터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계산으로 정해진 비용을 징수한다.

③ 공증인과 지정된 자는 장래의 배우자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수취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으로 장래의 배우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비용을 징수한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234) 원문은 프랑스어는 ‘항변으로’(en défense)이고 영어는 ‘as defendant’(피고로서)의 의미이다.

235) 프랑스어에는 ‘personnement’(인적으로)이 있다.

236) 원문은 directeur de l'état civil, registrar of civil status이다. 이들은 민사신분의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창설되어 퀘벡 민법전에 의하여 명해진 공무원(public officer)으로 출생, 혼인, 민사결합(civil union), 사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공식문서를 발생하는 일을 담당하는 유일한 민사신분담당자(civil status officer)이다. 이러한 점은 우선 Directeur de l'état civil <<http://www.etatcivil.gouv.qc.ca/fr/a-propos.html>> 참조. 또한 이들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명서와 그 기재사항 등은 <<http://www.etatcivil.gouv.qc.ca/en/certification-copy-act.html#certificatcopie>>도 참조; 우리 법을 고려하여 ‘민사신분등록공무원’이나 ‘민사호적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377조 ① 법무부장관이 이미 민사신분등록관에게 제366조에서 정하는 허가를 하고 지정을 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부장관은 신분등록부에 적당한 기입과 수정을 하기 위하여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는 주례에 관하여 한 허가, 지명과 취소에 대하여 신분등록관에게 통지한다.

② 퀘벡 공증인협회의 총무²³⁷⁾는 동일한 목적으로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는 각 공증인이 자격을 취득한 날자와 필요한 경우에는²³⁸⁾ 자격을 상실한 날자를 기입하고 최근자료로 보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한다.

③ 주례자가 행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교단체, 고등법원의 서기 또는 퀘벡공증인협회의 총무가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하여 신분등록부에 상당한 정정을 할 책임이 있다²³⁹⁾.

제2절 혼인의 증명

제378조 혼인은 혼인증서에 의하여 증명한다. 다만 법률이 다른 증명방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9조 배우자의 신분점유²⁴⁰⁾는 혼인증서의 형식의 하자를 보완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

제380조 ① 본 장의 규정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의하여 혼인식을 거행하지 아니한 혼인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무효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혼인식의 거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 항의 소송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질서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1조 ① 혼인의 무효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법률이나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자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② 혼인의 무효는 부모의 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²⁴¹⁾.

제382조 ① 혼인이 무효로 선고되어도 선의의 배우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있다.

② 특히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던 그들의 재산권을 청산한다. 다만 배우자들이

237) 원문은 Secretary of the Ordre des notaires du Québec, Secrétaire de l'Ordre des notaires du Québec은 '퀘벡의 공증인협회의 총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퀘벡 공증인법(Notaires Act, Loi sur le Notariat, LRQ, c N-3)(2000년 제정, 2011년 2월 14일 최종개정) 제14조 참조. 이 법의 조문내용에 대하여는 <http://www.canlii.org/fr/qc/legis/lois/lrq-c-n-3/derniere/lrq-c-n-3.html#history>,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n-3/latest/rsq-c-n-3.html> 참조.

238) 영어는 if known(아는 경우), 프랑스어는 le cas échéant(필요한 경우)이다.

239) 프랑스어는 il appartient(에게 속한다)이고 영어는 is responsible(에게 책임이 있다)이다.

240) 원어는 possession d'état, possession of the status이다.

241) 프랑스어는 laisse subsister(존속한다)이고 영어는 unaffected(영향이 없다)이다.

각자 그들의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3조 배우자들이 악의이면 각자 그들의 재산을 다시 취득한다.

제384조 일방의 배우자 일방만 선의이면 그 배우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²⁴²⁾ 그의 재산을 다시 취득하거나 또는 혼인으로 그에게 주어진 재산의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5조 ① 선의의 배우자는 혼인의 약속으로²⁴³⁾ 그에게 한 증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86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법원은 혼인의 무효를 선언할 때에 당사자들이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증여의 실효²⁴⁴⁾ 또는 감액하거나 또는 그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생전증여의 변제의 연기를 선언할 수 있다.

제386조 ① 혼인의 무효로 악의의 배우자에게 혼인의 약속으로 한 생전증여는 무효가 된다.

② 혼인의 무효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의 약속으로 한 사인증여도 무효가 된다.

제387조 배우자는 선의로 혼인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원이 무효를 선고하면서 그 배우자가 악의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8조 법원은 별거의 절차와 같이 재판의 계속 중의 가처분, 자의 후견, 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²⁴⁵⁾ 무효를 선고하면서 선의의 배우자의 부양 및 보상금부²⁴⁶⁾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도 정한다.

제389조 ① 혼인의 무효에 의하여 배우자들이 가지는 부양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무효를 선고할 때에 배우자 일방에게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거나 또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그 문제를 공평하게 결정할 수 없지만 부양청구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양청구권은 2년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그 기간의 만료로 그 권리는 당연히²⁴⁷⁾ 소멸한다.

제390조 법원이 부양료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청구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혼인을 무효화한 후에 법원은 언제든지 부양에 대한 권리의 소멸을 선고할 수 있다.

242) 영어본에는 프랑스어본의 à son choix(그의 선택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다.

243) 원문은 in consideration of marriage, en considération du mariage이다.

244) 원어는 프랑스어는 caduque이고 영어는 lapsed이다.

245) 영어는 and로 하여 한 문장(따라서 1문)으로 되어 있고 프랑스어는 ‘;’으로 하여 독립된 2문장(따라서 2문)으로 되어 있다.

246) 이에 대하여는 제4관 보상금부(제427조-제430조) 참조.

247) 영어는 by operation of law, 프랑스어는 de plein droit이다.

제4절 혼인의 효과

제391조 배우자들은 그들의 부부재산제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본 절의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

제1관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제392조 ① 배우자는 혼인 중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배우자는 상호간에 존경하고 정조를 지키고 부조하며 원조할 의무가 있다.

③ 배우자는 동거할²⁴⁸⁾ 의무가 있다.

제393조 배우자 쌍방은 혼인 중에 그들 각각의 성명을 유지한다. 또한²⁴⁹⁾ 그 성명에 대한 그들 각각의²⁵⁰⁾ 민사권리를 행사한다.

제394조 배우자는 공동으로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인 유지를 확보하고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그로부터 유래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95조 ① 배우자는 공동하여 가족의 거소를 선택한다.

② 명시적인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주된 활동을 하면서 거주하는 곳을 가족의 거소로 추정한다.

제396조 ① 배우자는 그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혼인비용을 부담한다.

② 배우자는 가정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따라 그들 각자의 부담을 과할 수 있다²⁵¹⁾.

제397조 ① 배우자 일방이 가족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별거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배우자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구속한다.

②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배우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그가 구속을 받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

제398조 ① 배우자는 각자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인 유지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기 위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배우자 일방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항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48) 영어는 live together, 프랑스어는 faire vie commune으로 양자가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의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04 쪽 참조.

249) 영어는 1개의 문장(and)로 되어 있고 프랑스어는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250) 프랑스어에는 영어의 '각각'(respective)이라는 단어가 없다.

251) 프랑스어는 s'acquitter de sa contribution, 영어는 make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이다.

제399조 ①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그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그 행위를 단독으로 할 것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허가는 개별적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다. 허가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400조 배우자가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합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배우자 쌍방 또는 그 일방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법원은 당사자가 화해하도록 노력한 후에 가족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관 가족의 거소

제401조 ① 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가사의 사용에 제공되는 동산을 양도, 담보설정하거나 가족의 거소에서 반출할 수 없다.

② 가정의 사용에 제공하는 동산에는 가족의 거소에 설치하거나 장식하기 위한 동산만을 포함한다. 장식에는 그림이나 기타 예술작품을 포함하지만 소장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02조 ① 가사의 사용에 제공되는 동산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도 추인²⁵²⁾도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유상행위²⁵³⁾는 무효로 할 수 없다.

제403조 ① 가족의 거소의 임차인인 배우자는 그 주거를 가족의 거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배우자 중 누구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된 경우에 다른 일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이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 임대차를 종료할 수 없다.

② 그 행위에 동의도 추인도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04조 ①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의 거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방이 5개 미만이고 배우자가 그 소유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가사의 사용으로 유보된 부분을 임대할 수 없다.

② 그 행위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가족의 거소의 장식이라는 표시가 사전에 부동산에 등기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05조 ①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의 거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방이 5개 이상이고 배우자가 그 소유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가사의 사용으로 유보된 부분을 임대할 수 없다.

② 가족의 거소라는 표시가 사전에 부동산에 등기된 경우에 그 양도행위²⁵⁴⁾에 대하여 동의

252) 프랑스어는 '동의하지 아니한 ...그 배우자가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qui n'a pas donné ..., s'il n'a pas ratifié)로 하고 있다.

253) 프랑스어는 l'acte이고 영어는 an act이다.

254) 프랑스어는 l'acte d'aliénation(양도행위 또는 양도증서)이고 영어는 the deed of alienation(양도증서)이다. 양자의 문언에 불일치가 있다. 이러한 점은 254) 이하의 조문의 번역을 위하여 참고한 저본(底本)은 주로 다음과 같다 :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07쪽 참조.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주거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조건에 의하여 이미 주거로서 점유하는 장소를 취득자가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그 임대차의 행위에 동의도 추인도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06조 ① 용익권자, 영소작권자와 사용권자²⁵⁵⁾는 제404조와 제40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가족의 거소사용을 허용하는 다른 권리를 가진 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07조 ① 가족의 주거라는 표시는 배우자의 쌍방이나 일방에 의하여 한다.

②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그 효과가 포함된 표시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

제408조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한 다른 배우자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그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9조 ① 별거,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의 경우에 법원은 배우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임차인의 배우자에게 가족의 거소의 임대차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정은 그 결정이 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임대인을 구속하고 장래에 대하여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면한다.

제410조 ① 별거, 혼인의 해소 또는 무효의 경우에 법원은 배우자 일방 또는 잔존배우자²⁵⁶⁾에 게 가족의 사용에 제공하는 다른 일방의 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자의 후견권이 인정된 배우자 일방에게 가족의 거소의 사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③ 사용권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면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1조 ① 사용권이나 소유권의 부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정한 조건과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현금이나 분할납부에 의하여 정한 차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정한다.

② 법원은 차액의 지급을 분할납부로 하는 경우에는 담보와 변제의 기간과 조건²⁵⁷⁾을 정한

255) 퀴백민법전의 용익권(usufruct, usufruit)은 제4편 제4장 제1절(제1120조-제1117조)에서, 사용권(usage, use)는 제2절(제1118조-제1176조)에서, 영소작권(emphyteusis, emphytéose)은 제4절(제1195조-제1211조)에서 각각 규정한다.

256) 원문은 surviving spouse, au survivant으로 우리 법에서는 ‘생존배우자’, ‘잔존배우자’가 혼용된다. 현행법으로서는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2007년 12월 10일)의 1. 다. (1)에서 ‘잔존배우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다. 배우자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그 실종선고가 실종자의 생존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된 경우 중혼관계의 성립여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1) 전혼관계는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중혼관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잔존배우자가 실종선고의 취소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 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257) 프랑스어는 ‘담보와 변제의 방법’(modalité)이고 영어는 ‘기간과 조건’(terms and condition)이다.

다.

제412조 법원에 의한 소유권의 부여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13조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부여하는 판결은 권원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모든 효력이 있다.

제3관 가족재산

제1목 재산의 설정

제414조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누가 그 재산에 소유권을 보유하는가를 불문하고 배우자의 일정한 재산으로 구성된 가족재산의 성립이 발생한다.

제415조 ① 가족재산은 배우자의 일방이나 다른 일방이 소유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된다. 가족의 거소 또는 그들의 사용으로 제공된 권리, 가사의 사용으로 제공되거나 장식된 동산, 가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와 퇴직연금으로 혼인 중에 축적된 권리. 퇴직연금으로 지급될 연금에는 퇴직연금에 의하여 축적된 권리를 포함한다.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인정되어 축적된 서비스도 같다.

② 이러한 재산에는 혼인 중에 '퀘벡 연금제에 관한 법²⁵⁸⁾'의 적용을 받아 배우자 각자의 이름으로 등록한 소득도 포함된다.

③ 하지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 및 사망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잔존배우자에게 사망의 급부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성립된 연금제로 축적된 권리는 가족재산에서 제외된다.

④ 또한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가족재산에서 제외된다.

⑤ 가족재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으로 한다.

1. '보충적 퇴직연금제에 관한 법'²⁵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또는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적용되었으면 규율되었을 제도
2. 퀘벡의회가 아닌 다른 입법기관의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
3. 퀘벡 또는 다른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제도
4. 퇴직적립금제
5. 연금계약에 의하여 어느 연금제로부터 일정액이 그에 이전되는 기타의 퇴직적립금제

제2목 재산의 분할

258) 이 법률의 원래의 명칭은 'Act respecting the Québec pension Plan'(Loi sur le régime de rentes du Québec)이다. 원문은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r-9/latest/rsq-c-r-9.html>> 참조.

259) 이 법률의 원래의 명칭은 'Loi sur les régimes complémentaires de retraite'(Supplemental Pension Plans Act)이다. 원문은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r-15.1/latest/rsq-c-r-15.1.html>> 참조.

제416조 ① 별거, 혼인의 해소 또는 무효의 경우에 가족재산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의 취득, 개량, 관리 또는 보존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공제하고 배우자 사이 또는 경우에 따라 잔존배우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된다.

② 별거할 때에 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혼인의 해소 또는 무효가 된 때에 다시 분할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우자가 그 동안에 자발적으로 동거²⁶⁰⁾를 회복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분할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거를 회복한 날은 본 관의 규정을 위하여 혼인일로 대체한다.

제417조 ① 가족재산의 순가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날 또는 경우에 따라 별거,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가 결정되는 소송의 개시일에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의 가치와 재산의 취득, 개량, 관리 또는 보존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 재산은 시장가로 평가된다.

②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일방이나 다른 일방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재산의 순가치를 배우자가 동거를 그만 둔 날을 기준으로 그 재산과 그 채무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18조 ① 가족재산의 가치가 일단 산정된 경우에는 그것에서 혼인할 때에 가족재산을 포함하여 배우자 일방이 당시에 소유하던 재산의 순가치를 공제한다. 동일하게 상속이나 증여 또는 채투자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를 한 경우에 그 가족재산의 가치에서 가족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이나 개량을 위하여 혼인 중에 배우자 일방이 한 기여의 순가치를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문의 경우에 혼인 중에 그 재산에 의하여 증가된 가치를 혼인할 때의 재산의 순가치와 총가치 사이의 비율에 따라 순가치에서, 제1항 제2문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치를 기여의 가치와 그 재산의 총가치 사이에 기여할 때에 존재하던 비율에 따라 추가로 공제한다.

③ 혼인할 때에 소유하던 가족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혼인 중의 채투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정을 하여 동일하게 공제한다.

제419조 ① 가족재산의 분할은 현물변제 또는 금전지급으로 한다.

② 분할을 현물변제로 한 경우에 배우자는 가족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른 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합의할 수 있다.

제420조 ① 법원은 분할할 때에 어느 재산을 배우자 일방에게 부여할 수 있고 손해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를 부담하는 배우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10년이 넘지 아니한 기간에 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② 법원은 판결의 정상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의 방법을 명할 수 있고 특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제421조 ①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 또는 별거,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의 소송개시가 있기

260) 이 용어에 대하여는 제392조, 제417조 제2항도 참조.

전년 에 가족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양도되거나 횡령되고 다른 재산으로 대체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재산이 가족재산에 편입된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배우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② 배우자 일방의 사망 또는 재판의 개시 전 1년 이상 그 재산이 양도되고 그 양도가 가족 재산으로 그 재산이 편입된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배우자의 지분을 감소하게 할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422조 특히 혼인의 단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일정한 재산의 소비 또는 그 일방의 악의를 고려하여 균등분할이 불공정한 것이 되는 경우에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균등분할의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고 ‘퀘벡 연금제에 관한 법’²⁶¹⁾이나 유사한 제도에 의하여 등록된 소득에 대하여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3조 ① 배우자는 부부재산계약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가족재산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하지만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 또는 이혼, 별거 또는 혼인의 무효판결이 있는 후에 다른 배우자는 공정증서²⁶²⁾에 의하여 가족재산에 관한 자기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그 배우자는 이혼, 별거 또는 혼인의 무효의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③ 포기는 채권 및 동산의 등기부²⁶³⁾에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청구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1

261) 이 법에 대하여는 제415조 제2항 참조.

262) 원문은 acte notarié en minute, notarial act en minute이다. 통상 이를 공정증서로 번역하는데 실제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가령 전국 민사공증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vil Law Notaries)에서 제정한 모범 민사공증인법안(Model Civil Law Notary Act) 참조. 원문은 <<http://nacln.org/files-pdf/Model%20NACLN%20Act.PDF>> :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미국 모범공증인법 제1조 (4) Minute : An authentic act written by a civil law notary which contains the exact narration of a finding of fact or facts influencing the rights of private parties of which the civil law notary has personal knowledge and that due to the nature of the authentic act does not constitute a contract or juridical business (5) Notarial Deed : An authentic act in which contains a contract, transaction or other juridical act and which may also include the certification of facts. Notarial deeds may involve either a single party, as in the case of a will, or multiple parties, as with a contract. (1) Authentic Act : An instrument executed by a civil law notary referencing this article, which is imbued by the state with the legal acceptance of the certainty that comes from the presumption of truth that accompanies the document and which includes the particulars and capacities to act of transacting parties, a confirmation of the full text of any necessary instrument, the signatures or their legal equivalent thereof of any transacting parties, the signature and seal of a civil law notary, and such other information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캐나다의 공증인의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캐나다 퀘벡 공증법 참조. 원문은 앞의 주33 참조. 특히 제27조(27. A deed en minute is one which a notary executes and must keep in his records so as to deliver copies thereof or extracts therefrom), 제28조(28. Deeds en minute shall be executed separately and numbered consecutively starting with the number one); 제50조(50. A notary must keep and preserve the originals of all deeds that he executes en minute.) 등 참조.

263) 원문은 Register des droits personnels et réels(RDPRM), Register of personal and movable real rights이다. 퀘벡에서는 동산에 관한 권리 중 기업재산(bien d'entreprise)(예 : 시설, 도구, 재산목록, 채권),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일정한 귀중품(예술작품, 보석)이나 금융자산(produits financiers)(가령 주식, 국채 [obligation d'épargne])에 해당되는 목적물인 경우에는 이 등기부에 기재하여 권리를 등기한다. 중요한 채권(droits personnels)도 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가령 혼인재산계약(contrats de mariage), 민사결합(union civile) 또는 이혼판결과 상속청산에 관한 권리(droits relatifs à la liquidation d'une succession)에 대한 것

년의 기간 내에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배우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424조 공정증서에 의한 배우자 일방의 가족재산의 분할의 포기는 과다손해²⁶⁴⁾ 기타의 계약의 무효원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425조 ‘체크 연금제에 관한 법’이나 유사한 제도에 의하여 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소득의 소득은 본 법이나 그 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제도를 관리하는 조직에 의하여 분할된다. 다만 후자의 법률에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6조 ① 법률에 의해 규율되거나 설치된 퇴직연금제에서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누적된 권리의 분할은 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과 귀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원칙에 따라 한다.

②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권리의 분할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축적한 권리의 총가치의 1/2 이상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되고 분할청구권의 수익자에게 원래의 권리자가 그 연금제에서 가지는 것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③ 반대의 규정이 있어도 배우자 사이에서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 또는 기타의 다른 연금제로 누적된 권리는 가족재산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여 이전되거나 압류될 수 있다.

제4관 보상금부²⁶⁵⁾

제427조 ① 법원은 별거,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를 선고할 때에 배우자 일방이 재산이나 노무로 자기의 재산의 증가에 대한 다른 일방의 기여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특히 부부 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을 고려하여 다른 일방에게 현금이나 할부금으로 하여 급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망의 경우에도 같다. 그 경우에 잔존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이익도 고려된다.

② 보상금부청구권이 배우자 일방에 의한 사업에서의 계속적인 협력에 기초한 경우에 그 사업이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든 상업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협력의 종료가 그 사업의 양도, 해산 또는 자발적이나 강제적 청산으로 인한 것이면 그 협력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8조 배우자가 자기의 기여에 의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의 입증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증명할 수 있다.

이 그러하다. 또한 이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될 수 있는 권리는 <<https://www.rdprm.gouv.qc.ca/fr/pages/listedroits.html>> 참조; 관련규정으로는 Loi sur les bureaux de la publicité des droits, <https://www.rdprm.gouv.qc.ca/fr/pages/publications.html>, Politiques de certificats de signature et de confidentialité du Registre des droits personnels 및 민법의 동산물권 규정 참조. 이에 대하여는 우선 <<https://www.rdprm.gouv.qc.ca/fr/pages/publications.htm>> 참조. 이 등기부의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는 <<http://www.rdprm.gouv.qc.ca/fr/Pages/Accueil.html>> 참조.

264) 이는 lesion, lésion을 번역한 것이다.

265) 보상금부에 대하여는 본 법 제388조도 참조.

제429조 ① 보상금부의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면 법원이 그 액을 정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방법을 정할 수 있고 현금이나 할부금으로 급부하거나 일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변제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② 법원이 배우자 일방이나 잔존배우자에게 가족의 거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가사의 사용에 제공되는 동산에 대한 권리나 퇴직연금제에서 누적된 권리에는 제2관과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0조 배우자의 일방은 혼인 중에 다른 일방과 보상금부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부의 액을 산정할 때에 감액되어야 한다.

제5절 부부재산제

제1관 총칙

제1목 부부재산제의 선택

제431조 부부재산계약²⁶⁶⁾에서 어떠한 종류의 약정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강행규정과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32조 혼인식의 거행 전에 혼인재산계약에 그 부부재산제를 정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혼인 중 취득재산제²⁶⁷⁾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6) 원문은 marriage contract, contrat de mariage로 문자적으로는 ‘혼인계약’이지만 혼인계약이라는 것의 대상이 주로 부부재산제이므로 ‘혼인재산계약’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우리 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부재산의 약정’(제829조 제1항, 제2항)과 ‘부부간의 계약’(제828조)이라는 문구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이하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부재산계약’으로 하였다; 퀘벡의 혼인재산계약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은 우선 Alain Roy, Le contrat de mariage en droit québécois : un destin marqué du sceau du paradoxe, (2006) 51 McGill L.J. 665 <http://lawjournal.mcgill.ca/documents/1224864640_Roy.pdf> 참조.

267) 우리 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제829조)이라는 문구와 ‘혼인성립 전의 재산’(제830조)이라는 문구만이 사용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acquests, acquêts의 용어(프랑스법의 것임)와 관련하여 ‘후득재산’, ‘혼후취득재산’, ‘혼후소득’, ‘소득공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캐나다의 partnership of acquests는 공유재산(우리 법의 특유재산)(private property)과 공유재산(acquests)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인 공유재산(특유재산)(Private property)은 일반적으로 혼인이나 민사결합 전에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이러한 공유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모든 재산이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으로서의 acquest이다. 따라서 acquest는 혼인 전에 취득하는 특유재산(고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혼인 중(=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혼인 중의 특유재산[고유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별론).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acquest 또는 acquêts를 우리 법의 문언을 참조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취득재산’으로 하기로 한다; 혼인 중 취득재산제(partnership of acquests)에서는 각 배우자는 그 자신의 공유재산(특유재산)(private property)과 혼인 중 취득재산(acquests)을 관리하고 후자에서는 그 혼인 중 취득재산의 증여의 경우에 다른 일방의 생존 동안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른 제한으로는 가족의 주거(family residences)와 가사의 용도에 제공된 동산(movable effects)에 대한 것이다. 부부재산제가 해소된 경우에 배우자 각자는 다른 일방의 혼인 중 취득재산의 분할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http://www.1800notaire.ca/matrimonial-regimes/partnership-acquests.php>> 참조; 또한 프랑스의 부부재산제(patrimoine du couple)는 공유재산(biens communs)과 배우자 각자의 특유재산(biens propres de chaque époux)으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이른바 acquêts로서 혼인 중(=혼인 후) 배우자들이 그들의 노무나 그들의 특유재산(biens propres)의 소득에 의하여 배우자가 취득,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한 재산을 말한다. 후자는 혼인한 날에 소유하던 동산과 부동산 및 이 혼인한 날 후(=혼인하기 전)에 상속,

제433조 ① 부부재산제는 법정제이든 약정제이든 혼인식을 거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혼인 중에 부부재산제에 대한 변경은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는 재산제 또는 그에 대한 변경의 효력을 다른 날에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없다.

제434조 ① 혼인이 허가된 미성년자는 혼인식의 거행 전에 부부재산계약이 인정하는 모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그에게 그러한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5조 법원이 허가하지 아니한 약정은 미성년자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된 자에 한 하고 이의를 제기²⁶⁸⁾할 수 있다. 혼인식을 거행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6조 ① 후견을 받거나 보조인²⁶⁹⁾을 둔 성년자는 후견인이나 보조인의 동의 없이 부부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후견인은 후견위원회²⁷⁰⁾의 의견을 받아 이를 목적으로 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약정은 성년자 본인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보좌인이나 보조인만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²⁷¹⁾. 혼인식을 거행한 때 또는 혼인재산계약의 변경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7조 장래의 배우자는 혼인식의 거행 전에 혼인재산계약의 당사자 전원이 참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 자체가 혼인재산계약으로 되어야 한다.

제438조 ① 배우자는 혼인 중에 그 부부재산제 및 그 부부재산계약의 모든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 자체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되어야 한다.
 ② 부부재산계약으로 된 증여는 사인증여를 포함하여 그 취소불능으로 약정된 경우에도 이

유증이나 증여로 취득한 것과 일상적인 사용재산(의복, 개인적 물건[effets personnels] 등)을 특유재산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우선 <http://fr.wikipedia.org/wiki/R%C3%A9gime_matrimonial> 참조; 다만 위의 프랑스의 설명의 역어는 우리 현행 민법 제830조 제1항(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의 개념에 따라 특유재산과 고유재산을 파악한 것이다; 다만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 법의 특유재산은 고유재산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68) 원어는 attaqué, impugné로서 문자적으로 ‘공격하다’는 의미이지만 ‘이의제기’로 하였다.

269) 퀘백민법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인(tutelle, tutorship)을 두고(제1편 제4장 제1절 제2관, 제177조 이하) 성년자에 대하여는 tutor, curator, adviser(curateru, tuteur, conseiller)를 둔다(제1편 제4장 제1절 제2관, 제256조 이하, 특히 제258조 참조). 성년자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각각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270) 이는 제222조 이하 참조. ‘후견회’라고 할 수도 있다.

271) 프랑스어는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1년 이내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nor except)로 하고 있다.

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그 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자기에 그 변경으로 대항할 수 없다²⁷²⁾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제439조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부부재산계약으로 장래 출생될 자에게 한 증여의 변경이나 취소는 그 배우자가 대리한다.

제440조 부부재산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제441조 원래의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작성한²⁷³⁾ 공증인은 즉시 원래의 부부재산계약서의 원본²⁷⁴⁾의 보관자²⁷⁵⁾ 및 부부재산제를 변경하는 계약서의 보관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 보관자는 그 원본과 그가 작성한²⁷⁶⁾ 등본에 대한 변경을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일, 공증인의 이름과 그 원본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42조 모든 부부재산계약의 통지는 작성한²⁷⁷⁾ 공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과 동산의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목 부부재산제로 발생된 권리와 권한의 행사

제443조 배우자 각자는 부부재산제로 발생된 권리와 권한의 행사의 대리²⁷⁸⁾를 다른 일방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4조 ① 배우자 일방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재산이나 그 배우자가 관리하는 재산의 관리를 다른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위임한 권한의 행사의 방법²⁷⁹⁾과 조건을 정한다.

272) 프랑스어는 inopposables이고 영어는 set up이다.

273) 원문은 reçois, receiving으로 ‘수령한’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 용어는 제129조와 제2988조의 조문과 비교하면 execute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이는 퀘벡 공증법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18 쪽 참조; 퀘벡의 공증법은 앞의 주33 참조.

274) 프랑스어는 la minute가 있지만 영어에는 없다. 본 조 제2항에서는 이는 original(영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75) 원문은 depositary, dépositaire로서 수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276) 원문은 qu'il en délivre, he may make of it이다.

277) 영어는 receiving notary(수령 또는 작성한 공증인)이고 프랑스어는 notaire instrumentant이다.

278) 프랑스어는 ‘대리할 것의 위임’(mandat de le représenter)이고 영어는 ‘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a mandate in order to be represented)이다.

279) 프랑스는 modalités(방법, 양태)이고 영어는 terms(기한)이다.

제445조 ① 재판에 의한²⁸⁰⁾ 위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 법원은 그 위임의 철회를 선고할 수 있다.

② 다른 배우자에게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있게 된 경우에 그 위임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446조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한 배우자는 계산의 청구를 받기 전에 소비한 과실과 수익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제447조 ① 배우자 일방이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넘고 다른 일방이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²⁸¹⁾ 그 다른 일방은 무효를²⁸²⁾ 주장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동산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유상행위에서 선의의 제3자에 관하여 배우자 각자는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관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²⁸³⁾

제1목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구성

제448조 이 부부재산제가 개시할 때에 배우자 각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그 후 취득한 재산은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을 구성한다.

제449조 배우자 각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유재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이 그러하다.

1. 그 부부재산제의 존속²⁸⁴⁾ 중에 그 배우자의 노동으로 인한 산출물
2. 그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모든 재산에서 기간이 도래하거나 수취한 과실과 수입

제450조 다음 각 호의 것은 배우자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1. 이 부부재산제가 개시할 때에 배우자 각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재산
2. 이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그 배우자에게 귀속된 재산 및 유언자나 증여자가 이를 정한 것으로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과실과 수입
3. 특유재산에 갈음하여 그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과 그들과 관련된 배상보험금
4. 계약 또는 퇴직연금, 기타의 연금이나 인신보험에 의한 대위권리자 또는 특별수익자로서 그 배우자에게 발생한 권리 또는 이익
5. 그 배우자의 의복, 개인서류, 혼인반지, 장식물과 상장
6. 그 배우자의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 다만 경우에 따라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

280) 원문은 judicial, judiciaire로서 문자적으로 ‘사법적’이지만 법원의 판결(재판)에 의한 것을 말한다.

281) 프랑스어는 ‘다만 추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à moins qu'il)이다. 영어는 본문과 같이 and로 연결되어 있다.

282) 영어는 ‘그 무효를 선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apply to have it declared null)이다.

283) 원어는 société d'acquêts, partnership of acquets로서 이하 ‘혼인 중 취득재산의 공유제’로 하여 ‘별산제’에 대비하고 이러한 부부재산제가 적용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하여 ‘별산’으로 한다.

284) ‘계속’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²⁸⁵⁾.

제451조 ①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을 가지고 그 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사용된 특유재산의 가치가 그 재산의 전체취득가의 1/2을 넘는 경우에도 특유재산으로 한다. 그 러하지 아니하면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생명보험, 퇴직연금과 기타의 연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전체가는 보험료 또는 지급액의 총계로 한다. 다만 정기보험²⁸⁶⁾의 경우에는 가장 최후의 보험료의 액으로 한다.

제452조 ① 이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개인적으로 재산의 불가분한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그 재산의 다른 부분을 취득한 경우에 이 취득한 부분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그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가치가 그 배우자가 소유자가 된 재산의 전체가치와 동일하거나 또는 1/2보다 많은 경우에 그 재산은 보상을 요하는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453조 ① 부양연금²⁸⁷⁾, 장해연금 또는 동일한 기타의 이익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는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나온 모든 금전상의 이익은 이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만기가 되었거나 수취되었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 그 배우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면 이는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다.

② 연금 또는 기타의 이익²⁸⁸⁾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나 특유재산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나 보험료를 이유로 하여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54조 ① 정신적 손해 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수취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상금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다.

② 보험계약이나 기타의 배상제도에서 나온 권리와 배상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료 또는 금액이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에 의하여 지급된 것을 이유로 하여 보상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455조 ① 특유재산의 종물이나 첨부물로서 취득한 재산 및 특유재산인 부동산 위나 안의 건조물, 공작물과 수목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가지고 종물이나 첨부물이 취득되거나 또는 건조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축조되고 그 가치가 특유재산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넘는 경우에는 전체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 된다.

285) 프랑스민법전에도 이러한 규정(제1404조 제2항)이 있다. Article 1404 [2] Forment aussi des propres par leur nature, mais sauf récompense s'il y a lieu, les instruments de travail nécessaires à la profession de l'un des époux, à moins qu'ils ne soient l'accessoire d'un fonds de commerce ou d'une exploitation faisant partie de la communauté.

286) 프랑스어는 assurance temporaire(한시보험)이고 영어는 term insurance(정기보험)이다.

287) 프랑스어는 pension alimentaire이고 영어는 support로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21 쪽 참조.

288) 영어는 '부양, 연금이나 기타의 이익'(support, allowance or other benefits)이다.

제456조 ①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인 증권의 재당금의 통고의 결과로 취득한 증권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특유재산이다.

② 특유재산인 증권에 의하여 배우자 일방에게 부가된 신주인수권, 우선매수권 또는 기타의 유사한 권리의 행사의 결과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도 특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으면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특유재산인 증권의 환매 또는 선지급의 대금은 보상이 없는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457조 ①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인 기업의 운영으로 나온 수입이 그 기업에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는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하지만 이 기업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58조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은 특유재산이지만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그 권리에 서 나오고 수취되고 기간이 만료된 모든 과실과 수입은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다.

제459조 배우자 사이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다만 특유재산인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0조 배우자가 완전한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재산은 모두 배우자 쌍방에 의하여 각자가 1/2씩으로 하여 분할할 수 없는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²⁸⁹⁾ 추정한다.

제2목 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책임

제461조 배우자 각자는 자기의 특유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관리, 향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한다.

제462조 ① 그러나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생존자 사이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낮은 가치의 재산이나 관행적인 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그 거절이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행위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제463조 ①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제한은 생명보험, 퇴직연금이나 기타의 연금의 수익자 또는 대위권리자로 제3자를 지명할 배우자 일방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족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9) 프랑스어는 '각자에게 반분하여 2인에게 불가분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appartenir aux deux indivisément, à chacun pour moitié)이다.

② 그 지명이 다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일방의 자를 위한 것인 경우에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으로 지급한 금액이나 보험료를 이유로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64조 ① 배우자 각자는 자기의 특유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에 의하여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그들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부부재산제가 존속하는 동안에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제397조와 제398조가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목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해소와 청산

제465조 ①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소된다.

1. 배우자 일방의 사망
2. 혼인 중 부부재산제에 대한 약정에 의한 변경
3. 이혼, 별거 또는 재산에 대한 분리의 판결
4. 법률이 정하는 경우의 배우자 일방의 부재
5. 혼인의 무효. 혼인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해소의 효과는 즉시 발생한다. 다만 배우자 사이에서 신청일까지 그 효력이 소급되는 제3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6조 모든 부부재산제의 해소의 경우에 법원은 배우자 일방²⁹⁰⁾이나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호관계에서 해소의 효과를 그들이 동거를 중지한 날까지 그 해소의 효과를 소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67조 ① 부부재산제의 해소 후에도 배우자 각자는 그 특유재산을 보유한다.

②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을 승낙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제468조 ①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② 부부재산제의 해소 후에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간섭한 경우에는 그가 권리가 있는 다른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지분을 수취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간섭한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을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순한 관리행위는 간섭이 되지 아니한다.

제469조 ① 포기는 공정증서 또는 그것이 기재된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포기는 채권과 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해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배우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470조 ① 배우자 일방이 분할을 포기한 경우에 그가 권리를 가지게 될 다른 일방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지분은 다른 일방이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290) 프랑스어는 l'un ou l'autre des époux이고 영어는 either spouse이다.

② 하지만 분할을 포기한 배우자의 채권자는 자기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포기로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들의 채무자의 배우자를 대위하여²⁹¹⁾ 그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지분을 수취할 수 있다는 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경우에 승낙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 포기한 배우자의 이익을 위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471조 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횡령, 은닉하거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낭비하거나 이를 해의를 가지고 관리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은 상실된다.

제472조 승낙 또는 포기는 취소될 수 없다. 하지만 과다손해²⁹²⁾ 또는 기타의 계약의 무효 원인에 의하여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제473조 ① 부부재산제가 사망에 의하여 해소되고 잔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을 승낙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은 잔존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을 승낙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잔존배우자만이 수취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귀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는 부부재산제의 해소와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상속인 중 1인이 승낙하고 다른 상속인은 포기한 경우에는 승낙한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이 승낙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취하였을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지분만²⁹³⁾을 받을 수 없다.

③ 잔존배우자의 포기는 사망한 배우자의 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제474조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럼에도 분할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그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의 추가기간에 그 포기를 등기할 수 있다.

제475조 ①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이 승낙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배우자의 재산총체는 2개의 재산으로 나눈다. 첫째는 특유재산으로 된 것이고 다른 것은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된 것이다.

② 다음으로 특유재산의 것에서 그 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것으로 지급될 보상에 관하여 보고한다.

③ 보상은 다른 일방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한 상대방이 가지는 재산증가를 말한다.

제476조 ① 보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재산제가 해소된 날²⁹⁴⁾의 상태에 의하며 또한 청산한 때의 가치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이득은 부부재산제가 해소된 날에 평가한다. 하지만 부부재산제의 존속 중에 취득되거나

291) 프랑스어는 au lieu et place de ce dernier이고 영어는 in his or her place and stead이다.

292) 이에 대하여는 앞의 주60 참조.

293) 영어는 '지분 이상을 취할 수 없다'(may not take more than)이다.

294) 영어는 '때'(time)이고 프랑스어는 '날'(jour)이다.

또는 개량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득은 양도일에 평가한다.

제477조 재산의 유지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이유로 하여서는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78조 특유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된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지급된 것과 같이 하여 보상이 발생한다.

제479조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위약금²⁹⁵⁾을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한 변제는 보상이 발생한다.

제480조 ①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부분에 대하여 계산에 의하여 차액이 있는 경우에 재산의 권리자인 배우자는 감액하여 수취하거나 대물²⁹⁶⁾로 하거나 또는 자기의 특유재산에 의하여 분할을 위하여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유재산에 대하여 계산에 의하여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으로부터 부담할 액을 한도로 재산을 공제한다.

제481조 보상의 정산이 된 경우에는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순가치가 증명되고 배우자 사이에서 그 가치는 배우자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한다. 재산의 권리자인 배우자는 그에게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482조 ① 부부재산제의 해소가 권리자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 현금이나 정기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가족의 거소와 가족의 상용에 제공되는 동산이나 기타의 가족의 재산을 그것이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이나 가족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배우자는 자기에 대하여 대물변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와 변제의 방법²⁹⁷⁾을 정한다.

제483조 당사자가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지명한 전문가가 하고 그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한다.

제484조 ① 부부재산제의 해소에 의하여 분할 전에 그 채무자의 재산의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② 분할 후에 원래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만 그들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할 때에 그 채권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그 채무자의 재산을 검색한 후에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각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분할 전에 지급되었으면 그에게 인정될 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²⁹⁸⁾.

295) 영어는 fine이고 프랑스어는 amende이다.

296) 영어는 in value이고 프랑스어는 en valeur이다.

297) 영어는 '기한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다.

③ 채무자인 배우자의 배우자는 그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취한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부분 이상을 변제할 것이 요청되지는 아니한다.

제3관 별산제

제1목 합의에 의한 별산제

제485조 합의에 의한 별산제는 부부재산계약에서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만으로 성립된다.

제486조 별산제에서 배우자 각자는 그들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관리, 향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한다.

제487조 배우자의 누구²⁹⁹⁾도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재산은 각자가 1/2에 의한 쌍방의 불가분의 공유³⁰⁰⁾인 것으로 추정한다.

제2목 판결에 의한 별산제

제488조 배우자의 누구나 부부재산제의 규정이 자기 또는 가족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별산제를 취할 수 있다.

제489조 ① 판결에 의한 별산제³⁰¹⁾는 부부재산제를 해소하게 하고³⁰²⁾ 배우자를 합의에 의한 별산제에 있는 자의 지위를 가지게 한다.

② 배우자 사이에서 별산제의 효과는 청구일까지 소급한다. 다만 법원이 동거를 중지한 날까지 소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0조 ① 배우자의 채권자는 별산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소송에 참가할 수는 있다.

②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해하는 별산제의 선고나 집행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491조 별산제에 의하여 된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잔존자의 권리를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공유제

298) 영어는 preserves a remedy(구제를 유지한다)이다.

299) 영어는 ‘배우자가’(the spouses)라고만 한다.

300) 영어는 undivided co-ownership(불가분의 공동소유)이고 프랑스어는 appartenir aux deux indivisément(불가분적으로 귀속)이다. 이는 공동소유로 불가분적이고 지분이 1/2로 추정되는 것으로 우리의 ‘공유’를 말한다.

301) 원문은 prononcée en justice, judiciairement로 ‘재판(판결)로 선고된’이다.

302) 영어는 entails, emporte로서 ‘가져온다,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제492조 ① 배우자가 공유제를 선택하고 그 약정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규정을 준용한다³⁰³⁾.

② 종전의 법정 공유제에서 혼인한 배우자는 그 부부재산제와 모순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혼인 후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해소와 청산에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절 별거

제1관 별거의 사유³⁰⁴⁾

제493조 별거는 동거의 의사가 현저하게 침해³⁰⁵⁾된 경우에 선고한다.

제494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히 동거의 의사가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한다.

1. 배우자 쌍방이나 일방이 동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을 거의 인용할 수 없게 하는 누적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배우자가 신청할 때에 별거하는 경우
3. 배우자 일방이 혼인으로 인한 의무를 중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배우자는 자기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제495조 ① 배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별거의 효력을 정한 합의안을 제출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우자의 합의가 진의에 의한 것이고 그 합의가 배우자 각자와 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보는 경우에는 별거를 선고한다.

제2관 별거에 관한 소송

제1목 총칙

제496조 별거에 관한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조언하고 화해를 촉진하고 자의 이익에 주의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에 속한다.

제2목 청구와 증거

제497조 배우자의 쌍방이나 일방은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8조 배우자가 동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을 거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의 증명은 당사

303) 영어는 reference shall be made, adapted as required, se référence, compte tenu des adaptations nécessaires로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이지만 우리의 ‘준용’에 해당한다. 다만 퀘벡법(프랑스법)에는 준용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다.

304) 원문은 causes, grounds로서 이유, 사유 등의 의미로 우리 법에서는 ‘사유’로 하고 있다. 가령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제817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40조 등 참조. 다만 원인이라고 한 것은 제840조의 제목(재판상 이혼원인) 참조.

305) 프랑스어는 atteinte이고 영어는 undermined이다.

자 일방의 자백³⁰⁶⁾으로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증거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목 가처분³⁰⁷⁾

제499조 별거의 청구에 의하여 배우자는 동거할 의무를 면한다.

제500조 ① 법원은 소송의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에게 가족의 거소를 떠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때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던 동산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다.

제501조 ① 법원은 자의 후견과 교육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의 계속 중에 배우자 각자에게 자의 양육에 분담할 액을 정한다.

제502조 법원은 배우자 일방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와 소송비용을 위한 임시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503조 가처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인정³⁰⁸⁾된 경우에 재심³⁰⁹⁾할 수 있다.

제4목 연기와 화해

제504조 ① 법원은 심리의 연기에 의하여 배우자의 화해를 촉진하고 배우자 일방이나 그 자의 일방에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연기에 의하여 일방의 배우자 또는 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별거의 신청의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우자가 그 별거의 효과에 대하여 정할 수 있고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05조 ① 별거청구 후에 배우자 사이에서 화해한 경우에 소송은 종료한다.

② 그럼에도 배우자 각자는 화해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청구의 근거를 위하여 이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제506조 90일 미만의 동거³¹⁰⁾의 재개시는 그 자체에 의하여 화해로 추정하지는 아니한다.

306) 프랑스어는 témoignage이고 영어는 admission이다. 웨백민법전에서 전자는 '증언'으로서 제2843조-제2845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Testimony이다. 후자는 '자백'(자인)으로 제2850조-제2853조에서 규정하고 프랑스어로는 aveu이다. 양자는 증거방법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본 조에서는 이를 각각 같이 사용하고 있다.

307) 원문은 '임시조치'(meures provisoires, Provisional measures)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용례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하였다.

308) 영어는 warranted이고, 프랑스어는 justifie이다.

309) 영어는 reviewed, 프랑스어로는 révision이다.

310) 원어는 cohabitation(동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3관 배우자 사이의 별거의 효과

제507조 별거는 배우자에게 동거할 의무를 면제한다. 별거는 혼인관계를 단절하지는 아니한다.

제508조 ① 별거는 경우에 따라 별산제를 취할 수 있다

② 배우자 사이에서 별산제의 효과는 별거를 청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원이 이를 동거를 중지한 날까지 소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9조 별거로 즉시 잔존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0조 ① 별거로 혼인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실효하지는 아니한다.

② 법원은 별거를 선고할 때에 당사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증여를 실효로 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생전증여의 변제를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511조 법원은 별거를 선고할 때 또는 그 후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2조 배우자에 관한 별거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서 법원은 그 사정을 고려한다. 특히 법원은 그 필요와 능력, 당사자가 한 합의, 그 연령과 건강상태, 그 가족에 대한 의무, 그 취직의 가능성, 현재와 장래의 재산상태, 재산과 수입의 평가 및 경우에 따라서 부양료의 권리자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기 위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

제4관 자에 대한 별거의 효과

제513조 ① 별거는 법률이나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자에게 인정된 이익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② 부모의 그 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별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14조 법원은 별거를 선고할 때에 또는 그 후에 자의 이익과 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이의 합의를 고려하면서 자의 후견, 양육 및 교육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5관 별거의 종료

제515조 ① 임의로 배우자가 동거를 재개시하는 경우에 별거는 종료한다.

② 별산제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다른 부부재산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혼인의 해소³¹¹⁾312)

제1관 총칙

제516조 혼인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또는 이혼에 의하여 해소한다.

제517조 이혼은 캐나다의 이혼법에 의하여 선고한다. 이혼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 법전의 별거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법전³¹³⁾의 규정이 캐나다의 이혼법과 일치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제2관 이혼의 효력

제518조 ① 이혼은 부부재산제를 해소한다.

② 배우자 사이의 부부재산제의 해소의 효력은 청구한 날까지 소급한다. 다만 법원이 동거³¹⁴⁾를 중지한 날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9조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을 고려하여 한³¹⁵⁾ 사인증여는 이혼에 의하여 실효한다.

제520조 ① 배우자 사이에서 한³¹⁶⁾ 기타의 사인증여와 생존증여는 이혼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법원은 이혼을 선고할 때에 그 증여를 실효, 감축³¹⁷⁾하는 것으로 판시하거나 생존증여의 변제를 그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21조 이혼은 자에 대하여는 별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장의 2 민사결합³¹⁸⁾

311) 영어와 프랑스어는 모두 dissolution이다.

312) 캐나다는 1867년 헌법 제91조 제26호에 의하여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입법권을 연방의 관할사항으로 하고 있어 퀘벡주에서는 이 한도에서 이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헌법 제92조 제13호에서 혼인식의 거행에 관한 입법권은 주관할로 하고 있다. 연방의 이혼에 관한 규정은 ‘이혼법’이 규정하고 있다.

313) 조문의 원문은 Code of Civil Procedure(R.S.Q., chapter[c.로 약칭하기도 함] C-25)와 Code du procédure civile(L.R.Q., chapitre[c.로 약칭하기도 함] C-25)로 되어 있다. 괄호 안의 R.S.Q.는 Revised Statutes of Québec이고 L.R.Q.는 Loi refondues Québec으로 ‘퀘벡 개정법령’의 약자이다. 원문은 우선 <<http://www.canlii.org/fr/qc/legis/lois/lrq-c-c-25/derniere/lrq-c-c-25.html>>과 <<http://www.canlii.org/en/qc/laws/stat/rsq-c-c-25/latest/rsq-c-c-25.html>> 참조.

314) 원문은 각각 vie commune, live together로 이를 ‘동거’로 하였다.

315) 프랑스어는 consentie로 ‘합의된’이고 영어는 made이다.

316) 제529조의 설명도 참조.

317) 원문은 reduce, réduire로 감소, 삭감, 제한의 의미이다.

318) 본 장의 규정은 동성커플에 대하여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민사결합의 설치와 입양의 새로운 규정의 신설에 관한 법’(법률 제6호 제1-73조, 제235조) 중 제27조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다

제1절 민사결합의 성립

제521조의 1 ① 민사결합은 18세 이상인 2인의 자가 동거³¹⁹⁾와 그러한 지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한다는 자유롭고 명시적인³²⁰⁾ 합의에 의한 약정을 말한다.

② 민사결합은 종전의 혼인이나 민사결합관계에서 벗어나고 서로간에 존속, 비속이거나 형제자매가 아닌 자 사이에서만 체결할 수 있다.

제521조의 2 ① 민사결합은 혼인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는 주례의 면전에서 2인의 증인의 입회하여 공언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② 종교단체의 성직자에게는 그의 종교와 자기가 속한 종교단체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가 있는 민사결합의 예식의 거행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521조의 3 ① 민사결합의 예식의 거행 전에 주례는 장래의 배우자의 신분과 민사결합의 성립요건과 법률이 정한 형식의 준수를 확인한다.

② 민사결합의 예식의 거행은 혼인식의 거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이에는 사전 공고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제521조의 4 ① 이해관계인은 모두 민사결합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사이에서 민사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민사결합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21조의 5 ① 민사결합은 민사결합증서에 의하여 증명한다. 다만 법률이 다른 증명방법을 허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사결합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의 점유는 민사결합증서에서의 형식의 하자를 보정한다.

제2절 민사결합의 효력

제521조의 6 ① 민사결합의 배우자³²¹⁾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배우자는 서로 존경하고 정조를 지키고³²²⁾ 부조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배우자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

④ 가족의 교양³²³⁾, 친권의 행사, 비용분담, 가족의 주거, 가족의 재산과 보상금부에 관한 민사결합의 효력에 대하여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³²⁴⁾한다.

만 이성의 커플(배우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19) 원문은 ‘공동생활’(vie commune, live together)이지만 일단 우리 용어례에 따라 ‘동거’로 하였다.

320) 원문은 enlightened, éclairé로서 ‘분명하게 한’이라는 의미로 ‘명시적’으로 하였다.

321) 퀘백법에서는 민사결합의 당사자를 혼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우자(spouse, conjoint)로 명시한다.

322) 원문은 fidelity, fidélité로서 충실, 신의 등의 의미이다. 우리 민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은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정조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이를 정조의무로 하였다. 따라서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323) direction of the family이다.

⑤ 배우자는 그 재산제를 어느 것으로 하든지 본 조의 규정에는 반할 수 없다.

제521조의 7 민사결합은 당사자 일방과 그 배우자의 친족 사이에서 인척관계³²⁵⁾가 발생한다.

제521조의 8 ① 민사결합의 재산제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계약으로 어떠한 약정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강행규정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사결합의 예식의 거행 전에 그 민사결합의 재산제를 정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혼인 중 취득재산의 공유제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③ 민사결합의 재산제는 약정재산제나 법정재산제를 불문하고 부부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1조의 9 당사자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는 그 일방에 의하여 당사자의 화해를 시도한 후에 가족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어느 것으로 정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민사결합의 무효

제521조의 10 ①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민사결합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② 혼인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질서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1조의 11 민사결합의 무효는 혼인의 무효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민사결합의 해소

제521조의 12 ① 민사결합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한다. 동거를 계속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된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된 당사자의 공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해소된다.

② 민사결합은 당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에 의하여도 해소된다, 이 해소로는 민사결합을 종료한다는 효력만을 부여한다. 민사결합의 효력은 유지되고 민사결합한 날로부터 혼인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민사결합의 재산제는 부부재산제가 된다. 다만 혼인재산계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1조의 13 ① 배우자는 약정으로 해소의 모든 효과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공동의 의사표시로 민사결합을 해소를 합의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와 약정은 공증인 앞에서 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324) 원문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이다.

325) 영어는 family connection(친족관계), 프랑스어는 alliance(인척관계)이다.

③ 공증인은 공증된 화해계약에 약정이 기재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작성할 수 없다.
공증인은 미리 해소의 효과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고 그 약정이 법률의 강행규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적당한 경우에 공증인은 유용한 화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그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21조의 14 화해계약에는 가족재산의 평가를 한 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 일자는 민사결합의 해소를 위한 공동절차의 일자나 배우자가 동거를 중지한 일자보다 이전이어서는 안되고 공증인 앞에서 한 계약서의 작성일보다 이후이어서는 안된다.

제521조의 15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공동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생한 일자와 장소 및 그 결합의 예식을 한 일자를 기재한다. 화해계약과 의사표시가 된 곳과 일자와 이러한 각각의 증서에 부여된 원본의 번호도 기재한다.

제521조의 16 ① 공증인 앞에서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공동의 의사표시와 화해계약은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공증된 의사표시는 민사신분등록관에게 통지하는 것 이외에 원래의 민사결합계약의 보관자와 원래의 재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민사결합의 재산제를 변경하는 계약서의 보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해소의 공동의 의사표시를 계약서의 원본과 교부할 등본에 기재하고 등본의 교부에는 의사표시의 일자와 원본의 번호와 의사표시를 수령한 공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증된 의사표시와 화해는 퀘벡 연금청³²⁶⁾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증된 의사표시의 통지는 의사표시를 작성한 공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과 동산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521조의 17 ①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민사결합을 해소하는 공동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의 공동의 자의 이익이 위험하게 된 경우에 그 민사결합의 해소는 법원이 선고하여야 한다.

② 동거를 계속하려는 배우자의 의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고 화해를 시도하였고 자의 이익과 그 권리보호에 주의한 것을 법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은 별거의 경우와 같이 가처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해소를 선고할 때나 그 후에 당사자의 일방에게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자의 최상의 이익에서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배우자의 합의를 고려하면서 자의 후견, 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521조의 18 ① 민사결합이 해소는 법률이나 민사결합계약에 의하여 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자로부터 박탈하지 아니한다.

②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결합의 해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21조의 19 ① 민사결합의 해소로 민사결합의 별산제가 해소한다. 배우자 사이에서 재산

326) 원문은 Régie des rentes du Québec이다.

제의 해소의 효력은 사망한 날, 해소의 공동의 의사표시가 공증인 앞에서 수령된 날 또는 당사자가 공증된 화해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족재산의 순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소급한다. 법원에 의하여 해소가 선고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한 날까지 소급한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가 별거를 중지한 날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소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망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해소로 민사결합을 고려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한 사인증여는 실효한다. 민사결합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한 기타의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실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해소를 선고할 때에 그 증여를 실효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증여의 변제를 그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것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친자관계

제522조 친자관계가 확인된 자는 누구나 출생한 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절 친생자관계³²⁷⁾

제1관 친자관계의 증명

제1목 증서와 신분점유³²⁸⁾

제523조 ① 부자관계와 모자관계는 출생한 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출생증서에 의하여 증명한다.

②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인³²⁹⁾ 신분점유에 의하여 충족된다.

327) 원문은 혈연에 기한 친자관계(filiation par el sang, filiation by blood)로 우리 법의 용례(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에 따라 ‘친생자관계’로 하였다.

328) 원문은 possession d'état, possession of status이다. Possession d'état은 ‘신분점유’(身分占有)로 옮기는데 이는 가족법에서 그 가족이나 기타의 자(entourage)에 의하여 그와 자녀라고 부르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어느 자의 친자관계를 확정(établir)하는 법정추정(présomption légale)을 말한다. 이 신분점유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원에 의한 심문(enquête)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다. 이러한 점은 <<http://www.dictionnaire-juridique.com/definition/possession-d-etat.php>>과 관련문헌 참조. 프랑스민법에서 準占有(quasi possession)를 소유권이 아닌 물권의 점유(possession d'un droit réel autre que le droit de propriété)로 하고 광의의 의미에서는 점유라고 하는 용어는 채권의 점유(possession de la créance)와 신분의 점유(身分占有)(possession d'état)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은 어떠한 상태와 권리의 외관(apparence d'une situation ou d'un droit quelconque)이라는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점은 Henri, Léon et Jean Mazeaud et François Chabas, Leçons de droit civil, t.2, 2e vol. Biens, 8e éd., 1994, p.276, n°1530 및 p.192, n°1416 참조; 퀘벡법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령 <<http://www.lecourshebert.com/dictionnaire-juridique/details/6474>> 참조; 일본 구민법에서도 프랑스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신분점유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다(구민법 인사편 제93조 이하). 다만 명치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증거에 관한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은 法典調査會議事速記録(商事法務研究会編) 六, 四八八頁(富井) 참조;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회적 생활사실로서의 신분점유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星野茂, 身分占有の概念に関する若干の考察, 明治大学大学院紀要-法学篇, 제25권 제1호, 1988.2, 237-250쪽, 특히 248쪽 <https://m-repo.lib.meiji.ac.jp/dspace/bitstream/10291/7649/1/daigakuinkyohou_25_237.pdf> 참조.

329) 영어는 uninterrupted(중단없는)이고 프랑스어는 constante(계속된)이다.

제524조 계속적인 신분점유는 자와 그로부터 출생되었다고 주장된 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의 상당한 결합에 의하여 증명한다.

제2목 부자관계의 추정

제525조 ① 혼인이나 이성(異性)의 자에 의한 민사결합 중에 또는 그 해소 또는 무효가 된 후에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모의 배우자를 자의 부로 추정한다.

② 부자관계는 혼인한 배우자의 별거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후 300일 이상을 경과한 후에 자가 출생된 경우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의 출생 전에 임의로 동거를 재개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혼인이나 민사결합이 해소 또는 무효가 된 후에 300일 내에 자가 출생되었지만 그 자의 모가 다시 혼인하였거나 민사결합을 한 후에 출생한 경우에 종전의 배우자에 관하여도 추정은 되지 아니한다.

제3목 임의인지

제526조 앞의 조문을 적용하여 모자관계나 부자관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는 임의인지에 의하여 확정될 수도 있다.

제527조 ① 모자관계는 여자가 그 자의 모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② 부자관계는 남자가 그 자의 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제528조 단순한 모자관계나 부자관계의 인지는 이를 인지한 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제529조 단순한 모자관계나 부자관계의 인지로는 아직 확정되었지만 소송에서 아직 다툼이 있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제2관 친자관계에 관한 소

제530조 ① 누구도 출생증서와 그 증서와 일치하는 신분의 점유에 의하여 부여된 것에 반하는 친자관계는 주장할 수 없다.

② 신분점유가 출생증서와 일치하는 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

제531조 ① 부 또는 모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은 모두 출생증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분점유를 가진 자의 친자관계에 대하여 모든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② 하지만 부로 추정된 자는 부자관계의 추정이 효력을 가진 날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부자관계를 다투고 그 자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자의 출생을 알지 못하고 이 경우에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시효기간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는 자의 출생으로부터 1년 내에 부로 추정된 자의 부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

제532조 ① 출생증서와 그와 일치하는 신분점유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에 그 친자관계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하게 부 또는 모는 그들에 대하여 증서와 그에 일치하는 신분점유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자가 이미 출생증서, 신분점유 또는 부자관계의 추정의 효력에 의하여 확정된 친자관계를 이미 가진 경우에 신분을 주장하는 소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확정된 신분을 다투는 소에 병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분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소는 경우에 따라 자에 대하여 하거나 모 또는 부로 추정된 자를 상대로 제기한다.

제533조 친자관계는 모든 방법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증언은 증거의 개시가 있거나 또는 이미 명백하게 증명된 사실에서 나온 추정이나 단서가 이를 인용하기에 충분히 강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34조 증거의 개시는 가족문서, 가사의 등록부나 서류 및 다툼에 관여한 당사자나 생존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이익이 있을 자로부터 나온 기타의 모든 공문서나 사문서로 한다.

제535조 ① 친자관계에 대한 소를 다투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증거가 허용된다.

② 부(夫) 또는 민사결합의 배우자가 자의 부(父)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모든 증거방법도 허용된다.

제535조의 1 ① 친자관계에 관한 소를 법원이 수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소에 관계하는 자의 유전적 특징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조직의 일부의 분석을 명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소가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친자관계의 증거의 개시가 소를 제기한 자가 증명하였거나 또는 그 자에 의하여 이미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에서 나온 추정이나 단서가 이미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하게 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가능한 한 관계자의 신체적 완전성과 사자의 사체를 존중할 수 있는 표본채취와 분석의 조건을 정한다. 이 조건은 표본채취의 방법과 일자와 장소, 표본을 채취하고 분석할 전문가의 신분, 채취한 표본의 사용과 분석결과의 비밀보장을 포함한다.

④ 법원은 그가 명한 분석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제536조 ① 법률이 단기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권은 30년으로 시효에 걸리고 이 기간은 자의 주장된 신분이 상실된 날이나 다툼이 있는 신분의 향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자가 그 신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지만 그가 아직 이를 할 수 있는 시효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자의 상속인이 자의 사망 후 3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7조 ① 신분을 부인하거나 다투기 위한 기간의 만료 전에 부로 추정된 자나 모가 사망

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권리³³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인은 그 사망 후 1년 내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관 생식보조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제538조 생식보조를 받아 하는 부모의 출산계획은 단독으로 정하거나 배우자가 상호동의하여 자를 얻기 위하여 부모의 계획에 당사자가 아닌 자의 유전학적 물질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538조의 1 ①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의 경우와 같이 생식보조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출생증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신분점유로 충족한다. 계속적인 신분점유는 자, 자를 출산한 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계획의 다른 일방 사이의 친자관계를 보이는 상당한 사실의 결합으로 증명된다.

② 이러한 친자관계에는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제538조의 2 ① 제3자인 부모의 출산계획을 위하여 유전적 물질의 출연³³¹⁾은 출연자와 부모의 계획으로 출생한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유전적 물질이 성적 접촉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그 출생으로부터 1년 내에 출연자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자를 출산한 여자의 배우자는 친자관계의 확인을 신청에 항변하기 위하여 출생행위와 일치하는 신분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제538조의3 ① 혼인이나 민사결합 중 또는 해소나 무효한 후에 300일 내에 혼인하였거나 민사결합한 배우자 사이에서 생식보조에 의한 부모의 출산계획으로 자가 출생한 경우에 자를 출산한 여자의 배우자는 그 자의 부로 추정된다.

② 혼인한 배우자의 별거를 명한 판결로부터 30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자가 출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인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의 출생 전에 배우자가 임의로 동거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혼인이나 민사결합의 종료로부터 300일 내이지만 자를 출산한 여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민사결합한 후에 자기 출생한 경우에도 전의 배우자에 대하여 추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39조 ① 생식보조를 포함한 부모의 출산계획으로 자가 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의 친자관계를 다룰 수 없다. 하지만 자를 출산한 여자와 혼인하였거나 민사결합한 배우자는 상호간에 부모의 출산계획이 없었거나 그 자가 생식보조에 의하여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의 친자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할 수 있다.

② 본 관을 적용하여 확인된 친자관계의 다툼에 대하여는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의 소에 관

330) 원문은 각각 droit d'action, right of action이다.

331) 프랑스어는 '타인의 부모의 출산계획에 유전적 물질로 한 기여'(apport de forces génétiques au projet parental d'autrui)이다. 영어는 '제3자인 부모의 출산계획'(third-party parental projet)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3자(third-party)는 통상적으로 이미 2인의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하여 제3자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경우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Jean-Maurice Brisson, Nicholas Kasirer,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rivé et comparé, 앞의 책, 151쪽 참조.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9조의 1 부모가 모두 여자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가 모의 것과 다른 한도에서는 이는 자를 출생하지 아니한 모에게 귀속된다.

제540조 혼인하지도 아니하고 민사결합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출산계획에 동월한 후에 민사신분등록부에 그 계획으로 출생한 자와의 그의 친자관계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자와 그 자의 모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541조 여자가 타인을 위하여 임신하거나 자를 출산한다는 합의는 모두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542조 ① 의학적인 생식보조에 의한 출생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② 하지만 의학적 생식보조로 출생한 자나 그 자의 비속의 건강이 그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 정보를 전달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자의 비속도 그 비속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비속이나 그 근친의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입양

제1관 입양의 요건

제1목 총칙

제543조 ① 입양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입양은 이미 확정된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할 수 없다.

제544조 미성년자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거나 또는 자가 판결에 의하여 입양에 적격으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입양될 수 있다.

제545조 ① 성년자는 그가 미성년자이었을 때에 그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될 수 없다.

② 하지만 법원은 입양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성년자는 단독으로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자를 입양할 수 있다.

제547조 ① 입양을 하는 자는 입양되는 자보다 18세 이상의 연장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되는 자가 입양하는 배우자의 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법원은 입양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548조 ① 본 관이 정하는 동의는 2인의 증인이 입회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동의의 철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2목 입양되는 자의 동의

제549조 ① 10세 이상의 자는 그 동의가 없으면 입양될 수 없다. 다만 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14세 미만의 자가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판결을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은 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허락할 수 있다.

제550조 14세 이상의 자에 의한 동의의 거절은 입양에 대한 장애가 된다.

제3목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제551조 ① 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입양하는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가 그들 쌍방에 확인되면 부모 쌍방의 입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부모의 일방에 대하여만 자의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일방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제552조 일방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제553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의 입양은 자에게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의 동의에 의한다.

제554조 미성년인 부모는 허가 없이 그 자신이 그 자의 입양에 동의할 수 있다.

제555조 입양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 동의와 특별동의³³²⁾로 할 수 있다. 특별동의를 자의 존속, 자의 3촌 내의 방계혈족이나 그 존속과 혈족의 배우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배우자³³³⁾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동거하여야 한다.

제556조 입양에 대한 동의로 위탁양육명령³³⁴⁾이 있을 때까지 그 자가 인도된 자에게 친권은 이전한다.

제557조 ① 입양을 동의한 자는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32) 원문은 général ou spécial, general or special이다.

333) 원문은 conjoints de fait, de facto spouse로 '사실상의 배우자'이다. 주거임대차에 관한 제1938조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 외에 제15조에서는 union de fait라고 하여 de facto spouse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334) 이에 대하여는 제566조 이하 참조.

② 이러한 경우에 자는 지체없이 특별한 형식 없이 그 동의를 철회한 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558조 30일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자는 위탁양육명령³³⁵⁾이 있기 전이면 언제든지 법원에 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목 입양적격의 선고

제559조 다음 각 호의 자는 판결에 의하여³³⁶⁾ 입양적격이 있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1. 부자관계도 모자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한 3월 이상의 자
2. 부모 또는 후견인이 6월 이상 사실상으로 후견, 양육이나 교육하지 아니한 자
3.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였고 후견인도 없는 자
4. 부모가 없고 후견인이 없는 자³³⁷⁾

제560조 입양적격의 선고의 신청은 자의 존속,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 존속과 친족의 배우자, 14세 이상인 자 본인이나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제561조 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자의 후견을 하거나 그 양육이나 교육을 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적격으로 선고될 수 없다. 그 개연성은 추정된다.

제562조 법원은 자를 입양적격으로 선고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한다.

제5목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의 입양에 관한 특별규정

제563조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퀘벡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청소년보호법³³⁸⁾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전에 심리사회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64조 입양절차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기관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퀘벡관보’에 게재된 보건사회복지 장관의 명령이 다른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5조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의 입양은 해외에서 하거나 퀘벡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퀘벡에서 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위탁양육명령³³⁹⁾이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인정된 결정은 퀘벡에서 법원이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양이 국제입양에 관한 자의

335) 이에 대하여는 제566조 이하 참조.

336) 원문은 judiciailly, judiciairement으로서 ‘사법적으로’의 의미이다.

337) 프랑스어는 enfant orphelin(고아인 자)라고 한다.

338) 원문은 Loi sur la protection de la jeunesse(L.R.Q., c. P-34.1), Youth Protection Act(R.S.Q., c. P-34.1)이다.

339) 이에 대하여는 제566조 이하 참조.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에 따라 된 것으로 입양을 한 국가의 관할권이 있는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위탁양육명령³⁴⁰⁾과 입양판결

제566조 ① 미성년자의 위탁양육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자가 입양을 할 자³⁴¹⁾와 함께 법원의 명령이 있는 후 6월 이상 생활한 후가 아니면 자의 입양은 선고될 수 없다.

② 하지만 특히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입양을 할 자가 미성년자와 이미 함께 생활한 그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3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제567조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는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위탁명령은 할 수 없다.

제568조 ① 위탁양육명령을 하기 전에 법원은 입양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특히 자와 원래의 자의 가족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친자관계의 해소를 효력이 있는 입양에 대하여 유효하게 필요한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②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의 위탁이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된 경우에는 법원은 취한 절차가 동의에서 정한 것이라는 것도 확인한다. 자의 위탁이 국제입양에 관한 자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³⁴²⁾의 내용에 의하여 한 경우에 법원은 조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③ 중대한 사유가 있고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자가 제563조와 제564조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탁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청구에는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에 의하여 하는 사회심리학적 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9조 ① 위탁양육명령으로 양자를 할 자는 친권을 행사한다. 위탁기간 중에 자는 입양을 하는 자가 선택하고 그 명령에 기재된 성명에 의한 민사권리의 행사가 인정된다.

② 위탁명령은 자를 그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반환하는 것 및 자와 혈연에 의한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의 확인을 방해한다.

제570조 위탁양육명령은 그 위탁이 종료하거나 법원이 입양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71조 양자를 할 자가 위탁양육의 최소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14세 이상의 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양육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340) 원문은 ordonnance de placement, order of placement이다. 확정적인 입양판결이 있기 전에 일정기간 정도 위탁을 받아 시험적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시험양육명령’으로 하기도 한다.

341) 원문은 adopter, adoptant으로 문자적으로 ‘입양자’이지만 우리 민법은 양자를 할 자, 양친, 양부모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342) 1993년 3월 29일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69> 참조.

제572조 위탁양육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고 입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는 그 직권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위탁양육명령이 있기 전에 법정후견인이었던 청소년보호국의 국장이 다시 법정후견인이 된다.

제573조 법원은 입양을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양을 선고한다. 다만 자가 입양될 가정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재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이 경우 또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3조의 1 국제입양에 관한 자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퀘벡 외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의 퀘벡으로의 입양을 법원이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면 바로 그 협약이 정하는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574조 ① 퀘벡 외에서 한 입양을 인정한 판결의 승인이 요청된 경우에 법원은 입양에 대한 동의와 입양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수된 것과 자와 그 자의 원래의 가족 사이에 이미 있는 친자관계의 해소를 가져오는 입양에 대하여 동의한 것을 확인한다.

②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의하여 입양을 인정한 판결이 퀘벡 외에서 있을 경우에 법원은 취한 절차가 합의에 정한 것에 의한 것도 확인한다.

③ 중대한 사유가 있고 자의 이익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을 할 자가 제563조와 제564조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에는 사회심리학적 평가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575조 ① 위탁양육명령이 있을 후에 입양을 할 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망한 입양을 할 자에 대하여도 입양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입양을 할 자가 사망하더라도 퀘벡 외에서 입양을 인정한 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

제576조 법원은 입양을 할 자가 선택한 성명을 입양이 될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입양을 할 자나 입양이 되는 자의 청구에 기하여 원래의 성명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입양의 효력

제577조 ① 입양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게 원래의 친자관계에 대신한 친자관계를 부여한다.

② 입양이 될 자는 원래의 가족에의 소속이 중단된다. 다만 혼인과 민사결합의 제한³⁴³⁾은 존속한다.

제578조 ① 입양은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343) 원문은 empêchement, impediments로 ‘방해’, ‘장해’라는 의미이지만 ‘제한’(금지)로 의역하였다.

②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입양이 된 자와 그 입양된 가정의 가족 사이의 방계에서의 혼인과 민사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제578조의 1 ① 입양된 자의 부모가 동성이고 법률이 부모에게 다른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남성커플인 경우에 부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여성커플인 경우에 모에게 부여된 권리의 의무를 가진다. 입양을 한 부 또는 모에게 법률이 다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부모의 누구도 그 자와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의 판결이 정한다.

제579조 ① 입양이 선고된 때에 이전의 친자관계는 종료한다.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권리를 상실하고 입양된 자에 대한 그 의무를 면한다. 다만 계산을 할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자의 입양으로 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580조 위탁양육명령이 있는 후에 입양할 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입양은 그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81조 ① 입양을 인정한 결정의 승인은 입양을 인정한 결정이 퀘벡 외에서 선고된 때로부터 퀘벡에서 한 입양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자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입양의 당연한 승인은 입양을 인정한 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퀘벡에서 한 입양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국제입양에 관한 자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이 시행을 위한 법³⁴⁴⁾ 제9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입양서류의 비밀유지

제582조 ① 자의 입양에 관한 법원의 서류³⁴⁵⁾와 행정서류는 비밀을 유지하고 이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법률의 요청이 아니면 개시될 수 없다.

② 하지만 법원은 학습, 교육, 연구 또는 공공조사를 위한 입양서류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 부모와 입양을 한 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83조 ① 성년으로 입양된 자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으로 입양된 자는 그 친부모가 이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그가 그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입양된 자가 성년이 되어 사전에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입양된 자의 부모에 대하여도 같다.

344) 원문은 Loi assuran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et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adoption internationale(L.Q.2004, c.3); Ac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S.Q., 2004, c.3) 참조.

345) 원문은 judicial files, dossiers judiciaires이다.

② 입양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부모와 입양을 한 부모가 사전에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가 그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③ 동의는 요청될 수 없다. 다만 입양된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한 정보의 신청에 대하여 통지될 수 없다.

제584조 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 또는 성년을 묻지 아니하고 입양된 자 또는 그 근친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입양된 자에게 그러한 정보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입양된 자의 근친도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실이 그의 건강이나 그 근친 중 어느 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부양의무

제585조 혼인이나 민사결합한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³⁴⁶⁾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586조 ① 미성년인 자를 위한 부양의 소는 사정에 따라 그 친권자, 그 후견인 또는 자를 감호³⁴⁷⁾하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② 자신이 부양할 수 없는 성년의 자의 필요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 또는 모는 자를 위하여 부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자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성년의 자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587조 부양료의 인정에는 당사자의 필요와 능력, 그 당사자가 처한 사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료의 권리자가 충분하게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87조의 1 ① 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를 위한 부양료의 결정을 위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본적 부모의 부담은 자의 필요와 부모의 능력에 대응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본적 부모의 부담은 그 규정하는 자에 관한 여러 비용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각 당사자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한다.

제587조의 2 ① 부모가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부양료는 기본적인 부모의 부담의 다른 자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증액된 액과 동액으로 한다.

② 법원은 적극재산의 가액,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정당한 액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사정에 의하여 양친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부양료를 청구하였던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도 청구하면 곤란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

346) 원문은 parents, relatives로 친족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상속에 관한 제655조 이하의 규정(parenté, relationship)을 고려하여 '혈족'으로 하였다.

347) 원문은 any person who has custody of him, toute autre personne qui en a la garde이다. 앞의 후견인(tuteur, tutor)와 구별하기 위하여 '감호'로 하였다.

은 그 자가 부담할 부양의무를 고려할 수도 있다.

③ 법원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에 의하여 과도한 곤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곤란은 자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 이외의 인물을 별도의 장소에서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채무로 추정할 수 있다.

제587조의 3 부모는 자에 대하여 자를 위한 부양료의 결정을 위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부양료와 다른 액의 부양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자의 필요를 충분하게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8조 ① 법원은 부양료의 권리자를 위하여 소송계속 중에 임시부양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부양료의 권리자를 위하여 재판비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589조 부양료는 정기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이체로 전액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590조 ① 판결에 의하여 지급을 명한 부양료의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양료가 정기금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퀘벡 퇴직연금제에 관한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지수에 의하여 연동된다.

② 하지만 이 지수를 적용하면 채권자의 수요와 채무자의 능력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지수를 사용하여 연동할 수 있고 채권액을 연동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저당권을 초과한 충분한 담보의 제공이나 신탁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제592조 채무자가 그의 주거에서 채권자를 부양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양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제593조 ① 채권자는 부양료채무자의 1인이나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청구되거나 소가 제기된 채무자 각자가 지급할 정기금의 액을 정한다.

제594조 ① 연동된 것을 불문하고 부양료의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수정의 대상이 된다.

② 하지만 전액을 일괄지급한 경우에는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95조 ①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을 넘으면 그 이전의 필요를 위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자는 청구의 전1년 동안 사실상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부양료의 지급이 인정된다.

제596조 ① 미지급된 부양료를 청구된 채무자는 판결 후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② 하지만 미지급이 6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부양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변경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친권

제597조 자는 누구나 그 연령을 묻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경할 의무가 있다.

제598조 자는 성년에 달하기까지 또는 성년해방될 때까지 부와 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제599조 ① 부와 모는 자에 대하여 후견, 감독과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600조 ①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②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친권의 상실이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제601조 친권자는 자의 후견, 감독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2조 성년해방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주소를 이탈할 수 없다.

제603조 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에 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행위한 것으로 본다.

제604조 친권의 행사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문제를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화해를 시도한 후에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다.

제605조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부모의 일방이나 제3자에게 후견이 위탁된 경우에 부모는 자의 양육 및 교육을 감독할 권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출연할 의무가 있다.

제606조 ① 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고 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모의 쌍방이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친권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친권을 전면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입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친권을 일부상실하게 할 수 있다. 친권의 일부상실의 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제607조 법원은 친권의 전부상실이나 일부상실을 선고할 경우에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자를 선임한다. 경우에 따라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그 선임절차 전에 후견인의 선임에 대하여 후견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08조 친권의 상실은 재판할 때에 출생한 모든 자에 미친다. 다만 법원이 다른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9조 친권의 상실로 자에 대한 부양료의 지급은 면제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정함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면제는 사정에 의하여 자가 성년에 달한 후에 해제될 수 있다.

제610조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부 또는 모는 사정의 변경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입양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611조 ① 부와 모는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자와 조부모의 인적관계를 방해할 수 없다.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계에 관하여 정한다.

제612조 법원은 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자에 관한 결정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3편 상속

제1장 상속의 개시와 상속적격

제1절 상속의 개시

제613조 ① 사람의 상속은 그 사망에 의하여 최후의 주소에서 개시된다.

②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한다. 다만 사자(死者)가 그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유언에 의한 처분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인증여는 이 점에 관하여 유언에 의한 처분으로 한다.

제614조 상속을 정함에 법률은 재산의 출처와 성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재산 모두는 단일한 재산을 구성한다.

제615조 사람이 퀘벡 주 외에 있는 재산을 남기거나 또는 퀘벡 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전³⁴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제616조 ① 수인이 사망하고 어느 자가 다른 자보다 후에 생존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적어도 그 중 1인이 다른 자의 상속권이 있는 때에는 이들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이 경우 그들 중 각자의 상속은 그들이 부존재하면 이를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

348) 이 법전의 법률번호는 L.R.Q., c. C-25(프랑스어판); R.S.Q., c.C-25(영어판)이다.

속한다.

제2절 상속자격

제617조 ① 상속이 개시될 때에 존재하는 자연인은 상속할 수 있고 이에 는 그 때에 생존하고 있다고 추정된 실종자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살아서 출생하고 생존력이 있는 태아를 포함한다.

②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³⁴⁹⁾ 및 신탁에 대하여 그 처분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필요한 적격을 가진 자도 상속할 수 있다.

제618조 ① 국가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 법인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수 있는 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 또는 신탁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제619조 유언없는 상속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유언에 의한 포괄유증이나 포괄명 의에 의한 특정유증³⁵⁰⁾에 의하여 수령한 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된다.

제620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당연히 상속결격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2. 그 자의 상속에 관하여 부양을 제공할 의무를 자가 면제받으면서 그 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자

제621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상속결격으로 선고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그에 대하여 현저하게 비난될 행동을 한 자
2. 피상속인의 유언을 악의로 은닉, 변경 또는 파기한 자
3. 그의 유언의 작성, 변경 또는 취소를 하는데 유언자를 방해한 자

제622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취소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 무상양도를 부여하거나 또는 무상양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의 취소가 되지 아니한다.

제623조 당연한 상속결격인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개시 후 또는 상속결격 사유를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법원에 상속결격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4조 혼인 또는 민사결합의 무효가 일방당사자의 사후에 선고된 경우에 선의의 잔존한 배우자 또는 민사결합의 상대방은 상속할 수 있다.

349) 이에 대하여는 제1218조 이하 참조.

350) 이러한 유증에 대하여는 제731조 이하 참조.

제2장 상속재산의 이전

제1절 상속재산의 점유³⁵¹⁾

제625조 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그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넘어 상속재산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상속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본 편에 예외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상속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속인은 점유한다.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과 그로 인한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한 효력

제626조 상속인은 그의 권리의 취득을 주장한 상속이 개시된 후 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의 상속인의 지위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627조 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의 확인으로 표견상속인은 그가 상속권 없이 수령한 모든 것을 급부의 반환에 관한 채무³⁵²⁾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8조 상속에서 재산을 취득한 결격자는 악의의 표견상속인으로 본다.

제629조 표견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재산 이외의 것으로 면책된 사자의 채무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환한다.

제3절 선택권

제1관 속려와 선택

제630조 ①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② 선택권은 불가분으로 한다. 하지만 수개의 상속적격이 있는 상속인은 그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선택권이 있다.

제631조 상속이 되는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상속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속에 관하여 어떤 약정을 할 수 없다.

제632조 ① 상속인은 자기의 권리가 개시한 날로부터 6월 동안 속려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산목록의 폐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가 처분하기 위하여 필

351) 원문은 saisine, seisin이다.

352) 제5편 제9절(제1699조-제1707조) 참조. 이 급부반환은 편(Livre, Book)이 아니라 절(Chapitre, Chapter)이다.

요한 기간 동안 당연히 연장된다.

② 숙려기간 동안은 이미 그 상속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633조 ① 상속적격을 안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상속기간이 법원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인 그의 상속적격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강제된다.

② 법원에 의하여 정한 기간 안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상속인은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634조 상속인이 제632조가 정하는 숙려기간에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된 법정비용은 상속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635조 ① 상속인이 선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하여 그들에게 숙려와 선택을 위하여 부여된 기간 동안 숙려하고 선택권을 행사한다.

② 상속인의 각각의 상속인은 그 선택권을 각각 행사한다.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한다.

제636조 선택을 한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정한 사유를 가지고 기간 내에 그 선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관 승인

제637조 ① 승인은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다. 승인은 법률에 의하여도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그의 권원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적격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명시적 승인으로 한다. 상속인이 승인할 의사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묵시적 승인으로 한다.

제638조 ① 미성년자, 보호를 받는 성년자 또는 부재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숙려와 선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권해방되지 아니한 미성년자, 후견이나 보좌를 받는 성년자 또는 부재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후견회의 허가를 얻은 상속인의 대리인

2. 친권해방된 미성년자 또는 보조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후견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자신

② 미성년자, 보호를 받는 성년자 또는 부재자는 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넘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39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청산인으로부터 재산목록의 작성이 면제되거나 또는 상속재산과 자기의 개인재산이 혼동된 사실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이 사망 전에 혼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³⁵³⁾

제640조 청산인이 재산목록의 작성을 거절하나 해태하는 것을 알면서 상속인 자신도 재산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청산인의 개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6월의 숙려기간의 만료 후의 60일 안에 재산목록을 자경할 것을 청산인에게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41조 ① 상속재산의 자기 권리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한다.

② 무상이라고 할지라도 1인 또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기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구별없이 그 이익을 위하여 포기하더라도 유상으로 포기한 경우에 동일하다.

제642조 ① 순수한 보존행위, 감독행위와 일시적 관리행위는 그것만으로는 상속의 승인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상속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게 된 행위를 상속인이 한 경우에도 같다.

제643조 ① 사자의 의복, 개인문서, 훈장, 증서 및 가족의 기념물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분배한 것만으로 상속의 승인으로 되지 아니한다.

② 사체 또는 유골의 수령을 목적으로 장소를 위하여 상속인이 한 이전의 승인으로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아니한다.

제644조 ① 악화될 수 있는 재산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청산인의 임명 전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매수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이를 자선기관에 기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할 수 있고 이것으로 그의 승인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② 악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비용이 과다하거나 또는 신속하게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재산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는 타인의 물건의 관리자로서 행위한다.

제645조 상속의 승인으로 사망한 때로부터 당연히 (상속재산의) 이전이 있는 것을 확인된다.

제3관 포기

제646조 ①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포기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

② 명시적 포기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또는 증서로 작성된 재판상의 선고에 의하여 한다.

제647조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제648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이 될 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강제하는 기관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프랑스어판에서는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의 내용이 없다.

제649조 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그 권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속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② 그 승인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또는 증서로 작성된 재판상의 선고에 의하여 한다.

③ 상속인은 그 시기의 현상대로 상속을 취득하지만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보한다.

제650조 상속인은 그의 권리가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자기의 적격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5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악의로 횡령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는 이전에 승인이 있어도 그러하다.

제652조 ① 포기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포기한 자의 채권자는 1년 안에 그 포기는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고 포기한 자를 대신하여 그 상속을 승인한다고 선고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승인은 이를 신청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채권액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는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3장 상속재산의 법정귀속

제1절 상속자격

제653조 유언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위와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혼인 또는 민사결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연결된 잔존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혈족에게 귀속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54조 혼인이나 민사결합으로 인한 그의 권리와 이익의 포기는 잔존배우자의 상속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절 혈족

제655조 혈족은 혈연과 입양에 의한다.

제656조 촌수는 세대수로 정하고 1세대를 1촌으로 한다. 촌수관계는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에 존재한다.

제657조 직계혈족관계는 일방이 상대방의 비속인 경우에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촌수관계이다. 이 경우에 촌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세대수와 동일하다.

제658조 직계비속은 그 존속과 인적으로 연결된 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그 조상과 인적으로 연결된 존속을 말한다.

제659조 ① 방계혈족은 일방이 상대방의 비속이 아니지만 공동의 조상을 가진 자 사이의 존수관계를 말한다.

② 방계혈족의 존수는 상속인과 공동의 조상 사이의 세대수에 공동의 선조와 피상속인 사이의 세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3절 대습

제660조 대습은 피상속인의 더 근친인 존속이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사전 또는 동시에 사망하여 자신이 취득할 수 없었던 상속재산을 취득할 자격을 가진 친족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가된 이익을 말한다.

제661조 ① 대습은 직계비속에 대하여 제한없이 인정된다.

② 피상속인의 자와 피대습자의 비속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고 그 비속이 서로 존수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 대습이 인정된다.

제662조 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각 친계에서 근친은 원친(遠親)을 배제한다.

제663조 방계혈족의 사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1촌의 비속의 이익을 위하여 대습이 인정되고 이는 그 형제자매와 경합이 있는가를 묻지 아니한다. 일반적 방계혈족 사이에서는 다른 존수에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비속의 이익을 위하여 대습이 인정되고 이는 그들 사이에 존수가 같거나 또는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한다.

제664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대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상속이 포기된 자는 피대습될 수 있다.

제665조 ① 대습이 인정되는 경우는 항상 그 선조에 의하여 분할한다.

② 동일한 선조에 수개의 파(派)가 있으면 각 파에서의 선조에 의하여 재분할되고 동일한 파의 구성원은 인원 수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서 분할된다.

제4절 상속재산의 귀속순위

제1절 잔존배우자와 비속으로의 귀속

제666조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비속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들에게 귀속한다.

② 잔존배우자는 상속재산의 1/3을 취득하고 기타의 자는 2/3를 취득한다.

제667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모두 비속에게 귀속한다.

제668조 ① 상속할 비속이 모두 동일한 촌수에 있고 그들 자신의 권리로 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한다.

② 대습이 있는 경우에는 선조에 의하여 분할한다.

제669조 대습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친의 촌수인 비속이 상속하고 기타의 다른 자는 모두 배제된다.

제2관 잔존배우자와 존속 또는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으로의 귀속

제670조 ① 피상속인의 부모는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1촌의 비속은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이다.

제671조 비속, 존속과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전부 잔존배우자에게 귀속한다.

제672조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잔존배우자가 상속재산의 2/3를 취득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이 1/3을 취득한다.

제673조 비속과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잔존배우자가 상속재산의 2/3를 취득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이 1/3을 취득한다.

제674조 ① 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과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한다.

②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모두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에 상속하고 그 반대로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이 없는 상속재산은 모두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에게 상속된다.

제675조 우선순위가 있는 존속이 상속한 경우에는 균등한 상속분으로 분할한다. 그 중 1인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가 상대방에게 귀속할 수 있었던 상속분을 상속한다.

제676조 ① 상속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이 피상속인과 혈족인 경우에는 균등한 부담부분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에 의하여 분할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귀속되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부계와 모계 사이에서 동일하게 분할된다. 혈족은 2개의 계통에서 상속분을 취득하고 피상속인과 부계 또는 모계의 혈연만 있으면 그 자신의 친계에서 분할된다

③ 우선특권이 있는 방계혈족이 하나의 친계만 있는 경우에 그가 전부를 상속받고 다른 존속과 다른 친계의 일반적 방계혈족은 배제된다.

제3관 일반적 존속과 방계혈족

제677조 일반적 존속과 방계혈족은 배우자, 비속과 우선순위가 없는 존속이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할 수 있다.

제678조 ① 일반적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의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속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취득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존속과 방계혈족이 귀속한다.

②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의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모두 존속과 방계혈족에 귀속한다.

제679조 ① 일반적 존속과 일반적 방계혈족에게 상속재산이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계와 모계 사이에서 동일하게 분할된다.

② 각 친계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는 인원 수에 따라 상속한다.

제680조 ① 각 친계에 2촌의 존속은 그가 그 친계에 귀속된 상속분의 전부를 상속하고 다른 일반적 존속이나 방계혈족은 배제된다.

② 2촌의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친계에 귀속된 상속분은 그 존속의 비속으로 가장 근친인 손자가 있는 일반적 방계혈족에게 귀속한다.

제681조 각 친계에서 2촌의 존속의 비속인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친계에 귀속한 상속분은 3촌의 존속에게 귀속하거나 또는 그러한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비속인 일반적 방계혈족 중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이는 상속할 수 있는 손수에 있는 친족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귀속을 정한다.

제682조 상속할 수 있는 자가 어느 친계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계의 친족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한다.

제683조 7촌을 넘은 친족은 상속하지 아니한다.

제5절 부양의무의 존속

제684조 ① 부양청구권자는 모두 사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서 부양으로 재정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권리는 부양청구권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인 경우 또는 사망한 날 전에 부양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결격자에 대하여는 이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85조 ① 부양급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으로 하거나 할부로 형태로 한다.

② 사망할 때에 부양을 사실상 수령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전배우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양채권자에 대한 급부는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의 동의를 얻어 행위하는 상속재산의 청산인과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

제686조 ① 부양급부를 정할 때에는 부양채권자의 필요와 자력, 부양채권자가 처한 사정과 충분한 자립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에 채권자가 그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양정기금으로 법원이 정하였던 지급액 또는 부양으로 인정된 총액을 고려한다.

②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부양채권자가 취득한 이익,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의 필요와 자력 및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도 고려한다.

제687조 배우자 또는 비속이 부양급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에 생전 행위로 무상양도와 사망할 때에 효력이 있는 무상양도의 액은 급부를 정하는데 상속의 일부로서 본다.

제688조 ① 배우자 또는 비속에게 귀속된 부양급부는 무상양도액을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상속 전체에 의하여 귀속되었다면 그가 주장하였을 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과 그가 상속으로 수령한 것의 차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전배우자에 귀속된 부양급부는 12월분의 부양과 동일한 액으로 하고 기타의 부양청구권자에 대하여는 6월분의 부양과 동일한 액으로 한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될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채권자가 실제로 부양을 취득한 경우라도 이는 12월 또는 6월분의 액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양도의 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액의 10퍼센트 중 더 낮은 쪽을 넘을 수 없다.

제689조 ① 사망 전 3년에 생전행위로 한 무상양도 또는 사망할 때 효력이 있는 무상양도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이 배우자 또는 비속에게 의무가 있는 부양급부를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무상양도의 감액을 명할 수 있다.

② 다만 배우자 또는 비속이 동의한 무상양도는 감액을 명할 수 없고 그가 수령한 것은 그 채권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제690조 그것을 할 때에 그 재산보다 명백하게 더 적은 액의 급부를 피상속인이 약정한 양도, 담보 또는 부담은 모두 무상양도로 추정한다.

제691조 제415조의 규정으로 정한 연금제 또는 인보험계약에서 취득한 이익이, 이를 사망 전 3년 동안에 피상속인에 의하여 대위권리자 또는 수익자의 지정이 없었다면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었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이익은 무상양도로 본다. 반대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연금제나 계약으로 이한 이익이 부여한 권리는 본 절에 의한 부양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되고 압류될 수 있다.

제692조 피상속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과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 또는 교육 비용과 관행에 의한 증여는 무상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693조 ① 무상양도의 감액은 1인 또는 수인의 수익자에게 동시에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분쟁이 된 수익자 각각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한다.

제694조 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감액의 변제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가 정하는 담보와 변제방법에 의하여 한다.

② 법원은 현물급부를 명할 수 없지만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의 반환으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695조 ① 재산은 무상양도를 한 때의 상태와 상속이 개시된 때의 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한 때의 가액을 고려하고 재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대체된 재산의 가액을 그 가액으로 고려한다.

② 무상양도가 용익권, 사용권, 정기금 또는 신탁으로 인한 수익의 형태인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원본의 가치에 따라 산정한다.

제6절 국가의 권리

제696조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도 상속할 수 있는 존속의 친족도 남기지 아니하거나 또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또는 어떤 상속인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속을 주장하지도 아니한 경우에 퀘벡에 있는 상속재산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한다.

②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이 이 권리를 무효로 하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제697조 ① 국가는 상속인이 아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알았거나 또는 사후 6개월 동안 어느 상속인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속을 주장하지도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한다.

② 국가는 취득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제698조 ①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국세청장에게 귀속한다.

② 상속재산은 국세청장의 관리에 있으면 이는 국가의 재산과 혼동하지 아니한다.

제699조 무주재산에 관한 법³⁵⁴⁾이 적용되고 기타의 방식이 없으면 국세청장은 상속의 청산인으로서 행위한다. 그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국가의 점유에 관하여 퀘벡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주소가 있는 지방의 유통되는 신문에 고지하여 공시도 하여야 한다.

제700조 ① 청산의 종료 후에 국세청장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국가의 점유의 고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의 종료를 고지하고 공시한다. 재무부장관의 고지에는 상속의 잔액을 적시하고 모든 상속인이 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제701조 ① 국세청장은 상속의 잔액을 구성하여 이에 따라 국가가 취득하는 액을 재무부장관에게 이전한다.

② 하지만 적격이 인정된 상속인은 모두 상속의 개시 또는 그 권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후견관리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한 비율에서 재무부장관에게 그 액이 이전된 때로부터 산정된 이자와 함께 그 액을 받을 수 있다.

354) 이에 대하여는 주26 참조.

제702조 청산의 종료 전에 상속재산을 청구한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이 있는 현상대로 이를 취득한다. 다만 법률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유언

제1절 유언의 성질

제703조 필요한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유언에 의하여 그 사망한 때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률이 그 귀속을 정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정할 수 있다.

제704조 ① 유언은 취소할 수 있는 일방적 법률행위로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하나에 의하여 작성하고 유언자는 자기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망할 때 이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 무상양도로 처분한다.

②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을 할 수 없다.

제705조 유언의 청산, 종전의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상속인의 배제에 관한 정함만 가진 행위도 유언이다.

제706조 혼인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한 것이라도 유언을 하고 사망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가 한 유언상의 처분을 취소할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제1841조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유언에 필요한 능력

제707조 유언자의 능력은 그 유언을 할 때가 고려된다.

제708조 미성년자는 그 재산의 어느 부분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치가 낮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9조 보좌인이 보좌개시 후에 작성한 유언은 처분의 성질과 그 작성이 허용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확인될 수 있다.

제710조 성년피후견인은 유언할 수 없다. 보조인이 있는 성년자는 보호가 없으면 없이 유언할 수 있다.

제711조 보좌인, 후견인 또는 보조인은 피보좌인, 피후견인 또는 피보조인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이들과 공동으로 유언할 수 없다.

제3절 유언의 방식

제1관 총칙

제712조 유언을 할 수 있는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증인의 면전에서 한 유언만으로 한다.

제713조 ① 다양한 종류의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② 하지만 어느 방식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방식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다른 방식의 효력을 위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 유효하다.

제714조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 또는 증인의 면전에서 한 유언은 그 방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제715조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식을 유언의 효력으로 할 수 없다.

제2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716조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증인 1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증인 2인의 입회로 작성한다.

② 유언에는 일자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7조 ① 공증인은 작성한 공정증서유언을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유언자에게만 또는 유언자와 증인의 1인에게 낭독하게 한다. 낭독 후에 유언자는 증인 1인의 입회하에 낭독된 유언이 자기의 최종의사를 보인 것이라는 취지를 선언한다.

② 다음으로 유언자, 1인 또는 수인의 증인, 그리고 공증인이 서명한다. 각 서명은 다른 자의 면전에서 한다.

제718조 ①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이 충족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증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어느 종류의 유언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를 필요로 한다.

제719조 서명할 수 없는 유언자의 공정증서유언은 그 사실이 선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공증인은 이 선언 유언자와 2인의 증인에게 낭독한다. 이것에 의하여 유언자의 서명이 없는 것을 보완한다.

제720조 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와 2인의증인에게 낭독한다.

② 공증인은 2인의 증인의 면전에서 낭독하였다는 취지를 유언서에 기재하고 그 기재도 낭독한다.

제721조 ①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입이 막힌 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서를 읽고 또는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과 1인의 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서를 낭독한다.

② 유언서에는 유언자가 공증인에 입회하여 또는 공증인과 1인의 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서를 낭독한 것을 기재한다.

③ 유언자가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입이 열리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이 기재는 공증인과 1인의 증인이 입회하여 낭독한다. 유언자가 귀가 들리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공증인과 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자 자신이 큰 목소리도 낭독한다.

제722조 목소리를 할 수 없는 자는 공정증서유언을 하고자 한다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사를 공증인에게 전한다.

제723조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배우자, 직계 또는 방계의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

제724조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한 공증인이 청산인에게 지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의 직무를 무상으로 과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725조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입회한 증인은 유언서에 그 성명을 기재한다.

② 모든 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의 피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726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떠한 기계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관 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

제727조 ① 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은 유언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다.

② 성년의 2인의 증인의 입회하여 서면을 보이고 이것이 자기의 유언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증서를 개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미에 서명한다. 사전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서명을 확인한다. 유언자는 자기의 면전에서 그 지시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서명을 할 수 있다.

제728조 ① 유언이 제3자에 의하여 진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쓰여진 경우에는 유언자와 증인은 각 베스지에 하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쪽에 서명을 없어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로서는 무효인 것을 다른 방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29조 ① 낭독할 수 없는 자가 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은 증인 중 1인에 의하여 다른 증인이 입회하여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자는 낭독된 서면이 자기의 유언이라는 취지를 선언하고 말미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기의 면전에서 그 지시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0조 말할 수 없지만 쓸 수 있는 자는 증인의 입회하여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입회(하여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하고 서면이 자기의 유언이라는 취지를 자서하여야 한다.

제4절 유언에 의한 처분과 수유자

제1관 유증의 종류

제731조 유증에는 포괄유증, 포괄명의에 의한 특정유증과 특정유증의 3가지가 있다.

제732조 포괄유증으로는 1인 또는 수인의 자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유증할 수 있다.

제733조 포괄명의에 의한 유증은 1인 또는 수인의 자에게 다음의 것을 유증하는 것이다.

1. 상속재산의 일부의 소유권
2. 상속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물권
3.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특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혼인 후 취득재산이고 유체재산 또는 무체재산이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

제734조 포괄유증 또는 포괄명의에 의한 유증이 아닌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제735조 특정한 재산을 제외하는 것은 그 수령과 가치에 관하여 포괄유증 또는 포괄명의에 의한 유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36조 유언자가 처분하지 않았던 재산과 처분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재산은 유언없는 상속의 법정상속재산에 그치고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귀속한다.

제737조 ① 유언에 의한 처분이 상속인의 지정, 증여 또는 유증의 형식 또는 유언자의 의사를 표시하기에 적절한 타인의 문언을 아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 편에서 포괄유증, 포괄명의에 의한 유증 또는 특정유증에 관한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이 있다.

② 문언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원칙보다도 유언자가 명백하게 표시한 의사를 우선한다.

제2관 수유자

제738조 포괄수유자 또는 포괄명의로 인한 수유자는 유증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제739조 ① 유증을 승인한 특정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수유자는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유증의 효력발생과 함께 상속인과 같이 점유를 취득한다.

② 특정수유자는 유증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의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수유자는 유증된 재산의 가치를 한도로 하여 의무가 있다.

제740조 ① 특정수유자는 수유하기 위하여는 상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특정수유자는 상속결격과 동일하게 수유결격이 된다. 특정수유자는 추정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인 또는 다른 특정수유자의 결격을 선언하는 취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 특정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된 유증에 대하여 숙려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 효과와 규율에 대하여는 상속의 경우와 같다.

제742조 ①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특정수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특정수유자는 본편의 수유자에 관한 규정에 구속된다.

제3관 유증의 효과

제743조 유증된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유자에게 귀속한다.

제744조 ① 유증된 재산은 그 종물과 함께 유언자의 사망한 때의 상태에서 이전한다.

② 유가증권의 유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것에 부속하는 권리로 아직 행사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같다.

제745조 부동산의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서에 서명한 이래 취득한 종물도 또한 유증된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46조 기업의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서에 서명한 이후 취득하거나 또는 건전한 발전도 또한 유증된 기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유증된 기업의 사망시점에 연결된 자회사에 대하여도 같다.

제747조 ① 유증이 기한을 붙여 되었어도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자기의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② 유증이 조건부이어도 동일하게 이전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8조 채권자에 대한 유증은 상계를 위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49조 ① 유증이 유언자의 비속 또는 방계혈족에 대하여 된 경우에 수유자가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는 유언상속이 경우에도 유언없는 상속이 경우와 같이 대습이 된다. 다만 유언자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언이 그 취지가 기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특정유증에 대하여는 대습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정함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유증의 실효와 무효

제750조 ① 유증은 대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실효한다.

② 또한 유증은 수유자가 포기한 경우, 수유결격인 경우 또는 유증에 순수하게 개인적인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에 조건의 성취의 전의 사망한 경우는 실효한다.

제751조 ① 또한 유증된 재산이 유언자의 생전에 또는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이 조건성취 이전에 멸실한 경우는 유증은 실효한다.

② 유언자이 사후 또는 유증이 개시 이후에 재산의 멸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대위물로 한다.

제752조 유증이 다른 유증의 부담이 된 경우에 수유자에 관한 원인에 의하여 수유한 경우는 그를 부담하는 유증도 실효한다. 다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유증자가 실효한 유증의 목적인 부담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3조 ① 청산인에 대한 보수로서 유증이 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부담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효한다.

② 유언자가 자기의 미성년의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자 또는 타인이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지명한자에 대한 보수로서 유증한 경우에도 같다.

제754조 보수로서의 유증은 유언자가 지명한 청산인, 후견인 또는 기타의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그 부담을 이행하는 것을 그친 경우에는 실효한다. 그 경우에는 유증목적물의 가치와 직무를 과한 기간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755조 어느 재산이 수인의 특정수유자에게 유증된 경우에 그 중의 일부가 실효한 경우는 나머지의 특정수유자의 수유분이 증가한다.

제756조 ① 특정유증이 1개의 처분으로 되고 유언자가 유증목적물에 각 특정수유자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균등한 지분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정유증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또한 1개의 행위로 1개의 재산이 수인의 자에게 유증된 경우에도 공동하여 유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57조 ① 불가능한 조건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은 쓰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존배우자의 혼인할 권리 또는 민사결합을 체결한 권리를 제한하는 정함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58조 ①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효성을 다툰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상속에서 지배하는 조항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59조 유언을 작성한 공증인, 그 공증인의 배우자 또는 그 공증인의 1촌 친족에 대한 유증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언의 기타의 처분은 유효하다.

제760조 ① 증인에 대한 유증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언의 기타의 처분은 유효하다.

② 유언에서 청산인 또는 타인의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지명된 자가 증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관리인으로서의 보수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도 같다.

제761조 ① 유언자가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건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관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유증은 그들의 자가 유언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유언자가 체재하고 있는 가정의 가족에 대한 유증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62조 타인의 재산의 유증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유증된 것을 특정수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상속인에게 의무지우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유언과 유증의 철회

제763조 유언 또는 유증의 철회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다.

제764조 ① 이혼 또는 민사결합의 해소 전에 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의 유증은 철회된다. 다만 유언자가 이렇게 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의사를 유언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언의 철회는 배우자를 상속재산 청산인으로 지명한 것에도 미친다.

③ 양 당사자가 생존 중에 혼인 또는 민사결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765조 ① 유언자가 후의 유언으로 의사의 변경을 명시한 경우에는 철회는 명시적으로 된다.

② 철회하는 행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철회라도 명시적이다.

제766조 철회할 유언은 철회된 유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67조 ① 자필증서로 한 유언의 파기, 인멸, 삭제 또는 증인의 면전에서 행위는 유언자가 의도적으로 한 경우 또는 유언자에게 명령에 따라 된 경우에는 철회이다.

② 새로운 유언으로 환치하기 위한 유언의 파기 또는 분실은 그것도 철회이다.

제768조 ① 새로운 유언에 관하여 전의 유언에서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오래된 유언의 처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새로운 유언의 처분이 실효한 경우에도 오래된 유언의 철회는 효력을 유지한다.

제769조 ① 강제된 해제조건이 붙은 또는 교환하여 유증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된 목적물에 대하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도된 목적물이 다시 유언자의 재산으로 된 경우에도 철회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반대의 의사가 증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강제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것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철회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770조 철회의 철회는 명시적이고 반대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상황에서 그 의사가 명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1조 유증을 승인한 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하여 부담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로서 가혹한 것이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유증목적물의 가치, 유언자의 의사와 상황사정을 고려하여 유증을 철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절 유언의 증거와 검인

제772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증인의 면전에서 한 유언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다.

② 알고 있는 상속인 및 추정상속인은 유언의 검인에 소환된다. 다만 법원이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3조 ① 유언을 승인한 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하지만 그 검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미 검인한 유언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본래에 적법한 유언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제774조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유언은 검인할 수 없다. 상속인, 기타의 추정상속인과 특정 유증자가 소환한 후에 그들의 자료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유언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 본래성과 적법성의 증명은 결정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제775조 증인의 모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언자가 분실하거나 또는 파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관한 증인에 의한 증명은 허용된다.

제5장 상속재산의 청산

제1절 청산의 목적물과 재산의 분리

제776조 유언 없는 상속 또는 유언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청산은 상속인을 확정하거나 또는 소환하고 상속재산의 내용을 확정하고, 상속재산이 채권을 회수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재산의 부담, 부양의무, 특정유증의 변제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고 및 목적물을 교부하는 것이다.

제777조 ① 청산인은 상속개시 이후 청산에 필요한 기간 중에 상속이과 특정수유자를 점유권을 행사한다.

② 청산인은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산의 청산인의 지명 또는 교대는 채권과 동산등기부와 토지등기부에서 공시한다. 지명 또는 교대의 등기는 지명증서와 교대증서의 공시에 의하여 한다. 또한 피상속인, 청산인과 모든 부동산을 표시한다.

제778조 유언자는 청산인의 점유,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할 수 있고 또한 상속재산의 청산에 대하여 또는 유언의 집행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청산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한다고 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항,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항 또는 재산목록의 작성을 면제한다고 하는 효과를 가진 조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79조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이 명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상속이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다. 상속인은 그 결정의 결과로서 상속재산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치를 넘어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780조 ①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의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분리된다.

② 이 분리는 상속재산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

제781조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도 우선하고 상속재산의 채권자 및 특정수유자에의 변제에 충당된다.

제782조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가치를 넘어 상속재산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재산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상속재산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각 상속인의 채권자의 변제 후에 한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각 상속인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채권자와 경합하여 변제를 수령한다.

제2절 상속재산의 청산인

제1관 청산인의 선임과 직무

제783조 ① 완전한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재산이 관리를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법인은 청산인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제784조 누구라도 상속재산의 청산인이 되는 것을 승낙하여야 강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5조 청산인의 직무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에 미친다. 다만 이것에 반하는 유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은 다수결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또한 상속인은 동일하게 청산인을 교대될 수 있다.

제786조 ① 유언자는 1인 또는 수인의 청산인을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자는 청산인이 고대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자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해 진명된 자 또는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명된 자는 청산인의 자격이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지명된 자, 유언집행자로서 지명된 자도 같다.

제787조 ① 수인의 자가 청산의 직무를 한 경우에는 공동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의무를 면제한 경우 또는 유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으로부터 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인의 청산인의 1인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청산인만으로 보존행위와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제788조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산인의 지명 또는 교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청산인을 지명하거나 또는 교대할 수 있다.

제789조 ① 청산인은 그 직무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청산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청산인이 상속인인 경우에 유언이 보수를 인정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보수에 동의한 경우는 그 청산인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제790조 ① 청산인은 그 직무의 이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언자가 요구한 경우, 상속인의 다수가 이를 요구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보의 제공을 청구한 청산인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직무를 상실한다. 다만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1조 ① 청산인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또는 의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교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재판 중은 청산인이 직무의 행사를 계속한다. 다만 법원이 임시의 청산인을 지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2조 ① 청산인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직무를 승낙할 것을 지체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대하여 봉인에 대하여 재산목록의 작성에 대하여 임시 청산인의 지명에 대하여 기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의 방법은 모든 이해관계인으로 이익이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 사이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② 목록작성과 봉인의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

제793조 자기가 청산인이라고 선의로 믿은 자가 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모든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편 재산목록

제794조 청산인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제795조 재산목록은 채권과 동산의 등기부에 공시한다. 피상속인을 명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재산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피상속인이 최후로 주소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유통하는 신문지상에 공시한다.

제796조 청산인은 상속인, 상속인으로 아직 선택하지 아니한 자, 특정수유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재산목록의 등록과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통지한다. 또한 용이한 경우에는 이들의 자에게 재산목록의 등본을 교부한다.

제797조 상속재산의 채권자, 상속인, 추정상속인과 특정수유자는 재산목록과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자는 재산목록의 정정 또는 재산목록의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제798조 상속인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이미 재산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등록을 하고 통지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9조 ① 청산인은 모든 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목록의 작성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치를 넘어 상속재산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800조 청산인이 재산목록의 작성을 거부할 것, 또는 해태하는 것을 아는 상속인이 6개월의 숙려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의 교대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해태하고 또한 청산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을 명하려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치를 넘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801조 ①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상속재산과 자기의 재산을 혼동한 상속인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동거하고 있고 재산이 혼동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치를 넘어 상속재산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혼동이 재산목록의 작성 후로 청산의 종료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혼동한 재산이 가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관 청산인의 권능

제802조 청산인은 단순관리의 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제803조 ① 청산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는가 아닌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방법을 취한다.

제804조 ① 청산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청산인은 상속재산의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특정유증을 이행한다.

② 청산인은 단독으로 훼손되기 쉬운 동산,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동산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청산인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805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산인은 그 취지를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상속인 또는 법원이 다른 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특별청산인으로서 행위한다.

제806조 청산이 1년 이상에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최초의 1년이 만료한 단계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적어도 1년 이상으로 관리의 보고서를 상속인, 채권자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07조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이 명백하게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모든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모든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확약한 후에 부양채권자,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사전지급을 할 수 있다. 사전지급할 금액은 각자의 취득할 이익의 일부로 본다.

제3절 채무의 변제와 특정유증

제1관 청산인에 의한 변제

제808조 ① 상속재산이 모든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에게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제공이 되고 그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에게 변제한다.

② 청산인은 공적 서비스기업에 대한 통상의 비용을 변제한다. 또한 기간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태양에 따라 변제한다.

제809조 청산인은 모든 상속재산이 채무와 동일하게 생존배우자에 배상적 급부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민사결합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재산의 청산에 기초하여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한다. 상속인 사이, 특정수유자, 배우자와 민사결합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는 그 합의에 의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변제한다.

제810조 ① 상속재산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재산목록의 공시 또는 재산목록의 작성의 면제로부터 60일의 기간이 만료하기까지는 상속채무와 특정유증의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

② 하지만 사정에서 보다 필요한 때에는 청산인은 전항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공적 서비스기관에 대한 통상의 지급 및 긴급한 변제를 요하는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811조 상속재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상속재산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법원으로부터 배당표 안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상속채무 또는 특정유증의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 배당표에는 장래의 지급에 비취된 예비를 둘 수 있다.

제812조 ① 상속재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담보권이 붙은 채권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다음으로 청산인은 부양채권자를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다만 채권의 모두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② 채권을 변제하여도 재산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부양채무를 변제한다. 부양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그 다음에는 특정수유자에게 변제한다.

제813조 ① 청산인은 특정유증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재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특정유증을 감살할 수 있다.

② 양도와 감살은 수유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우선 유언에서 우선되어 있지 아니하다하고 또한 미분할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유증을 그 가액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재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미분할재산을 우선 양도한다. 다음으로 우선된 유증의 목적물을 양도한다. 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감살한다.

③ 수유자는 항상 다른 변제상태를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수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제814조 상속재산이 모든 특정유증자에게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 유언에서 우선되고 있는 자에게 변제한다. 다음으로 미분할재산의 수유자에게 변제한다. 다른 수유자는 각 수유액에 비례하여 감소된다.

제2관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의 구제

제815조 ① 청산인에 의해 된 변제로부터 배제된 알고 있는 채권자와 특정수유자는 청산인에 대하여 책임추급 외에 금전을 수취한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보충적으로 채권자도 또한 채권액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한다.

제816조 ①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특정수유자가 통상의 변제 후에 나타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던 경우에 한하여 금전을 수취한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의 임무종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나타난 채권자와 특정수유자는 구제수단이 없고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817조 변제를 예상한 저축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미이행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지급을 받은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에 대하여 그들이 변제를 받은 액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선권을 고려한다.

제818조 담보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인적인 구제 이외에 담보목적물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절 청산의 종료

제1관 청산인의 계산

제819조 ① 알고 있는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과 유증이 다른 방법으로 결제된 경우 또는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에 의하여 부담된 경우 또는 적극재산이 없게 된 경우에 청산은 종료한다.

② 청산은 청산인의 해임에 의하여서도 종료한다.

제820조 ① 청산인의 최종계산표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산서에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와 유증, 보증채무,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가 부담한 채무, 채무가 다른 방법으로 결제되고 있는 것을 명시한다. 변제방법을 명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의 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채당금을 사용한다.

③ 청산인은 유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821조 ① 청산인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판에 의한 방식 없이 화의

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계산서 작성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산서는 화의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은 법원에서 한다.

제822조 ① 최종계산서를 수령한 후에 청산인은 그 관리의무를 면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인도한다.

② 계산서의 종결은 채권과 동산등기부에 피상속인을 특정하고 계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명시하는 통지의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관 청산 후의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의 의무

제823조 ① 상속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은 수취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청산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지만 통상의 변제를 한 후에야 출현한 채권자와 특정수유자는 상속인의 인적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

② 수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귀속하는 경우에 그들 각각은 상속인의 자격으로 수취한 재산에 비례하여 채무에 책임이 있고 이에는 불가분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824조 ① 용익권의 포괄적 명의의 수유자만 채권자에 대하여 청산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가 수령한 재산에 비례하여 원본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고 수취한 모든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② 그와 허유권자 사이에서는 재산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채무의 부담부분을 정한다.

제825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용익권의 포괄적 명의의 수유자는 허유권자에 대한 구제 없이 유언자가 정한 정기금과 부양금의 변제를 할 책임이 있다.

제826조 ① 상속인은 채무의 변제와 같이 청산이나 변제하지 아니한 특정유증의 변제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인이 수령한 재산의 가액을 넘어서는 의무가 없다.

② 하지만 유증이 상속인 중 1인에게 특히 부가된 경우에는 특정수유자의 소송은 다른 상속인에게 확대되지 아니한다.

제827조 ① 특정수유자는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청산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와 특정유증의 변제에 의무가 있다.

② 특정유증이 수인의 수유자에게 공동으로 된 경우에 그들 각각은 자기에게 수유된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만 채무와 유증의 변제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이에는 불가분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828조 특정유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전체가 포함된 경우에 수유자가 단독으로 이 전체에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의무가 있다. 다만 전체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과 다른 특정수유자에 대한 채권자의 보충적인 소권이 유보된다.

제829조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한 상속인 또는 특정수유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수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하지만 변제된 자의 권리를 대위한 경우에도 각

각의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수유자가 전속적으로 부담하였을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830조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유자중 1인이 무자력인 경우에 채무의 변제 또는 유증의 감액에서의 그의 부분은 그들 각자의 부분에 비례하여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수유자 사이에서 분할된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유자 중 1인이 그 전부를 부담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1조 ① 수유된 재산에 설정된 용익권은 수유자에 의하여 허유권의 구제없이 부담한다.
② 지역권도 동일하게 수유자에 의하여 그것이 설정된 재산의 구제없이 부담한다.

제832조 ①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특정수유자의 구상권이 분할 전에 행사된 경우에 분할재산을 구성하는데 그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수유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된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구상권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②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구상권이 분할 후에 행사된 경우에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분할자의 담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분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① 경우에도

유언자는 상속인과 수유자 사이에서 법률이 채무를 변제 또는 유증의 감액할 의무를 인정한 후에만 과한 경우 또는 유증의 감액을 규정하는 그 태양과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변경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상속인과 특정수유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834조 취득한 재산을 넘어 상속재산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부담할 상속인 또는 그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 자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이 강제될 수 있다.

제835조 상속채무를 변제한 부담한 상속인 또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선의인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채무의 감액이나 그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으로 그 책임을 제한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한 때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을 채권자가 나타나고 그러한 사유가 그의 채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장 상속재산의 분할

제1절 분할권

제836조 분할은 청산의 완료 전에 실행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

제837조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언자는 제한된 기간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유언자는 자기의 의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권원으로 계속 행사될 필요가 있으면 분할을 연기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제838조 ① 상속인이 전원 합의한 경우에는 청산인의 최종적 보고에 병합된 계획에 따라 또는 그들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② 상속인 사이에서 동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2절에서 정한 요건과 민사소송법전이 요하는 방법으로만 분할할 수 있다.

제839조 분할의 청구가 있어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가족기업, 피상속인이 주된 회사원이거나 주주인 경우에 기업에 관련된 증권, 주식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분할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제840조 가족의 주거 또는 가사의 용도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도 분할금지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 용익권 또는 사용권이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결합되어 있는 잔존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841조 사망 전에 가족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족의 주거에 거주한 모든 상속인은 법원에 분할금지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42조 분할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청구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유언에 의한 처분과 현존이익 및 가족과 상속인이 분할되지 아니한 재산에서 취하는 생활수단을 고려한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은 피상속인이 그 당사자인 사원이나 주주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제843조 법원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분할을 연기하고 그에 대하여 분할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제844조 ① 분할금지의 유지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의한다.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금지는 5년을 넘은 기간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금지는 혼인 또는 민사결합의 배우자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또는 피상속인의 가장 어린 자가 성년에 달하기까지 갱신될 수 있다

제845조 분할금지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소멸하거나 또는 분할금지가 상속인에게 인용될 수 있거나 중대한 위험을 주는 경우에 법원은 그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제846조 분할금지의 유지의 청구가 재산의 특별한 것이나 전체 재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분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금지의 유지에 반대하는 자에게 그 자신이 그 자의 부분을 변제하거나 또는 평가 후에 상속재산 중의 다른 재산을 허용할 수 있다.

제847조 분할금지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향유권이 있는 자는 임시분할에만 참가할 수

있다.

제848조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인이 아니지만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를 분할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반환할 때의 이 권리의 가액과 양도할 때에 지출한 비용을 그에게 상환한다.

제2절 분할의 방법

제1관 분할재산의 구성

제849조 ① 분할은 모든 분할되지 아니한 재산이나 그 일부분만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분할은 분할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나 불가분으로 남기고자 한 부분에 대하여도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850조 ① 지분이 균등한 경우에 상속인 또는 공동분할되는 지분자와 동일한 수만큼의 분할재산으로 구성된다.

②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첨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에 필요한 수만큼의 분할재산으로 구성된다.

제851조 ① 분할재산을 구성할 때에는 유언에 의한 정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상속인의 일부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유증의 변제 또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넘어 변제한 자에 대하여 상속인 사이에 인정된 구상권의 정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인 또는 민사결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결합되어 있는 잔존배우자의 권리, 우선절차에 의한 분배의 청구, 이의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판의 이행을 위한 자금의 예비도 고려되어야 한다.

② 특히 분배에 대한 재정상의 결과, 채무를 부담한다는 일부 상속인의 명시적 의사 또는 분배방법의 편의성도 고려될 수 있다.

제852조 ① 분할재산을 구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분필과 기업의 분할은 피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분필과 기업의 분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분할재산은 가능한 한 동일한 가액의 동산 또는 부동산 및 권리 또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분할재산의 가액의 불균등은 금의 지급으로 보충한다.

제853조 ① 화의에 의한 분할을 한 공동상속인은 그 의사에 의하여 분할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 또는 추첨으로 그 귀속을 정한다.

② 분할할 재산이나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매각방법도 정한다.

제854조 ① 분할재산의 구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이를 한다. 분할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② 추첨을 하기 전에 각각의 상속인은 분할재산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관 우선적 귀속과 이의

제855조 상속인은 각각 상속재산의 자기 지분을 현물로 수취한다. 그는 우선절차에 의하여 재산이나 분할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6조 ① 혼인이나 민사결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결합된 잔존배우자는 다른 모든 상속인에 우선하여 가족의 거주 또는 그에게 사용을 허용할 권리와 가사의 이용에 제공되는 동산을 그 분할재산에 편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그 재산의 가액이 그 배우자의 지분을 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보충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유한다.

제857조 혼인 또는 민사결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결합된 잔존배우자의 권리를 제외하고 수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한다.

제858조 다른 공동분할자로부터의 제기된 이의 또는 우선귀속의 청구가 있더라도 기업이나 출자,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상속인에게 우선하여 귀속한다.

제859조 수인의 상속인에게 동일한 우선권이 있거나 또는 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주거, 기업 또는 그에 관련된 유가증권에 관한 것은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에 특히 현존이익, 우선권의 사유 또는 기업경영 또는 주거의 유지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60조 공동분할자 사이에서 보충금이 결정 또는 변제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상당한 담보 및 변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61조 분할할 때에 재산의 현황과 가액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제862조 재산의 일부를 적절하게 분할하거나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63조 이해관계인이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지정하고 적절하게 분할 또는 분배할 수 없는 재산의 매각을 명하고 그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그가 지정한 기간 동안 분할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제864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채권자는 분할로 자기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분할에 출석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

제3관 권리증서의 교부

제865조 분할 후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통하는 증서는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지정된 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청구가 있으면 공동분할자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 선택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866조 청구를 한 상속인은 모두 분할할 때에 공동비용으로 그가 권리를 보유하는 재산에 관한 증서의 복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절 반환³⁵⁵⁾

제1관 증여와 유증의 반환

제867조 ① 분할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담을 명시적으로 부담하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수령한 것을 그 재산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상속을 포기한 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868조 ① 대습자는 그 자신이 부담하는 것 이외에 피대습자의 반환할 의무를 자기의 의무로 하여 부담한다.

②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환의무가 있다.

제869조 ① 반환은 증여자 또는 유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한다.

② 반환은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에게만 의무가 있다. 특정수유자 또는 상속채권자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

제870조 ① 반환은 취할 것을 공제하면서 계산한다.

② 상속인에게 현물로 반환할 의무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다만 상속인은 자기가 여전히 소유자이고 용익권, 지역권, 저당권이나 기타의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제871조 ① 취할 것을 공제하면서 반환을 받을 공동상속인 각자는 반환할 액과 같은 가액의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우선취득하여야 한다.

② 우선취득은 가능하면 반환되어야 할 물건과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재산으로 한다.

③ 우선취득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상속인은 수취한 재산의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재산에서 다른 동일한 가액의 재산을 우선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872조 취할 것을 공제하는 반환은 상속인의 지분에 수취한 재산의 가액의 현금으로 하여 귀속하게 할 수도 있다.

355) 원문은 각각 Rapport(프랑스어), Return(영어)이다.

제873조 ① 취할 것을 공제하면서 반환된 증여된 재산의 가액의 평가는 그 재산이 아직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분할할 때에 이를 하고 그 재산이 분할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한 때에 이를 한다. 증여 또는 유언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증재산과 상속재산 중에 남은 재산은 분할된 때의 그 사정과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제874조 ① 취할 것을 공제하면서 반환된 재산의 가액은 반환자의 비용지출이나 개인적 행위로 재산에 취득된 부가가치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비용의 액도 감액된다.

③ 반대로 반환하는 자의 행위로 인한 가치의 감소는 그 가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875조 상속인은 그에게 의무가 있는 액의 상환이 이를 때까지 현물로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제876조 ① 반환하여야 하는 상속인은 자기의 행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책임이 있다. 멸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② 어느 경우에도 재산의 멸실로 인하여 그에게 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877조 공동분할자는 저당권이나 기타의 물권이 붙은 재산을 현물로 반환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은 물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채무는 상속의 분할에서 반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78조 현물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금액의 이자가 반환되는 경우에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재산의 과실과 수익도 반환될 수 있다.

제2관 채무의 반환

제879조 ① 분할하기 위하여 참가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채무의 전체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는 불분할로 인하여 그의 공동분할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할할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인 경우에도 반환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될 때에 효력이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0조 반환할 채무의 원본과 이자의 액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의 가액을 넘은 경우에 그 상속인은 초과분에도 의무를 부담하고 채무에 부가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881조 ①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 자신이 주장할 상속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분할할 때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계하고 채무자로 남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채권이 채무를 넘은 경우에 상계하고 상속인은 초과분의 채무자가 된다.

제882조 ① 반환은 취할 것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동상속인에 의한 사전취득 또는 상속인의 상속분의 액으로의 귀속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전속적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제883조 ① 분할의 시점에 채무의 원본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가 사망하기 전인 경우에 그 반환할 채무에는 사망한 때로부터의 이자가 계산하여야 하고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로부터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제4절 분할의 효력

제1관 분할의 선언적 효력

제884조 ①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의 발생이 선언된다.

② 각각의 공동분할자는 전체 또는 일부의 분할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분할된 재산을 단독으로 직접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그는 사망한 때로부터 그 분할된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기타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85조 공동분할자 사이의 공유를 종료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는 분할의 효력이 있고 그것이 매매, 교환, 합의 또는 기타의 것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886조 불가분의 상속인 중 1인이 한 행위 또는 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하여 그가 약정한 물권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불가분의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과 그 승계인 사이에서의 분할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7조 ① 사망으로 인하여 불분할인 동안에 유효하게 한 행위는 분할할 때에 그 재산을 수취한 상속인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그에게 귀속된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888조 ① 선언적 효력은 제3자에 대한 채권,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인 동안에 한 이 채권의 양도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가 한 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채권의 분배는 채무자에 대한 그 대항력에 관하여 채권편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³⁵⁶⁾에 의한다.

제2관 공동분할자의 담보

제889조 ① 분할 전의 원인에 의한 분쟁과 추급에 관하여 각각의 분할자는 서로 담보책임

356) 이는 제5편 제7절 제1관(제1637조 내지 제1650조)에서 규율한다.

이 있다.

② 하지만 그 전속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추급에 관하여 각각의 공동분할자가 항상 담보 책임자가 된다.

제890조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추급의 경우와 같이 그 무자력이 분할 전의 것인 경우에 담보책임이 있다.

제891조 추급은 분할행위의 약정에 의하여 제외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동분할자가 추급된 것이 그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담보책임은 종료한다.

제892조 ① 공동분할자의 각자는 그 분할부분에 비례하여 그에게 추급을 야기한 손해를 그 공동분할자에게 인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손해는 분할한 날에 평가한다.

제893조 공동분할자 중 1인이 무자력인 경우에 그 자가 책임이 있는 배상은 피담보자와 자력이 있는 모든 공동분할자 사이에서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한다.

제894조 담보소송은 추급이나 분쟁이 개시한 때로부터 또는 소송이 상속재산의 채무자 중 1인의 무자력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분할이 된 때로부터 3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5절 분할의 무효

제895조 ① 분할은 일부분할이라도 계약의 경우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하지만 무효로 하는 대신에 이것이 공동분할자에 대하여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충적 분할이나 보정적 분할을 할 수 있다.

제896조 분할되지 아니한 재산의 단순한 유루(遺漏)으로 무효소송은 개시되지 아니하고 다만 분할행위의 보충이 된다.

제897조 손해가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분할한 때에 고려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제898조 분할의 무효청구의 피고는 어느 경우나 소송을 종료하고 원고에게 상속에서 그의 부담부분의 보충을 현금이나 원물로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새로운 분할을 막을 수 있다.

제4편 재산

제1장 재산의 종류와 그 취득

제1절 재산의 종류

제899조 유체재산인가 무체재산인가를 이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한다.

제900조 ① 토지, 건축물 및 영속적 성질을 가진 토지의 공작물과 그 구성부분은 부동산으로 한다.

②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 수목, 식물과 광물도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과일 기타의 토지의 산출물은 그 용도에 따라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901조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효용을 확보하는 경우에 그 동산은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902조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부동산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성질을 유지한다.

제903조 동산이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부합되거나 결합되고 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부합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그 곳에 존재하는 한에서 이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904조 부동산에 대한 물권,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권과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소권은 부동산으로 한다.

제905조 내부 또는 외부의 힘으로 이동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다.

제906조 인간이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과 또는 동력은 그 발생원이 동산인가 부동산이든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동산으로 본다.

제907조 법률에 의하여 성질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타의 모든 재산은 동산으로 한다.

제2절 재산과 그로 인한 산출물의 관계

제908조 재산은 그 상호관계에 의하여 원물과 이자, 과실로 나눈다.

제909조 ① 과실과 수익을 산출한 재산, 노무에 제공된 재산 또는 기업활동에 제공한 재산, 법인 또는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자본, 과실과 수익의 재투자, 원본의 처분액이나 그 재투자 및 수용에 의한 보상, 원본에 갈음하는 손해보험은 원물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의 양도 없이 그로 인하여 산출된 액을 제외한 이들 권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債券) 또는 기타의 차용증서 및 법인, 합자회사 또는 신탁의 신주인수권과 같이 원본을 증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하는 권리도 원물에 포함된다.

제910조 ① 과실과 수익은 재산이 그 실질을 해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것 또는 원물의 이용에 의하여 취득된 것을 말한다. 이에겐 재산의 과실과 수익을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

된 권리도 포함된다.

② 재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산출된 것, 토지의 경작 또는 개발에 의하여 생산된 것 및 동물의 출산이나 증가도 과실에 포함된다.

③ 임료, 이자, 배당금과 같이 재산으로 인하여 산출된 금전은 수익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을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의 해지 또는 갱신을 이유로 수취한 금전이나 이를 예견하고 미리 지급된 금전 또는 유사한 사정에서 분배되거나 수령한

제3절 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자 또는 점유자의 관계

제911조 ① 재산에 관하여 사람은 단독으로나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권 또는 기타의 물권을 가지거나 그 재산의 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은 타인의 재산의 보관자이거나 관리자가 되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의 수탁자가 될 수도 있다.

제912조 소유권이나 다른 물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13조 ① 몇 가지 물건은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이를 사용하고 일반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어떤 점에서는 본 법전이 규율한다.

② 하지만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기와 물은 이를 수취하여 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914조 무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 재산이지만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취하면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취득될 수 있다.

제915조 사람이나 국가에 속하는 재산은 경우에 따라 출연의 대상이 된다.

제916조 ① 재산은 계약, 상속, 점유, 시효, 부합 또는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된다.

② 하지만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혼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 시효 또는 부합에 의하여 취득될 수 없다. 다만 상속,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몰수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을 위하여 출연된 공법인의 재산도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91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은 몰수한 때로부터 국가 또는 일정한 경우에 몰수할 권한을 부여된 공법인의 소유로 한다.

제918조 자연인이나 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탁재산으로 이전되지도 아니한 토지부분은 국가에 귀속하고 그 영토의 일부가 된다. 이 재산에 관한 국가의 원시적 권원이 추정된다.

제919조 ① 호수와 수류의 항행할 수 있고 흐르는 하상(河床)은 수류의 최고수위까지 국가

의 소유로 한다.

② 호수와 수류의 항행할 수 있고 흐르는 것으로 1918년 2월 9일 이후에 정부에 양도된 토지의 경계에 있는 하상에 대하여도 같다. 이 일자보다 이전에 양도된 하천의 연안의 토지의 소유권은 양도한 때로부터 호수나 수류의 항행할 수 있고 흐르는 하상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③ 어느 경우에도 법률이나 양도증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20조 사람은 누구나 법류로 거기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하천의 연안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연안에 발을 올려서는 안되고 물의 이용의 조건을 준수하면 그 수류와 호수를 항행할 수 있다.

제4절 재산에 관한 몇 가지 사실상의 관계

제1관 점유

제1목 점유의 성질

제921조 ① 점유는 자신 또는 보조자를 매개로 하여 재산을 소지하고 자기가 권리자로서 행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물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의사는 추정된다. 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소지(所持)만 있다.

제922조 점유가 효력이 있기 위하여 그 점유는 평온, 계속, 공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923조 타인을 위하여 소지를 개시한 자 또는 고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자는 항상 동일한 성질의 소지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명확한 사실에 의하여 권원의 전환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4조 순수한 임의행위³⁵⁷⁾이거나 단순한 인용행위는 점유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25조 ① 현재의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그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점유는 일시적으로 그 행사가 방해되거나 중단되어도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926조 ① 하자 있는 점유는 하자가 소멸된 때로부터 점유의 효력을 가지기 시작한다.

② 권원이 무엇이든지 그 승계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927조 절취자, 도품의 수취자 또는 사취자는 점유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지만 권원이 무엇이든지 그 승계인은 그 하지에 대하여 선의라면 이를 할 수 있다.

357) 영어판은 facultative acts이고 프랑스판은 actes de faculté이다. 문자적으로 자기의사에 의한 임의행위라는 의미이다.

제2목 점유의 효력

제928조 점유자는 행사하는 물권의 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을 다투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권원이 없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점유자의 점유에 하자가 있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29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는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자 또는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방해정지의 소 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30조 점유자는 점유에 의하여 시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가 행사하는 물권의 권리자가 된다.

제931조 ① 선의의 점유자는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비용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을 배상받은 후에 악의가 된 날로부터 과실과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32조 점유를 개시할 때에 자기가 행사하는 물권의 권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이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권원이 없거나 점유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권원이 없는 것이 그에게 선고된 날부터 선의의 점유는 중단된다.

제933조 점유자는 그가 한 건조물, 공작물과 수목에 대하여 부합에 관한 절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다.

제2관 무주물의 취득

제1목 무주물

제934조 ① 야생동물 또는 전에 포획되었지만 야생으로 귀환된 동물, 수중동물 및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재산과 같이 소유자가 없는 재산은 무주물이다.

② 공공도로 또는 공공운송용의 차량을 포함하여 공공장소에 방치된 가치가 없거나 아주 훼손된 동산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제935조 ① 무주의 동산은 선점으로 이를 취득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사람이 취득하지 아니한 포기된 동산은 이를 그 지역에서 취득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한다.

제936조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 부합이나 시효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고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7조 국가가 취득한 무주재산은 국세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그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938조 매장물은 그 토지에서 발견한 자에게 귀속한다. 타인의 토지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절반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절반은 이를 발견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발견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목 유실동산 또는 망실동산(忘失動産)

제939조 ① 유실하거나 망실한 동산이 타인의 수중에 있거나 공공장소에 있으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계속 귀속된다.

② 이 재산은 선점에 의하여 취득될 수 없지만 이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그에 대위된 가액과 함께 시효취득될 수 있다.

제940조 재산을 발견한 자는 그 소유자를 발견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41조 ① 재산을 시효취득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가액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 유실된 동산을 발견한 자는 그 사실을 경찰관, 이를 발견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를 발견한 곳을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발견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재산을 보관하고 소지한 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거나 또는 통지한 자가 이를 소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제94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발견된 물건의 보관자는 60일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② 재산의 매각은 경매로 하고 이는 재산의 성질을 적시하고 경매장소와 일시를 명시하는 고지를 그 재산이 발견된 곳에서 유통되는 일간지에 공시한 후 적어도 10일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다.

③ 하지만 보관자는 지체없이 악화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경매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자조매각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거나 또는 이러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제943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견된 물건의 보관자로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없이 그가 보관하는 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1. 재산의 소유자가 이를 청구하였지만 보관자에게 그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리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인이 자기가 소유자의 권원을 주장하였지만 그 중 누구도 명확하게 그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여된 60일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이를 수취하기 위하여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고지된 때 또는 그에게 어떠한 통지도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또는 소송의 중단으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서기에게 임치된 재산이 그 소유자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제944조 보관, 가공이나 처리를 위하여 위탁된 물건이 작업이 종료한 때 또는 약정된 기간으로부터 90일 내에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보고 그 소지자는 이를 그 물건을 그에게 위탁한 자에게 동일한 기간으로 고지한 후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945조 위탁되었지만 망실된 재산의 보관자는 유실된 재산인 것과 같이 경매나 임의의 자조매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한다. 보관자는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거나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

제946조 ① 유실되거나 망실된 재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이 시효취득되지 아니하였으면 재산의 관리비용과 필요한 경우에는 완료한 가공의 가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수취할 수 있다. 그 재산의 보관자는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소유자의 권리는 제17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에서 관리와 양도비용 및 완료한 가공의 가액을 공제한 후에만 행사한다.

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성질과 범위

제947조 ① 소유권은 재산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사용하고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제한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② 소유권은 여러 기한과 조건³⁵⁸⁾을 가질 수 있고 용익제한물권³⁵⁹⁾이 설정될 수 있다.

제948조 재산의 소유권은 거기서 산출된 것과 자연적이나 인공적으로 그에 결합된 것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첨부권이라고 한다.

제949조 재산의 과실과 수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그는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950조 재산의 소유자는 그 멸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제951조 ①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의 것을 포함한다.

② 소유자는 지상과 지하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한 모든 건축물, 공작물과 수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겐 특히 광산, 수류와 지하수에 관한 공권을 따라야 한다.

제952조 소유자는 소유권의 양도가 강제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용도를 위하여 법에 따른

358) 원문은 modalités, modes로서 '양태'(태양)이라는 의미이지만 기타의 개소의 영어판에서는 이를 '조건과 기한'으로 하기도 하므로 이에 따랐다.

359) 원문은 démembrements, dismemberments이다. 이는 소유권에 설정된 제한물권 중 주로 용익물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한용익물권'으로 하였다.

수용이 있고 정당하고 사전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3조 재산의 소유자는 점유자 또는 권리 없이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법률이나 그 자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어떠한 침해나 모든 사용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침부

제1관 부동산 침부

제954조 동산이나 부동산의 부동산에 대한 침부는 의사에 의한 것과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인공적 침부이고 후자가 자연적 침부이다.

제1목 인공적 침부

제955조 부동산 위의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그 소유권은 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56조 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하여 하였지만 합체한 때에 사용한 재료의 가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에 대하여 침부에 의하여 소유자가 된다.

② 재료의 소유자인 자는 이를 수거할 권리도 없고 이를 상환할 것이 강제될 수 없다.

제957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권을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또는 호사(豪奢)를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부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58조 ① 소유자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하지만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과 수익을 산출하는데 든 비용을 공제한 후에 수취한 득한 과실과 수익의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제959조 ①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를 소유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그의 선택에 따라 점유자에게 증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 동일한 조건으로 소유자는 악의의 점유자가 들인 유익비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점유자가 그에게 의무가 있는 과실과 수익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자는 배상하거나 이를 수거할 것을 점유자에게 강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제960조 유익비가 과도하고 이 가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게 그 가액을 지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제961조 ① 점유자가 선의이고 그 자신의 호사에 따라 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장소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익이 되게 될 수 있으면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거나 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비용이나 또는 부동산에 가해진 비용증가 중에서 그 액이 더 적은 것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제962조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의 호사에 따라 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고 원상으로 그 장소를 회복할 것을 그에게 강제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배상이나 그 점유자에게 그 수거를 강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제963조 ① 선의의 점유자는 그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자기가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만 이러한 권리가 있다.

제964조 ① 소지자가 지출한 비용은 악의의 점유자가 지출한 것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하지만 소지자는 그 재산의 취득이 강제될 수 없다.

제2목 자연적 침부

제965조 ① 퇴적물은 연안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퇴적물은 수류에 의하여 연안의 토지에 점진적이고 서서히 형성된 토양과 증가물을 말한다.

제966조 ① 연안의 일방에서 서서히 후퇴된 유수가 침식하여 대안(對岸)에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지는 점차적으로 추가된 연안의 소유자의 소유로 하고 대안의 소유자는 상실된 토지에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형성된 해수면의 퇴적지에 대하여는 이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67조 ① 수류가 갑작스런 힘에 의하여 연안의 토지를 상당하고 현저한 부분이 하류지나 대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동된 그 부분의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소유자는 그 부분이 부가된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를 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실효한다.

제968조 수류 중에 형성된 하상(河床)은 하상의 송자에게 속한다.

제969조 수류가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여 연안의 토지를 나누어 그로 인하여 하상이 형성된 경우에는 연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이와 같이 형성된 하상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제970조 수류가 새로운 하상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하상이 방치된 경우에 원래의 하상은 그가 상실한 토지에 비례하여 각각 새롭게 차지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제2관 동산첨부

제971조 수인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동산이 혼화하거나 부합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의 노동 없이는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재산은 원래의 재산의 가액이나 그 노동에 의하여 주로 그 구성에 기여한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제972조 자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료에 가공하거나 변경을 한 자는 가공이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가액이 사용된 재료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새로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73조 ① 새로운 재산의 소유자는 이에 제공된 재료 또는 노무의 가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재산의 구성에 주로 기여한 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974조 새로운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새로운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그에게 의무가 있는 배상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제975조 예견하지 못한 사정에서는 동산에 관한 첨부권은 완전히 형평의 원칙에 따른다.

제3절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칙

제1관 총칙

제976조 상린자는 그 토지의 성질과 사정에 따라 또는 지방의 관습에 따라 서로 의무가 있는 용인의 한계를 넘지 아니한 상린관계에 의한 불편을 수인(受忍)하여야 한다.

제2관 토지의 경계와 그 확정

제977조 토지의 경계는 권원, 지적도, 경계표 또는 필요가 있으면 다른 유용한 지표 또는 서류에 의하여 정한다.

제978조 ① 소유자는 누구나 그 소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그 상린지의 경계표를 설치하거나 이동되거나 멸실된 경계표를 재설치하거나 오래된 경계표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그 토지의 분할선을 보수할 것을 상린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

② 상린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선 경계 표에 동의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측량사의 선택에 그가 동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계확정의 조서는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3관 물

제979조 ① 저지의 토지는 물이 고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수취하여야 한다.

② 저지의 소유자는 수류를 방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고지의 소유자는 저지의 상태를 악화하게 할 수 없다. 물이 자연적인 경사에 따라 더 용이하게 흐르는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농경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 배수공사를 하는 것은 저지의 상태를 악화하게 하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980조 ① 그 토지에 수원(水源)이 있는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그는 필요에 따라 완전히 그 토지에 있는 호수와 연못의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수질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81조 ① 연안의 소유자는 그 필요에 따라 그 토지에 인접하거나 횡단하는 호수, 수류의 원류또는 기타의 수류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의 끝부분에서 그는 그 수질과 수량에 상당한 변경 없이 통상적인 수류로 그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류를 사용한 자는 그 물을 사용하는 다른 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982조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원, 호수, 지상수, 지하수 또는 수류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수질의 오염이나 고갈을 피하기 위하여 물을 오염하거나 고갈하는 모든 공작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3조 지붕은 물, 눈과 얼음이 소유자의 토지로 낙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4관 수목

제984조 과실이 수목에서 상린지에 떨어진 경우에 그 과실은 수목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제985조 ① 상린지의 수목의 가지나 뿌리가 자기의 토지에 넘어와 그 토지의 이용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상린지에 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는 이의 제거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상린지의 수목이 자기의 토지로 넘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웃에게 그 수목의 제거 또는 그 정정을 강제할 수 있다.

제986조 농지로 개간된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선의 거리가 5미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경작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상린지의 수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수원, 풍림 또

는 소유권의 경관을 위하여 보존된 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타인의 토지의 이용과 그 보호

제987조 모든 소유자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에 그 이웃이 상린지의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자기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88조 출입이 허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그가 입은 손해의 배상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9조 ① 불가항력이나 자연력에 의하여 어느 물건이 타인의 토지 위에 들어가거나 이동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탐색과 수거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즉시 그 재산을 탐색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재산이 물건이나 동물은 그 소유자에게 계속 귀속한다. 다만 그가 그 탐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취득한다. 다만 이 재산의 소유자가 그 수거와 원상으로 그 토지를 회복할 것을 강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0조 그 토지 위에 있고 공로(公路)를 포함하여 상린지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선이나 해체작업을 그 소유자는 하여야 한다.

제991조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상린지를 진동하거나 거기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견고성을 붕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992조 ① 타인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로 그 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한 선의의 소유자는 그 침해된 토지의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 부분의 사용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침해가 상당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악의로 한 경우에 침해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자에게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수거하고 그 곳을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제6관 조망

제993조 ① 경계선에서 1미터 50센티미터 미만에서 상린지의 직접조망을 할 수 없다.

② 이 원칙은 공도(公道) 또는 공원에 대한 조망 또는 차단막이 이나 불투명 유리가 있는 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994조 1미터 50센티미터의 거리는 출구가 있는 벽의 외면으로부터 하고 그로부터 직각으로 경계선까지 계측한다. 돌출된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리는 외곽선으로부터 계측한다.

다.

제995조 공유하는 벽이 아닌 벽에 불투명의 조명을 설치할 수 있고 이는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50센티 미만이라도 그러하다.

제996조 공유하는 벽의 공동소유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이에 출구를 만들 수 없다.

제7관 통행권

제997조 ① 공도로의 출구가 없거나 또는 출구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통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실제적이지 아니한 소유자는 지역권의 설정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통행이 거절된 경우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盲地)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사용과 활용에 필요한 통행을 그에게 제공할 것을 상린자 중 1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그는 통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을 지급한다.

제998조 통행권은 가장 자연적인 통행을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이에는 장소의 조건, 맹지의 이익과 통행권이 행사될 때에 그 토지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99조 맹지가 분할, 유언 또는 계약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행을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분할자, 상속인 또는 계약상대방에게만 통행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행에는 배상 없이 제공된다.

제1000조 통행권의 수익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통행권이 행사되는 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조건으로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001조 통행권은 그 토지의 사용과 활용을 위한 필요가 종료한 경우에 소멸한다. 배상은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배상이 정기금 또는 분할지급에 의하여 변제되는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8관 공유의 담과 공작물

제1002조 ①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자기의 비용으로 그 토지에 담을 설치하고 이는 벽, 구거, 울타리 또는 기타의 모든 담으로 할 수 있다.

② 그는 이웃에 대하여 경계선에 비용을 절반하거나 또는 공동의 비용으로 그 토지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담의 공작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토지의 상황과 이용을 고려한다.

제1003조 경계선 위에 있는 담은 공유로 추정한다. 동일하게 그 건축물의 양 측에서 지지되는 벽은 주거가 있는 부분까지 공유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4조 소유자는 누구나 경계선상에 직접 인접한 개인의 벽에 대하여 그 벽의 소유자에게 그 공유가 된 벽의 가액의 절반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된 토지의 가액의 절반을 상환하고 그 벽의 공유를 취득할 수 있다. 벽의 가액은 공유가 된 날에 그것이 있는 상태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005조 ① 각각의 소유자는 공유의 벽에 대하여 견하고 거기에 기둥과 대들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소유자는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공작물이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가장 적게 해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6조 ① 공유의 벽의 유지, 수선과 재건축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는 각각의 권리의 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의 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이러한 취지를 그 권리의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에 통지하고 그 통지의 등본을 지체없이 다른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로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기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통지에는 그 벽을 사용할 권리의 포기가 포함된다.

제1007조 ① 공유의 벽의 공동소유자는 벽이 그 증축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에 의한 확인이 있는 후에 그 비용으로 벽을 높게 할 권리가 있다. 그는 다른 공유자에게 증축비용의 6분의 1을 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벽이 증축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그 벽 전체를 재건축하여야 하고 그 초과된 두께는 그의 측의 토지로 하여야 한다.

제1008조 ① 증축된 벽의 부분은 이를 설치한 자에게 귀속하고 그 유지, 수선과 재건축을 위한 비용도 그가 부담한다.

② 하지만 증축에 출연하지 아니한 이웃도 증축이나 재건축 비용의 절반과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된 두께를 위하여 제공된 토지의 가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공유를 취득할 수 있다. 그는 이외에도 그가 수령한 배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유권의 특별한 형태

제1절 총칙

제1009조 소유권의 주요한 특별형태로는 공동소유와 지상권이 있다.

제1010조 ① 공동소유는 하나의 재산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그들 각자는 그 소유권의 지분을 전유로 가지는 소유권을 말한다.

② 그 소유권으로 재산이 물리적으로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동소유는 불가분 공동소유라고 한다.

③ 소유권이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분할된 각각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지분을 포함한 각각의 지분에 의하여 분배된 경우에 구분소유에 의한 공동소유라고 한다.

제1011조 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라고 하는 타인에 속하는 부동산 위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식재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제2절 불가분에 의한 공유

제1관 불가분의 성립

제1012조 불가분은 계약, 상속, 판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1013조 ① 불가분 공유자는 서면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재산의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은 30년을 넘을 수 없지만 갱신할 수는 있다. 30년을 넘은 약정은 30년으로 단축한다.

제1014조 부동산에 관한 약정에 의한 불가분 공유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 공시에는 불가분 공유의 기간과 불가분 공유자의 지분의 확정과 경우에 따라 부여된 우선매수권이나 불가분 공유재산의 일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나 향유권의 부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불가분 공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1015조 ① 각각의 불가분 공유자의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각각의 불가분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하여 배타적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권리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제1016조 ① 각각의 불가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그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 불가분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산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향유권이 있는 자는 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1017조 첩부권은 불가분공유에서의 그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불가분 공유자 모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하지만 불가분 공유자가 불가분공유재산의 일부에 배타적 사용권이나 향유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 권리자는 이 부분에 부합되거나 합쳐된 재산에도 그 배타적 사용권과 향유권이 있다.

제1018조 불가분 공유재산의 과실과 수익은 그 임시분할이나 정기적 분배에 관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불가분공유가 증가한다. 그 기간의 만료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과실과 수익으로 불가분공유재산이 증가된다.

제1019조 불가분 공유자는 그 지분에 비례하여 관리비용과 불가분 공유재산에 관한 다른

공동부담에 책임이 있다.

제1020조 ① 각각의 불가분 공유자는 불가분 공유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허용된 비용에 대하여 분할된 때에 그 재산에 주어진 가액의 증가와 동일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반대로 불가분 공유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21조 ① 불가분 공유의 합의로 정한 기간 이전에 한 분할은 불가분 공유물의 지분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의 어느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2조 ① 불가분 공유자는 누구나 불가분 공유와 관계 없는 자가 유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에게 양도대금과 그가 지출한 비용을 그에게 상환하여 그 불가분공유로부터 그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그 지분의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② 불가분 공유자가 불가분공유의 약정에서 우선매권을 약정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 권리가 공시된 경우에는 환매권은 행사될 수 없다.

제1023조 ① 권리의 공시를 담당하는 관청에 그 주소를 등기한 불가분 공유자는 어느 불가분 공유자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채무의 변제를 그것을 수취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에 대하여 그에게 통지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그에게 불가분공유자의 채무와 비용을 그에게 변제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주소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그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제1024조 수인의 불가분 공유자가 어느 불가분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환매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들은 불가분공유에서의 그들의 권리에 비례하여 이를 분할한다.

제3관 불가분 공유재산의 관리

제1025조 불가분 공유자는 불가분 공유재산을 관리한다.

제1026조 ①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한 결정은 불가분공유자의 인원수와 지분에 의한 과반수로 한다.

② 불가분 공유재산의 양도, 이 재산의 분할, 물권의 설정, 그 용도의 변경이나 그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은 전원의 일치로 한다.

제1027조 ① 불가분 공유물의 관리는 불가분 공유자 중 1인이나 다른 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선임될 자의 선택이 불가분 공유자의 인원수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또는 관리인의 선임이나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불가분 공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부담할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1028조 어느 불가분 공유자가 불가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공유자가 이를 알고 그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그는 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29조 관리인은 불가분 공유물에 관하여 단순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인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행위한다.

제4관 불가분 공유의 종료와 분할

제1030조 누구도 불가분 공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유언에 의한 처분, 판결 또는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연기되거나 또는 계속적 용도로 그 재산을 출연된 사실로 인하여 불가분공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1조 ① 반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지분의 90퍼센트를 대표하는 불가분 공유자의 인원수의 4분의 3은 구분소유로 하기 위하여 주로 주거의 용도로 하는 부동산의 불가분의 공동소유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② 불가분 공유자는 구분소유의 설정을 반대하고 공동소유의 표시에 서명을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 그들에게 금전으로 그 지분을 지급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불가분 공유자의 지분은 그 변제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제1032조 ① 법원은 불가분 공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즉시 분할을 연기하고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동안 불가분공유를 유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불가분 공유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소멸하거나 불가분 공유를 용인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분 공유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 불가분 공유를 수정할 수 있다.

제1033조 ① 불가분 공유자는 언제든지 불가분공유의 유지를 반대하는 자에게 그 지분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변제할 수 있고 이는 그 선택에 따라 불가분 공유재산의 나머지로부터 그것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현물로 하거나 금전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분을 현물로 귀속하게 하는 경우에 불가분 공유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가장 적은 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지분을 금전으로 귀속하게 하는 경우에 각각의 불가분 공유자의 지분은 이 경우에 그 변제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제1034조 불가분 공유자의 1인에게 현물이나 금전으로 귀속할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 평가나 가액산정은 모든 불가분공유자에 의하여 지명한 자가 하거나 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지명한 자에 의하여 한다.

제1035조 ① 그 채권이 관리로 인한 것인 채권자는 분할 전에 적극재산에서 변제된다.
② 불가분 공유자의 채권자는 저당권자라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 공유자 자신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6조 불가분 공유자의 인원수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공유물의 중요한 부분의 멸실이나 수용의 경우에 그렇게 정한 경우에는 불가분 공유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1037조 ① 불가분 공유는 그 재산의 분할 또는 양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상속재산의 불가분 공유가 아닌 불가분공유를 종료하게 한 분할행위는 소유권의 귀속행위가 된다.

제3장 부동산의 구분소유³⁶⁰⁾

제1절 구분소유의 성립

제1038조 부동산의 구분소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구분된 단위가 1인 또는 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시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1039조 ① 구분소유자의 전체는 구분소유표시의 공시에 의하여 법인으로 성립되고 그 목적은 부동산의 보존, 공용부분의 유지와 관리, 부동산이나 구분소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 및 기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인은 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진다.

제1040조 ① 구분소유는 영구임차인이 건축한 부동산이나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의사표시의 공시할 때에 권리의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에 설정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각각의 공동소유자는 분할채무의 분할의 방법으로 그 분할부분에 관한 가액에 비례하여 영구임차권이나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구임차인이나 지상권자의 가분채무에 대하여도 의무가 있다. 조합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

제2절 구분소유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제1041조 ① 구분소유의 각각의 부분의 상대적 가액은 그 성질, 용도, 면적과 각각의 전유부분의 위치를 고려하되 그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전체 부분의 가액과 관계에서 정한다.
② 상대적 가액은 그 표시에서 정한다.

360) 원문은 제1010조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에 의한 공동소유'이지만 '구분소유'로 한다.

제1042조 건물의 전유부분은 확정적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가 배타적 이용을 하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말한다.

제1043조 ① 공용부분은 모든 공동소유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과 토지의 부분을 말한다.

② 다만 이 부분의 일부는 수인의 구분소유 또는 단독의 사용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 사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에 적용된다.

제1044조 대지, 마당, 베란다, 공원과 정원, 통행로,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로와 복도, 공용 서비스를 위한 장소, 주차장과 창고, 지하실, 건물의 기초와 주벽(主壁)과 전유부분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앙난방시설과 냉방시설과 그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추정한다.

제1045조 건물의 기초와 주벽부분은 아니지만 전유부분을 공용부분 또는 다른 전유부분과 분리하는 격벽(隔壁)이나 벽은 공유로 추정한다.

제1046조 각각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불가분 공유권이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각의 공유자의 지분은 그 전유부분에 관한 가액과 같다.

제1047조 각각의 전유부분은 1개의 독립한 실체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양도에는 어느 경우나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지분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 사용이 인정되는 공용부분의 사용권을 포함한다.

제1048조 전유부분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이 지분의 전유부분과 독립하여 양도나 분할의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049조 새로운 전유부분을 창설하거나 이를 적시하거나 독립적인 지적번호를 부여하고 그 상대적 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인접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변경을 기재하기 공동소유의 표시와 지적도가 사전에 변경되지 아니하면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로 하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

제1050조 ① 각각의 전유부분은 부동산의 평가와 과세를 위하여 독립적인 실체를 구성한다.

②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전유부분의 평가에 재판상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제1051조 제2650조와 제26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로 소지하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 공동소유의 표시등기를 할 때에 존재하던 저당권, 추가된 종된 담보 또는 우선권은 그들 각각의 전유부분 사이에서 또는 다른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된다.

제3관 구분소유의 표시

제1목 표시내용

제1052조 구분소유의 표시에는 구분소유의 설정증서, 부동산의 관리규정과 전유부분의 명세서를 포함한다.

제1053조 ① 구분소유의 설정증서에는 부동산의 용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기재한다.
② 증서는 또한 각각의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액을 정하고 이를 정하기 위한 방법, 각각의 전유부분의 지분과 각각의 전유부분에 주어진 표결수를 표시하고 부동산 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에 관한 기타의 합의를 정한다. 이외에도 증서는 관리위원회의 이사회와 공동소유자의 총회의 권한과 의무도 명시한다.

제1054조 ① 부동산의 관리규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향유, 사용과 유지에 관한 규정 및 공동소유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은 공동비용의 산정과 징수절차에 관하여도 처리한다.

제1055조 ① 명세서에는 부동산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지적상의 표시를 포함한다.
② 명세서에는 부동산에 설정되거나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물권도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추가적 종된 담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6조 구분소유의 표시는 공동소유자의 권리에 어떠한 제한을 부가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의 용도, 그 성질 또는 그 위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7조 부동산의 관리규정이나 그에 대한 변경의 등본이 공동소유자 또는 그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교부된 때로부터 그 규정은 그 전유부분의 임차인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1058조 ① 공동소유권의 설정증서가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전유부분은 수인이 소지하고 그들 각자가 정기적으로나 연속적으로 그 전유부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목적으로 그 전유부분이 양도될 수도 없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증서에는 이처럼 소지될 수 있는 전유부분의 수량, 점유기간, 이 전유부분을 소지할 수 있는 자의 최대인원수와 이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목 표시등기

제1059조 ① 구분소유의 표시는 공증인에 의하여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의 설정증서와 전유부분의 명세서에 가한 변경에도 같다.
② 구분소유의 표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전원, 영구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변경은 관리위원회가 서명한다.

제1060조 ① 표시 및 공동소유의 설정증서와 전유부분의 명세서에 가한 변경은 권리의 공

시를 담당하는 관청에 제출된다. 표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등록번호 밑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다. 변경은 공용부분의 등기번호 밑에만 등기한다. 다만 전유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관리규정에 가한 변경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경우에 따라서 영구임차권자나 지상권자는 영구임대차의 목적이 되거나 그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61조 전유부분에 관한 증서의 등기는 그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지분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는 공용부분의 등록번호 밑에 등기할 필요 없이 그러하다.

제1062조 공동소유의 표시는 그 등기한 때로부터 공동소유자, 그 승계인과 그에 서명한 사람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4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1063조 각각의 공동소유자는 자기의 전유부분을 처분한다. 그는 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향유한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규정에 따르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부동산의 용도에 반할 수 없다.

제1064조 각각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소유권과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부담 및 제10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립된 예비기금을 출연한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공동소유자는 그로 인한 부담에 단독으로 출연한다.

제1065조 그 전유부분을 임차한 공동소유자는 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임차인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66조 ① 부동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공사 또는 긴급한 공사의 이행에 대하여는 그 전유부분이 내부에서 하는 것이라도 각각의 공동소유자가 방해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이 임대된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개량과 공사에 관한 제1922조와 제19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통지를 임차인에게 한다.

제1067조 공사의 이행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공동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가액의 영구적 감소, 일시적이라도 중대한 향유의 방해 또는 훼손을 이유로 공사가 관리위원회의 청구로 한 것이면 그의 부담으로 하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타의 경우에 배상은 공사를 한 공동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68조 ① 구분소유자는 모두 공동소유의 표시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액과 공동부담의 배분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에 인정된 상대적 가치 또는 그에 부속된 공동부담의 부분과 공동소유의 표시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었을 상대적 가치 또는 부담부분 사이에서 1/10 이상의 차

이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이익으로 또는 청구를 한 공동소유자청구자에게 불리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정할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제1069조 ① 저당권의 행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방법이 무엇이든지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이 전유부분에 관하여 의무가 있는 모든 공동부담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하지만 공동소유권의 전유부분을 취득할 것을 고려하는 자는 공동소유자의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부담할 공동부담의 현황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전유부분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이를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장래에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한 때로부터 15일 내에 관리위원회가 그 현황을 그에게 제공한 부담에 한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③ 제공될 현황은 공동소유자의 최후 연례예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5절 관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제1070조 ①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공동소유자와 각각의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공동소유자의 총회와 관리위원회의 의사록 및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대장을 보관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공동소유의 표시, 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인 계약서의 등본, 지적도 등본, 건축된 부동산의 도면과 견적서 및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과 이사회에 관한 기타의 모든 문서도 그 처분으로 보관한다.

제1071조 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수선의 예상비용, 공용부분의 대체공사 비용에 따라 단기간에 처분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고 수선과 대체에만 제공되는 예비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관리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제1072조 ① 관리위원회는 공동소유와 부동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담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액과 예비기금에 적립할 액을 정한 후에 공동소유자의 총회에 자문을 받고 나서 매년 그 부담액을 정한다.

② 공동소유자의 예비기금에 대한 부담은 공동비용에 대한 그 전체부담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부담의 확정을 위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의 사용권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부담할 액과 지급되어야 할 일자를 각각의 공동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제1073조 ① 관리위원회는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보험이익이 있다. 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도난과 화재와 같은 통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그 부분에 한 개량은 이를 제외한다. 보험에 든 보험액은 부동산이 대체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제1074조 구분소유자 중 1인에 의한 보험계약조건의 위반은 관리위원회에 대항할 수 없다.

제1075조 ① 중대한 손실의 결과로 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배상은 제24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를 설정한 서면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 또는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배상은 부동산의 수선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공동소유의 종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그 각각의 배상부분을 정한 후에 이러한 부분에 제249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과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공동소유자의 각각을 위하여 수탁자는 배상의 나머지를 그 보고서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청산인에게 상환한다.

제1076조 ① 관리위원회는 권한이 인정된 경우에는 전유부분, 공용부분 또는 기타의 물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전유부분에 대한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총회에서 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표결권이 없고 표결될 수 있는 표결권의 총수(總數)는 그에 따라 감한다.

제1077조 관리위원회는 공용부분의 설계나 건축의 하자 또는 관리의 흠결에 의하여 공동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다만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78조 ① 관리위원회에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관리위원회와 소송원인이 발생된 때에 공동소유자인 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치에 비례하여 집행된다.

② 이 판결은 예비지급에 대하여는 집행될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의 수선이나 그 공유부분의 대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9조 임차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다른 부동산점유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통지한 후에 그 전유부분의 임대차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0조 ① 공동소유자가 공동소유권의 표시에 따르는 것을 거절하여 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중대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들 중 누구나 법원에 표시에 따를 것을 소유자에게 명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소유자가 금지명령에 위반하거나 그에 따를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에 가할 수 있는 형벌 외에도 민사소송법의 타인의 물건매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의 전유부분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제1081조 ① 관리위원회는 숨은 하자, 부동산의 설계상 또는 건축상의 하자 또는 대지의 하자에 의한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가 전유부분에 관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의 공동소유자의 허락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② 숨은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량한 주의의 유무는 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소유자 중 1인에 대하여 새로운 이사회가 선출된 날로부터 그 관리위원회의 개발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후에 판단한다.

제1082조 영구임대차 또는 지상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에 관한 그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할 의사를 관리조합에 통지한 후 6월 내에 그 관리조합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계획하고 있는 양도를 관리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안 때로부터 6월 내에 그 양도대금과 그가 지출한 비용을 그에게 상환하고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제1083조 관리위원회는 공동소유로 소지하는 부동산의 건축, 관리 및 공동노무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소유자의 관리위원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절 관리위원회의 이사회

제1084조 ① 관리위원회의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선임방법, 개임이나 보수 및 기타의 그 직무내용은 부동산의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②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 또는 개임하고 그 직무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1085조 ① 관리위원회의 관리는 공동소유자 중에서 선임되거나 기타의 자로 선임된 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단순관리권이 있는 자로 행위한다.

제1086조 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공동소유자인 관리인이 공동부담 또는 예비기금에 대한 그 분담을 지급할 것을 해태한 경우에는 이를 개임할 수 있다.

제7절 공동소유자 총회

제1087조 공동소유자의 연례총회의 소집통지에는 대차대조표 외에 전 회계기간에 한 결과의 현황, 채무와 채권의 현황, 예정된 예산안, 공동소유의 표시에 가할 모든 변경계획안 및 체결을 예정하는 계약과 실시를 예정하는 공사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88조 ① 공동소유자는 모두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의사일정에 관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총회의 개시 전에 이사회는 새로 제출한 질문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89조 ① 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공동소유자로 한다.

②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총회는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이 통지는 모든 공동소유자에게 한다. 새로운 총회에 출석하거나 대리출석한 자의 4분의 3을 정족수로 한다.

③ 정족수가 없는 총회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청구가 있으면 연기하여야 한다.

제1090조 총회에서 각각의 공동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치에 의하여 의결권의 수가 주어진. 어느 전유부분을 불가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가 불가분공유의 지분에 비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1091조 5개 미만인 전유부분으로 된 공동소유권에서 1인의 공동소유자가 공동소유자의 의결권의 전체의 과반수를 가진 경우에 총회에서 그가 가진 의결권의 수는 그 총회에 출석하거나 대리한 다른 공동소유자의 의결권의 전체 수로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1092조 ① 5개 이상의 전유부분으로 된 공동소유권에서 그 공동소유권의 발기인(發起人)은 그가 주거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에 있는 의결권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의 표시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차와 3년차가 만료할 때에 공동소유자의 의결권의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그 후에는 이 의결권의 수의 제한은 25퍼센트로 감한다.

제1093조 공동소유의 표시등기를 한 때에 모든 전유부분 또는 그 승계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발기인으로 본다. 다만 자기가 거주하기 위하여 선의로 시장가격으로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4조 공동부담의 분담액이나 예비기금의 부담금을 3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제1095조 의결권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는 의결권의 양도로 관리위원회에 대항할 수 있다.

제1096조 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에 출석 또는 대리출석한 공동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하고 이 결정에는 공동소유의 표시의 사무상의 착오의 정정도 포함한다.

제1097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표결권의 4분의 3을 대표하고 그 과반수로 정한다.

1. 관리위원회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행위
2. 공용부분의 변경, 확장 또는 개선공사 및 그 공사비용의 분배
3. 새로운 전유부분을 만들기 위한 건물의 축조
4. 공동소유의 설정증서 또는 전유부분의 설명서의 변경

제1098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표결권의 90퍼센트를 대표하고 그 4분의 3 이상으로 정한다.

1. 부동산의 용도변경
2. 부동산의 용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의 양도의 허가
3. 1개의 전유부분을 수인이 소지하고 각자가 정기적으로나 연속적으로 그 향유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공동소유자의 표시의 변경

제1099조 본 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의 표결권이나 발기인의 표결권을 감한 경우에는 결정을 위한 표결이 그 수와 표결권에서 과반수를 필요한 경우에 공동소유자의 전체 의결권 수도 그만큼 감한다.

제1100조 ① 인접한 전유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 사이에서는 총회의 동의 없이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 변경으로 변경된 전유부분 전체의 가액이나 그에 부가된 표결권의 전체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② 관리위원회는 공동소유자의 비용으로 공동소유의 표시와 지적도를 변경한다. 그 변경행위에는 채권자, 공동소유자와 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101조 본 절에서 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표결권의 수를 변경하는 공동소유의 표시의 정함은 모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02조 공동소유의 표시에 반하여 각각의 공동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상대적 가치, 전유부분의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

제1103조 ① 총회의 결정이 불공정한 경우, 공동소유자를 해하는 경우 또는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 또는 표결수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는 누구나 법원에 대하여 그 결정의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소는 총회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 소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에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절 관리위원회에 대한 발기인의 통제의 상실

제1104조 ① 공동소유자의 총회에서 구분소유권의 발기인이 과반수의 표결권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하기 위하여 특별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90일 내에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누구나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05조 ① 특별총회에서 이사회는 그 관리에 대하여 보고한다.

②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의 재무상황에 관한 회계사의 의견을 붙여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회계사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보고에 그가 확인한 모든 특이한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동소유자의 표결권의 40퍼센트를 대표하는 공동소유자가 청구에 의하여 재무상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총회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1106조 ① 회계사는 언제든지 공동소유에 관한 장부, 회계서류와 전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회계사는 발기인이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정보와 설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7조 새로운 이사회는 선임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의 유지를 위하여나 기타의 노무를 위하여 관리위원회가 그 선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구분소유의 종료

제1108조 ① 모든 공동소유자의 표결권의 90퍼센트를 대리하는 공동소유자의 4분의 3의 결정으로 구분소유가 종료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의 종료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리위원회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있는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토지등기부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등록번호 밑에 등기한다.

제1109조 ① 관리위원회는 제1편의 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산된다.
② 이 목적을 위하여 청산인은 관리위원회의 재산 외에 부동산 전체, 부동산에서의 공동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점유할 수 있다.

제4절 지상권

제1관 지상권의 설정

제1110조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객체를 분리, 첨부권의 양도 또는 첨부권의 이익의 포기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1111조 토지의 이용에 관한 지상권자의 권리는 합의에 의하여 규율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권이 설정된다. 토지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 지상권은 종료한다.

제1112조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는 각각의 그들의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에 설정된 부담을 인용한다.

제1113조 지상권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상권의 조건을 설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지상권의 소멸

제1114조 지상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종료한다.

1.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한 자로의 지위의 혼동.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

다.

2. 해제조건의 성취
3. 종기의 도래

제1115조 ①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전부멸실은 지상권이 소유권의 객체의 분리로 인한 경우에만 지상권이 소멸한다.

②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수용이나 토지의 수용으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116조 ① 지상권의 기간의 만료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가액을 지급하고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권을 침부로 취득한다.

② 하지만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가치가 토지의 가액과 같거나 더 많은 경우에 지권상자는 그 가액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다만 지상권자가 그의 선택으로 그 비용으로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7조 지상권이 종료한 때로부터 90일 내에 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보유한다.

제1118조 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가액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가액과 기타의 조건을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은 권원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모든 효력을 가진다.

②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건축물, 공작물 또는 수목의 수거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조건을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용익제한물권³⁶¹⁾

총칙

제1119조 용익권, 사용권, 지역권과 영구임차권은 제한용익물권의 형태로 하고 모두 물권으로 한다.

제1절 이용권

제1관 용익권의 성질

제1120조 용익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의 권리

361) 원문은 *démembrement du droit de propriété, dismemberments of the right of ownership*이다. 소유권에 설정되는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에 관하여 일부이전된 물권으로 가령 용익권(usfruit), 지역권(servitude), 영구임차권(emphytéose) 등이 이에 속한다. 때로는 *droit démembre*라고도 한다. 分肢權 支分權(*Démembrement de la propriété*)이라고 하기도 한다.

를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로 다만 용익권자는 해당 재산의 본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121조 용익권은 계약, 유언이나 법률로 설정된다.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로 설정될 수도 있다.

제1122조 용익권은 1개의 용익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될 수도 있고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수개의 용익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될 수도 있다.

제1123조 ① 용익권의 기간은 100년을 넘을 수 없다. 설정해위로 더 장기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연속적 용익권을 창설한 경우에도 같다.

② 존속기간이 없는 용익권의 기간은 용익권자의 종신이다. 용익권자가 법인이면 30년으로 한다.

제2관 용익권자의 권리

제1목 이용권의 범위

제1124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는 재산이 있는 상태로 이를 수령한다.

② 용익권은 모든 종된 것과 첨부에 의하여 부동산에 자연적으로 결합되거나 부합된 모든 것³⁶²⁾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125조 ① 용익권자는 허유권자(虛有權者)³⁶³⁾에 대하여 그의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권리를 가지고 허유권자가 한 양도는 용익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1126조 용익권자는 재산에서 산출된 과실과 수익을 자기 것으로 한다.

제1127조 ① 용익권자는 그가 소유자인 것 같이, 용익권에 포함되고 이를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다만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그와 같은 품질과 수량으로 한 동종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동종재산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는 현금으로³⁶⁴⁾ 그 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8조 ① 용익권자는 선량한 주의의무가 있는 관리자와 같이 소비될 수 없고 사용에 의하여 신속하게 감손(減損)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그는 용익권이 종료될 때에 그가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62) 원문은 tout ce qui s'unit ou s'incorpore naturellement à l'immeuble par voie d'accession이다.

363) 원문은 nu-propriétaire, bare owner로서 '용익권을 설정하여 용익을 할 수 없는 소유자'를 말한다. '용익권을 설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도 있다.

364) 원문은 valeur en numéraire, value thereof in cash이다. 또한 제419조, 제898조와 제1802조도 참조.

제1129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권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부가된 과실에 수취할 수 있다.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그 재산에 아직 부가된 과실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다.

② 경우에 따라서 그 과실의 산출에 필요한 노무나 비용을 들인 자에 대하여 허유권자 또는 용익권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30조 수익은 용익권자와 허유권자 사이에서 존속일수로 산정한다. 그 권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수익은 용익권자에게 속하고 이는 수익이 언제 이행기에 있는지 또는 지급하였는지를 불문한다. 다만 배당금은 이를 용익권의 존속 중에 신고한 경우에만 용익권자에게 속한다.

제1131조 유가증권을 환매할 때에 분배된 이익금과 같은, 용익권의 목적인 재산의 소유권에서 나온 특별수입은 용익권자에게 지급하고 그는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이를 허유권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132조 ① 용익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용익권의 존속 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그 대금은 용익권자에게 지급하고 용익권자는 그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용익권자는 용익권이 종료한 때에 허유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3조 ① 증권의 출연과 같이 용익권이 적용되는 원본을 증가하게 할 권리는 허유권자에게 속하지만 용익권자의 권리는 이 증가부분으로 확대된다.

② 허유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선택하면 양도의 산출물은 용익권자에게 상환하고 그는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134조 ① 주식, 기타의 증권, 공유주식, 공동소유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기타 용익권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에 부가된 의결권은 용익권자에게 속한다.

② 하지만 자본금이나 공동소유하는 재산과 같은 주된 재산의 본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재산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법인, 기업 또는 해당 단체를 종료하는 효력이 있는 의결권은 허유권자에게 속한다.

③ 의결권의 행사의 배분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배분은 용익권자와 허유권자 사이에서만 다룰 수 있다.

제1135조 용익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용익권에 포함된 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136조 ① 용익권자의 채권자는 용익권자의 권리를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허유권자의 권리는 유보된다.

② 허유권자의 채권자도 허유권자의 권리를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용익권자의 권리는 유보된다.

제2관 지출비용

제1137조 용익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허유권자에 관한 관계에서 선의의 점유자가 한 것으로 한다.

제1138조 용익권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용익권이 종료한 후에 배상 없이 허유권자가 보유한다. 다만 용익권자가 이를 수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그 재산을 상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허유권자는 용익권자에게 이를 수거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제3목 수목과 광물

제1139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하고 있는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수리, 유지와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넘어졌거나 죽은 것은 처분할 수 있다.

② 용익권자는 지방의 관행이나 소유권자의 관습에 따라 멸실된 수목을 대체한다. 과목(果木)이나 사탕단풍나무도 대체한다. 다만 대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0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업이나 임업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개발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용익권자는 지력이 소모되거나 삼림의 재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업개발인 경우에는 이외에도 그 개발의 착수 전에 허유권자에 의하여 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이 받지 못하면 용익권자는 법원에 의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141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에 포함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다만 이 토지의 보수와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용익권의 개시 이 광물의 채굴이 소유권자를 위한 수입원이 된 경우에는 용익권자는 채굴이 개시된 것과 동일하게 채굴을 계속할 수 있다.

제3관 용익권자의 의무

제1목 목록과 담보

제1142조 ① 용익권자는 타인의 재산의 관리자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다만 용익권을 설정한 자가 그 자신 그 목록을 작성하였거나 또는 용익권자에게 이를 작성할 것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익권이 상속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이 면제를 할 수 없다.

② 용익권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부분을 허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제1143조 용익권자는 용익권을 설정한 자 또는 허유권자에게, 그 목록을 작성하기까지는 그 재산을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제1144조 ① 용익권을 유보하나 매도인이나 증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용익권자는 용익권

이 개시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보험에 들거나 허유권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채무가 용익권의 존속기간 중에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용익권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용익권을 설정한 자가 이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이 채무가 면제된다.

제1145조 ① 용익권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의 제공이 없으면 허유권자는 그 재산을 계쟁물임치할 수 있다.

② 계쟁물임치에는 단순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인재산의 관리자와 같이 그 보관액과 멸실하기 쉬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액을 용익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동일하게 용익권이 설정된 채권의 변제로 인한 액도 포함한다.

제1146조 재산목록의 작성 또는 담보의 제공에 대한 용익권자의 부당한 지연은, 용익권의 개시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에게서 그 과실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박탈한다.

제1147조 용익권자는 법원에 그 사용에 필요한 계쟁물임치에 있는 동산을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이를 반환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게 유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목 보험과 수리

제1148조 용익권자는 절도와 화재와 같은 통상의 위험에 대하여 그 재산에 보험을 들고 용익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금이 위험에 관하여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이 의무는 면제된다.

제1149조 ① 멸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은 용익권자에게 지급하고 그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용익권자는 재산의 보수에 배상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가 배상금을 가질 수 있는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0조 ① 용익권자 또는 허유권자는 그들의 계산으로 그들의 권리를 담보할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배상은 해당 경우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속한다.

제1151조 재산의 유지는 용익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용익권자는 대수선을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의 행위로 인한³⁶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용익권의 개시 후에 유지를 위한 수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다.

제1152조 대수선은 대들보와 지주벽(支柱壁), 지붕의 교체, 축대, 난방, 전기 또는 배수시설 또는 전자설비에 관한 것과 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재산의 동력부분이나 외장에 관한 수선과

365) 영어판에서는 ‘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같이 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수선을 말한다.

제1153조 ① 용익권자는 허유권자에게 대수선의 필요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허위권자는 이를 할 의무가 없다. 이를 한 경우에는 용익권자는 그로 인한 불편을 인용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용익권자가 이를 할 수 있고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제3목 기타의 부담

제1154조 ① 용익권자는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통상적인 부담과 수익과 함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특별한 부담이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되는 것인 경우에는 아이에 대하여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

제1155조 특정한 권원³⁶⁶⁾의 용익권자는, 그 권리의 목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이 강제된 경우에 즉시 채무자가 상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용익권이 종료된 때에 허유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56조 ① 포괄적 권원의 용익권자와 허유권자는 상속채무의 변제에 상속에서의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의무가 있다.

② 허유권자는 원본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용익권자는 이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

제1157조 ① 포괄적 권원의 용익권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허유권자는 그에게 용익권이 종료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용익권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 허유권자는 채무액의 범위까지 용익권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매각하게 하거나 자신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익권자는 용익권의 존속기간 중에 그에게 변제한 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158조 ① 용익권자는 그 용익권에 관한 법적 소송비용³⁶⁷⁾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소송이 허유권자의 권리와 용익권자의 권리에 동시에 관련된 경우에 특정한 권원의 용익권자와 허유권자 사이의 상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용익권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비용은 용익권자와 허유권자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한다.

제1159조 용익권자는 용익권이 있는 동안에 허유권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한 모든 가해 또는 허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기타의 침해에 대하여 허유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에 의하여 가치감소를 한 것과 같이 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다.

366) 이를 '특정명의'와 '포괄적 명의'라고 할 수도 있다.

367) 프랑스어판은 '재판상 청구비용'(dépens de toute demande en justice)이다.

제1160조 ① 허유권자도 용익권자도 부패된 것을 대체할 의무는 없다.

② 그 재산에 보험을 들 의무가 면제된 용익권자는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재산을 대체하거나 그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161조 ① 용익권이 불가항력으로 완전히 멸실된 가축³⁶⁸⁾에 관한 것이면 그 재산에 보험을 들 의무가 면제된 용익권자는 그 가축과 그 가액에 대하여 허유권자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

② 가축이 완전히 멸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익권자를 멸실된 동물로 증가의 범위까지 대체할 의무가 있다.

제4관 용익권의 소멸

제1162조 용익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멸된다.

1. 기한의 만료
2. 용익권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3. 용익권자와 허유권자의 동일한 지위로의 혼동.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유보한다.
4. 권리의 실효, 그 포기 또는 정기금으로의 전환
5. 10년 동안의 불행사

제1163조 ① 그 재산에 용익권자가 보험을 든 경우에 용익권이 설정된 그 재산의 전부멸실에 의하여도 용익권은 종료한다.

② 재산의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용익권은 그 나머지에 존속한다.

제1164조 용익권이 설정된 재산의 수용으로 그 용익권은 종료하지 아니한다. 배상은 용익권자에게 귀속하고 용익권이 종료한 때에 이를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165조 제3자가 특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 허락된 용익권은 그 일자까지 존속한다. 이는 제3자가 확정된 연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렇다.

제1166조 ① 연속적인 수인의 용익권자의 이익으로 창설된 용익권은 최후의 용익권자의 사망 또는 최후의 법인의 해산으로 종료된다.

② 용익권이 공동인 경우에 용익권자 중의 1인에 대한 용익권의 소멸은 허유권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제1167조 ① 용익권이 종료한 때에 용익권자는 허유권자에게 용익권이 설정된 재산을 그것의 현상대로 반환한다.

② 용익권자는 그의 과실로 발생한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재산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것은 책임이 없다.

제1168조 ① 그 용익을 남용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훼손하게

³⁶⁸⁾ 영어판은 '길짐승 떼와 날짐승 떼'(herd or flock)로 양자를 구별한다.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유권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한 용익권자는 그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정의 중대성에 따라 용익권의 절대적 소멸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허유권자에 대한 즉시 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할 배상이 있거나 또는 배상없이 할 수 있다. 공동용익권자 또는 연속적 용익권자를 위하여 그 용익권자의 권리의 실효를 선고하거나 또는 용익권의 계속을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용익권자의 채권자는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가액감소에 대한 배상이나 장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제1169조 ① 용익권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일부의 포기가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권리의 범위, 그 존속기간 및 그로부터 취득된 과실과 수익을 고려하여 법원이 용익권자의 새로운 의무를 정한다.

제1170조 전부포기는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허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부포기는 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때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

제1171조 ① 그 채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용익권자는 허유권자 또는 공동용익권자나 연속적 용익권자에게 그 권리를 정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합의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용익권자의 권리가 확인되면, 특히 권리의 범위, 그 존속기간 및 그로부터 취득된 과실과 수익을 고려하여 그 정기금을 정한다.

제2절 사용권

제1172조 사용권은 사용권자와 그와 함께 동거하거나 그의 부담으로 하는 자의 필요의 범위까지 타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실과 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말한다.

제1173조 ①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사용권을 설정한 약정이나 행위가 반대의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정이나 행위가 그 권리의 양도가능성과 압류가능성에 대하여 정함이 없으면 법원은 사용권자의 이익으로 소유권자가 어떠한 손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74조 그 권리가 재산의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권자는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75조 ① 그 재산의 과실과 수익을 수취하거나 이를 전부 사용한 사용권자는 이를 산출하는데 든 비용, 유지비용과 부담의 지급을 모두 용익권자와 동일하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과실이나 수익의 일부만을 수취하거나 재산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가 사용한 것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1176조 ① 기타의 점에 관하여는 용익권에 관한 사용권에 준용된다.

② 하지만 용익권의 정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사용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권리가 양도할 수 있고 압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지역권

제1관 지역권의 성질

제1177조 ① 지역권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요역지라고 하는 다른 부동산을 위하여 승역지라고 하는 부동산에 가한 부담을 말한다.

② 이 부담은 요역지의 소유자로부터의 일정한 사용행위를 승역자의 소유자에게 인용하게 하거나 그 자신이 그 소유권에 고유한 몇 가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③ 지역권은 그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확대된다.

제1178조 어느 행위를 할 의무가 지역권에 부가되고 승역자의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 의무는 지역권에 종된 것이고 부동산의 노무 또는 개발을 위하여만 약정될 수 있다.

제1179조 ① 지역권은 계속적이거나 불계속적인 것이 있다.

② 계속지역권은 그 행사에 그 권리자의 현실적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지역권을 말하고 조망지역권이나 불건축의 지역권이 이에 해당한다.

③ 불계속지역권은 그 권리자의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 지역권을 말하고 도보통행지역권이나 차량통행지역권이 이에 해당한다.

제1180조 ① 지역권은 표현되거나 비표현되는 것이 있다.

② 표현지역권은 지역권이 외부의 표시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비표현지역권이다.

제1181조 ① 지역권은 약정, 유언, 소유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효력으로 설정된다.

② 지역권은 권원이 없으면 설정될 수 없고 점유는 영구한 것이라도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제1182조 승역지와 요역지의 소유권의 이전으로 지역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지역권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양도되든지 그 부동산에 따른다. 다만 권리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83조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지역권은, 그 장래의 분할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를 위한 토지의 부분에 대한 지역권의 성질, 범위와 현황을 바로 증명하는 토지 소유자의 서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2관 지역권의 행사

제1184조 ① 요역지의 소유자는 그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권의 설정행위로 반대의 정함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권이 종료할 때에 그는 승역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이전의 상태로 그 토지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185조 지역권의 사용과 보존을 위하여 권원에 의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부담이 있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요역지의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전부 또는 지역권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토지의 일부를 위기함으로 이러한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1186조 ①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현황을 악화하게 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감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하는데 이익이 있으면 그는 그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위치를 그 행사가 요역지의 소유자에게도 편리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187조 ① 요역지가 분할되면 지역권은 각 부분에 존속하지만 승역지의 조건이 그로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② 이에 따라 통행권의 경우에 요역지의 분할로 인한 분할부분의 소유자는 모두 동일한 곳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88조 승역지가 분할된 경우에 이 분할은 요역지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1189조 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인 맹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그 효용이 승역지에 가져오는 불편이나 가치감소와 비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환매권을 허가된 경우에 특히 지역권의 기간의 장단과 승역지의 이익과 승역지의 불이익에 대하여 지역권이 가져온 가치의 변경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정한다.

제1190조 당사자는 서면으로 30년을 넘지 아니하는 동안 지역권의 환매를 배제할 수 있다.

제3관 지역권의 소멸

제1191조 지역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멸된다.

1. 승역지와 요역지의 소유자의 지위의 동일한 자로의 혼동
2. 요역지의 소유자의 명시적 포기
3. 지역권이 설정된 기간의 도래
4. 환매
5. 10년 동안의 불행사

제1192조 시효는 불계속지역권에 대하여 요역지의 소유자가 그 지역권의 행사를 중지한 날

로부터, 계속지역권에 대하여는 그 행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제1193조 지역권의 행사방법은 지역권 그 자체처럼 동일하게 시효에 걸린다.

제1194조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지역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성질로 변경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한다.

제4절 영구임대차

제1관 영구임대차의 성질

제1195조 ① 영구임대차는 어느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타인에게 속하는 부동산을 완전하게 사용하고 그 이익 모두를 수취하도록 허용하면서 그 존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에 건조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그 가치를 증가하게 할 조건을 부담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영구임대차는 계약 또는 유언으로 설정된다.

제1196조 동시에 토지와 이미 존재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영구임대차는 공동 영구임차인의 (의사)표시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이에는 공동소유의 표시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영구임차인에 의하여 건축된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소유에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

제1197조 영구임대차는 설정행위에 약정된 존속기간이 있어야 하고 이는 10년 이상 100년 이하로 한다. 존속기간이 100년을 넘으면 100년의 기간으로 감축한다.

제1198조 공동소유로 소지된 부동산이 그 위에 건축된 토지에 설정되거나 토지와 이미 건축된 부동산 위에 동시에 설정된 영구임대차는, 영구임차인이 유익비 이외에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수목 또는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할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갱신될 수 있다.

제1199조 ① 영구임차인의 채권자는 영구임차인의 권리를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의 권리는 유보한다.

② 소유자의 채권자도 소유자의 권리를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차인의 권리는 유보한다.

제2관 영구임차인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1200조 ① 영구임차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의 지위에 부가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 절과 영구임대차의 설정행위의 제한은 유보한다.

② 설정행위는 당사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그 유지, 그 수익 또는 그 사용을 확보하게 할 권리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소유자나 영구임차인의 권리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채무의 이

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러하다.

제1201조 영구임차인은 그 비용으로 그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에 그 권리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현황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그에게 이를 할 것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2조 부동산의 일부멸실은 영구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 정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203조 영구임차인은 수선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 또는 그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이나 수목에 관한 대수선이라고 그러하다.

제1204조 ① 영구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치를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악화를 방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유자에 대한 배상금의 즉시지급이나 분할지급을 동시에 하게 하거나 또는 배상 없이 사정의 중대성에 따라 영구임대차를 해지하거나 또는 영구임차인이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다른 의무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영구임차인의 채권자는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가치감소의 배상과 장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05조 영구임차인은 부동산에 부과된 부동산의 부담을 변제한다.

제1206조 소유자는 영구임차인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1207조 ① 일시금이나 분할로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이 설정행위에서 정해지고 영구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소유자는 최소한 90일의 고지 후에 그 설정행위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할된 공동소유가 영구임차인이 건축한 부동산에 관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부동산이 영구임대차의 목적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관 영구임대차의 종료

제1208조 영구임대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종료된다.

1. 설정행위로 정한 기간의 만료
2. 부동산의 전체의 멸실이나 수용
3. 설정행위의 해지
4. 소유자와 영구임차인의 지위의 동일인에게의 혼동
5. 10년 동안의 불행사
6. 포기

제1209조 영구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소유자는 영구임차인이 약정한 모든 권리와 부담 없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점유한다. 다만 영구임차권의 종료가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동일한 자로의 소유자와 영구임차인의 혼동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0조 ① 영구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영구임차인은 그 부동산을 설정행위에서 규정한 그 건조물, 공작물 또는 수목과 함께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의무 없이 부동산에 추가된 것은 선의의 점유자가 들인 비용으로 한다.

제1211조 그 권리를 영구임차인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영구임대차는 포기에 의하여도 종료할 수 있고 이 포기는 영구임차인이 과거에 대하여 그의 모든 의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을 모든 부담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장 몇 가지 재산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1절 양도금지약정

제1212조 ① 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행사는 증여 또는 유언을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양도금지약정은 재산의 소유권 또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용익제한물권을 어느 자 또는 신탁으로 양도할 때에 서면으로 한다.

③ 이 양도금지약정은 일시적이고 중대하고 정당한 이익에 의하여 인정될 때에만 효력이 있다. 하지만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이나 신탁은 그 존속기간 중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제1213조 양도를 금지된 자는 양도금지를 정당화한 이익이 소멸한 경우 또는 그 이상에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처분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제1214조 부동산에 대한 양도금지조항은 그것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하여의 양도금지조항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다.

제1215조 양도금지가 정해지고 있는 재산은 그 재산을 수령한 자가 양도금지 전 또는 양도금지기간 중에 부담한 채무를 이유로 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전 중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16조 ① 양도금지된 자가 양도금지조항의 효력을 다툰 것을 금지한 정함과 또는 법원에 처분의 허가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 정함은 쓰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정함에 대하여도 같다.

제1217조 양도금지조항에 반하는 처분의 무효 및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처분의 무효는 양도금지조항을 정한 자, 그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양도금지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제2절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제1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성질과 범위

제1218조 ① 어느 자가 무상양도에 의하여 재산을 수령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자기가 수령한 것을 제3자에게 이전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 사전보충지정이 있다.

② 사전보충지정은 생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사전보충지정은 서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되어야 한다.

제1219조 ①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자를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라고 한다. 후에 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사전보충지정자라고 한다.

② 이전을 의무를 부담하면서 수령한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이후의 사전보충 지정자와의 관계에서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된다.

제1220조 다른 지시가 없이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가 사망할 때에 존재하는 증여자 또는 유증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유언없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보충지정이 인정된다.

제1221조 ① 사전보충지정은 원래의 사전보충지정 의무자 외에 2개의 계속적 순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그 후의 순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공동의 사전보충지정 의무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이 잔존하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증가는 순위로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22조 상속에 관한 규정, 특히 선택권에 관한 규정과 유언에 의한 처분에 관한 규정은 사전보충지정이 있는 때로부터 생전증여이든 유언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든 사전보충지정에 준용된다.

제2관 개시 전의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제1목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제1223조 사전보충지정 전에는 사정보충지정 의무자가 사정보충지정된 재산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은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재산 중에서 사정보충지정자를 위한 별개의 재산으로 구성된다.

제1224조 사전보충지정의무자는 그의 비용으로 증여 또는 유증이 승낙된 때로부터 2월 내에 사전보충지정자를 소환한 후에 타인의 재산관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보충지정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25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서 사전보충지정자의 권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위하여야 한다.

제1226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그는 사전보충지정의 개시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과 채무에 대하여 그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변제한다. 사전보충의무자는 채권을 수취하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재판상으로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제1227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도난과 화재와 같은 통상적 위험에 대하여 재산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위험에 관하여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한다.

② 보험배상은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이 된다.

제1228조 사전보충지정된 토지에 농업, 임업 또는 광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리에 관하여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용익권의 규정에 의한다.

제1229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의 이름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② 취득자, 채권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는 사전보충지정의 개시된 때에 사전보충지정자의 권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30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의 모든 양도, 사전보충지정 전에 그에게 지급된 원본 또는 처분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사전보충지정의 이름으로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투자할 의무가 있다.

제1231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매년마다 사전보충지정자에게 재산 전체에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양도된 재산의 가액으로부터 그가 한 채투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2조 ① 사전보충지정의 설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양도의 가액을 채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설정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이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만 사전보충지정은 효력이 있다.

제1233조 ①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에 우선특권이나 저당권을 소지한 채권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에 법률이 그에 부여한 권리와 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타의 채권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고유재산을 검색한 후에 재판상으로 이를 압류

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사전보충지정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압류나 경매가 사전보충지정에 의하여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게 인정된 권리의 범위로 제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는 유효하다. 경락인은 확정적인 권원이 있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구세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 대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제1234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 개시 전에 그 권리를 사전보충지정자의 이익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미리 사전보충지정자에게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② 포기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사전보충지정자의 장래의 권리도 해할 수 없다.

제2목 사전보충지정자의 권리

제1235조 사전보충지정 개시 전에 사전보충지정자는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에 장래의 권리가 있다. 사전보충지정자는 자기의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하고 그 권리의 보호에 유용한 모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1236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필요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 사전보충지정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비용으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한다.

제1237조 ① 사전보충지정의 설정행위가 그에게 이를 요하거나 또는 법원이 사전보충의무자 또는 그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한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전보충지정의 개시 전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 그는 추가담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8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위한 경우에 법원은 사정의 중대성에 따라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게서 과실과 수익을 박탈하고 그에게 원본을 상환하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이익으로 그 권리의 실효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자 중에서 우선하여 선택된 계쟁물임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39조 ① 아직 포대되지 아니한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권리는 처분자에 의하여 사전보충지정의 후견인으로 행위하도록 지정되고 이 부담을 승낙하거나 또는 지정이나 승낙이 없으면 사전보충지정 의무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 공익후견관이 행위를 위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제3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개시

제1240조 ① 처분자가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보충지정은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의 개시는 증여 또는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권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할 수 없다.

제1241조 ① 공동사전보충지정 의무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은 잔존한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 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사전보충지정은 최후의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만 개시한다.

② 하지만 이와 같이 지체된 사전보충지정의 개시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어도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사망한 때에 수취될 수 있었을 사전보충지정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수취할 권리는 그에게 취득되지만 그는 개시 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1242조 ① 사전보충지정자는 사전보충지정의 개시할 대에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② 동일한 순위에 수인의 사전보충지정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그 권리의 개시할 때에 다른 모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수취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이 후에 그 사전보충지정을 수취하면 수취를 위한 지위를 가지는 것을 충분한다.

제4관 개시 후의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제1243조 사전보충지정을 승낙한 사전보충지정자는 처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재산을 수령하고 개시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점유된다.

제1244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에 의하여 사전보충지정 권리자에 대하여 계산을 보고하고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의 원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재투자에 의하여 취득된 것 또는 이것이 없으면 처분한 때의 재산의 가액을 반환한다.

제1245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사전보충지정의 개시할 때의 상태로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반환한다.

②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자기의 과실에 의한 발생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는 발생되지 아니한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46조 사전보충지정이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잔존부분에만 미친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잔존한 재산과 양도된 것의 가액만을 반환한다.

제1247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는 원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사전보충지정의 개시 후의 이자와 함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전보충지정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원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같다.

②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그 목적이 이 기간을 넘은 비용을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

제1248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선의점유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249조 사전보충지정의 개시에 의하여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와 처분자 사이에 있는 채권과 채무는 부활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지위로의 혼동은 사전보충지정의 개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종료된다.

제1250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사전보충지정된 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51조 ①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상속인은 본 관의 규정이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게 과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것이 그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다.

②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상속인은 필요한 경우에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행위의 필연적 결과인 것 또는 멸실의 위험 없이 지체될 수 없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실효와 취소

제1252조 ① 유언에 의한 사전보충지정이 1인의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 대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대습이 되지 아니한다. 실효는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이익으로 하고 이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② 1인의 사전보충지정자에 대한 실효는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제1253조 증여자는 사전보충지정 전에 사전보충지정자 또는 그 대리인이 승낙하기 전이라면 사전보충지정자와의 관계에서 사전보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보충지정자가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자이거나 또는 공동사전보충지정자 중 1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사전보충지정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254조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 대한 사전보충지정의 취소는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사전보충지정자에 대한 사전보충지정의 취소는 다른 공동사전보충지정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다른 공동 사전보충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제1255조 ① 처분자는 사전보충지정자의 지분을 지정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증여자에 의한 이 권한의 행사는 어느 사전보충지정자로부터의 사전보충지정의 이익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효과가 되더라도 사전보충지정의 취소가 되지 아니한다.

제6장 몇 가지 출연재산

제1절 재단

제1256조 ① 재단은 어느 자가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출연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행위로 발생된다.

② 재단은 기업의 경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57조 ① 재단의 재산은 처분자와 기타의 다른 자의 것과 독립적이고 별개로 성립되거나 법인의 재산으로 구성된다.

②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을 유보하고 본 장의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한다. 후자의 경우에 재단은 동일한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규율한다.

제1258조 신탁에 의하여 창설된 재단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설정되고 각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259조 재단의 설정행위에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탁으로 창설된 재단의 원래의 자산을 구성하는 재산이나 그에 대위하거나 부가된 재산은 그로 인한 수익의 분배만에 의하여 또는 자산의 본질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사용에 의하여 보존되거나 그 목적의 달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2절 신탁

제1관 신탁의 성질

제1260조 신탁은 설정자라고 하는 자가 그의 재산으로부터 그가 특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수탁자가 그의 승낙행위로 이를 보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그가 설정한 다른 재산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성립된다.

제1261조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재산은 설정자, 수탁자와 수익자의 재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출연재산으로 구성되고 설정자, 수탁자와 수익자의 누구도 그 신탁재산에 물권이 없다.

제1262조 신탁은 유상 또는 무상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다.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성립될 수도 있다.

제1263조 ① 무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탁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그 신탁은 채권과 동산물권 등기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설정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수탁자는 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편에서 정한 저당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264조 ① 신탁은 수탁자의 승낙에 의하거나 또는 수인의 수탁자이면 그 중 1인의 승락으로 설정된다.

② 신탁이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낙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

제1265조 신탁의 승낙에 의하여 설정자는 재산의 점유를 상실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출연과 관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고 수익자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제2관 신탁의 여러 종류와 그 존속기간

제1266조 ① 신탁은 개인적 목적이나 사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다.

② 신탁은 신탁에 관한 것이라고 적시한 문언의 범위에서 처분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명칭에 의하여 또는 사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지정하는 명칭으로 확정될 수 있다.

제1267조 개인신탁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설립된다.

제1268조 사익신탁은 어느 자의 간접적인 이익 또는 그 기념을 하거나 사적인 성질의 기타의 목적으로 유체물의 설치, 유지나 보존 또는 특정한 용도에 출연한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1269조 특히 설정자,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회사, 조합의 구성원, 종업원이나 주주를 위하여 투자의 방법으로 이익의 실현을 허용하거나 퇴직을 위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상으로 설정된 신탁도 사익신탁이다.

제1270조 ① 공익신탁은 특히 문화, 교육, 자선, 종교, 과학의 성질이 있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다.

② 공익신탁은 이익을 실현이나 기업의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71조 ① 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개인신탁은 원본의 수익자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과실과 수익의 2개 순위 이상의 수익자를 포함할 수 없다. 개인신탁이 목적으로 하는 그 후의 순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동 순위의 수인의 수익자 사이의 과실과 수익의 증가는 동일한 순위의 공동사전보충지정 의무자 사이에서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제1272조 ① 제1순위의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이 성립된 때로부터 길어도 100년의 만료로 개시되고 이는 그 이상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후순위의 수익자의 권리는 그 후에 개시되지만 신탁의 설정된 때로부터 100년의 만료로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가진 수익자의 이익으로만 개시된다.

② 법인은 100년을 넘는 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도 100년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될 수 없다.

제1273조 사익신탁 또는 공익신탁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신탁의 관리

제1목 수탁자의 지정과 직무

제1274조 완전한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과 법률로 허용된 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제1275조 설정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설정자나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와 공동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제1276조 설정자는 1인 또는 수인의 수탁자를 지정하거나 그의 지명이나 그의 개념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77조 ① 설정자와 신탁을 설정할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수탁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수탁자를 지정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가 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한 후에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의 요건에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1인 또는 수인의 기타의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78조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배하고 배타적 관리를 하고 이를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여러 권원을 그의 명의로 취득한다. 수탁자는 재산에 부속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그 출연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완전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인의 재산관리인으로 행위한다.

제2목 수익자와 그 권리

제1279조 ① 무상으로 설정된 신탁의 수익자는 그 권리가 개시될 때에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수령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수인의 동순위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면 다른 수익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중 1인이 이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충분한다.

제1280조 신탁의 수익자는 수령하기 위하여 설정행위에서 요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81조 설정자는 과실과 수익을 수령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무상으로 설정된 것이라도 신탁의 원본을 수령하거나 신탁으로 인한 권리에 참가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282조 ① 설정자는 수익자를 선택할 권리와 수익자의 수익을 정할 권리를 자기에게 유보할 수 있고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②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선택할 권리와 수익자의 수익분을 정할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신탁과 사익신탁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신탁의 설정행위에 명확하게 정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범주의 자 중에서만 선택하여야 한다.

제1283조 ① 수익자를 선택할 권리와 수익자의 수익분을 정할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행사한다. 권리자는 신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제1284조 신탁의 존속기간에 수익자는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에게 인정된 이익의 급부 또는 과실과 수익 및 원본의 어느 것이나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285조 ① 무상으로 설정된 신탁의 수익자는 그 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언제든지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그가 개인신탁 또는 사익신탁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1286조 ①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가 효력이 없게 되면 그 권리는 각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그 자신이 과실과 수익 또는 원본의 수익자인 것에 따라 과실과 수익 또는 원본의 공동수익자에게 이전한다.

② 포기자가 순위에서 유일한 과실과 수익의 수익자인 경우에 그 권리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2순위의 과실과 수익의 수익자에게 이전하고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제3목 관리와 감독조치

제1287조 ① 신탁의 관리는 설정자의 감독을 받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그 수익자의 감독에 따르고 수익자는 장래의 수익자라고 그러하다.

② 이외에 법률로 정한 경우에 사익신탁 또는 공익신탁의 관리는 그 대상과 목적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와 기관의 감독에 의한다.

제1288조 ①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익신탁 또는 공익신탁의 설정에 대하여 수탁자는 특히 그 성질, 목적 및 신탁의 존속기간과 명칭, 수탁자의 주소를 기재한 문서를 지정된 자 또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문서의 검사를 받고 수탁자에게 요구된 모든 계좌,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9조 ① 수익자가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신탁의 수익자의 권리는 보좌인으로서 행동하는 설정자가 지명하고 이 직무를 승낙한 자에 의하여 하고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지명된 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후견관리인도 보좌인으로서 행하기 위하여 지명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익자로서 특정할 수 있는 자도 잠재적인 자도 없고 장래에도 수익자가 될 자가 없어 누구도 수익자가 될 수 없는 개인신탁에서는 본 항에서 수익자에게 인정된 권리는 후견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1290조 ① 설정자,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반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거나 신탁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신탁을 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해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는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의 권리를 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91조 법원은 수탁자가 충분한 이유 없이 소송의 제기를 거절하거나 해태한 경우 또는 소송의 제기가 방해된 경우에 설정자, 수익자에게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탁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1292조 수탁자, 설정자 및 수익자에 의하여 설정자 또는 신탁재산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4관 신탁과 신탁재산의 변경

제1293조 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계약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재산을 증가하게 할 수 있고 이 증가에는 신탁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사람은 그러한 사실만으로 설정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② 이전된 재산은 신탁재산에 혼동되고 설정행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1294조 ① 신탁이 특히 설정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예견될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자의 원래의 의사에 따를 수 없게 된 신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법원은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원래의 목적에 가능한 가까운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신탁이 설정자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되자만 새로운 수단에 의하여 설정자의 의사를 더 잘 존중할 수 있거나 신탁의 이행이 촉진되는 경우에 법원은 설정행위의 여러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95조 청구는 설정자, 수탁자 및 필요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설정자의 상속청산인³⁶⁹⁾ 또는 그 상속인 및 신탁을 감독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의 자나 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369) 이에 대하여는 본 법전 제203조, 제247조와 제1361조 참조.

제5관 신탁의 종료

제1296조 ① 신탁은 원본 및 과실과 수익의 권리에 대하여 수익자 전원의 포기 또는 실효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신탁은 기간의 만료 또는 조건의 성취, 신탁의 목적이 달성된 사실 또는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그 달성의 불능으로도 종료한다

제1297조 ① 신탁이 종료할 때에 수탁자는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탁에 잔존하는 재산은 모두 설정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제1298조 공익신탁의 재산은 그 이행의 불가능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탁의 목적에 가능한 한 근접한 목적을 가진 신탁,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로 귀속한다. 귀속될 자의 지명은 수탁자의 추천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법원은 해당 신탁이 특정한 법률의 감독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지명된 자 또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장 타인의 재산관리

(제1299조-제1370조)³⁷⁰⁾ (생략)

370) 제7장의 타인의 재산관리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7장 타인의 재산관리	Titre septième De l'administration du bien d'autrui	Title seven - Administration of the property of others	제1299조-제1370조
제1절 총칙	Chapitre I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1299조-제1300조
제2절 관리방법	Chapitre II - Des formes de l'administration	Chapter II - Kinds of administration	제1301조-제1307조
제1관 타인의 재산의 단순관리	Section I - De la simple administration du bien d'autrui	Division I - Simple administration of the property of others	제1301조-제1305조
제2관 타인의 재산의 완전관리	Section II - De la pleine administration du bien d'autrui	Division II - Full administration of the property of others	제1306조-제1307조
제3절 관리의 원칙	Chapitre III - Des règles de l'administration	Chapter III - Rules of administration	제1308조-제1354조
제1관 수익자에 대한 관리인의 의무	Section I - Des obligations de l'administrateur envers le bénéficiaire	Division I -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towards the beneficiary	제1308조-제1318조

제5편 채무

제1장 채무 일반

제1절 총칙

제1371조 채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목적이 되는 급부와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그 성립의 근거가 되는 원인에 있다.

제1372조 ① 채무는 계약 또는 법률이 그에 대하여 효과를 부여한 어느 행위 또는 사실로

제2관 제3자에 대한 관리인과 수익자의 의무	Section II - Des obligations de l'administrateur et du bénéficiaire envers les tiers	Division II -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and the beneficiary towards third persons	제1319조-제1323조
제3관 목록, 담보와 보험	Section III - De l'inventaire, des sûretés et des assurances	Division III - Inventory, security and insurance	제1324조-제1331조
제4관 공동관리와 위탁	Section IV - De l'administration collective et de la délégation	Division IV - Joint administration and delegation	제1332조-제1338조
제5관 합리적으로 추정된 투자	Section V - Des placements présumés sûrs	Division V - Presumed sound investments	제1339조-제1344조
제6관 이익과 비용의 분배	Section VI - De la répartition des bénéfices et des dépenses	Division VI - Apportionment of profit and expenditure	제1345조-제1350조
제7관 연례계산	Section VII - Du compte annuel	Division VII - Annual account	제1351조-제1354조
제4절 관리의 종료	Chapitre IV - De la fin de l'administration	Chapter IV - Termination of administration	제1355조-제1370조
제1관 관리의 종료사유	Section I - Des causes mettant fin à l'administration	Division I - Causes terminating administration	제1355조-제1362조
제2관 계산서의 교부와 재산의 인도	Section II - De la reddition de compte et de la remise du bien	Division II - Rendering of account and delivery of property	제1363조-제1370조

부터 발생한다.

② 채무는 조건없는 단순한 것이나 또는 양태가 있을 수 있다.

제1373조 ① 채무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어느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할 급부를 말한다.

② 채무자는 가능하고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급부는 법률이 금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제1374조 급부의 목적은 모든 재산이 될 수 있고 장래의 재산도 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이 그 종류가 확정되었고 수량이 확정가능할 것을 요한다.

제1375조 당사자는 채무가 성립하거나 이행 또는 소멸할 때에 신의성실에 맞게 행위하여야 한다.

제1376조 본 편의 규정은 국가와 그 기관과 모든 기타의 공법인에 적용된다. 다만 그에 적용될 기타의 법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계약

제1관 총칙

제1377조 ① 본 장의 일반규정은 그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② 이 일반규정을 보충하거나 예외가 되는 몇 가지 계약에 대한 특칙은 본 편 제2장에서 규정한다.

제2관 계약의 성질과 몇 가지 종류

제1378조 ① 계약은 1인 또는 수인 자신이 다른 1인 또는 수인에게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② 계약은 부합계약과 쌍방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비사행계약과 사행계약,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소비자계약이 될 수도 있다.

제1379조 ① 부합계약은 약정의 본질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지시에 의하여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작성되고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② 부합계약이 아닌 계약은 모두 쌍방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계약이 된다.

제1380조 ① 쌍무계약 또는 쌍방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고³⁷¹⁾ 또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에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한다.

②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만 상대방은 채무를 부담하

371) 영어원문은 '각자가 상대방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지 아니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381조 ① 유상계약은 그에 의하여 당사자 각자가 그의 채무와 상환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무상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이익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상환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382조 ① 비사행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채무의 범위와 그들이 상환으로 취득하는 이익이 명확하고 확정적인 계약을 말한다.

② 사행계약은 채무와 이익의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을 말한다.

제1383조 ① 일시적 계약은 사물의 성질상 당사자의 채무의 이행이 1회적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계속적계약은 사물의 성질상 그 채무가 여러 차례 또는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384조 소비자 계약은 그 적용범위가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에 의하여 자연인으로 소비자인 당사자 중 일방이 개인용, 가족용이나 가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노무를 취득, 임차, 대차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재산이나 노무를 그가 하는 사업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편 계약의 성립

제1항 계약의 성립요건

제1목 총칙

제1385조 ①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자 사이의 합의의 교환만으로 성립한다. 다만 법률이 이외에 그 성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특별한 방식의 준수를 요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에 요식의 약정을 할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의 본질은 그 원인과 목적을 가지는 것에 있다.

제2목 합의

1. 합의의 교환

제1386조 합의의 교환은 어느 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한 계약을 체결할 청약에 승낙하는 의사의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인 표시에 의하여 한다.

제1387조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은 때에 이 승낙을 수령한 곳에서 성립하고 이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몇 가지 부수적 요소에 대한 일

치를 유보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청약과 승낙

제1388조 계약의 청약은 제안된 계약의 모든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에 구속될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한 제안을 말한다.

제1389조 계약의 청약은 그 계약을 주도하여 시작한 자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는 자 또는 경우에 따라 제안된 계약의 최후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하는 자까지도 이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90조 ① 계약의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다. 이는 그 승낙을 위한 기간을 붙일 수도 있다.

② 기간을 붙인 청약인 경우에 청약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기간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청약은 승낙이 청약자가 수령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391조 청약 전에 철회를 승낙자가 수령한 경우에 청약은 효력을 잃고 이는 청약에 기간이 붙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392조 ① 청약자가 정해진 기간의 만료 전에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승낙자가 이를 거절하여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② 기간이 붙었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청약자 또는 승낙자의 사망이나 파산 또한 그 중 어느 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개시도, 승낙을 청약자가 수령하기 전에 그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에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제1393조 ① 청약에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건 청약의 효력을 잃은 후에 청약자가 수령한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제1394조 침묵은 청약의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 법률이나 관습이나 종래의 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5조 특별한 행위를 이행하는 자에게 한 현상(懸賞)의 청약광고는 승낙한 것으로 보고 청약자를 구속한다. 어느 자가 청약을 알지 못하고 이 행위를 이행한 때에도 청약자를 구속한다. 다만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청약이 명시적이고 상당하게 사전에 철회된 경우엔 그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6조 ① 특정한 자에게 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자가 명시적으로 청약자에게 그 청약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기간 또는 청약에서 정한 기간에 응답할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이 된다.

② 단순한 약정은 그것만으로 해당 계약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약정의 수익자가 그 약정을 승낙하거나 또는 그에게 합의된 선택권을 취하는 경우에 수익자와 약정자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익자가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7조 ① 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약정의 수익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낙약자와 요약자가 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우선권약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도 같다.

3. 합의의 적격과 하자

제1398조 합의는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할 때에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제1399조 ① 합의는 자유롭고 명확히 이해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이는 착오, 강박 또는 과다손해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제1400조 ① 착오는 계약의 성질, 급부의 목적 또는 그 합의를 확정하는데 본질적인 모든 요소에 관한 것에 대한 당사자 또는 그 중 1인의 합의에 있는 하자를 말한다.

② 면책될 수 없는 착오는 합의의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제1401조 ①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또는 그가 악의로 야기한 당사자 일방의 착오는 그 착오가 없으면 그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합의의 하자가 있다.

② 사기는 침묵이나 은적으로 될 수 있다.

제1402조 ① 당사자 중 일방의 인신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강박은 상대방의 협박이나 그 악의로 야기된 경우에 그 당사자가 한 합의의 하자가 있다.

② 강박된 손해는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사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403조 권리나 권한의 행사의 남용 또는 그러한 행사의 협박으로 인한 강박은 합의의 하자가 된다.

제1404조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협박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계약에 대하여 한 합의는 다른 계약자가 긴급한 상태에서 악의이었지만 그럼에도 신의성실에 맞는 경우에는 합의의 하자는 없다.

제1405조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손해는 미성년자와 성년보호자에 대하여만 합의의 하자가 있다.

제1406조 ① 과다손해는 상대방이 당사자 중 일방을 부당이용하여 당사자의 급부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야기하는 때에 발생한다. 중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용이 추정된다.

② 미성년자 또는 성년보호자가 문제된 경우에도 채무가 그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과다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1407조 그 합의에 하자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기로 인한 착오, 강박 또는 과다손해의 경우에 그는 무효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의 유지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그의 청구가 인정될 손해에 해당하는 채무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08조 과다손해로 인하여 계약의 무효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채권의 감액 또는 형평에 맞는 금전으로 보충을 하는 때에 법원은 계약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목 계약체결 능력

제1409조 계약체결능력에 관한 규정은 주로 인편(人編)에서 규정한다.

제4목 계약의 원인

제1410조 계약의 원인은 당사자 각자가 계약의 체결을 정한 이유를 말한다.

제1411조 그 원인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목 계약의 목적

제1412조 계약의 목적은 그 성립할 때에 당사자가 예견한 법률효과로 이는 계약으로 인한 전체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된다.

제1413조 그 목적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6목 계약의 방식

제1414조 특별한 방식이나 요식(要式)이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요하는 경우에 이는 준수되어야 한다. 그 계약에서 한 방식의 변경도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종된 약정에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5조 계약을 체결할 능력은 그 계약에 요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계약의 성립요건의 효과

제1목 무효의 성질

제1416조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417조 계약은 그 효과가 무효인 계약요건이 일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제1418조 ① 계약의 절대적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데 실질적 이익을 현재 가진 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주장한다.

② 절대적 무효인 계약은 추인될 수 없다.

제1419조 그 효과가 무효인 계약요건이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상대적 무효로 한다. 가령 당사자 쌍방 또는 그 중 일방의 합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제1420조 ① 계약의 상대적 무효는 그 이익이 증명된 자 또는 계약상대방에 의하여 그가 선의이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상대적 무효인 계약은 추인할 수 있다.

제1421조 무효의 성질이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아니하면 그 성립에 필요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계약은 상대적 무효로 추정한다.

제2목 무효의 효력

제1422조 ① 무효인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 각자는 이 경우에 그가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목 계약의 추인

제1423조 ① 계약의 추인은 그 무효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말한다.

② 추인의 의사는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제1424조 당사자 각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중 수인이 공동의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된 경우에 그 중 1인이 추인은 타인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관 계약의 해석

제1425조 계약의 해석에서는 사용된 용어의 문자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보다 당사자의 공통 의사를 찾아야 한다.

제1426조 계약의 해석에서 계약의 성질, 계약이 체결된 사정, 당사자가 그에 이미 하였거나 받은 해석 및 관행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제1427조 계약조항은 다른 조항에 비추어 해석하고 각자는 전체로서의 계약에서 나온 의미를 각각의 것에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28조 어느 조항은 계약의 효과가 없게 하는 의미보다 효과가 인정되는 의미로 해석한다.

제1429조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는 계약의 내용에 가장 잘 일치하는 의미로 한다.

제1430조 특정한 경우에 대한 계약의 적용에 의문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조항은 일반용어와 다르게 표시된 계약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31조 계약조항이 일반용어로 표시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편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것만을 포함한다.

제1432조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계약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설정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어느 경우나 부합계약자 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관 계약의 효력

제1항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

제1목 총칙

제1433조 ① 계약으로 채무가 발생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소멸된다.

② 경우에 따라서 물권을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하는 효력도 있다.

제2목 계약의 구속력과 내용

제1434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그들이 그에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관행, 형평 또는 법률에 의하면 그에 부수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이를 체결한 자를 구속한다.

제1435조 ① 계약에서 정한 외적 조항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② 하지만 소비자계약이나 부합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할 때에 그것이 소비자 또는 부합계약자의 인식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적 조항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와

달리 소비자 또는 부합계약자가 이를 알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6조 소비자계약 또는 부합계약에서 소비자 또는 부합계약자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면 합리적인 사람이 관독할 수 없거나 요지(了知)할 수 없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조항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설명을 소비자 또는 부합계약자에게 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7조 ① 소비자계약이나 부합계약의 남용조항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채무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소비자 또는 부합계약자를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해하고 이에 따라 선의로 하지 아니한 조항은 모두 남용조항이 된다. 특히 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에서 나온 기본채무로부터 벗어나 이로 계약의 성질이 변경된 조항은 남용조항이 된다.

제1438조 ① 어느 조항이 무효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계약이 불가분의 전체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효력이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같다.

제1439조 계약은 해제, 해지, 변경 또는 채권자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정하는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항 제3자에 대한 계약의 효력

제1목 총칙

제1440조 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41조 당사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계약의 성질이 이에 반하지 아니하면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제1442조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는 이전된 재산의 종된 것이거나 직접적인 목적인 때에는 그 권리가 특정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2목 타인의 행위로 인한 약정

제1443조 자기 이름으로 한 계약으로 자기와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구속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제3자가 그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목 타인을 위한 약정

제1444조 ① 당사자는 계약에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은 제3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낙약자로부터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445조 제3수익자는 약정할 때에 확정되거나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때에 확정할 수 있고 요약자가 그의 이익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446조 제3수익자가 요약자 또는 낙약자에게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약정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47조 ① 요약자만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상속인도 그 채권자도 이를 할 수 없다.

② 하지만 낙약자가 약정의 유지에 이익이 있는 때에는 요약자는 낙약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1448조 ① 약정의 철회는 약정을 낙약자가 안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하지만 약정이 유언으로 된 경우에 이는 상속의 개시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새로운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이익은 요약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속한다.

제1449조 제4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유효하게 승낙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요약자 또는 승낙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러하다.

제1450조 낙약자는 제3수익자에 대하여 그가 요약자에 원용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4목 허위표시

제1451조 ① 당사자가 그들의 진의를 가장계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대증서라고도 하는 은익계약에 표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허위표시가 성립된다.

② 당사자 사이에서 반대증서는 가장계약에 우선한다.

제1452조 선의의 제3자는 그 이익에 따라 가장계약 또는 반대증서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익의 충돌이 있으면 가장계약을 주장한 자가 우선한다.

제3항 몇 가지 계약의 특별한 효력

제1목 물권의 이전

제1453조 ① 특정되고 확정된 재산 또는 포괄재산이 되는 수개의 재산에 대한 물권의 이전

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취득자를 권리자로 한다. 이는 인도가 즉시 되지 아니하고 대금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종류로만 특정된 재산에 대한 물권의 이전은 그 재산이 특정되고 확정된 것을 통지한 때로부터 그 취득자를 권리자로 한다.

제1454조 당사자가 계속하여 서로 다른 취득자들에게 동일한 동산에 관한 동일한 물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을 최초로 점유한 선의의 취득자가 이 재산의 물권의 권리자가 되고 이는 그 권원이 이후라도 그러하다.

제1455조 부동산물권의 이전은 권리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목 재산의 과실과 수익 및 위험

제1456조 ① 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과실, 이득과 위험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재산편이 규율한다.

② 하지만 재산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인도한 채무의 채무자는 재산에 있는 위험을 계속 부담한다.

제3절 민사책임

제1관 책임요건

제1항 총칙

제1457조 ① 사람은 누구나 사정, 관행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행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변식력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는 그러한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책임이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 손해가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 또는 물질적 손해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자의 행위나 과실 또는 그의 관리를 받는 재산의 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도 있다.

제1458조 ① 모든 사람은 그가 체결한 약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는 그 계약 상대방에게 가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그도 계약상대방도 그에게 더 유리할 규정을 선택하여 계약상 책임의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항 타인의 행위 또는 과실

제1459조 ① 친권자는 그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미성년자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

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자신이 그 미성년자의 감호, 후견이나 교양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권이 상실된 자로 미성년자의 행위 또는 과실이 그가 한 교육과 관련이 있으면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

제1460조 ① 친권 없이 위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감호, 후견 또는 교육을 맡은 자는 친권자와 동일하게 미성년자의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하지만 그가 무상이나 유상으로 행위하는 때에는 그가 과실이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제1461조 후견인, 보좌인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행위하여 분별력이 없는 성년자의 후견을 하는 자 이 성년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그 자신이 후견을 함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2조 변식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그 자의 행위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달리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다.

제1463조 본인은 그 대리인³⁷²⁾이 그 직무의 이행 중에 그 과실로 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다.

제1464조 국가 또는 공법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 그 권한 외의 행위 또는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또는 치안공무원의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그 직무의 집행 중에 행위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3항 물건에 의한 행위

제1465조 물건에 의한 관리인은 물건의 독립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그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6조 ① 동물의 소유자는 그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그가 관리하는가 또는 제3자가 관리하는가 또는 야생으로 돌아갔거나 도주하였는가를 묻지 아니한다.
② 동물을 이용한 자도 그 소유자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책임이 있다.

제1467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손해가 건물의 관리의 흠결 또는 건축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일부가 붕괴한 경우에도 같다.

제1468조 ① 동산인 재산의 제조자는, 동산재산이 부동산에 첨부되었거나 부동산의 노무를 위하여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위하여 그에 설치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제조자는 그 재산의 안전성의 부존재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72) 영어원문에서는 ‘대리인과 피용자’로 하고 있다.

② 재산을 그의 이름으로 또는 그 재산인 것같이 그 재산을 분배하는 자와 도매업자인가 소매업자인가 또는 그 재산의 수입업자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공급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항 몇 가지 경우의 책임의 면책사유

제1470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동일한 성질을 가진 외적원인도 이에 준한다.

제1471조 어느 자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오거나 또는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그는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이 손해가 그의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2조 모든 사람은 그가 일반이익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특히 그 공표가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타인에게 그 영업비밀을 공포한 결과로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473조 ① 동산재산의 제조자, 분배자 또는 공급자는, 피해자가 그 재산의 흠결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재산의 안전성의 흠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인식상태를 고려하여 그 재산의 제조, 분배 또는 공급이 때에 흠결을 알 수 없었다는 것과 그가 이 흠결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 그 정보제공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면 더 이상 흠결의 배상책임이 없다.

제1474조 ① 어느 자는 타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가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중과실은 중대한 무모함, 중대한 부주의 또는 중대한 해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그는 타인에게 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1475조 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배제 또는 제한을 약정의 통지는 이것이 게시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통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될 때에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제1476조 통지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상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통지는 위협의 경고가 될 수 있다.

제1477조 피해자에 의한 위협의 인수가 사정에 비추어 불신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가해자에 대한 그의 구제의 포기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3관 책임의 분할

제1478조 ① 손해가 수인의 자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 그 책임은 그 수인 사이에서 그들의 각각의 과실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② 가해자의 과실과 그 효과에서 공통한 피해자의 과실도 그 분할에 포함된다.

제1479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을 손해의 악화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제1480조 수인의 자가 손해를 야기한 과실 있는 공동의 위법행위에 참가하거나 그들이 각자 손해를 가할 수 있었을 독립적 과실이 있고 어느 경우에든지 그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들은 그로 배상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제1481조 손해가 수인의 자가 가하고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으로 그 중 1인을 모든 책임에서 면하게 한 경우에 그에게 귀속되었을 책임의 부담부분은 손해에 대한 다른 책임자에 의하여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기타의 몇 가지 채무의 발생원인

제1관 사무관리

제1482조 관리자라고 하는 자가 즉시로 의무없이 임의로 상당하게 본인이라고 하는 타인의 사무를, 본인이 알지 못하게 또는 그가 알았더라도 그가 수임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하여 관리를 할 수 없는 때에, 그 관리를 맡아 처리한 경우에 사무관리가 인정된다.

제1483조 관리자는 가능한 신속하게 본인에게 그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84조 ① 사무관리는 관리자에게 그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를 그가 손해의 위험없이 그만 둘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본인, 후견인 또는 보좌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청산인이 그에 대하여 제공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를 하면서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기타의 점에 대하여는 단순한 관리를 맡은 타인의 재산관리인의 일반적 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485조 관리를 알고 있는 관리자의 상속청산인은 이미 개시된 사무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만을 할 의무가 있다. 그는 즉시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6조 ① 본인은, 사무처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도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

우에도 관리자에게 그가 한 필수비나 유익비를 상환하고 그의 과실 없이 관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인은 관리인이 제3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약정된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87조 관리인이 한 비용과 약정한 채무의 유익성이나 필요성은 그 비용과 채무가 관리자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약정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88조 관리자가 본인에게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출은 선의점유자가 한 것에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90조 ①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관리자는 그가 약정한 제3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이는 그 또는 제3자가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제를 해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이름으로 한 관리인은 그가 약정한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이 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의무가 있다.

제2관 비채변제의 수령

제1491조 ① 착오로 또는 단순히 그가 의무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한 자에 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변제는 이를 수령한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하지만 변제의 결과에 의하여 선의로 비채변제를 수령한 자의 채무가 시효가 완성하거나 또는 권리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변제자의 진정한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92조 비채변제의 반환은 급부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다.

제3관 부당이득

제1493조 타인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자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원인이 없으면 그 이익을 얻은 범위까지 타인에게 그 견련된³⁷³⁾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94조 이익이나 손해가 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손해를 입은 자가 그가 이득에서 주장할 수 있거나 주장할 수 있었을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또는 그가 그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거나 또는 그 자신의 위험으로 하거나 또는 계속적인 자유의사로 한 행위로부터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495조 ① 이득이 청구한 날에도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이득액과 손해액은 어느 것이나 청구한 날에 산정한다. 하지만 사정에 의하여 이득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이득은 그 자가 이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373) 원문은 각각 *corrélatif*, *correlative*이다.

제1496조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자를 기망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그 이익을 처분한 경우 제3수익자가 손해를 알 수 있었으면 손해를 입은 자의 소를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채무의 종류³⁷⁴⁾

제1관 단순한 종류

제1항 조건 있는 채무

제1497조 조건 있는 채무는 사실의 발생이나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그 발생이 정지하거나 또는 사실의 발생이나 발생하지 아니할 것에 그 소멸을 종속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채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종속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98조 채무의 발생이나 소멸이 당사자 모르게 채무자가 고전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 이미 사실이 발생하고 그것에 종속하게 하는 때에는 조건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제1499조 채무가 종속하는 조건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로 금지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조건은 무효이고 그에 의존하는 조건도 무효이다.

제1500조 채무자의 재량에 의하여만 그 성립이 정해지는 조건에 종속하는 채무는 무효로 한다. 하지만 조건이 어느 것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에 있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량에 있더라도 그 채무는 유효하다.

제1501조 그 이행을 위한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조건은 언제든지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건은 소멸한다.

제1502조 ① 사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할 조건에 채무가 종속하는 경우에 그 조건은 성취한 것으로 본다. 사실이 도래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진행된 경우에 정해진 기간의 진행 전에 그 사실이 도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조건은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³⁷⁵⁾에만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제1503조 조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³⁷⁶⁾.

제1504조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 전에 그 권리의 보존에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74) 원문은 modalité, modalités로서 ‘양태, 태양’이라는 의무이지만 ‘채무의 종류’로 하였다.

375) 영어 원문은 ‘명백할 때까지는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다.

376) 영어 원문은 ‘절대적이 된다’이다.

제1505조 조건 있는 채무라는 단순한 사실³⁷⁷⁾이 양도나 이전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제1506조 조건의 성취는 당사자 사이와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조건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 날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

제1507조 ① 정지조건이 성취하면 그 조건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부담한 날로부터 채무가 존재한 것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당사자 각자는 채무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채무에 의하여 그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기한 있는 채무

제1508조 종기는 그 이행기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도래까지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09조 채무의 이행기가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정한 날의 지정이 없으면 기산점이 되는 날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지만 그 만료일은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1510조 확실한 것으로 볼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는 사실이 통상적으로 도래하였을 날에 이행기가 된다.

제1511조 ①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한다. 다만 법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당사자 쌍방의 이익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한이 자기의 배타적 이익으로 정해진 당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합의가 없어도 그러하다.

제1512조 ① 당사자가 기한의 확정을 연기하거나 그 확정을 그 중 1인이 하도록 약정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중 1인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사정과 모든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한이 채무의 성질에서 필요하고 이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513조 기한을 붙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롭고 착오 없이 이행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제1514조 ①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파산이 선고되거나 또는 그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에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감소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기한의 이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고려하여 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도 그 이익을 상실한다.

377) 영어 원문은 ‘채무의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제1515조 기한의 이익의 포기 또는 기한의 실효(失效)³⁷⁸⁾가 있으면 채무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516조 채무자 중 1인에 의한 기한의 실효는, [그 채무가] 연대채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517조 채무의 기한이 법률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를 시기(始期)있는 채무라고 한다.

제2관 수개의 종류³⁷⁹⁾

제1항 수인의 주체가 있는 채무

제1목 공동채무,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

제1518조 ①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들 각자는 채무의 이행에 채무의 부담부분의 범위까지만 각각 강제될 있는 경우에 수인의 채무자 사이의 공동채무라 한다.

② 수인의 채권자 각자는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부담부분의 이행만을 청구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 사이의 공동채무라 한다.

제1519조 채무는 당연한 분할채무로 한다. 다만 불가분성이 명시적으로 약정되거나 또는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비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0조 ① 불가분채무는 채무자 사이에서나 채권자 사이에서 또는 그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하지 못한다.

② 각각의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모두 채무 전부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각각의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도 그러하다.

제1521조 연대의 약정만으로 채무에 불가분의 성질을 주지는 아니한다.

제1522조 1인의 채무자와 1인의 채권자만 있는 분할채무는 그들 사이에서 그것이 불가분인 것과 같이 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제2목 연대채권관계

1. 채무자 사이의 연대

378) 원문은 각각 *déchéance*, *forfeiture*이다.

379) 프랑스어 원문은 '수개의(복합적) 종류(양태)가 있는 채무'이다.

제1523조 채무자들이 그 채권자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물건에 의무가 이어서 그들 모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것이 강제되고 1인에 의한 이행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면하는 때에 그 채무는 채무자 사이에서 연대채무로 한다.

제1524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물건의 이행에 다르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연대채무가 될 수 있다. 가령 1인은 조건 있는 채무이지만 다른 자는 조건 없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한 기한이 부여될 수 있다.

제1525조 ① 채무자 사이의 연대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연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만 존재한다.

② 이와 달리 기업의 노무 또는 운영을 위하여 약정한 채무는 채무자 사이에서 연대가 추정된다.

③ 기업의 운영이라는 것은 1인 또는 수인의 자에 의하여, 그 상사의 성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의 생산이나 실현, 관리나 양도 또는 노무의 제공을 하는 조직적 경제활동의 행사를 말한다.

제1526조 계약 외 채무에서 2인 이상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연대로 한다.

제1527조 ① 채무의 강제이행이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과실 또는 최고로 인한 지체 중에 불능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등가변제를 할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들이 의무를 부담하였을 부가적 손해의 배상책임은 없다.

② 그 과실에 의하여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연대채무자와 그 때에 이행의 최고에 의한 지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채권자는 부가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28조 연대채무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 선택으로 연대채무자 중 어느 자에게든 이행최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그 자는 분별의 이익³⁸⁰⁾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제1529조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이행청구는 채권자를 다른 자에 대한 그 구성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행이 청구된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를 그 소송으로 소환할 수 있다.

제1530조 채권자가 이행청구한 연대채무자는 그에게 전속적인 모든 항변과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공통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순수하게 일신전속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제1531조 연대채무자가 대위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었을 담보 또는 항변이 채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실된 연대채무자는 그가 상실한 담보 또는 권리의 액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한다.

380) 우리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해당한다.

제1532조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연대를 포기한 채권자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에 의한 구제권을 유지한다.

제1533조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부담부분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령하고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영수증에 기재한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만 연대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534조 정기금의 변제 또는 그 채무자의 이자에서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부담부분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령하고 그 부담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영수증에 기재한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정기금의 변제 또는 이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그 연대채무의 구제를 상실한다. 하지만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나 원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분할된 변제가 3년 연속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5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청구에 동의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 이행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서 연대채무의 구제를 상실한다.

제1536조 채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는 채무에서의 그 각각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³⁸¹⁾ 구상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위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537조 ① 연대채무의 변제에서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한다. 다만 채무에서의 이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의무에서의 부담부분을 포함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경우에는 채무에서의 각자의 이자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하지만 채무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배타적 이익으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채무자 중 1인 단독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다른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본다.

제1538조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무자력에 의한 손해는 균등한 부분으로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무에서의 이익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연대를 포기한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39조 채무를 이행한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하여 구상할 것이 이행청구된 연대채무자는 변제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공동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전속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대채무자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순수하게 일신전속적인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제1540조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당연히 그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된다. 다만 채무가 불가분

381) 영어원문은 ‘부담부분 이상을 구상할 수 없다’이다.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 사이의 연대

제1541조 ①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에 채권자 사이에서 연대로 한다.

② 이 경우 연대는 채권자 각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와 그 전부(全部)에 대한 증서를 줄 권리가 있다.

제1542조 연대채권자 중 1인의 이익을 위한 채무의 이행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한다.

제1543조 ① 채무자 중 연대채권자 중 어느 자의 이익으로 하는 채무의 이행의 선택권이 있다. 이는 채권자 중 1인에 의하여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 그러하다.

② 연대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그 채권자의 권리 부분에 해당하는 의무만을 면한다. 채무의 변제 이외에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모든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544조 어느 연대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그 상속인 사이에서 당연히 분할된다.

제2항 수개의 목적이 있는 채무

제1목 선택채무

제1545조 ① 채무자 2개의 주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으로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 이를 선택채무로 한다.

② 채무가 발생될 때에 급부 중 하나가 채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때에는 선택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6조 ① 급부의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다만 명시적으로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급부의 선택권이 있는 당사자가 최고에 의한 지체가 있는 후에 이를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부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제1547조 채무자는 어느 급부의 일부와 다른 급부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고 이행할 것이 강제될 수도 없다.

제1548조 ① 급부의 선택권이 있는 채무자는 급부의 어느 것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잔존한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경우에 2개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그 중 어느 것에 관한 불능이 채무자이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마지막에 잔존한 급부액의 범위까지 책임

이 있다.

제1549조 ① 채권자가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급부 중 어느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면 남은 급부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그 경우에는 그는 잔존한 급부의 강제이행을 청구하거나 불능이 된 급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증가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경우에 급부의 이행이 불능이고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의 어느 한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증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50조 모든 급부가 채무자의 과실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는 소멸한다.

제1551조 2개 이상의 주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택채무이다. 본 목(目)³⁸²⁾의 규정이 이 경우에 준용된다.

제2목 임의채무

제1552조 ① 임의채무는 단일한 주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채무자는 다른 급부를 이행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채무자는 그의 과실없이 주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 의무를 면한다.

제6절 채무의 이행

제1관 변제

제1항 변제 일반

제1553조 변제는 그 채무의 만족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554조 ① 모든 변제는 채무를 전제로 한다. 채무 없이 변제된 것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하지만 임의로 변제한 자연채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55조 ① 변제는 모든 자가 할 수 있고 이는 그가 채무에 관하여 제3자라도 그러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한 제3자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에 의하여 최고에 의한 지체가 될 수 있지만 이 제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여야 하고 채권자를 변경할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채권자는 변제가 채무자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의 수령이 강제될 수 있다.

382) 원문은 sous-paragraphe, subdivision (I.)이다.

제1556조 ① 변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를 변제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채무목적에 권리를 가진 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채무목적이 관행에 의하면 소비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의 변제는 선의로 이를 소비한 채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이 변제가 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라도 그러하다.

제1557조 ① 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를 위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변제가 제3자에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추인이 없으면 채권자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1558조 수령할 능력 없는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그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1559조 표견채권자에게 선의로 한 변제는 효력이 있고 이는 후에 그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560조 압류한 채권자를 해(害)하면서 채무자에 의하여 그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압류채권자는 그 권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변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한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561조 ① 채권자는 그에게 의무가 있는 것과 다른 것의 수령이 강제될 수 없다. 이는 가액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하더라도 그러하다.

② 채권자는 채무의 일부변제를 수령할 것이 강제될 수 없다. 다만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다툼이 없는 일부를 변제로 제공하면 그 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채무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는 가진다.

제1562조 특정된 물건³⁸³⁾의 채무자는 물건이 훼손이 그의 행위 또는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최고로 인한 이행지체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변제할 때의 현재의 상태로 그 물건의 교부로 의무를 면한다.

제1563조 그 종류만 특정된 물건의 채무자는 최상등 품질의 것으로 할 의무는 없지만 최하등 품질의 것으로 제공할 수도 없다.

제1564조 ① 일정액의 금전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때의 법정통화로 약정한 액면액으로 변제하여 의무를 면한다.

② 채권자의 명의로 하고 퀵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이 인증한 우편환, 수표 또는 채권자에게 동일한 담보를 제공한 기타의 변제수단의 방법 또는 채권자가 이를 승낙할 수 있고 신

383) 영어원문은 ‘확정되고 특정된 물건’이다.

용카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자의 계좌로 한 약정된 액의 변제로도 의무를 면한다.

제1565조 이자는 약정한 이율 또는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유로 지급한다.

제1566조 ① 변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한 곳에서 한다.
②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한다. 다만 채무목적이 특정한 물건이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에 채무가 발생할 때에 재산이 있었던 곳에서 변제한다.

제1567조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568조 변제한 채무자는 채무의 영수증과 원래의 증서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변제의 충당

제1569조 ① 수개의 채무의 채무자는 변제할 때에 그가 변제하려고 하는 채무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

②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에 이행기에 이를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사전에 변제될 수 있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0조 ① 이자가 있거나 또는 정기금을 발생하는 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한 변제를 이자나 정기금에 우선하여 원본에 충당할 수 없다.

② 원본과 이지에 하였지만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는 우선 이자에 충당한다.

제1571조 변제할 때 채권자가 특히 그가 수령한 것을 그 중 어느 하나에 충당한다고 한 영수증을 수령한 수개의 채무의 채무자는 그 변제를 다른 채무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2조 ① 당사자의 충당이 없으면 변제는 우선 이행기가 도래한 것에 충당한다.

② 수개의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중에서는 채무자가 그 당시 변제이익이 가장 큰 것에 충당한다.

③ 법정이자³⁸⁴⁾는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³⁸⁴⁾에 충당하지만 모든 채무가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변제는 비례하여 충당된다.

제3항 변제의 제공과 공탁

제1573조 ①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해태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할 수 있다.

② 변제의 제공은 채권자의 처분으로 채무목적의 재산을 변제하여야 할 시간과 장소에 두는

384) 영어원문은 ‘수개의 채무가 변제에 동일한 이자를 채무자가 가진 경우에’이다.

것으로 한다. 이에선 채무목적인 재산과 그로 인한 이자와 정기금 외에 채무자에 의하여 의무가 있는 현금화되지 아니한 비용을 위한 합리적인 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그 액에서의 부족을 보충할 권리는 유보한다.

제1574조 ① 일정액의 금전에 관한 변제의 제공은 변제할 때의 법정통화 또는 채권자의 명의로 되고 퀘벡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이 인증한 수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는 철회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공을 승낙하거나 또는 법원이 이를 유효하다고 한 때에 채권자에게 제공의 목적이 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퀘벡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한 무조건적이고 불특정한 기간의 의무부담에 의하여도 될 수 있다.

제1575조 ① 변제의 제공은 공정증서 원본 또는 서면으로 주어진 법원의 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모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제의 제공이 공정증서로 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채권자의 답변을 그 서면에 기재하고 거절의 경우에는 법원이 내린 이유를 기재한다.

제1576조 일정액의 금전이나 증권을 목적으로 한 법원의 선언에 의한 변제의 제공은 민사소송법전에 따라 이 금액이나 증권의 공탁으로 보충한다.

제1577조 ① 재산이 채무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있는 곳에서 변제되거나 인도되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한, 거기서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서면의 통지는 변제의 제공에 갈음한다.

② 재산을 이와 같이 변제하거나 인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되어야 할 곳에 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변제를 거절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정당한 때에 서면으로 그에게 재산의 수령의 의사를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에 의하여 상당한 때에 그 의사의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하거나 인도하여야 할 곳에 재산을 운송할 것을명하고 그 통지가 변제의 제공에 갈음한다.

제1578조 채무목적이 되는 재산이 일정액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그 일정액의 금전이나 증권이 공탁의 서면의 통지는 변제의 제공에 갈음한다.

제1579조 변제의 제공 또는 그에 갈음하는 통지는 채무의 성질, 그것이 발생된 권원과 채권자나 그에게 변제되어야 하는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게다가 제공된 재산과 현금인 경우에는 그 수량과 품질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580조 ① 채권자가 유효하게 한 변제의 제공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또는 그가 채무자가 하기를 원할 수 있는 제공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에 의한 변제수령의 지체가 된다. 후자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통지를 할 의무를 면한다.

② 채무자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체가 된다.

제1581조 ①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에 지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가 의무가 있는 재산의 보존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이를 제3자에게 보관이나 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동일하게 그 재산이 신속하게 변질되거나 변질될 수 있거나 보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을 매각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

제1582조 ① 변제의 수령지체를 한 채권자는 재산의 보존에 상당한 비용 및 재산이 매각비용과 대가의 공탁비용을 부담한다.

② 채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재산의 멸실의 위험도 부담한다.

제1583조 ① 공탁은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를 부담한 일정액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궤책의 일반임치담당기관 또는 신탁기관 또는 임치가 재판절차의 진행 중에 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전의 규정에 따라 임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일정액의 금전이나 증권을 수령하기를 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외에, 공탁은 채권이 수인의 자 사이에서 분쟁대상이거나 또는 변제가 되어야 할 곳에서 채권자를 발견할 수 없어 채무자의 변제를 방해하는 경우와 같은 기타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1584조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공탁된 일정액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하지만 회수는 재판 중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585조 ① 일정액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법원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선고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면 회수할 수 없다.

② 하지만 이 회수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다른 공동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의 면책을 방해할 수 없다.

제1586조 위의 수개 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 공탁은 채무자를 장래에 대하여 생길 이자 또는 수익의 변제를 할 의무를 면한다.

제1587조 공탁 중에 생긴 이자와 수익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하지만 공탁이 채무자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하여 공탁의 수령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속한다.

제1588조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법원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변제의 제공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날 이후에 항상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변제의 제공이나 그에 갈음하는 통지가 있는 날에 한 변제에 준한 것으로 한다.

제1589조 변제의 제공과 공탁의 비용은 그것이 승낙되거나 또는 효력이 있다고 선고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관 이행청구권³⁸⁵⁾

제1항 총칙

제1590조 ① 채무는 채권자에게 채무가 전부 적당하고 지체없이 이행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가물에 대한 이행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강제이행의 강제
2. 계약상 채무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또는 그 자신의 반대급부의 감액의 취득
3. 채무의 이행에 대한 그의 권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모든 기타의 수단의 사용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이행의 항변)과 유치권

제1591조 쌍무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 상대방은 이에 상당한 범위에서 그 견련성 있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당사자의 의사 또는 관습으로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2조 계약 상대방의 동의로 그에게 속하는 재산을 소지한 당사자는,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가 유치한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가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의 전부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제1593조 ① 유치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② 자발적이 아닌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유보된다.

제3항 지체

제1594조 ① 채무자는 이행을위한 시간의 경과만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계약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의 이행지체가 될 수 있다.

② 채무를 이행할 것을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재판 외 청구, 그에 대하여 한 재판상 청구 또는 법률의 효력만으로도 채무자는 지체가 될 수 있다.

제1595조 ①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최고에 의한 지체가 되게 하는 재판 외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 청구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과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그 청구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할 수

385) 원문은 각각 ‘채무의 이행에 관한 권리의 내용, 이행강제권’이다.

있다.

제1596조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한 재판상 청구는 다리 사전에 지체가 되게 하는 것 없이도 청구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그 채무를 이행할 권리를 그에게 부여한다. 이 기간에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청구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97조 ① 채무자가 그에게 주어진 일정한 기간 내에만 유용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경우에 또는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채무자는 지체가 된다.

② 하지 않을 채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그의 과실로 채무의 강제집행을 불능이 되게 한 경우에도 명백하게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계속적 이행채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체가 된다.

제1598조 채권자는 당연지체가 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599조 ①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최고에 의한 지체로 지체가 되는 재판 외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의한 것도 동일하게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1600조 ① 채무자는 유예기간의 이익이 있어도 일정한 액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체가 있는 때로부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채무자는 지체가 있는 때로부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모든 멸실에도 책임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채무로부터 면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강제이행

제1601조 채권자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강제이행을 강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02조 ① 채권자는 지체의 경우에 채무자의 비용을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채권자는 재판 외 또는 재판상의 것으로 하는 청구로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채무자를 지체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당연히 지체가 되거나 또는 계약 그 자체의 문언으로 지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3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가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여 한 것을 파괴하거나 철거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5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채무의 감액

제1604조 ① 채권자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의 강제이행을 강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계속적 이행계약의 경우에는 그 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

② 하지만 반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불이행(défaut)이 거의 중요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가 없다. 다만 계속적 이행채무에서 이 불이행이 반복적 성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건련성이 있는 채무를 비례적으로 감액할 권리가 있다.

③ 건련성 있는 채무의 비례적 감액은 상당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채무를 감액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권리만이 있다.

제160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의 당연지체에 있는 경우 또는 최고에 의한 지체³⁸⁶⁾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판상의 이행청구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제1606조 ① 해제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당사자 각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만 존재가 중단된다.

제6항 등가에 의한 이행

제1목 총칙

제1608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의 직접적이고 즉시의 결과인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손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608조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채무자의 의무는 그가 입은 손해의 결과로서 채권자가 제3자의 급부를 수령한 사실로 감액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 한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9조 채무자,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영수증, 거래 또는 선언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것이 가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취득된 것이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때에는 효력이 없다.

제1610조 ① 채권자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권리가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생긴 경우에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손해배상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그 상속인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제2목 손해의 평가

386) 영어원문은 ‘서면으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1. 평가 일반

제1611조 ① 채권자가 취득할 손해는 그가 입은 손해와 그가 박탈당한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다.

② 장래의 손해는 확실하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결정에 이를 고려한다.

제1612조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비밀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그 취득, 완성 및 그 사용을 위하여 한 투자비용을 포함한다. 그가 박탈당한 이익은 사용료의 형태로 배상될 수 있다.

제1613조 계약에서 그 채무의 불이행이 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가 약정될 때에 예견한 것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하여만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손해는 불이행의 직접적이고 즉시의 결과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614조 채권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배상에서 그가 취득할 손해는 손해의 장래의 측면에 관하여 정부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할인율에 따라 그러한 비율이 정해진 때로부터 평가된다.

제1615조 법원은 판결시에 그 신체적 조건의 진행을 충분히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체적 손해배상을 하고 그 손해를 인정함에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추가적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616조 ① 손해배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손해는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원본의 형식으로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신체적 손해이고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원은 그가 정한 기간과 조건으로 확정된 비율에 따라 지수화한 연금 또는 분할지급의 형태로 하여 변제를 그 전부 또는 일부로 명할 수 있다. 성년이 된 때로부터 3월 내에 채권자는, 그에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 모두를, 즉시 할인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17조 ① 채무의 이행에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의 지체로 인한 손해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지체가 있는 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그가 손해를 입은 것을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하지만 손해를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는 자기가 추자적 손해배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1618조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채무의 이행에서 지체로 인한 것 이외의 손해는, 지체로부터 또는 손해의 성질과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평가한 기타의 이후의 날로부터,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이율 또는 이것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1619조 그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가되어,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이자의 이율 또는 이것이 없으면 법정이율보다 재정관리법 제28조의 적용으로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이자의 이율을 초과한 것에 동등한 백분율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어느 일자로부터 그 액에 적용하여 확정된 배상이 손해액에 추가될 수 있다.

제1620조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자체 이자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약정이나 법률이 있거나 또는 소송에서 추가 이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1조 ① 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귀속을 정한 경우에 그 손해액은 그 가액에서 그 예방적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을 넘을 수 없다.

②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상당한 사정, 특히 채무자의 과실의 중대성, 그 재산상황 또는 그가 이미 채권자에게 부담한 배상범위 및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부담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손해의 사전평가(산정)

제1622조 ① 위약금 조항은 그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을 약정하면서 당사자가 사전에 손해를 평가한 것이다.

② 위약금 조항으로 채권자는 강제이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하는 대신에 이 조항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다만 위약금이 채무의 이행의 단순한 지체만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3조 ① 위약금 조항을 주장한 채권자는 약정된 위약금액에 대하여 권리가 있고 이는 그가 입은 손해를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하지만 약정된 위약금은, 채무의 일부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었거나 또는 조항이 남용된 때에는, 감액될 수 있다.

제1624조 위약금조항이 있는 연대가 아닌 채무로 불가분이고 그 불이행이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경우에 위약금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전부를 청구하거나 공동채무자의 각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위약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그 구상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25조 ① 위약금조항이 있는 채무가 가분인 경우에 위약금도 가분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채무자에 의하여만 그가 채무에 의무가 있는 부담부분에서만 발생하고, 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소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 원칙은 연대채무인 경우, 위약금조항이 일부변제를 막기 위하여 약정된 경우와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전부의 이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약금 전체가 공동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고 다른 자에게는 그들의 부담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대한 구상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관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 보호

제1항 보전조치

제1626조 채권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대위권(대위소권)

제1627조 ① 채권자는 확정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면서 이를 행사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해태한 경우에 그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와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채무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와 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628조 이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소송에 관한 판결시에는 이를 요한다.

제1629조 대위소권이 행사된 자는 그가 그 원래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630조 채권자가 그의 채무자이 이름으로 회수한 재산은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3항 채권자취소권(폐파소권)³⁸⁷⁾

제1631조 채권자는 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해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위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그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자가 자신이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 그러하다.

제1632조 유상계약 또는 그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 변제는 계약 당사자 또는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알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신을 무자력이 되었거나 무자력을 시도한 때에는 사해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33조 무상계약 또는 그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 변제는 계약 당사자 또는 그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에 선의이지만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제를 할 때에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무자력이 된 경우에 사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34조 ① 채권은 소송이 제기된 때에 확정되어야 한다. 채권은 또한 소권에 대한 판결시에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② 채권은 문제된 법률행위보다 이전에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행위가 후순위의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7) 원문은 action en inopposabilité, paulian action이다.

제1635조 소송은 채권자가 문제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 또는 소송이 파산관리인이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 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의 만료 전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실효된다.

제1636조 법률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에 대위하여도 그러하다. 전원이 계약의 목적을 형성하는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채권에 그 채권에 비례하여 변제될 수 있다. 다만 우선특권 또는 저당채권자를 해할 수 없다.

제7절 채무의 이전과 변경

제1관 채권양도

제1항 채권양도 일반

제1637조 ①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 또는 그가 그 채무자에게 가지는 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이 양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더 가중된 채무가 되게 할 수 없다.

제1638조 채권의 양도는 그 종된 채권을 포함한다.

제1639조 유상양도인은 채권이 존재하고 담보없이 양도되면 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양수인이 그 자신의 위험으로 이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양수시에 채권의 불확정한 성질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0조 유상양수인이 단순한 담보조항으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그는 양도시에 그가 수령한 대금이 범위 내에서만 이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41조 ① 양도는 채무자가 이를 동의하거나 또는 양도증서의 사본 또는 이에 관한 초본 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양도의 증거를 수령한 때로부터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를 퀘백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양도는 양도통지를 채무자의 최후로 알려진 주소가 있는 곳에서 발행되는 신문 또는 그가 기업을 운양하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공시한 때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

제1642조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전체의 양도는 양도를 채권과 동산물권 등기부에 등기함으로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양도를 동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형식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3조 ① 채무자는 양도가 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전에 양수인에게 한 변제와 그 전에

발생된 모든 기타의 소멸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그 자신 또는 그 보증인이 선의로 표견채권자에게 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와 제3자에게 양도로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형식이 충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644조 양도증서의 사본이나 초본 또는 채무자에게 행사된 소송의 통지가 있는 대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타의 양도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채무자가 출석을 위하여 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면 법정비용을 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채무의 이행에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5조 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로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 정한 형식이 보증인 그 자신에게도 충족된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646조 ① 동일한 채권의 양수인과 그에게 의무가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채권에 비례하여 변제된다.

② 하지만 변제의 담보와 함께 양도를 취득한 자는 모든 다른 양수인과 양도인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 각각의 양도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일자를 고려한다.

제2항 무기명 소지인 증서로 확인된 채권의 양도

제1647조 다른 소지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의 안도만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발행한 무기명증서로 확인된 채권의 본질로 한다.

제1648조 ① 소지인에게 무기명증서를 발행한 채무자는 거기에 확인된 그에게 증서가 인도된 모든 소지인에게 채권을 변제한 의무가 있다. 다만 그가 그 변제를 유보한 것을 명하는 판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채무자는 증서의 무효 또는 하자에 관한 것과 증서의 명시적 약정으로 인한 전속적으로 소지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기타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649조 무기명증서를 발행한 채무자는 모든 선의의 소지인에게 의무가 있다. 권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것을 증명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650조 부당하게 무기명증서의 점유침탈이 된 자는 채무자가 그 증서를 그에게 제시하는 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방해할 수 없다. 법원의 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대위

제1651조 ①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② 그는 대위하는 채권자 이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1652조 대위는 약정대위이거나 법정대위로 한다.

제1653조 약정대위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의하여 약정될 수 있지만 명시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약정되어야 한다.

제1654조 채권자가 약정한 대위는 그가 변제를 수령한 것과 동시에 되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제1655조 ① 채무자가 약정한 대위는 그 임대인의 이익으로만 약정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효력이 있다.

② 이 대위가 효력이 있기 위하여 대차행위와 영수증이 공정증서 원본 또는 2인의 증인이 이를 서명하고 그 면전에서 작성된 사서증서로 되어야 한다. 그 외에 대차증서에 대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영수증에 변제가 동일한 대차에서 된 것이라는 것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656조 대위는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 우선특권 또는 저당권을 인하여 그에 채권이 우선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채권자의 이익으로
2. 그 채권자가 그 재산 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재산의 취득자의 이익으로
3. 타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의물르 부담하고 그가 변제할 이익이 있는 채무를 변제한 자의 이익으로
4. 그 자신의 자금으로 그에게 의무가 없는 상속채무를 변제한 상속인의 이익으로
5. 법률이 정한 기타의 경우에

제1657조 대위는 주채무자와 피대위자에게 그가 원래의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보증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658조 ① 일부만 변제한 채권자는 (그로부터) 그 채권의 일부만을 수령한 피변제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의 잔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채권자가 피대위자에 대하여 대위를 취득한 액의 변제를 담보될 의무가 있으면 피대위자는 그보다 우선한다.

제1659조 동일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 자는 대위한 변제에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변제된다. 다만 반대의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갱개

제1660조 ① 갱개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와 구채무에 갈음하는 신채무를 약정하여 그 구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또는 신채무자가 구채무자를 갈음하여 구채권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면

책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 갱개는 구채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한다.

② 신계약의 효과에 의하여 신채권자가 구채권자로 갈음되고 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도 갱개는 발생한다.

제1661조 갱개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갱개할 의사는 명백하여야 한다.

제1662조 구채권에 붙은 저당권은 그 채권에 갈음한 채권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채권자에 의하여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3조 ① 갱개가 신채무자로의 교체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 신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가 구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나 구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그가 이를 연결하는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게다가 구채권에 연결된 저당권자는 신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전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은 구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의 재산에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 하지만 신채무자가 그에 동의한 때에는 이는 구채무자로부터의 신채무자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이전될 수 있다.

제1664조 갱개가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구채권에 붙은 저당권은 신채무를 약정한 공동채무자의 재산에만 유보될 수 있다.

제1665조 ①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 사이에 발생한 갱개로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공동채무자는 면책한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갱개로 보증인이 면책한다.

② 하지만 제1항 전문의 경우에 채권자가 공동채무자의 병합을 연구하거나, 제1항 후문의 경우에 보증인의 병합을 청구한 경우에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신계약에 병합을 거절한 때에는 구채권은 존속한다.

제1666조 연대채권자에 의하여 동의된 갱개는 그 공동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녀대 채권에서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채무인수의 지시

제1667조 채무자에 의한 그에 갈음하여 변제할 자의 지시는, 피지시인(délégué)이 지시수취인 채권자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단순한 변제의 지시만 된다.

제1668조 지시수취인 채권자가 채무인수의 지시를 승낙하면 그는 채무자인 지시인에 대한 그 권리를 유지한다. 다만 지시수취인 채권자가 명확하게 그 채무자를 면책하고자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9조 ① 피지시인은 지시수취인에게 그가 지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는 그가 채무인수 지시의 때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이 원칙은 채무인수지시의 때에 수취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고 그것으로 지시인에 대한 피지시인의 구상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70조 ① 피지시인은 지시인이 지시수취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을 모든 항변으로 지시수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하지만 피지시인은 지시인이 지시수취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의 상계나 지시수취인이 지시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의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제8절 채무의 소멸

제1관 총칙

제1671조 이 법전에서 특히 정한 변제, 종기의 도래, 갹개 또는 시효와 같은 기타의 소멸사유 이외에 상계, 혼동, 면제, 이행불능 또는 채무자의 면책에 의하여 채무는 소멸한다.

제2관 상계

제1672조 ① 쌍방이 각자 서로 채무자와 채권자인 경우에 그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더 적은 채무액까지의 상계로 소멸된다.

② 상계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될 수 없지만 국가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73조 ① 상계는 서로 확정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일정액의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일정량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상호 존재하면 당연히 발생한다.

② 당사자 일방은 그 상계로 대항하기 위하여 채무의 재판상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74조 상계는 채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변제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인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75조 채무 중 어느 것의 변제를 위하여 부여한 은혜기간은 상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76조 ① 상계는 채무를 발생하게 한 채무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② 하지만 상계는 채권이 해할 의사로 한행위에서 발생된 것이나 채무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77조 상계할 수 있는 수개의 채무가 동일한 채무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변제의 충당을 정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제1678조 ①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공동채무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의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연대채무에서 공동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그 예외로 한다.

② 채무자는, 연대채무자인가와 관계없이, 그 공동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의 상계로 연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연대채권에서 그 공동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그 예외로 한다.

제1679조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주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의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제1680조 ① 양도 또는 채권의 저당권에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단순하고 이의 없이 동의한 채무자는 그 제3자에게 더 이상 그가 원래의 채권자에 그 동의 전에 대항할 수 있었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지만 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양도 또는 저당권은 양도 또는 저당권이 그에게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게 된 때보다 이후인 원래의 채권자의 채무의 상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81조 제3자에게서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상계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이를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제1682조 상계를 대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제3자를 해하면서 더 이상 그 채권에 붙은 우선특권 또는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관 혼동

제1683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하면 혼동이 있고 이로 채무는 소멸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혼동의 성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효과도 중단된다.

제1684조 동일한 자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의 경합으로 발생한 혼동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보증인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지위의 경합으로 발생한 혼동으로는 주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685조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다른 연대채무자의 지위의 경합으로 발생한 혼동은 공동채무자 또는 공동채권자의 부담부분의 범위까지에 한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제1686조 ① 저당권은 저당채권자와 저당재산의 소유자의 지위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하지만 채권자가 그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부활한다.

제4관 면제

제1687조 ①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의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 면제가 있다.

② 면제는 전부(全部)로 한다. 다만 일부라는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8조 ① 면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것으로 한다.

② 면제는 그것이 발생한 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

제1689조 ① 임의로 원래의 채무증서를 그 채무자에게 점유하게 한 채권자는 그에게 채무의 면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하게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임의로 채무의 원래의 증서를 점유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90조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한 명시적 면제로 다른 공동채무자는 그가 면책하게 한 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한다. 다른 채무자의 1인 또는 수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모든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서 비례하여 배분한다. 하지만 면제가 된 자는 그 부담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예외로 한다.

② 연대채권자 중 1인이 한 명시적 연대로는 그 채권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채무자가 그 의무를 면한다.

제1691조 우선특권 또는 저당권에 채권자가 한 명시적 포기는 담보된 채무의 면제를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1692조 ① 보증인 중 1인에게 한 명시적 면제로 다른 자는 그가 면책된 보증인에 대하여 가졌을 구상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② 하지만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그 면책을 위하여 수령한 것은 주채무자 또는 다른 채무자의 면책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그들이 면책된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 그 구상의 범위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5관 이행불능

제1693조 ① 채무자가 지체가 있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가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없는 경우에 그 채무로부터 면책된다. 채권자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불가항력으로 채무의 이행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체에 있는 경우라도 면책된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불가항력의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가항력의 증명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694조 ① 이와 같이 면책된 채무자는 채권자의 견련성이 있는 채무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채무가 이행된 때에는 반환의무가 있다.

②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이득이 있는 범위까지 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관 채무자의 면책

제1695조 ① 재판상 매매, 채권자에 의한 매매 또는 재판상 감독을 받는 매매의 결과 우선 특권인 저당권이 [그 채권에] 설정된 채권자는 그 채권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는, 이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할 때에 재산이 시장가격의 범위까지 그 채무로부터 면책한다.

② 매매 후 3년 안에 이 채권이 그 재산 또는 재산의 일부를 재매매하면서 또는 그에 관하여 다른 거래를 하면서 그 채권자가 원본,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여, 그 채권액, 그가 재산에 지출한 액과 이자 및 기타의 그 자신의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우선특권 또는 저당권 채권액에 동등하거나 이를 넘는 가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1696조 채권자는, 그것이 채권자와 공모하거나 관계된 자, 특히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³⁸⁸⁾, 채권자와 동거하는 자 또는 조합원 또는 채권자가 관리인이거나 그가 감독하는 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97조 ① 면책된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② 채권자가 거절한 때에 채무자는 그 면책을 확인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면책을 확인하는 판결은 채권자에 대하여 영수증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698조 주채무자의 면책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과 기타의 담보제공자도 면책하고 이는 주채무자와 독립적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6절 급부의 반환

제1관 급부가 발생하는 경우

제1699조 ① 급부의 반환은 법률에 의하여 어느 자가 타인에게 그가 권리 없이³⁸⁹⁾ 또는 착오로 또는 후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그 채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령한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예외적으로 급부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거절 대신에 반환의 범위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급부의 방법³⁹⁰⁾

제1700조 ① 급부는 원물로 반환하지만 이것이 불능하거나 중대한 불편 없이 할 수 없는 때에는 등가(等價)로 할 수 있다.

② 등가는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것을 반환한 때에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388) 영어원문은 ‘혼인에 의하여거나 또는 민사결합에 의하여 결합된 자’라고 한다.

389) 영어 원문은 unlawfully(위법하게)이고 프랑스어 원문은 sans droit(권리 없이)이다.

390) 프랑스어 원문은 modalité이고 영어 원문은 mode이다.

제1701조 ①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전부멸실 또는 양도의 경우에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는 그 수령, 그 멸실 또는 양도의 때 또는 그 반환의 때에 고려되고 그 가액이 가장 적은 것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가 악의이거나 또는 반환의 원인이 그의 과실에 의한 것이면 가장 최고가액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하지만 재산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 채무자는 모든 급부를 면하지만 이 경우에 필요하면 그가 이 멸실로 수령한 배상 또는 아직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배상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악의이거나 반환사유가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이 채권자의 수중에 있으면서 또한 멸실된 경우에만 그 반환을 면한다.

제1702조 그가 반환한 재산이, 훼손 또는 기타의 가액으로서의 가치감소와 같은,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가 채권자에게 이 멸실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것이 재산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03조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대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권리는 선의점유자에 적용되는 재산편(livre Des biens)³⁹¹⁾의 규정에 의하고 악의이거나 또는 반환사유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악의점유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704조 ① 반환할 재산에 의하여 산출된 과실과 수익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귀속하고 그가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입은 비용도 그가 부담한다. 그는 재산의 향유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향유가 급부의 주된 목적이거나 그 재산이 신속하게 가치저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그 자가 악의이거나 또는 반환사유가 그의 과실에 의한 것이면 그는 비용을 배상한 후에 과실과 수익을 반환하고 그가 그 재산에서 취득할 수 있었을 향유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705조 ① 반환비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로 반환할 급부의 가액에 비례하여 그들이 [각자] 부담한다.

②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악의인 경우 또는 반환사유가 그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단독으로 그 반환비용을 부담한다.

제1706조 ① 피보호자는 급부의 반환에 대하여 그 급부로 인한 수익의 범위까지만 부담한다. 이 수익의 증명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② 하지만 피보호자가 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반환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제3자에 대한 급부의 효력

제1707조 ①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유상양도행위가 선의의 제3자의 이익으로 이행되면 그 행위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상으로 한 행위는 대항할 수

391) 퀘벡민법전의 제4편을 말한다.

없지만 시효에 관한 규정은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의의 제3자의 이익으로 이행한 기타의 행위는 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장 전형계약

제1절 매매

제1관 매매 일반

제1항 총칙

제1708조 ① 매매는 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의무가 있는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소유권에 대한 용익제한물권³⁹²⁾ 또는 어느 자가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기타의 권리도 이전될 수 있다.

제1709조 ① 타인의 재산을 매매할 책임이 있는 자는 중개인³⁹³⁾에 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같다. 다만 관리인에 대하여는 제1312조가 유보된다.

② 또한 취득할 수 없는 자는 더 이상 그가 관리하는 재산이나 자산으로 인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자신의 재산으로 할 수 없다.

③ 어느 경우에도 그는 매매의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예약

제1710조 인도와 현실적 점유를 수반하는 매매의 예약은 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11조 매매의 예약의 경우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대금의 공탁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그와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12조 매도인이든지 매수인이든지 예약자는 그에 의한 증서에 대한 서명의 불이행³⁹⁴⁾은 수익자에게 그로 인한 판결을 얻은 권리를 부여한다.

제3항 타인의 재산의 매매

제1713조 ① 소유자가 아니거나 매매할 책임도 권한도 없는 자에 의한 타인의 재산의 매매

392) 원문은 démembrement, dismemberment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설정되는 제한물권으로서의 용익물권을 말한다.

393) 원문은 partie interposé, intermediary이다.

394) 원문은 défaut, failure이다.

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② 하지만 매도인이 재산의 소유자가 되면 그 매매는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제1714조 ① 진정한 소유자는 매매의 무효를 신청하고 매도한 재산을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매가 법원의 권한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산이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경영으로 매매한 동산이면 소유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그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715조 ① 매수인은 매매의 무효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② 하지만 소유자가 그 자신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하지 못한다.

제4항 매도인의 의무

제1716조 ① 매도인은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과 그 품질을 담보할 의무가 있다.

② 이 담보는 당연히 존재하며 이는 매매계약에서 이를 약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제1목 인도

제1717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또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매수인이 점유를 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재산을 인도할 의무는 충족된다.

제1718조 매도인은 매매할 때에 재산이 있던 상태로 모든 그 종물과 함께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1719조 매도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관한 증서와 부동산매매인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증서의 사본 및 그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증서의 사본과 소재지증명을 매수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제1720조 매도인은, 매매가 면적으로 된 것이든 총대금으로 산정된 것이든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품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정된 재산이 그 내용이나 그 품질에 관한 것이 매매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1조 변제를 위한 기간을 준 매도인은, 매매 후에 매수인이 무자력이 되면 인도할 의무가 없다.

제1722조 인도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거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목 소유권의 담보

제1723조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재산이 모든 권리의 제한 없는 것을 담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매할 때에 명시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시하였거나 등기된 것을 묻지 아니하고 재산의 저장권은 이를 척제(滌除)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와같이 담보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4조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자신이 한 모든 침탈에 대한 담보자가 된다. 다만 그가 매매할 때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자가 그가 알면서 매매 전에 개시한 침탈에 대하여도 매도인은 담보자가 된다.

제1725조 ①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반법의 예외가 되는 재산에 영향을 주는 공법상의 제한의 위반에 대하여 담보자가 된다.

② 신중하고 선량한 매수인이면 그 부동산의 성질, 위치와 용도에 의하여 그 제한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가 이 제한을 매매할 때에 매수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의무가 없다.

제3목 품질담보

제1726조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재산과 그 종물이 매매할 때에 그 재산의 목적이 되는 사용을 부적합하게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그 효용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높은 대금을 주지 아니하였을, 숨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

② 하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안 하자 또는 명백한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담보할 책임은 없다. 명백한 하자는 선량하고 신중한 매수인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자를 말한다.

제1727조 재산이, 매매할 때에 존재하였던 숨은 하자로 멸실한 경우에 멸실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멸실이 불가항력이나 또는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매수인은 그 청구액에서 재산이 멸실될 때에 있던 상태의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728조 매도인이 숨은 하자를 알 수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³⁹⁵⁾에 대금이 반환 이외에 매수인이 받은 모든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29조 전문가인 매도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 그 재산과 동일한 것 또는 동일한 종류와 비교하여 일찍부터 그 재산이 잘못 운영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매매한 때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하자가 매수인의 재산의 오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추정은 깨진다.

제1730조 제조자, 그의 이름으로나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재산을 분배하는 자, 재산의 공급자로서 특히 도매상 및 수입업자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를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

395) 원문은 각각 ‘알지 못할 수 없었던’(ne pouvait l'ignorer, could not have been unaware)이다.

제1731조 법원의 권위로 한 매매는 매도된 재산의 품질을 담보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목 약정담보

제1732조 당사자는 그 계약에 법정담보의무를 추가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어느 경우에도 그 전속적 과실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

제1733조 ① 매도인이 그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를 공표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나 재산의 품질에 영향을 준 경우에, 매도인은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감소하게 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그 위험으로 전문가가 아닌 매도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원칙은 예외가 인정된다.

제5항 매수인의 의무

제1734조 매수인은 인도할 장소에서 매도한 재산의 인도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증서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제1735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재산의 인도 또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기간이 만료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항 당사자의 권리행사의 특칙

제1목 매수인의 권리

제1736조 동산인 재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재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이 당연히 그 채무를 이행하는데 당연지체가 되거나 최고에 의한 이행지체에 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737조 ①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품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 또는 차액이 그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매매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하지만 매수인은 그 내용이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것을 넘은 경우에 초과한 것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738조 ① 그 소유권의 침해의 위험을 발견한 매수인은, 서면으로 그 발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 또는 제3자의 주장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에는 특히 그 권리 또는 제3자의 주장의 성질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하지만 이 권리나 제3자의 주장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 수 없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고

지의 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39조 ① 물건이 하자로 인한 침해를 발견한 매수인은,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그 발견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고지하여야 한다. 하자가 점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하자의 중대성과 범위에 의심을 둘 수 있었을 날로부터 이 기간은 진행을 개시한다.

② 매도인은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는 매수인의 고지의 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

제2목 매도인의 권리

제1740조 ① 동산재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의무의 당연지체에 있거나 또는 최고에 의한 지체에 의하여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매도인은 또한, 매수인이 그 채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운송 중인 재산의 인도를 중지할 수도 있다.

제1741조 ① 동산재산의 매매가 기간 없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지체에 있으면서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동산이 전부 동일한 상태에 있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제3자 또는 재산의 위기를 얻은 저당채권자의 수증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때에, 매도인은 인도 후 30일 내에 매매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압류는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재산이 해제를 정하는 요건에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42조 ① 재산 중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그 채무 중 하나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의 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 특히 그 권리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이 해제를 청구할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인은 매매 후 5년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743조 ① 해제조건을 원용하고자 하는 재산 중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및 필요한 경우에 모든 그 후의 취득자를 부동산등기부에 최고에 의한 지체의 등기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불이행을 추완하여 최고에 의한 지체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선특권과 저당권의 편에서 정한 변제를 받는 것과 이 권리의 행사 전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해제할 때에 준용된다.

② 그 조항의 행사의 결과로 재산을 회복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등기한 후에 그 재산에 설정할 수 있었던 모든 부담 없이 회복하는 것으로 한다.

제7항 매매의 여러 태양

제1목 시험매매

제1744조 ① 물건의 시험매매는 정지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시험기간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물건의 인도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한다.

제2목 할부매매

제1745조 ① 할부매매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부의 지급할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기간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② 도로용 승용차 또는 규정으로 정한 기타의 동산의 소유권의 유보 또는 사업상의 노무 또는 사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동산의 소유권의 유보는 이를 공시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력은 유보를 15일 내에 공시하면 매매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이 유보의 양도도 이를 공시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746조 할부매매는 매수인에게 물건의 멸실의 위험이 이전된다. 다만 소비자계약의 경우 또는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7조 매수인이 지급할 잔액은 그 물건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48조 매수인이 계약으로 정한 조건과 기한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은 기간이 도래한 할부금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매각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 계약에 기한의 이익의 상실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에 대신하여 미지급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49조 ① 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물건의 반환을 선택한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우선특권 및 저당권의 편에 정한 저당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소비자계약의 경우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만 매도인 또는 양수인의 반환권의 행사에 적용된다.

② 소유권의 유보가 공시되어야 하였음에도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그 물건의 직접적 매수인에게만 매각된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그 물건을 그 현상태로 매수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와 부담으로 한다.

③ 소유권의 유보가 공시되어야 함에도 지체되어 공시된 경우에도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동일하게 그 물건의 직접적 매수인에게만 매각된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 의한 물건의 매각 전에 공시된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모든 이후의 매수인으로부터도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 또는 양수인은 그 물건을 그 현재의 상태로 반환하지만 유보가 공시된 때에 매수인이 설정할 수 있었고 그 경우에 공시되었던 권리와 부담으로 한다.

제3목 환매권이 있는 매매

제1750조 ① 환매권부 매매³⁹⁶⁾라고도 하는 환매권이 있는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의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해제조건이 있는 매매를 말한다.

② 법령으로 정해진 도로교통수단이나 다른 동산이나 또는 기업의 노무나 경영으로 취득한 모든 동산을 환매할 권리는 이를 공시된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은 그 권리가 15일 내에 공시된 경우에는 매매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그러한 권리의 이전도 공시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751조 환매할 권리를 행사하여 그 재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매도인은 그 의사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환매할 권리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그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그후의 모든 취득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환매할 권리가 공시된 경우에는 이 통지 자체도 공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20일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으로 한다. 소비자 계약에 관하여는 20일의 기간은 30일로 확대한다.

제1752조 매도인의 권리가 공시를 요하고 권리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이를 한 경우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한 때에는 매수인이 그에 설정할 수 있었던 모든 부담을 제거하여 그에게 그 재산이 반환된다.

제1753조 환매권은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약정될 수 없다.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제1754조 환매할 권리가 있는 재산의 불가분의 부분의 매수인이 분할의 효과에 의하여 그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그 재산 전부를 강제할 수 있다.

제1755조 ① 매매가 수인이 공동으로 단일한 계약으로 된 경우 또는 매도인에게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재산의 일부만 반환받는 것에 대항하고 공동매도인이나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를 반환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타의 점에 대하여는 공동채무 또는 분할채무에 관한 규정이 수이의 매도인의 이익으로 수인의 매수인에 대하여 또는 그 상속인 사이에 존재하는 환매할 권리의 행사에 준용된다.

제1756조 환매할 권리가 대차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매도인은 임차인으로 보고 취득자는 저당권이 붙은 채권자로 본다. 하지만 매도인은 환매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자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우선특권과 저당권의 편³⁹⁷⁾에 정한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목 경매

(제1757조-제1766조) (생략)

396) 이러한 별칭에 대한 문구는 프랑스어판에만 있고 영어판에는 없다.

397) 제9편(제2934조-제3075조)이 이를 규정한다.

제8항 기업매매

(제1767조-제1778조) (삭제)³⁹⁸⁾

제9항 몇 가지 무체재산의 매매

제1목 상속권의 매매

제1779조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권을 매매한 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만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

제1780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가 수취한 과실과 수익 및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본과 그가 매도하고 상속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대금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781조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속채무와 매도인이 지급한 상속의 청산비용 및 상속에 의하여 그가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② 매수인은 매수인이 의무가 있는 상속채무도 변제하여야 한다.

제2목 계쟁 중인 권리의 매매

제1782조 권리가 불확정이고 채무자에 의하여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계쟁 중인 권리가 되고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는가 또는 소송이 필요하다고 추정될 이유가 있는가를 묻지 아니한다.

제1783조 법관, 변호사, 공증인과 법원공무원은 계쟁 중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매매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제1784조 ① 계쟁 중인 권리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 권리가 청구된 자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매매에 관한 비용과 매수인이 이를 지급한 날로부터 계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완전히 면책된다.

② 채권자에게 그에게 의무가 있는 것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또는 공동상속인이나 매도된 권리의 공동소유자에게 또는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점유자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 면책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법원이 매각된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또는 그 권리가 증명되어 그 분쟁에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없다.

제2관 거주목적 부동산의 매매에 특유한 규정

(제1785조-제1794조) (생략)

398) 이는 기업매매(vente d'entreprise, Sale of an enterprise)에 관한 조문으로 2002년 6월 13일 법(제8.1조)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Fasken Martineau, Abrogation de la législation québécoise sur la vente d'entreprise, BDA(Notre Droit des affaires), 2012.7, pp.1-4 참조. 이 제도는 종래에 vente en block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는 아직도 이에 관한 단행법(Loi sur la vente en block, Bulk Sales Act)이 있다. 가령 온타리오, 뉴 브런스윅(Nouveau-Brunswick), 페러 너브(Terre-Neuve) 등이 그러하다.

제3관 매매와 유사한 여러 계약

제1항 교환

제1795조 교환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의 소유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796조 당사자 일방에게 교환으로 이전된 재산을 수령한 후에도, 그는 상대방이 그 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한 경우에 교환으로 약정한 재산을 그가 인도할 것이 강제될 수 없고 다만 그가 수령한 재산의 반환만 강제될 수 있다.

제1797조 교환으로 수령한 재산이 추급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가 이전한 재산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8조 기타의 모든 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교환계약에 적용된다.

제2항 대물변제

제1799조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금전 또는 기타의 어떠한 물건을 대신-갈음하여 그 변제로서 수령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800조 ① 대물변제는 매매계약의 규율에 따라 이것에 의하여 물건을 이전하는 자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② 다만 대물변제는 물건의 인도에 의하여 최초로 완전한 것으로 한다.

제1801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물건의 불가철회적인 소유자가 될 권리 또는 채권자가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유보하는 취지의 모든 조항은 쓰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부동산 정기금계약

제1802조 ① 부동산정기금계약은 임차인이 부동산 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로 하고 그와 상환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정기금은 현금이나 원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정기금의 지급은 매 연말에 하여야 하고 정기금은 정기금이 성립된 대로부터 계산된다.

제1803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재산에 의하여 정기금을 원본의 가액으로 상환하고 이미 지급된 액의 반환을 포기하면서 정기금의 노무에서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기금의 노무를 위하여 보험자에 의하여 대신될 수 없다.

제1804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인적으로 정기금의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또는 부동산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에 의하여 임차인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805조 기타에 것에 관하여는 매매계약과 정기금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정기금계약에 적용된다.

제2절 증여

제1관 증여의 성질과 범위

제1806조 ① 증여자라고 하는 어느 자가 수증자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익제한물권³⁹⁹⁾ 또는 그 자가 명의자인 기타의 권리도 증여로 이전될 수 있다.

② 증여는 생존자 사이의 증여와 사인증여로 될 수 있다.

제1807조 ① 생존자 사이의 증여는 증여자가 실제로 수증자의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증여자의 사실적 권리상실이 된다.

②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인도가 기한이 있다는 사실 또는 이전이 증여자가 취득할 의무가 있는 그 특정된 재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 또는 특정한 재산이 증여자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 종류에 관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증여자의 사실적 권리상실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808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권리상실은 그 사망을 조건으로 하고 그 때에만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제1809조 어느 자가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권리를 행사를 포기하거나 조건 없이 단순히 상속이나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증여가 되지 아니한다.

제1810조 보수가 있는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는 보수 또는 부담의 가치를 초과하는 것만 증여로 한다.

제1811조 간접증여와 가장증여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2조 증여의 예약은 증여가 되지 아니하고 단지 예약의 수익자에게 예약자의 불이행한 때에, 이 수익자가 허용한 이익과 그가 예약을 고려하여 한 비용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만을 부여한다.

제2관 증여의 몇 가지 요건

399) 원문은 각각 *démembrement du droit de propriété*, *dismemberment of the right of ownership*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1119조 이하 참조.

제1항 증여능력과 수증능력

제1813조 미성년자와 보호를 받은 성년자는 그 후견인 또는 보좌인에 의하여 대리된다고 하여도 소액의 재물 또는 관습상의 선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할 수 없다. 혼인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1814조 ① 부모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 또는 그가 살아서 출생하고 생존력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에 대하여 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를 수령할 수 있다.

② 후견인 또는 보좌인만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대하여 증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후견인이 있는 성년은, 그럼에도 단독으로 소액재산 또는 관행상의 선물의 증여를 수령할 수 있다.

제1815조 증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호를 요하는 선임된 보호자도 그 보호가 있으면 증여할 수 있다.

제2항 증여의 유효를 위한 몇 가지 규정

제1816조 소유자가 아니거나 증여할 책임이 없거나 또는 이를 할 권한도 없는 자의 재산의 증여는 무효이다. 다만 증여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7조 ① 위생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소유자, 관리인 또는 피용자에게 한 증여는, 그들이 증여자의 배우자도 근친도 아니면서 증여자가 그곳에서 보호를 받거나 노무를 받을 때에 된 것이면, 무효이다.

② 증여자가 기숙보호가정⁴⁰⁰⁾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 가족의 구성원에게 한 증여도 무효이다.

제1818조 ① 생전증여는 현존하는 재산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⁴⁰¹⁾.

② 장래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증여는 사인증여로 보지만 다만 동시에 현존하는 재산과 장래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증여는 장래의 재산에 대하여만 사인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19조 사인증여는 무효이다. 다만 혼인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유증으로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0조 ① 증여자의 치명적인 것으로 본 질병 동안에 한 증여는 그후 사망이 있었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증여를 무효로 한다. 사정에 의하여 이를 유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증여자가 회복되고 수증자가 3년 동안 평온한 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무효

400) famille d'accueil, foster family

401) 영어판은 '현존하는 재산에 관하여만 유효하다'(valid only as to present property)이다.

는 치유된다.

제1821조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채무 또는 부담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생전증여는 무효이다. 다른 채무 또는 부담의 성질과 범위가 계약에 특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2조 증여자의 의사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생전증여는 무효로 한다. 이는 혼인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하여 한 것이라도 그러하다.

제1823조 생존자 사이의 증여는 특정명의로 의하여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3항 증여의 방식과 공시

제1824조 ① 동산이나 부동산의 증여는 공정증서로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는 공시되어야 한다.

② 동산증여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재산의 인도와 현실점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 전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총칙

제1825조 증여자가 재산을 인도하여 수증자의 점유에 두거나 또는 수증자에게 그 점유를 할 것을 허용하면 모든 장애는 제거되는 것으로 한다.

제1826조 증여자는 증여된 재산에 그가 가진 권리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제1827조 ① 수증자는 제3자에게 속한 권리를 증여된 재산으로부터 제거하거나 또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변제를 증여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다만 변제가 증여로부터 그가 취득할 이익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지만 추급이 전부이거나 일부이거나 그 추급이 이전된 권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를 증여할 때에 증여자가 알았으나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급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그가 증여로부터 취득할 이익을 넘어서 그가 증여로 인하여 변제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828조 ① 증여자는 증여된 재산에 영향을 주는 숨은 하자에 책임이 없다.

② 하지만 수증자에게 그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하자로 인하여 가한 손해를, 증여할 때에 그가 그 하자를 알았지만 이를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829조 증여자는 계약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수증자는 재산의 제거에 관한 비용을 지

급한다.

제2항 증여자의 채무

제1830조 수증자는 그가 수령한 전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재산과 책임의 전체)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 또는 법률로부터 이와 다른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정된 부담

제1831조 증여는 부담부로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832조 ① 각자의 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수인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정한 부담은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부분이 잔존한 공동수익자의 이익으로 하여 그 부담부분이 증가한다.

② 하지만 수익자의 각자의 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중 일방의 사망으로 증가되지 아니한다.

제1833조 수증자는 증여된 재산에 설정된 부담을 전속적으로 질 책임이 있다.

제1834조 사정에 의하여 증여를 승낙할 때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불능하게 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된 부담은, 증여가액, 증여자의 의사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835조 제3자를 위하여 약정된 부담의 취소와 실효는 수증자의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 다만 다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의 취소

제1836조 ① 생존증여는 모두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의 성질, 당사자의 권한과 사정에 비추어, 중대하게 비난될⁴⁰²⁾ 행위를 한 경우에 망은행위가 있다.

제1837조 ① 취소소송은 수증자의 잔존자가 망은행위의 원인이 있는 후 1년 또는 증여자가 그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권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 내의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지만 그 증여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후의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838조 ① 증여의 취소로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계약으로 인하여 그가 수령한 것을 급부

402) 이에 대하여는 상속결격에 대한 제621조와 비교.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이를 각각 상속과 증여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의 반환에 관한 본 편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취소로 계약으로 약정한 부담은 장래에 대하여 소멸한다.

제5편 부부재산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한 증여

제1839조 ① 혼인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증여는 생전증여 또는 사인증여로 할 수 있다.

② 이 증여는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840조 ① 모든 자는 혼인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하여 생전증여를 할 수 있지만 장래의 배우자, 그 각각의 자와 그들의 이미 출생하였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살아서 출생하고 생존력이 있는 공동의 자가 단독으로 수증자가 될 수 있다.

② 사인증여는 혼인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으로 생존증여의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

제1841조 ① 사인증여는 특정한 명의로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수증자와 모든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가 소액의 재산이거나 관례상의 선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⁴⁰³⁾. 그럼에도 증여자는 계속 증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자⁴⁰⁴⁾이고 또한 유상으로 이를 양도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제3절 신용제공임대차

(제1842조-제1850조)(생략)

제4절 임대차

(제1851조-제2000조) (생략)⁴⁰⁵⁾

403) 영어판은 ‘증여자와 모든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증여가 소액이거나 관행상의 선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404) 원문은 각각 ‘권리의 명의자’, ‘그 권리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이다.

405) 제4절의 임대차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4절 임대차	Chapitre quatrième - Du louage	Chapter IV - Lease	제1851조-제2000조
제1항 임대차의 성질	Section I - De la nature du louage	Division I - Nature of lease	제1851조-제1853조
제2항 임대차로 인한 권리와 의무	Section II - Des droits et obligations résultant du bail	Division II - Rights and obligations resulting from lease	제1854조-제1876조
제1관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 1. — General provisions	제1854조-제1863조
제2관 수선	§ 2. — Des réparations	§ 2. — Repairs	제1864조-제1869조

제5절 용선

(제2001조-제2029조) (생략)406)

제3관 재산의 전대차와 임대차의 양도	§ 3. — De la sous-location du bien et de la cession du bail	§ 3. — Sublease of property and assignment of lease	제1870조-제1876조
제3항 임대차의 종료	Section III - De la fin du bail	Division III - Termination of the lease	제1877조-제1891조
제4항 주거임대차에 관한 특칙	Section IV - Règles particulières au bail d'un logement	Division IV - Special rules respecting leases of dwellings	제1892조-제1920조
제1관 적용범위	§ 1. — Du domaine d'application	§ 1. — Application	제1892조-제1893조
제2관 임대차	§ 2. — Du bail	§ 2. — Lease	제1894조-제1902조
제3관 임료	§ 3. — Du loyer	§ 3. — Rent	제1903조-제1909조
제4관 주거상태	§ 4. — De l'état du logement	§ 4. — Condition of dwelling	제1910조-제1920조
제5항 주거의 몇 가지 변경	§ 5. — De certaines modifications au logement	§ 5. — Certain changes to dwelling	제1921조-제1929조
제6항 주거의 접근과 방문	§ 6. — De l'accès et de la visite du logement	§ 6. — Access to and visit of dwelling	제1930조-제1935조
제7항 주거장소를 유지할 권리	§ 7. — Du droit au maintien dans les lieux	§ 7. — Right to maintain occupancy	제1936조-제1970조
제1관 권리자	I. — Des bénéficiaires du droit	I. — Holders of the right	제1936조-제1940조
제2관 임대차의 갱신과 변경	II. — De la reconduction et de la modification du bail	II. — Renewal and modification of lease	제1941조-제1946조
제3관 임대차 조건의 확정	III. — De la fixation des conditions du bail	III. — Fixing conditions of lease	제1947조-제1956조
제4관 주거의 반환과 추급	IV. — De la reprise du logement et de l'éviction	IV. — Repossession of a dwelling and eviction	제1957조-제1970조
제8항 임대차의 해지	§ 8. — De la résiliation du bail	§ 8. — Resiliation of lease	제1971조-제1978조
제9항 몇 가지 임대차의 특칙	§ 9. —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s baux	§ 9. — Special provisions respecting certain leases	제1979조-제2000조
제1관 교육기관의 임대차	I. — Du bail dans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I. — Lease with an educational institution	제1979조-제1983조
제2관 저임료에 의한 주거임대차	II. — Du bail d'un logement à loyer modique	II. — Lease of a dwelling in low-rental housing	제1984조-제1995조
제3관 이동식주택의 설치 목적을 한 대지임대차	III. — Du bail d'un terrain destiné à l'installation d'une maison mobile	III. — Lease of land intended for the installation of a mobile home	제1996조-제2000조

제6절 운송

(제2030조-제2084조)⁴⁰⁷⁾ (생략)

406) 제5절 용선계약은 다음과 같은 편별체계로 되어 있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5절 용선	Chapitre cinquième - De l'affrètement	Chapter V - Affreightment	제2001조-제2029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Division I - General provisions	제2001조-제2006조
제2관 다양한 용선계약의 특별규정	Section II - Des règles particulières aux différents contrats d'affrètement	Division II - Special rules governing different contracts of affreightment	제2007조-제2029조
제1항 나선용선	§ 1. — De l'affrètement coque-nue	§ 1. — Bareboat charter	제2007조-제2013조
제2항 기한이 있는 용선	§ 2. — De l'affrètement à temps	§ 2. — Time charter	제2014조-제2020조
제3항 여행용선	§ 3. — De l'affrètement au voyage	§ 3. — Voyage charter	제2021조-제2029조

407) 운송계약의 편별체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6절 운송	Chapitre sixième - Du transport	Chapter VI - Carriage	제2030조-제2084조
제1관 모든 운송방법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I - Des règles applicables à tous les modes de transport	Division I - Rules applicable to all means of transportation	제2030조-제2058조
제1항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 1. — General provisions	제2030조-제2035조
제2항 여객운송	§ 2. — Du transport de personnes	§ 2. — Carriage of persons	제2036조-제2039조
제3항 화물운송	§ 3. — Du transport de biens	§ 3. — Carriage of property	제2040조-제2058조
제2관 해상화물운송에 특별규정	Section II - Des règles particulières au transport maritime de biens	Division II - Special rules governing carriage of property by water	제2059조-제2084조
제1항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 1. — General provisions	제2059조-제2060조
제2항 당사자의 의무	§ 2. — Des obligations des parties	§ 2. — Obligations of parties	제2061조-제2079조
제3항 화물상환증	§ 3. — De la	§ 3. — Handling of	제2080조-제2084조

제7절 고용계약⁴⁰⁸⁾

(제2085조-제2097조) (생략)⁴⁰⁹⁾

제8절 도급과 노무계약

(제2098조-제2129조) (생략)⁴¹⁰⁾

제9절 위임계약

(제2130조-제2185조) (생략)⁴¹¹⁾

	manutention des biens	property	
--	-----------------------	----------	--

408) 원문은 contrat de travail, contract of employment로서 ‘근로계약’이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민법의 용례(제8절 고용, 제665조 이하)에 따라 ‘고용계약’으로 한다.

409) 근로계약은 별도의 편별체계 없이 13개의 조문(제2085조-제2097조)으로만 되어 있다.

410) 도급과 노무계약의 편별체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8절 도급과 노무계약	Chapitre huitième - Du contrat d'entreprise ou de service	Chapter VII - Contract of enterprise or for services	제2098조-제2129조
제1관 계약의 성질과 범위	Section I - De la nature et de l'étendue du contrat	Division I - Nature and scope of the contract	제2098조-제2100조
제2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Section II - Des droits et obligations des parties	Division II -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제2101조-제2124조
제1목 총칙	I. — Dispositions générales	I. — General provisions	제2110조-제2116조
제2목 부동산의 노무	II. — Des ouvrages immobiliers	II. — Immovable works	제2117조-제2124조
제1항 노무에도 일에도 적용되는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tant aux services qu'aux ouvrages	§ 1. — General provisions applicable to both services and works	제2101조-제2109조
제2항 일에 대한 특칙	§ 2.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x ouvrages	§ 2. — Special provisions respecting works	제2110조-제2124조
제3관 계약의 해지	Section III - De la résiliation du contrat	Division III - Resiliation of the contract	제2125조-제2129조

411) 제9절 위임계약의 편별체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9절 위임계약	Chapitre neuvième - Du mandat	Chapter IX - Mandate	제2130조-제2185조
제1관 위임의 성질과 범위	Section I - De la nature et de l'étendue	Division I - Nature and scope of mandate	제2130조-제2137조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

(제2186조-제2279조)⁴¹²⁾ (생략)

	du mandat		
제2관 당사자 사이의 의무	Section II - Des obligations des parties entre elles	Division II - Obligations between parties	제2138조-제2156조
제1항 위임인에 대한 수임인의 의무	§ 1. — Des obligations du mandataire envers le mandant	§ 1. — Obligations of the mandatary towards the mandator	제2138조-제2148조
제2항 수임인에 대한 위임인의 의무	§ 2. — Des obligations du mandant envers le mandataire	§ 2. — Obligations of the mandator towards the mandatary	제2149조-제2156조
제3관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Section III - Des obligations des parties envers les tiers	Division III - Obligations of parties towards third persons	제2157조-제2165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수임인의 의무	§ 1. — Des obligations du mandataire envers les tiers	§ 1. — Obligations of the mandatary towards third persons	제2157조-제2159조
제2항 제3자에 대한 위임인의 의무	§ 2. — Des obligations du mandant envers les tiers	§ 2. — Obligations of the mandator towards third persons	제2160조-제2165조
제4관 위임인의 결격이 있는 위임에 대한 특칙	Section IV - Des règles particulières au mandat donné en prévision de l'incapacité du mandant	Division IV - Special rules governing the mandate given in anticipation of the mandator's incapacity	제2166조-제2174조
제5관 위임의 종료	Section V - De la fin du mandat	Division V - Termination of mandate	제2175조-제2185조

412)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	Chapitre dixième - Du contrat de société et d'association	Chapter X - Contracts of partnership and of association	제2186조-제2279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Division I - General provisions	제2186조-제2197조
제2관 합명회사	Section II - De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	Division II - General partnerships	제2198조-제2235조
제1항 사원 사이와 회사에 대한 사원의 관계	§ 1. — Des rapports des associés entre eux et envers la société	§ 1. — Relations of partners between themselves and with the partnership	제2198조-제2218조

제11절 임치

(제2280조-제2311조) (생략)413)

제2항 제3자에 대한 회사와 사원의 관계	§ 2. — Des rapports de la société et des associés envers les tiers	§ 2. — Relations of the partnership and the partners with third persons	제2219조-제2225조
제3항 사원의 자격의 상실	§ 3. — De la perte de la qualité d'associé	§ 3. — Loss of the quality of partner	제2226조-제2229조
제4항 회사의 해산과 청산	§ 4. — De la dissolution et de la liquidation de la société	§ 4. —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the partnership	제2230조-제2235조
제3관 합자회사	Section III - De la société en commandite	Division III - Limited partnerships	제2236조-제2249조
제4관 익명조합	Section IV - De la société en participation	Division IV - Undeclared partnerships	제2250조-제2266조
제1항 조합의 정관	§ 1. — De la constitution de la société	§ 1. — Establishment of an undeclared partnership	제2250조-제2250조
제2항 조합원 사이에서의 상호관계	§ 2. — Des rapports des associés entre eux	§ 2. — Relations of the partners between themselves	제2251조-제2251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관계	§ 3. — Des rapports des associés envers les tiers	§ 3. — Relations of the partners with third persons	제2252조-제2257조
제4항 조합계약의 종료	§ 4. — De la fin du contrat de société	§ 4. — Termination of the contract of undeclared partnership	제2258조-제2266조
제5관 비영리단체	Section V - De l'association	Division V - Associations	제2267조-제2279조

413) 제11절 임치계약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11절 임치	Chapitre onzième - Du dépôt	Chapter xi - Deposit	제2280조-제2311조
제1관 임치 일반	Section i - Du dépôt en général	Division i - Deposit in general	제2280조-제2294조
제1항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 1. — General provisions	제2280조-제2282조
제2항 수치인의 의무	§ 2. — Des obligations du dépositaire	§ 2. — Obligations of the depositary	제2283조-제2292조
제3항 임치인의 의무	§ 3. — Des obligations du déposant	§ 3. — Obligations of the depositor	제2293조-제2294조
제2관 필요적 임치	Section ii - Du dépôt nécessaire	Division ii - Necessary deposit	제2295조-제2297조
제3관 호텔업자의 임치	Section iii - Du dépôt	Division iii - Deposit	제2298조-제2304조

제12절 대차

(제2312조-제2332조⁴¹⁴⁾) (생략)

제13절 보증

제1관 보증의 성질, 목적과 범위

제2333조 보증은 보증인이라고 하는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또는 보수를 받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334조 보증은 약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재판에 의하여 부가될 수 있다.

제2335조 보증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명시되어야 한다.

제2336조 ① 순위 없이 또는 그가 의무를 부담해주는 자의 부탁 없이 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어느 채무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를 보증한 자의 보증인도 될 수 있다.

제2337조 ① 보증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재산을 켜백에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그 주소를 캐나다에 가지는 보증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다른 보증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채권자가 보증인으로 특정한 자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38조 채무자가 법정 보증인 또는 재판상 보증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는 그 대신에 충분한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hôtelier	with an innkeeper	
제4관 계쟁물 임치	Section iv - Du séquestre	Division iv - Sequestration	제2305조-제2311조

414) 제12절 대차계약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12절 대차	Chapitre douzième - Du prêt	Chapter XII - Loan	제2312조-제2332조
제1관 대차의 성질과 그 종류	Section I - Des espèces de prêt et de leur nature	Division I - Nature and kinds of loans	제2312조-제2316조
제2관 사용대차	Section II - Du prêt à usage	Division II - Loan for use	제2317조-제2326조
제3관 단순대차	Section III - Du simple prêt	Division III - Simple loan	제2327조-제2332조

제2339조 보증인의 재산의 충분이나 제공된 담보의 충분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2340조 ① 보증인 유효한 채무에만 성립⁴¹⁵⁾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그 무능력을 알고 있으면 그 무능력을 원용하여 면책될 수 있는 채무 및 자연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제2341조 ① 보증은 채무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초과할 수 없고 더 가중된 조건으로 약정할 수도 없다.

②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보증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보증은 주채무의 범위까지 감소될 뿐이다.

제2342조 보증은 더 가중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주채무자의 일부에만 약정될 수 있다.

제2343조 보증은 그것이 약정한 범위를 넘어 확대될 수 없다.

제2344조 주채무자의 보증은 주채무의 모든 종된 것으로 확대되고 이는 최초의 소송비용과 보증인에게 한 그 소송의 통지 이후의 모든 비용까지도 그러하다.

제2관 보증의 효력

제1항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효과

제2345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의 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내용과 기한, 조건⁴¹⁶⁾에 관한 유용한 정보 및 그 이행상태에 관한 정보를 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2346조 보증인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2347조 ① 약정보증인 또는 법정보증인은 검색의 이익⁴¹⁷⁾이 있다.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상 보증인을 보증한 자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의 검색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48조 ① 검색의 이익을 주장하는 보증인은 이를 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고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액을 그에게 선지급하면서 주채무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적시하여야 한다.

② 검색을 소홀히 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적시된 범위까지 압류할 수 있는 주채무자

415) 영어판은 '약정될 수 있다'(contracted)라고 한다.

416) 프랑스어판은 '양태'(modalité)이고 영어판은 '기한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다.

417) 우리 법의 검색의 항변권에 해당한다. 프랑스법계에서는 '검색의 이익'(bénéfice de discussion, benefit of discu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의 적시 후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제2349조 ① 수인이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된 경우에, 그들 각자는 모든 채무에 책임이 있지만 미리 명시적으로 이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이익을 주장한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소권을 분할하고 이를 그들 각자의 부담부분을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50조 보증인 중 1인이 분할을 명한 때에 그 중 수인이 무자력이 있으면 그 보증인은 그 무자력에 대하여 비례하여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분할 후에 발생한 무자력에 대하여는 그는 책임이 없다.

제2351조 채권자 자신이 임의로 그 소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을 번복할 수 없다. 이는 그와 같이 약정을 한 때 전에 무자력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352조 보증인이 연대보증인 또는 주채무자의 자격으로 채무자와 함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는 검색과 분할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그 약정의 효력은, 보증의 성질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연대채무에 대하여 정한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353조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주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었을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에게 순수하게 일신전속적이거나 그 약정조항으로 제외된 항변을 제외된다.

제2354조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한 단순한 기한의 연장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동일하게 주채무자에 의한 기한의 실권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55조 보증인은 정보에 관한 권리와 대위의 이익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제2항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효력

제2356조 ①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은 그에게, 보증으로 인하여 그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 외에 그가 변제한 원본, 이자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 모든 액에 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된 채무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은 보증이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그가 변제할 의무가 있었던 것만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겐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다만 변제의 적시가 있는 후의 비용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57조 주채무자가 그의 무능력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를 면한 경우에 보증인은 그 채무자가 이를 보존한 이득의 범위에서 그에게 반환을 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2358조 ①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그가 변제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에 이를 변제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고 변제한 자는, 변제할 때에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이 되게 하는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동일한 경우에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감액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 요청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만 그 보증인은 구상권이 있다.

제2359조 ① 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은 변제 전이라도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무가 그 기간의 만료로 변제하여야 하게 된 경우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여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는 채무자에 의하여 가한 멸실이나 그의 과실로 인하여 보증인 자신이 의무를 부담하는 때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3항 보증인 사이의 효력

제2360조 ① 수인의 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자를 보증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소권 외에도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인적소권을 가진다.

②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하나이었던 때에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만 이 인적소권은 행사될 수 있다.

③ 보증인 중 1인의 무자력이 있는 경우에 그는 다른 보증인과 변제를 한 자 사이에서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3관 보증의 종료

제2361조 보증인의 사망으로 보증은 종료한다. 이는 어떠한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362조 ① 장래 또는 불확정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불확정한 기간 동안 약정된 보증은 3년 후에 그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인은 채무자, 채권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충분한 사전통지를 함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재판상 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63조 특별한 의무의 이행이 붙은 보증은 그 의무가 완료한 때에 종료한다.

제2364조 보증은 종료한 경우에 보증은 그 때 존재하던 채무에 계속하여 책임이 있다. 이는 그 채무가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365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가 그의 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게 행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그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 면책된다.

제2366조 채권자가 주채무의 이행으로 재산에 한 임의적 수령으로 보증인은 면책된다. 이는 채권자가 후에 지급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4절 정기금

제1관 계약의 성질과 이를 규율하는 규정의 범위

제2367조 ① 정기금을 설정하는 계약은 어느 자(정기금채무자)가 무상으로 또는 자기를 위하여 한 자본의 양도와 상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자(정기금채권자)에 대하여 정기금을 급부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자본은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금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또는 불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

제2368조 정기금채무자가 자기를 위하여 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상환으로 정기금급부를 약정한 경우 당해계약은 부동산정기금계약이라고 하고 이것과 유사한 매매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한다.

제2369조 ① 정기금은 정기금의 자본을 제공하는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해당계약은 그와 같이 설정된 정기금이 정기금채권자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령되어도 증여에 요구된 형식으로 완전히 복종되지 아니한다.

제2370조 ① 정기금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는 외에 유언,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도 설정될 수 있다.

② 본 절의 규정은 이들의 정기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2관 계약의 범위

제2371조 ① 정기금은 종신으로 하거나 비종신(非終身)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금은 급부의 기간이 1인 또는 수인의 자의 생존하는 기간에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신이다.

③ 정기금은 급부기간이 별도로 정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종신이다.

제2372조 ① 종신정기금은 그것을 설정하는 자 또는 그것을 수령한 자의 생존기간 동안 또는 그 정기금을 향수하는 어느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 제3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관하여 정해질 수 있다.

② 하지만 그 자와의 관련에서 급부기간이 정해진 자의 사망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자 또는 정기금채권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정기금이 계속하는 취지가 약정될 수 있다.

제2373조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급부를 개시할 시점에서 사망한 자 또는 해당 시점에서 30일 내에 삼아한 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정해진 종신통기금은 효력이 없다.

② 동일하게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급부를 개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정해진 종신통기금은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자가 그 시점에 포태되고 살아있고 출생하고 생육력을 가지고 살아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74조 ① 수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정한 정기통기금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급부를 개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제1의 수급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그 시점에 회태되어 있고 살아서 생육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만 효력이 있다.

② 이러한 종신통기금은 대상의 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자가 살아서 생육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종료한다. 정기금의 설정부터 10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같다.

제2375조 변제반제 능력이 없는 상대방의 대차는 대주를 위하여 대주의 생존기간에 대하여 종신통기금으로 본다.

제2376조 모든 정기금의 기간은 종신이고 비종신이고 모든 경우에 정기금이 설정으로부터 100년에 제한 또는 감축된다. 계약이 그것으로부터 장기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연속적인 정기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같다.

제3관 계약의 몇 가지 효과

제2377조 정기금은 정기금채권자가 그 것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압류 불가능 또는 양도불가능한 취지가 약정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정기금채권자로서 부양으로서 필요한 정기금의 액의 한도로만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제2378조 ① 정기금급부를 위해 축적된 자본은 정기금이 정기금채권자와 정기금채권자에게 대위하는 자에게 급부될 경우에는 그 자본이 정기금의 급부에 할당된 한도에서 압류불가능이다.

② 다만 압류채권자, 정기금채무자와 정기금채권자의 평가에 기초하여 또는 그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기금채권자의 부양료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정기금을 급부할 것에 필요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자본의 부분에서만 자본은 압류는 불가능하다.

제2379조 ① 정기금의 자본을 제공한 자 이외의 정기금채권자의 지정 또는 취소는 제3자를 위하여 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② 다만 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퇴직제도의 범주구조에서 된 정기금의 정기금채권자의 지정 또는 취소는 수익자와 대위권리자에 관한 보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제2380조 ① 동시에 2인 또는 수인의 정기금채권자를 위하여 설정된 종신통기금은 그것들의 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정기금채권자에게 양도될 취지를 약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하게 부부를 위해 설정된 종신통기금은 부부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381조 ① 종신통기금은 그 자와의 관련에서 정기금의 급부기간이 정해진 자가 생존한 일수에 따라서만 저임금채권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금채권자는 그 자의 생존을 증명한 경우에만 정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정기금이 전에 지급되는 취자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될 것인 정기금은 그 지급이 되어야 하였던 날로부터 취득된다.

제2382조 정기금은 예정된 각 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급된다. 이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정기금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급부를 개시하여야 할 날로부터 계산된다.

제2383조 정기금채권자는 자본에 의한 정기금의 가치의 상환을 신출, 지급된 정기금의 반환의 포기하는 것에 의하여 정기금급부에서 면할 수 없다. 정기금채무자는 계약으로 예정된 모든 기간 동안 정기금을 급부할 의무가 있다.

제2384조 ① 정기금채권자는 지급될 정기금의 가치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대위될 권능이 있다.

② 동일하게 정기금급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의 부담을 하게 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정기금에 결부된 담보를 허가된 보험자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신할 수 있다.

③ 정기금채권자는 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금채권자는 저임금의 차임이 다른 보험조항과의 관계에서 된 것을 청구하고 또는 결정된 자본의 가치 또는 그것에서 발생한 정기금의 자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청할 수 있다.

제2385조 정기금채무자 또는 정기금급부를 보증하기 위함 담보가 부담을 되어진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위에 의하여 필요한 자본을 지급한 경우부터 해방된다.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는 정기금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부담되고 경우에 의하여 정기금급부를 담보할 저당권의 소멸이 발생한다.

제2386조 ①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이 지급의 흠결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정기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양도된 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의 지급의 흠결이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정기금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 매각의 산출무로부터 정기금급부에 충분한 금액을 사용할 것을 동의되건 또는 명해져 또는 정기금채무자로부터 허가된 보험자에 교체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다만 저임금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파산을 선고된 경우 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정기금채권자의 동의없이 정기금급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동의한 담보를 감한 경우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87조 ① 정기금급부가 강제매각대상이 되어야 할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의 부담부 되어 매각이 실현되는 것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정기금채권자는 그 저당권이 제1순위인 경우에는 정기금의 급부가 계속하는 것이 충분한 보증인을 채권자가 제공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금채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권의 변제순서를 정하는 절차의 일 또는 분배일로부터 정기금이 자본가치를 수려할 권리를 취득한다.

제2388조 정기금이 자본가치는 항상 허가된 보험자로부터 동가치의 정기금을 취득하기에

제15절 보험

(제2389조-제2628조)⁴¹⁸⁾ (생략)

418) 제7장 보험계약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
제15절 보험	Chapitre quinzième - Des assurances	Chapter XV - Insurance	제2389조-제2628조
제1관 총칙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Division I - General provisions	제2389조-제2414조
제1항 보험계약의 성질과 보험의 종류	§ 1. — De la nature du contrat et des diverses espèces d'assurance	§ 1. — Nature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and classes of insurance	제2389조-제2397조
제2항 계약의 성립과 내용	§ 2. — De la formation et du contenu du contrat	§ 2. — Formation and content of the contract	제2398조-제2407조
제3항 육상보험의 피보험자의 신고와 담보	§ 3. — Des déclarations et engagements du preneur en assurance terrestre	§ 3.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insured in non-marine insurance	제2408조-제2413조
제4항 특칙	§ 4. — Disposition particulière	§ 4. — Special provision	제2414조-제2414조
제2관 인보험	Section II - Des assurances de personnes	Division II - Insurance of persons	제2415조-제2462조
제1항 보험약관의 내용	§ 1. — Du contenu de la police d'assurance	§ 1. — Content of policy	제2415조-제2417조
제2항 보험이자	§ 2. — De l'intérêt d'assurance	§ 2. — Insurable interest	제2418조-제2419조
제3항 신고와 위험	§ 3. — De la déclaration de l'âge et du risque	§ 3. — Representation of age and risk	제2420조-제2424조
제4항 보험의 효력발생	§ 4. — De la prise d'effet de l'assurance	§ 4. — Effective date	제2425조-제2426조
제5항 보험료, 선지급과 보험의 원상회복	§ 5. — Des primes, des avances et de la remise en vigueur de l'assurance	§ 5. — Premiums, advances and reinstatement	제2427조-제2434조
제6항 보험계약의 이행	§ 6. — De l'exécution du contrat d'assurance	§ 6. —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제2435조-제2444조
제7항 수익자의 지정과 피대위권리자	§ 7. — De la désignation des bénéficiaires et des titulaires subrogés	§ 7. — Designation of beneficiaries and subrogated policyholders	제2445조-제2460조
제8항 보험계약으로 인	§ 8. — De la cession et	§ 8. — Assignment and	제2461조-제2462조

제16절 경기와 도박

- 제2629조 ① 경기계약과 도박계약은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② 경기계약과 도박계약은 당사자의 기술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체의 운동에 관련된 적법

한 권리의 양도와 저장	de l'hypothèque d'un droit résultant d'un contrat d'assurance	hypothecation of a right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제3관 손해보험	Section III - De l'assurance de dommages	Division III - Damage insurance	제2463조-제2504조
제1항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의 총칙	§ 1. — Dispositions communes à l'assurance de biens et de responsabilité	§ 1. — Provisions common to propert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제2463조-제2479조의1
제2항 재산보험	§ 2. — Des assurances de biens	§ 2. — Property insurance	제2480조-제2497조
제3항 책임보험	§ 3. — Des assurances de responsabilité	§ 3. — Liability insurance	제2498조-제2504조
제4관 해상보험	Section IV - De l'assurance maritime	Division IV - Marine insurance	제2505조-제2628조
제1항 총칙	§ 1. — Dispositions générales	§ 1. — General provisions	제2505조-제2510조
제2항 보험이자	§ 2. — De l'intérêt d'assurance	§ 2. — Insurable interest	제2511조-제2517조
제3항 보험가액의 산정	§ 3. — De la détermination de la valeur assurable des biens	§ 3. — Measure of insurable value	제2518조-제2519조
제4항 계약과 약관	§ 4. — Du contrat et de la police	§ 4. — Contract and policy	제2520조-제2533조
제5항 보험료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5. — Des droits et obligations des parties relativement à la prime	§ 5. —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s regards the premium	제2534조-제2544조
제6항 공표와 대리	§ 6. — Des déclarations	§ 6. —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제2545조-제2552조
제7항 담보	§ 7. — Des engagements	§ 7. — Warranties	제2553조-제2564조
제8항 여행	§ 8. — Du voyage	§ 8. — The voyage	제2565조-제2574조
제9항 재해, 멸실과 손해의 신고	§ 9. — De la déclaration du sinistre, des pertes et des dommages	§ 9. — Notice of loss	제2575조-제2586조
제10항 위기(委棄)	§ 10. — Du délaissement	§ 10. — Abandonment	제2587조-제2595조
제11항 해손의 종류	§ 11. — Des espèces d'avaries	§ 11. — Kinds of average loss	제2596조-제2603조
제12항 손해의 계산	§ 12. — Du calcul de l'indemnité	§ 12. — Measure of indemnity provisions	제2604조-제2619조
제13항 잡칙	§ 13. — Dispositions diverses	§ 13. — Miscellaneous	제2620조-제2628조

한 운동과 경기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다만 사정과 당사자의 상태와 능력을 고려하여 경기의 금액이 과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30조 ① 경기와 도박이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자는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패자는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② 다만 사기 또는 속임수로 된 경우 또는 패자가 미성년자, 보호를 받는 성년자 또는 판단력이 흠결된 성년자인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17절 화해

(제2637조⁴¹⁹⁾) (생략)

제18절 중재의 합의

제2638조 중재의 합의는 당사자가 법원을 배제하고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의 결정으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위탁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제2639조 ① 사람의 지위와 능력에 관한 분쟁, 가사에 관한 분쟁 또는 공서양속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중재에 위탁할 수 없다.

② 다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규정이 공서양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 의하여 중재의 합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40조 중재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중재의 합의의 존재를 증명할 통지의 교환 또는 중재의 합의의 존재가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중단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절차문서의 교환에서 중재의 합의가 기록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본다.

제2641조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지정에 관하여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642조 계약에 포함된 중재의 합의는 해당 계약의 다른 조항과 구별되는 합의로 보고 중재인에 의한 해당 계약의 무효확인에 의하여 중재의 합의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2643조 위반할 수 없는 법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중재절차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전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편 우선특권과 지당권

(제2624조-제2802조)⁴²⁰) (생략)

419) 제17절 화해(Chapter XVII - Transaction)는 별도의 편별체계 없이 7개의 조문(제2631조 내지 제2637조)만으로 되어 있다.

420) 제6편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7편 증거

(제2803조-제2874조)⁴²¹⁾ (생략)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6편 우선특권과 저당권	Livre sixième - De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Book six - Prior claims and hypothecs	제2644조-제2802조
제1장 채권의 일반담보	Titre premier - Du gage commun des créanciers	Title one - Common pledge of creditors	제2644조-제2649조
제2장 우선특권	Titre deuxième - Des priorités	Title two - Prior claims	제2650조-제2659조
제3장 저당권	Titre troisième - Des hypothèques	Title three - Hypothecs	제2660조-제2802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660조 - 제2680조
제2절 약정저당	Chapitre deuxième - De l'hypothèque conventionnelle	Chapter II - Conventional hypothecs	제2681조 - 제2723조
제3절 법정저당	Chapitre troisième - De l'hypothèque légale	Chapter III - Legal hypothecs	제2724조 - 제2732조
제4절 저당의 몇 가지 효력	Chapitre quatrième - De certains effets de l'hypothèque	Chapter IV - Certain effects of hypothecs	제2733조 - 제2747조
제5절 저당권의 행사	Chapitre cinquième - De l'exercice des droits hypothécaires	Chapter V - Exercise of hypothecary rights	제2748조 - 제2794조
제6절 저당권의 소멸	Chapitre sixième - De l'extinction des hypothèques	Chapter VI - Extinction of hypothecs	제2795조 - 제2802조

421) 제7편 증거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7편 증거	Livre septième - De la preuve	Book seven - Evidence	제2803조-제2874조
제1장 증거의 일반원칙	Titre premier - Du régime général de la preuve	Title one - General rules of evidence	제2803조-제2810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803조-제1805조
제2절 직권통지	Chapitre deuxième - De la connaissance d'office	Chapter II - Judicial notice	제2806조-제2810조
제2장 증거방법	Titre deuxième - Des moyens de preuve	Title two - Proof	제2811조-제2856조
제1절 서증	Chapitre premier - De l'écrit	Chapter I - Writings	제2812조-제2842조
제2절 증언	Chapitre deuxième - Du témoignage	Chapter II - Testimony	제2843조-제2845조
제3절 추정	Chapitre troisième - De la présomption	Chapter III - Presumptions	제2846조-제2849조
제4절 자백	Chapitre quatrième - De l'aveu	Chapter IV - Admissions	제2850조-제2853조

제8편 시효

제1장 시효에 관한 원칙

제1절 총칙

제2875조 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조건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사유를 말한다. 전자의 시효를 취득시효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라고 한다.

제2876조 그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권리, 양도될 수 없는 권리 또는 점유할 수 없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제2877조 법률이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효는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위하여나 불이익을 위하여 완성된다.

제2878조 ①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에 기초하여 방어방법을 보충할 수 없다.

②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수단의 소의 실효를 직권으로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효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그 실효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2879조 ① 시효기간은 완전한 1일로 산입한다. 시효가 개시한 날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된다.

② 기간 최후의 일이 만료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최후의 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시효는 그에 계속한 최초의 평일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2880조 ① 점유의 상실로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정한다.

② 소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한다.

제2881조 시효는 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제5절 사실적 요소의 제출	Chapitre cinquième - De la présentation d'un élément matériel	Chapter V - Production of material things	제2854조-제2856조
제3장 증거의 허용성과 입증	Titre troisième - De la recevabilité des éléments et des moyens de preuve	Title three -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oof	제2857조-제2874조
제1절 증거요소	Chapitre premier - Des éléments de preuve	Chapter I - Evidence	제2857조-제2858조
2절 증거방법	Chapitre deuxième - Des moyens de preuve	Chapter II - Proof	제2859조-제2868조
제3절 몇 가지 진술	Chapitre troisième - De certaines déclarations	Chapter III - Certain statements	제2869조-제2874조

당사자가 그 사정에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2조 ① 직접소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청구권으로서 유효한 때에 그 권리가 항변으로도 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리는 항변으로서 원용할 수 있다.

② 항변으로 인정되어도 시효에 걸린 직접소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시효의 포기

제2883조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완성한 시효와 이미 경과한 기간에 의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제2884조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시효기간을 합의할 수 없다.

제2885조 ①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할 수 있다. 포기가 이미 취득한 권리의 포기를 추인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묵시의 포기로 한다.

② 다만 부동산의 권리에 대하여 완성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권리의 공시를 담당하는 관청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86조 처분할 수 없는 자는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제2887조 채무자 또는 점유자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의 완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나 시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제2888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가 있는 후에는 시효는 동일한 기간으로 재개시한다.

제3절 시효의 중단

제2889조 시효는 자연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중단한다.

제2890조 점유자가 1년 이상의 동안에 그 자신의 향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는 자연적으로 중단한다.

제2891조 어느 권리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를 해태한지만 그 후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자연적으로 중단한다.

제2892조 ① 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한 재판상의 청구의 제기는 법정중단을 발생하고 다만 적어도 시효기간이 만료한 일부터 60일 이내에 시효를 저지하고자 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소청구, 소송참가, 압류와 이의제기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분쟁을 중재에 참여한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한 통지도 그러하다. 다만 이 통지는 중재에 위탁하는 분쟁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청구에 적용되는 기관에 송달하여야 한

다.

제2893조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여 분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의한 모든 청구로도 시효는 중단한다.

제2894조 소의 각하, 취하 또는 소송절차의 실효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은 없다.

제2895조 ① 일방당사자의 제소가 판결이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되지 아니하고 각하된 경우에 판결이 있는 날에 시효기간이 만료 또는 3월 내에 만료할 경우에는 원고는 판결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중재의 경우도 같다. 3월의 기간은 판결의 송달일, 중재의 종료 또는 송달의 무효판결의 송달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896조 ① 재판상의 청구에 기초한 중단은 사실심 법원에 의한 판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의 화해일까지 계속한다.

② 중단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897조 단체소송의 행사에 기초한 중단은 그 단체로부터 제외를 청구한 소송이 된 지 아니한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898조 권리의 승인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기초하여 이익을 포기하고 동일하게 시효를 중단한다.

제2899조 주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 또는 모든 중단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를 중단한다.

제2900조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채권자의 1인 또는 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다른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901조 가분채무의 채권자의 1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중단은 다른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2902조 가분채무의 채권자의 상속인의 1인 또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중단은 그 상속인의 범위에서만 다른 채권자 또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903조 중단이 발생한 후에 시효는 동일한 기간으로 다시 진행한다.

제4절 시효의 정지

제2904조 스스로 제소를 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또는 타인에 의한 대리에 의하여 소송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소송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905조 ① 시효는 태아에 대하여도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미성년자 또는 후견 또는 보좌의 것에 있는 성년이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에 대하여도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906조 시효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부부 사이 또는 민사결합 배우자 사이에서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907조 상속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908조 ① 집단소송을 행사하는 호가를 얻기 위한 신청으로는 집단소송을 이용할 모든 당사자, 또한 그 신청에 권리를 부여하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하여 시효를 정지한다.

② 이 정지는 신청이 각하, 취소되지 아니한 한 또는 신청에 권리를 부여하는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한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에서 제외된 것을 신청한 자 또는 신청으로 허가하는 판결이 단체로서 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판결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 판결이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정지는 재개된다.

제2909조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의 시효의 정지는 이들과 동일한 채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취득시효

제1절 취득시효의 행사요건

제2910조 취득시효는 소유권 또는 그 제한용익물권 중의 하나를 점유의 효력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911조 취득시효는 재산편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제2912조 ① 특정명의를 상속인은 그 전 피상속인의 것에, 시효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기의 점유를 병합할 수 있다.

② 포괄명의를 상속인이나 일반명의를 상속인은 그 전임자의 점유를 계속한다.

제2913조 소지는 시효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약정된 기간을 넘어 이행청구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914조 ① 일시적 명의를 제3자로부터의 명의절차에 의하여 또는 현황명세서와 조화할 수 없는 명의자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전환될 수 있다.

② 전환은 그 소유자가 새로운 명의를 알았거나 그 명의자의 행위를 안 때로부터 시효를 위

한 점유를 유용하게 한다.

제2915조 제3자는 그 동안에 소유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에 걸릴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임시적으로 된 때에.

제2916조 포괄명의 또는 일반명의로 그 상속인이 교체의 개시 전에는 피교체자에 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제2절 취득시효기간

제2917조 취득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8조 10년 동안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서 점유한 자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919조 ① 동산의 선의의 점유자는 그 소유자의 점유상실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그 기간의 만료할 때까지 그 소유자는 동산을 포기할 수 있다. 재산의 권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0조 시효에 걸리기 위하여, 제3취득자(후속취득자)는 취득할 때에만 선의이어야 한다. 그 현실적 점유가 그 기간 후에만 개시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장 소멸시효

제2921조 소멸시효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를 소멸하는 방법이나 소권의 불수리사유를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922조 법률에 의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923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권은 10년으로 시효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점유를 보전 또는 취득하는 소권은 장해 또는 점유상실에서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924조 ①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② 대인권 또는 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기간이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3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2925조 대인권 또는 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기간이 다른 정함에

없는 경우에 3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2926조 소권이 단계적으로 또는 후에 발생한 정신적 손해, 인신손해 또는 물적 손해에 기초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은 문제된 손해가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927조 계약의 무효에 관한 소권의 시효기간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인식한 때로부터 또는 강박 또는 외포가 그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928조 보상급부를 입증하기 위한 생존배우자에 의한 소는 다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2929조 명예훼손에 기한 소권은 명예를 훼손한 자가 그 인식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2930조 소권이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기초하여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소권의 행사에 선행하여 통지를 요구할 것 또는 소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에 의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본장에서 규정한 시효기간을 방해할 수 없다.

제2931조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상의 채무의 일방 또는 상대방을 행사할 수 것에도 불구하고, 변제지급채무의 시효는 발생-진행한다.

제2932조 계속적인 방법으로 행사된 채무의 감축에 기한 소권의 시효기간은 그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것인 경우는 채무가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2933조 점유자는 그 점유에 걸린 급부에 대하여 시효에 의하여 의무를 소멸할 수 없지만 그 비율부분과 지연금은 시효에 걸린다.

제9편 권리의 공시

(제2803조-제2874조)⁴²²⁾ (생략)

422) 제9편 권리의 공시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9편 권리의 공시	Livre neuvième - De la publicité des droits	Book nine - Publication of rights	제2934조-제3075조
제1장 공시의 범위	Titre premier - Du domaine de la publicité	Title one - Nature and scope of publication	제2934조-제2940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934조-제2937조
제2절 공시가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권리	Chapitre deuxième - Des droits soumis ou admis à la publicité	Chapter II - Rights requiring or admissible for publication	제2938조-제2940조

제2장 공시의 효력	Titre deuxième - Des effets de la publicité	Title two - Effects of publication	제2941조-제2968조
제1절 대항력	Chapitre premier - De l'opposabilité	Chapter I - Setting up of rights	제2941 조-제2944조
제2절 권리의 순위	Chapitre deuxième - Du rang des droits	Chapter II - Ranking of rights	제2945조-제2956조
제3절 기타의 효력	Chapitre troisième - De certains autres effets	Chapter III - Other effects	제2957조 -제2961조의1
제4절 선의의 제3자 보호	Chapitre quatrième - De la protection des tiers de bonne foi	Chapter IV - Protection of third persons in good faith	제2962조 -제2965조
제5절 사전등록	Chapitre cinquième - De la préinscription	Chapter V - Advance registration	제2966조-제2968조
제3장 공시의 형식	Titre troisième - Des modalités de la publicité	Title three - Formalities of publication	제2969조-제3025조
제1절 권리등기부	Chapitre premier - Des registres où sont inscrits les droits	Chapter I - Registers of rights	제2969조 -제2980조
제2절 등기의 적용	Chapitre deuxième - Des réquisitions d'inscription	Chapter II -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제2981조 -제3006
제3절 등기의 의무와 직무	Chapitre troisième - Des devoirs et fonctions de l'officier de la publicité des droits	Chapter III - Duties and functions of the registrar	제3006조의1 - 제3021조
제4절 주소의 등록	Chapitre quatrième - De l'inscription des adresses	Chapter IV - Registration of addresses	제3022조-제3023조의1
제5절 적용규정	Chapitre cinquième - Des règlements d'application	Chapter V - Regulations	제3024조-제3025조
제4장 부동산등기	Titre quatrième - De l'immatriculation des immeubles	Title four - Immatriculation of immovables	제3026조-제3056조
제1절 지적대장	Chapitre premier - Du plan cadastral	Chapter I - Cadastral plan	제3026조-제3042조
제2절 지적의 수정	Chapitre deuxième - Des modifications du cadastre	Chapter II - Amendments to the cadastre	제3043조 -제3045조
제3절 (삭제)	Chapitre troisième - abrogé	Chapter III - repealed	제3046조 -제3053조
제4절 구분소유의 당사자	Chapitre quatrième - Des parties de lot	Chapter IV - Parts of lots	제3054조 -제3056조
제5장 삭제	Titre cinquième - De la radiation	Title five - Cancellation	제3057조-제3075조의1
제1절 삭제사유	Chapitre premier - Des causes de radiation	Chapter I - Causes of cancellation	제3057조-제3066조
제2절 몇 가지 삭제	Chapitre deuxième - De certaines radiations	Chapter II - Certain cases of cancellation	제3066조의1 - 제3071조
제3절 삭제의 형식과 효력	Chapitre troisième - Des formalités et des effets de la radiation	Chapter III - Formalities and effects of cancellation	제3072조-제3075조의1

제10편 국제사법

(제3076조-제3168조)⁴²³⁾ (생략)

423) 제10편 국제사법의 편별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목 차	Table des matières	Table of Contents	조문수
제10편 국제사법	Livre dixième -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Book ten - Private international law	제3076조-제3168조
제1장 총칙	T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Title one - General provisions	제3076조-제3082조
제2장 법률의 저촉	Titre deuxième - Des conflits de lois	Title two - Conflict of laws	제3083조-제3133조
제1절 인적 신분	Chapitre premier - Du statut personnel	Chapter I - Personal status	제3083조-제3096조
제2절 물적 지위	Chapitre deuxième - Du statut réel	Chapter II - Status of property	제3097조-제3108조의 8
제3절 채무의 지위	Chapitre troisième - Du statut des obligations	Chapter III - Status of obligations	제3109조-제3131조
제4절 절차의 지위	Chapitre quatrième - Du statut de la procédure	Chapter IV - Status of procedure	제3132조-제3133조
제3장 퀘벡관청의 국제관할	Titre troisième - De la compétence internationale des autorités du québec	Title three -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québec authorities	제3134조-제3135조
제1절 총칙	Chapitre prem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3134조-제 3140조
제2절 특칙	Chapitre deuxième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hapter II - Special provisions	제3141조 - 제3154조
제4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및 외국관청의 관할	Titre quatrième - De la reconnaissance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étrangères et de la compétence des autorités étrangères	Title four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decisions and jurisdiction of foreign authorities	제3155조-제3168조
제1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Chapitre premier - De la reconnaissance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étrangères	Chapter I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decisions	제3155조-제3163조
제2절 외국관청의 관할	Chapitre deuxième - De la compétence des autorités étrangères	Chapter II - Jurisdiction of foreign authorities	제3164조-제3168조

“캐나다 민법 연구

- 퀘벡주 민법전(Code civil Québec)의 번역과 해제-

연구자: 김성수(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1. 연구 목적 및 연구배경(국내외 연구동향)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민법전 개정 작업의 기초 연구로 외국의 입법례 중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1994년의 캐나다 퀘벡 주의 민법전의 주요한 조문을 우리 말로 번역하고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제를 붙인 것이다.

2009년부터 새롭게 진행 중인 민법개정의 목표는 ‘민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입법례로서 선진 각국의 여러 민법전이 참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민법전의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4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퀘벡주 민법전(Civil code of Quebec, Code civil Québec)은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소개가 거의 없지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혼합하여 계수한 입법례로서 비교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사법의 제도가 종래의 대륙법계의 것에서 영미법계의 것도 흡수하여 발전하고 있는 근래의 동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통합을 이미 10여년 전에 시도한 점에서 후 연구할 가

치가 많고 민법의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퀘벡의 구민법전이 프랑스민법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에서 현행 민법은 이를 전면 개정하여 제정된 것으로 당시의 각국의 최신 민법전과 학설판례를 참조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이 혼합계수된 우리 민법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제시와 또한 영미법계의 제도의 도입(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거절 등)을 고려하여 이 퀘벡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민법개정에서 퀘벡민법전의 제도를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 퀘벡민법전의 번역과 해제를 시도한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외국의 비교법적 입법례로서의 민법전의 선행연구는 주로 대륙법계의 프랑스민법전, 독일민법전, 스위스민법전(채무법 포함)과 최근의 유럽 민사법의 통일의 결과물인 유럽계약법원칙과 유니드르와, DCFR가 그 중심이 되었다. 또한 영미법계의 국가로서는 영국법, 미국법의 문헌이 주로 참조되었다. 그 외에도 최근의 일본민법전의 개정움직임, 중국의 민사 단행법의 제정도 참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륙법계의 움직임과 영미법계의 논의를 혼합계수하여 독특한 특색을 띄는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전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연구는 그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퀘벡주 민법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향후 우리 민법전이 가진 대륙법계의 특징과 앞으로 증가될 영미법계의 여러 제도의 혼합계수를 염두에 둔다면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물권법, 채권법, 시효법, 인법, 가족법, 상속법의 분야에서는 제정 이후에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퀘벡주민법전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법전의 입법론으로서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입법화에서 중요한 비교법적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퀘벡민법전은 그 편별체계에서도 종래의 독일법의 5편제와 프랑스의 3편제를 벗어나 10편을 두면서 민법전의 체계를 다양화 하고 있고 그 조문내용에서도 신탁, 유동저당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미법계의 제도도 대폭 수용하고 있고 향후 우리 민법전의 체계의 재편성이나 영미법계의 제도의

수용을 위하여는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연구범위)

본 연구는 우선 ①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전의 주요부분을 우리 말로 번역하고 이어서 ② 퀘벡주 민법전의 의의와 자료적 가치를 설명하는 해제를 작성하는 2개 부분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우선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전의 우리 말 번역은 다음과 같은 주요부분에 할 예정이다.

퀘벡주 민법전은 모두 10개 편 3168개조로 되어 있어 우리 민법의 2.6-3배에 가까운 조문으로 되어 있고 전통적인 민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상법과 국제사법을 포함하는 대민법전(大民法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퀘벡민법전의 편별구성은 다음과 같다.⁴²⁴⁾

목차	Table of Contents	Table des matières	
서장	Preliminary Provision	Disposition préliminaire	
제1편 인	Book One Persons	Livre premier D e s personnes	1 - 364
제2편 가족	Book Two T h e Family	Livre deuxième De la famille	365 - 612
제3편 상속	Book Three Succesions	Livre troisième D e s successions	613 - 898
제4편 재산(물권)	Book Four Property	Livre quatrième D e s biens	899 - 1370
제5편 채권	Book Five Obligations	Livre cinquième D e s obligations	1371 - 2643
제6편 우선특권과 저당권	Book Six P r i o r Claims and Hypothecs	Livre sixième D e s priorités et des hypothèques	2644 - 2802
제7편 증거	Book Seven Evidence	Livre septième De la preuve	2803 - 2874

424) 고덕체가 주로 번역대상이 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에 해당되는 부분 등을 이유로 일부 생략하였다(특히 제5편).

제8편 시효	Book Eight Prescription	Livre huitième De la prescription	2875 - 2933
제9편 권리의 공 시	Book Nine Publication of Rights	Livre neuvième De la publicité des droits	2934 - 3075
제10편 국제사법	Book Ten Private International Law	Livre dixième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3076 - 316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 더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편을 우선적으로 우리 말로 역출(譯出)하였다. 이중에서 우리 민법전과 관련하여 번역할 주요부분은 인(제1편), 가족(제2편), 상속(제3편), 재산(물권)(제4편), 채권(제5편)의 제1장 채권일반, 시효(제8편) 등이다. 채권편의 전형계약(제5편 제2장)은 퀘벡민법전은 민상법 통일을 취하고 있어 상법상의 전형계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주요한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번역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에 주어진 시간과 여건상 우선특권과 저당권(제6편), 증거(제7편), 권리의 공시(제9편), 국제사법(제10편)은 본 연구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퀘벡주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공용어이고 민법전도 2개 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번역에서는 양자를 참조하되 퀘벡에서는 프랑스어가 더 상용되고 있으므로 프랑스어본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조문번역과 관련하여 현행 퀘벡주 민법전의 의의와 자료적 가치를 설명하는 해제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퀘벡주의 구민법전과 현행민법전의 편별체계와 조문내용의 비교와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현행 퀘벡민법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를 프랑스민법, 영미법과의 관계에서 법전의 편별구성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조문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은 현행 퀘벡주 민법전의 주요부분을 우리 말로 역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해제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프랑스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퀘벡주 민법전의 원문을 직접적으로 참조하여 퀘벡주 민법전의 각 민법의 제도를 제시하고 향후 우리 민법전의 개정작업의 개정안 도출에 대한 기초작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선 퀘주 민법전에 대한 관련 조문과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퀘벡 구민법전과 프랑스민법전이나 기타 캐나

다 등의 영미법계의 논의와도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과 법제사적 연구 방법도 병행하고자 한다.

또한 종래의 우리나라에 관련연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퀘벡주민법전을 이해하기 위한 해제를 관련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민법전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퀘벡주민법의 여러 제도에 대한 문헌조사방법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여도

우선 본 연구는 캐나다 민법 중 퀘벡주 민법전의 주요한 규정에 대한 우리 말과 프랑스어, 영어의 대역을 통하여 퀘벡주민법전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민법안 개정작업에 대한 비교법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계수의 측면에서 퀘벡주민법전의 조문내용과 그 해제는 우리 법의 계수와 미래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여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종래의 우리 비교법적 연구가 단편적이고 논의대상 자체가 협소하였던 점에 대하여 퀘벡주 민법전이라는 최신의 입법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교법적인 합리성을 도출할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퀘벡주의 민법전의 입법자의 의사와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전의 각 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민법개정의 목표 중의 하나인 개정안의 최신의 국제적인 동향으로서의 퀘벡민법전의 참고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개정안의 합리성과 설득력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종래의 우리의 제한적이던 외국의 입법례의 참고에 대한 비교법적 영역의 확대와 그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입법례의 분석을 통한 우리 민법전의 규정의 선진화와 세계화 및 종합적인 시각도 제공되고 우리 민법의 비교법적 현주소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또한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 종래의 논의가 부족한 부분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다.

다. 활용방안

본 연구는 향후 민법개정안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비교법적 입법자료의 제공, 민법의 각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및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원문(프랑스어와 영어)과 역문의 대조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자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합계수한 국가(혼합법계)의 민법전의 내용과 비교법적인 문제점의 대조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법의 비교법적 계보의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제공도 가능하고 향후 여러 제도의 비교법적 기초자료와 외국민법전의 동향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